2023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2024. 8.

외 교 통 일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송병철

【 목　　차 】

※ 2023회계연도 결산 검토의견 요약 ····· ①

Ⅰ.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 1

1. 세　입 ····· 1

2. 세　출 ····· 3

가. 개　요 ····· 3

나. 예비비 ····· 3

다. 전　용 ····· 4

라. 이　용 ····· 5

마. 수입대체경비 ····· 5

바. 이　월 ····· 6

사. 불　용 ····· 7

Ⅱ.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검토의견 ····· 8

1. 개　요 ····· 8

2. 총 괄 ····· 9

3. 정상외교 ····· 22

가. 개　요 ····· 22

나. 정상 및 총리외교(1231-401) ····· 22

4. 한반도 평화 조성 ····· 27

가. 개　요 ····· 27

나.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 29

다.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 33
라.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 36
마.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 41

5. 국제기구분담금 ····· 44
가. 개 요 ····· 44
나. 기타 의무분담금 ····· 45
다.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 47

6. 다자관계 협력 ····· 53
가. 개 요 ····· 53
나.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 ····· 54
다.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신규) ····· 60

7. 국제개발협력 ····· 64
가. 개 요 ····· 64
나. 인도적 지원 ····· 68

8. 국제법적 대응 강화 ····· 74
가. 개 요 ····· 74
나.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 75

9.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 80
가. 개 요 ····· 80
나.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 81

10. 재외국민 해외안전관리 ····· 84
가. 개 요 ····· 84
나. 재외국민 보호(2731-401) ····· 84

11. 여권업무 선진화 ····· 88
가. 개 요 ····· 88
나.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개선(수입대체경비) ····· 89

12. 경제외교 ····· 93
가. 개 요 ····· 93
나. 다자 경제외교 추진 및 경제협력 강화 ····· 94
다. 양자경제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 ····· 95

13. 에너지 및 글로벌 이슈 대응 외교 ····· 98
가. 개 요 ····· 98
나. 기후변화 녹색환경 외교강화 ····· 99

14. 외교정책연구 및 교육 ····· 105
가. 개 요 ····· 105
나.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 ····· 106
다. 국민외교아카데미 개발 및 운영 ····· 109

15. 재외공관 운영 ····· 113
가. 개 요 ····· 113
나. 재외공관 근무여건 개선 ····· 114
다.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 ····· 116

16. 외교행정지원 ····· 122
가. 개 요 ····· 122
나. 기관운영 기본경비 ····· 126
다. 해외주요인사대상 E-diplomacy 강화 ····· 133

17. 한국국제협력단 ····· 136
가. 개 요 ····· 136
나. 검토의견 ····· 140
1) 총괄 ····· 140
2) 아시아태평양 지역원조 ····· 152
3)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 156
4) 중동・CIS지역원조 ····· 166

18. 한·아프리카재단 ····· 168
가. 개 요 ····· 168
나. 수 입 ····· 168
다. 지 출 ····· 169
라. 검토의견 ····· 171

Ⅲ. 국제교류기금 결산 ····· 180

1. 총 괄 ····· 180

2. 검토의견 ····· 188
가. 수 입 ····· 188
나. 지 출 ····· 191

Ⅳ. 국제질병퇴치기금 결산 ····· 209

1. 총 괄 ····· 209

2. 검토의견 ····· 217

Ⅴ. 외교부 통합 재무결산 분석 ····· 218

1. 총 괄 ····· 218
2. 재정상태표 분석 ····· 219
3. 재정운영표 분석 ····· 222
4. 순자산변동표 분석 ····· 228

Ⅵ. 외교부 성과관리 분석 ····· 231

1. 총 괄 ····· 231
2. 성과체계 현황 ····· 234
3. 2023회계연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 237

Ⅶ.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239

Ⅷ.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시정요구사항 조치 결과 검토의견 ····· 248

【2023회계연도 결산 검토의견 요약】

프로그램	세부사업	주 요 검 토 내 용
총괄	-	□ 외화표시예산의 환차손 대응수단 다각화 필요 □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국외업무여비 예산의 현실화 필요 □ 외교센터 민간임대 공실률 개선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필요
정상 외교	정상 및 총리외교	□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사업을 정상 및 총리외교(1231-401)에서 부적정 집행
한반도 평화 조성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 북한이탈주민 대상 의료지원, 심리상담프로그램 집행률 제고 필요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 여러 세부사업에서 집행 부적절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사업 집행실적의 연례적 부진 □ 연구용역비 연말 집행 지양 노력 필요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행사대행용역 조달수수료 이월 부적절
국제기구 분담금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 개별 부처의 분담금 자체평가에 대한 외교부의 관리·보완 필요 □ 국제기구분담금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 등 일관성 제고 필요
다자관계협력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	□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파견경비 집행 및 관리 강화 필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신규)	□ 홍보 및 광고지원 용역계약 「정부광고법」 이행 필요
국제개발 협력	인도적지원 (ODA)	□ 인도적 지원 예산 규모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집행 관리 강화 필요
국제법적 대응 강화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 연구용역 집행·관리 방식 개선 필요

프로그램	세부사업	주 요 검 토 내 용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 주요국 유산 동향 연구 사업 수행 방식의 적정성 검토 필요
재외국민 해외안전관리	재외국민보호	□ 영사콜센터 재택 상담시스템 활용방안 마련
여권 업무 선진화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개선 (수입대체경비)	□ 전자여권 품질검사 및 품질개선 관련 연구용역의 회계연도에 맞는 집행 필요
경제 외교	다자 경제외교 추진 및 경제협력 강화	□ 국제경제규범 정립 및 개선 사업의 성격을 감안한 편성 조정 필요
	양자경제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	□ 경제안보 관련 재외공관 주재 전문연구원 인건비 예산의 연례적 불용 최소화 필요
에너지 글로벌이슈 대응 외교	기후변화 에너지환경 외교강화	□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국제협력 강화 사업 집행 부진 해소 필요
외교 정책 연구 및 교육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	□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 추진 지양
	국민외교아카데미 개발 및 운영	□ 국민외교아카데미 사업 내실화 및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재외공관 운영	재외공관 근무여건 개선	□ 전지휴양·저지대요양 예산의 만성적 부족 해소방안 마련 필요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	□ 재외공관 관서운영경비 이월 관행 시정 필요
외교행정 지원	기관운영 기본경비	□ 재외공관 직원 교체여비 현실화 필요 □ 계속사업경비를 국외여비 전용재원으로 부적정 전용 지양 □ 가족동반직원에 대한 국외이전비 지급기준 개선 필요
	해외주요인사대상 E-diplomacy 강화	□ 신규사업 편성시 사업의 효율성 및 집행가능성 고려

프로그램	세부사업	주 요 검 토 내 용
한국국제협력단(KOICA)	총괄	□ 국가별 협력사업 내 멀티바이 사업 증가를 감안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 분쟁 및 취약국지원 사업 예산 편성의 취지를 살리는 집행 필요 □ 신규 사업에 대한 초년도 사업 착수 비율 상향 노력 필요 □ 개발협력 관련 조달의 과도한 긴급공고 자제 필요
	아시아태평양 지역원조	□ 주요국 사업들의 과도한 전용 조정 지양 필요
	중남미 지역원조	□ 신규사업 집행 저조에 대한 대처 방안 강구 □ 국별협력사업 총사업비 관리 철저
	중동·CIS지역원조	□ 우크라이나 · 타지키스탄 대상 개발협력 사업의 확대 필요
한 · 아프리카재단	경상운영비	□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경상운영비 확보 노력 필요
	아프리카국가와의 동반자관계 증진을 위한 공공부문 교류 지원	□ 지자체-아프리카국가 교류협력 촉진 사업 부진 및 사업 재검토 필요
	아프리카국가와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 홍보	□ 차세대아프리카전문가(YPA) 국제기구 파견교육 사업 내실화 노력 필요
국제교류기금	수입	□ 코로나 및 기여금 요율 인하에 따른 적립금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
	총괄	□ 「해외한국학지원사업 시행지침」,「회계규정」등 KF 내부지침 정비 필요 □ 청년인턴 보수 및 해외사무소 해외경상이전 등 경비의 성격을 고려한 예산집행 절차 수립 필요
	글로벌 한국학 진흥	□ 대학원생 장학지원사업 변경(협약형 폐지→공모형 전환)에 따른 예산 편성 및 지침 개정 등 사전 계획 미흡
	국제협력네트워킹	□ 사업기간과 회계주기를 일치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 공공외교 및 상호교류 취지에 부합도록 청년교류 사업 개선 필요

프로그램	세부사업	주 요 검 토 내 용
국제질병 퇴치기금	총괄	□ 출국납부금 제도 폐지 이후에도 국제기구와의 약정을 안정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 필요
예비비	정상 및 총리외교	□ 본 예산의 적정 편성으로 과도한 예비비 편성 지양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신규)	□ 제3차 민주주의정상회의 개최 준비기획단 예비비 이월 부적정 □ 사업 준비 미흡으로 인한 예비비 배정 지연 부적절

I.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1. 세 입

< 세입결산 개요 >

(단위 : 백만원,%)

과 목	세 입 예산액 (A)	징 수 결정액 (B)	수납액 (C)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예산액과 수납액 차 (C-A)	예산액대 수납액 비율 (C/A)
재산수입	520	422	419	-	3	△101	80.6
경상이전수입	7,203	78,967	78,801	-	166	71,598	1,094.0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128,802	161,398	161,398	-	-	32,596	125.3
수입대체경비 수입	130,810	155,535	155,535	-	-	24,725	118.9
합 계	**267,335**	**396,322**	**396,153**		**169**	**128,818**	**148.2**

2023년도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총 2,673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수납액은 3,961억 5,300만원으로 당초 세입 예산액 대비 1,288억 1,800만원이 증가(148.2%)하였음. 수납액이 증가한 주요 사유는 당초 세입 예산액 대비 경상이전 수입 715억 9,800만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325억 9,600만원, 수입대체경비수입 247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 세입증감액조서 >

(단위 : 백만원)

과 목	예산편성대비 증감액		증 감 사 유
	증	감	
11관 재산수입	**82**	**183**	
51항 관유물대여료	-	183	국유재산 건물 임대 수입액 감소 및 국고보조금 예치 이자 수입액 증가
512목 건물대여료	-	183	
54항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82	-	
546목 기타재산이자수입	82	-	
12관 경상이전수입	**71,598**	-	
57항 변상금 및 위약금	519	-	국고보조금(분담금) 반환 등 기타경상이전 수입액 증가 *NATO의 아프간군신탁기금(ANATF) 58,512,000 미불 잔액 반납액 포함
571목 변상금	48	-	
572목 위약금	471	-	
59항 기타경상이전수입	71,079	-	
596목 기타경상이전수입	71,079	-	
13관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32,943**	**347**	
65항 면허료 및 수수료	32,943	-	사증 및 공증 수수료 등 영사 수입액 증가
651목 면허료 및 수수료	32,943	-	
69항 잡수입	-	347	
691목 기타잡수입	-	347	
14관 수입대체경비수입	**24,725**	-	
65항 면허료 및 수수료	24,725	-	여권 수수료 수입액 증가
651목 면허료 및 수수료	24,725	-	
합 계	**129,348**	**530**	

2. 세 출

가. 개 요

< 세출결산 개요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A)	예산현액 (B)	집행액 (C)	C/A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3,249,526	3,284,782	3,162,910	97.3	96.3	9,004	112,868

※ 예산현액(3,284,782) = 당초예산액(3,249,526) + 전년도 이월액(6,517) + 예비비(62,572) + 수입대체초과지출승인액(22,300) - 이체(56,133)

2023년도 당초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3조 2,495억 2,6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65억 1,700만원, 예비비 625억 7,200만원, 수입대체초과지출승인액 223억원 및 이체 △561억 3,300만원으로 인하여 예산현액은 3조 2,847억 8,200만원이 되었으며, 이 중 3조 1,629억 1,000만원을 집행(97.3%)하였고, 90억 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128억 6,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나. 예비비

(단위 : 백만원)

과 목	배정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 월 액	불용액
통일·외교	62,572	53,890	4,022	4,660
정상 및 총리외교	32,859	28,548	1,071	3,240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	4,896	3,023	947	926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2,820	322	2,004	494
재외동포청 이체	21,997	21,997	-	-

2023년도 예비비는 정상 및 총리외교,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등 4개 사업에 총 625억 7,200만원이 배정되었으며, 정상 및 총리외교 32억 4,000만원,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 9억 2,600만원,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4억 9,400만원을 각각 불용처리하였음.

다. 전 용

< 전용 개요 >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전 용 사 유	금 액
기 타	재외동포청 출범 관련 예산 비목 전환	15,235
	인도적 지원(튀르키예 지진 피해 대응)	8,420
	교체여비	4,793
	정상 및 총리 해외순방행사	2,130
	기타 의무분담금 납부	1,444
	부산세계박람회 지지교섭 활동	592
	기타	16,864
합 계		**49,478**

2023년도 전용액은 총 494억 7,800만원으로, 재외동포청 출범 관련 예산 비목 전환 152억 3,500만원, 인도적 지원(튀르키예 지진 피해 대응) 84억 2,000만원, 교체여비 47억 9,300만원 등에 전용되었음.

라. 이 용

< 이용 개요 >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전 용 사 유	금 액
기 타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인한 재외공관 공공요금 부족	2,880
합 계		2,880

2023년도 이용액은 총 28억 8,000만원으로,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인한 재외공관 공공요금 부족에 이용되었음.

마. 수입대체경비

< 수입대체경비 세출결산 개요 >

(단위 : 백만원)

과 목	세출 예산액	예산결정후 증감액				세출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초과 지출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증감액	이용·이체액	초과지출 승인액					
외교·통일	85,620	2,109	-	-	22,300	110,029	109,482	64	482	-
-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개선 (수입대체경비)	85,620	2,109	-	-	22,300	110,029	109,482	64	482	-

2023년도 수입대체경비의 당초 세출예산액은 856억 2,000만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21억 900만원, 초과지출승인액 223억원이 합산되어 예산현액

은 1,100억 2,900만원임.

이 중 1,094억 8,200만원이 집행되었고, 6,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억 8,2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

바. 이 월

< 이월 개요 >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이월사유	금 액
미지급금 이월	계약조건에 따른 미지급금 발생 등	5,826
	연구용역 미완료로 인한 이월 등	720
	소 계	**6,546**
사업계획 변경	계약체결 및 설계지연	665
	사업계획 변경 및 사업량 증가	1,793
	소 계	**2,458**
합 계		**9,004**

2023년도 이월 규모는 90억 400만원으로, 계약조건에 따른 미지급금 이월(58억 2,600만원) 발생 등이 주요 사유임.

사. 불 용

< 불용 개요 >

(단위 : 백만원)

유 형 별	불 용 사 유	금 액
지급사유 미발생	인건비 지급사유 미발생 등	4,487
	소 계	**4,487**
계획변경 또는 취소	행사변경 및 취소로 인한 미지급금 발생	3,809
	소 계	**3,809**
예산 절감	사업 예산 절감	1,725
	소 계	**1,725**
환율 변동	편성액 대비 집행 환율 변동	253
	소 계	**253**
집행잔액	기타 집행잔액	102,593
	소 계	**102,593**
합 계		**112,867**

2023회계연도 불용액은 총 1,128억 6,700만원으로, 지급사유 미발생 44억 8,700만원, 계획변경 또는 취소 38억 900만원, 예산 절감 17억 2,500만원, 환율변동 2억 5,300만원 및 집행잔액 1,025억 9,3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음.

Ⅱ. 2023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 검토의견

1. 개 요

2023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사업구조를 보면, 한반도 평화 조성 등 18개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3조 2,495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고,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65억 1,700만원, 예비비 625억 7,200만원, 수입대체초과지출승인액 223억원 및 이체 △561억 3,300만원으로 인하여 예산현액은 3조 2,847억 8,200만원임. 이 중 3조 1,629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고, 90억 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128억 6,8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 외교부 프로그램별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

프로그램	2022 결산	2023년				2024 예산
		본예산	예산현액 (A)	결산 (B)	집행률 (B/A)	
계	2,811,547	3,249,526	3,284,782	3,162,910	96.3	4,029,753
1. 한반도 평화 조성	13,383	29,126	28,490	22,523	79.1	15,712
2. 정상외교	26,199	24,868	57,798	53,094	91.9	27,113
3. 역내국가와의 협력 강화 및 신남방·신북방 정책 추진	13,281	5,852	5,467	4,963	90.8	5,334
4.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11,203	12,020	16,616	14,158	85.2	46,147
5. 국제기구분담금	509,972	661,827	661,827	660,366	99.8	718,311
6. 다자관계협력	14,621	18,064	20,884	17,378	83.2	25,013
7. 원자력 비확산 외교강화	1,837	3,076	3,098	2,680	86.5	5,239
8. 국제개발협력	1,101,120	1,297,850	1,297,872	1,247,771	96.1	1,968,035
9. 국제법적 대응 강화	6,503	7,429	6,964	5,993	86.1	6,673

10.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28,138	29,432	29,157	26,111	89.6	23,110
11. 재외국민 해외안전관리	10,431	15,547	15,841	12,496	78.9	15,744
12. 재외국민 영사서비스 제고 및 재외동포 역량강화	64,706	58,946	33,270	33,207	99.8	-
13. 여권업무 선진화	97,851	85,620	110,029	109,483	99.5	141,030
14. 경제외교	8,520	12,447	12,447	10,461	84.0	12,860
15. 에너지 및 글로벌 이슈 대응 외교	5,065	5,514	5,514	4,244	77.0	9,806
16. 외교정책연구 및 교육	15,038	14,918	14,043	12,524	89.2	15,964
17. 재외공관운영	675,977	730,909	733,968	712,023	97.0	776,394
18. 외교행정지원	207,701	236,081	231,498	213,435	92.2	217,268
19. 차입금원금상환	-	-	-	-	-	-

2. 총 괄

□ 외화표시예산의 환차손 대응수단 다각화 필요

외교부는 다수의 국제 및 외교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 외화로 편성해야 할 필요성이 큰 사업(국제기구분담금, 재외공관 활동경비, 외교활동경비 등)은 외화표시예산으로 편성·집행하고 있음. 외화표시예산은 예산 편성이 완료되기 전 3개월 평균환율(기준환율)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는 예산 편성 시점에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함임.

2023년도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세출) 및 기금(지출)의 외화표시예산 집행액은 전년도(1조 765억 7,200만원) 대비 7.5%(808억 1,300만원) 증액된 1

조 1,573억 8,500만원임. 2023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의 외화표시예산 비중은 38.1%로 전년도의 29.0%보다 9.1%p 증가하였음. 외화표시예산은 총 58개의 세부사업에서 집행되었으며, 주요 집행내용을 보면 유엔 PKO예산분담금 납부로 약 1억 5,743만USD,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로 약 1억 4,308만USD, 인도적지원(ODA)에 약 1억 700만USD가 집행되었음.

< 2022, 2023년도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의 외화표시 예산 집행 현황 >

(단위: 1,000USD, 백만원, %)

구분	미화 표시 집행액			원화 집행액		
	'22집행액 (A)	'23집행액 (B)	증감액(B-A) (증감율)	'22집행액 (C)	'23집행액 (D)	증감액(D-C) (증감율)
일반회계	828,823	844,864	16,041 (1.9%)	999,460	1,097,111	97,651 (9.7%)
국제질병퇴치기금	42,781	26,718	△16,063 (△37.6)	54,015	34,446	△19,569 (△36.2)
국제교류기금[1]	17,807	19,816	2,009 (11.3)	23,097	25,828	2,731 (11.9)
합계	**889,411**	**891,398**	**0.2**	**1,076,572**	**1,157,385**	**7.5**

< 2022, 2023년도 외교부 소관 일반회계 및 기금의 외화표시예산 비중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2년도			2023년도		
	전체예산 (A)	외화표시예산 (B)	비중 (B/A)	전체예산 (C)	외화표시예산안 (D)	비중 (D/C)
일반회계	2,874,765	842,629	29.3	3,249,526	1,252,401	38.5
국제질병퇴치기금	92,053	57,921	62.9	48,005	34,547	71.2
국제교류기금	220,537	24,304	10.6	151,807	26,965	17.7
합계	3,187,355	924,854	29.0	3,449,338	1,313,913	38.1

1) 미화 표시 집행액: 미화(USD)+현지화(USD로 환산), 원화 집행액: '22~'23년도 미화 표시 집행액에 대한 원화환산금액 기재

그러나 외화표시예산이 편성 시점의 기준환율을 바탕으로 편성됨에 따라 집행 시점의 환율과 기준환율 사이의 괴리가 커지는 경우 과도한 환차익·손이 발생할 수 있음. 2023년 예산 편성 당시 기준환율은 1,290원이었으나 연중 환율이 1,290원 미만이 되었던 시기는 극히 짧아 환차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음[2]. 2023년 외교부 예산 중 발생한 환차손의 규모는 약 71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음.

< 외교부 예산 환차익·환차손 발생 내역 >

(단위: 백만원, 1백만USD)

연도	외교부 총예산 (본예산 기준)	외화예산		환차손익		비고
		미화	원화환산 (편성환율)	환차익	환차손	
2018	2,270,731	844	953,513 (1,130원/$)	3,762	-	불용처리(국고반납)
2019	2,355,607	879	966,926 (1,100원/$)	-	31,415	-
2020	2,617,199	878	1,044,242 (1,190원/$)	10,991	-	불용처리(국고반납)
2021	2,736,149	829	1,002,999 (1,210원/$)	59,563	-	불용처리(국고반납)
2022	2,874,765	746	842,629 (1,130원/$)	-	61,977	-
2023	3,249,526	971	1,252,401 (1,290원/$)	-	7,142	-

정부의 외국환평형기금[3]을 통한 외화표시예산 환위험 관리는 국제기구 분담금[4], 인도적 지원 일부 예산에만 한정됨에 따라 재외공관근무여건 개선

2) 2022년도에도 기준환율 1,131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환율은 1,300원~1,400원대를 유지하여 약 620억 상당의 환차손이 발생하였음

3) 외국환평형기금은 환율의 급등락 조정 및 외화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임.

(4012-251), 재외공관 행정직원 인건비(4021-401)의 경우 사업계획조정이나 전용을 통해 환율변동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고 있음.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환율 변동으로 인한 예산 부족이 발생할 경우, 사업계획의 조정, 이·전용, 예비비를 통해 이를 보전하도록 하고 있는바, 재외공관 운영 예산의 환차손 발생으로 인한 부족을 사업계획 조정 및 이·전용으로 충당한 것은 지침에 부합하는 집행으로 집행 자체의 문제는 없음.

다만, 외교활동의 기본이 되는 예산이면서 동시에 경직성 경비의 성격이 강한 재외공관 운영 관련 예산의 부족은 안정적인 재외공관 운영에 차질을 유발해 재외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외교부는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 대응수단으로 사업계획 조정 및 이·전용뿐만 아니라 외국환평형기금이나 예비비의 활용방안을 같이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국외업무여비 예산의 현실화 필요

외교부는 국제 및 외교 관련 업무의 수행, 재외공관 운영 등의 사유로 타 부처 대비 많은 국외업무여비를 편성하여 집행 중임. 국외업무여비의 집행 내역을 확인해보면 해외순방행사, 국제회의 참석 등 단발성 예산뿐만 아니라 전지의료검진, 이·부임 비용 등 매년 집행 규모가 정해져 있는 예산도 포

4) 국제기구분담금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환차손에 대해선 「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에 따라 각 부처가 일반 시중은행을 통해 환전하여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닌, 외국환평형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재원을 통한 환전으로 예산을 집행함. 외국환평형기금을 이용한 환전은 편성 당시의 기준환율로 외환을 매입하는 것인바, 환율변동으로 인한 예산과부족 발생 가능성이 없어 개별 부처가 안정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음.

함되어 있음.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지속된 물가상승으로 인해 국외업무여비 예산의 부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외교부는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등의 예산에서 전용을 통해 부족분을 충당하고 있음. 통계에 따르면 국제항공료 물가지수는 2020년 대비 2022년 30% 상승했으며[5], 미국·EU 등 주요 국가의 숙박비 단가는 2020년 대비 30~40% 상승[6]한 것으로 파악됨. 또한 최근엔 부산엑스포 유치 교섭, APEC 의장국 수임, 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등 외교 활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이전보다 많은 국외업무여비 소요가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외교부의 국외업무여비 예산은 국제항공료 증가율에도 못 미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어 매년 전용을 통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실정임. 외교부의 기관운영기본경비(7011-201·251) 내 국외업무여비 예산은 2021년 대비 2023년에 약 21.3%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음.

< 국외업무여비 예산 부족으로 인한 주요 전용 내역 >

(단위: 백만원)

순번	전용 증액 세부사업명	전용 감액 세부사업명	금액	전용 사유
1	공관장회의 및 기타외교현안 대응 (7033-404)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2)	600	필수 지출항목인 항공운임의 대폭 인상으로 국외업무여비 부족 현상 발생으로 일반수용비를 전용
2	정상 및 총리외교 (1231-401)	정상 및 총리외교 (1231-401)	2,130	정상 및 총리 해외순방행사 확대로 인한 국외출장여비 부족으로 동 사업 내 일반용역비를 전용
3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1)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1)	1,000	코로나 이후 해상운임, 항공료 인상 및 인사이동 인원 대비 예산 과소 편성 등으로 교체여비 부족이 발생한 바 일반수용비를 국외업무여비로 전용

5)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6) STR(미국 호텔 전문 조사업체), Statista(데이터 수집 전문 독일 온라인 플랫폼)

4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1)	동북아시아국 기본경비 (7011-257) 외 다수	1,930	재외공관 발령 직원 이부임 항공료, 이전비 등 부족으로 개별 실국의 일반수용비, 일반용역비 등을 국외업무여비로 전용
5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1)	본부 인건비 (7001-101) 외 다수	1,700	재외공관 발령 직원 이부임 항공료, 이전비 등 부족으로 공무원 인건비 및 개별 실국의 자산취득비, 공사비 등을 국외업무여비로 전용
6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1)	기관운영 기본경비 (7011-251)	163	재외공관 발령 직원 이부임 항공료, 이전비 등 부족으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을 국외업무여비로 전용
7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4021-401)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4021-401)	83	물가상승 및 환차손으로 재외공무원 전지휴양비가 부족한바 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을 국외업무여비로 전용
8	재외공관 근무여건 개선(4012-251)	재외공관 안전강화 (4031-402)	616	재외공관 행정직원 교체채용에 따른 항공료 및 저지대 요양 예산 부족으로 관리용역비를 국외업무여비로 전용

< 국외업무여비 중 이·부임비용 예산 부족으로 인한 이·전용 내역 >

(단위: 백만원)

연도	편성액	예산 총액	이전용 등
2021	7,804	11,757	3,953
2022	8,105	14,934	6,829
2023	9,736	14,959	5,223

「국가재정법」 제45조 및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를 때, 국외업무여비 부족으로 인한 타 비목으로부터의 전용은 자체전용권 범위 내에 있는 예산의 전용이고 예산의 목적외 사용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집행상 법 위반 소지는 없다고 보임.

다만 국외업무여비의 부족을 이유로 매년 다양한 사업·비목 예산을 이·전용하여 집행하는 것은 집행 과정에서 단기적으로 행정 비용을 유발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에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게 되어 중장기적으론 외교 활동 수행에 차질을 빚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문제점은 상당하다고 보임. 외교부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어 나타나지 않도록 재정 당국과 보다 적극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음.

□ 외교센터 민간임대 공실률 개선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필요

‘관유물대여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7]에 따른 토지, 건물 등 정부 소유물에 대한 대여수입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시 관유물대여료의 세입예산 계상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2023년부터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음.

---

7) **「국유재산법」**
제32조(사용료) ①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산출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허가(허가를 갱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 그 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중앙관서의 장이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에 관한 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제42조제6항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하는 경우에 사용허가기간 중의 사용료가 증가 또는 감소되더라도 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반환하지 아니한다.

< 관유물대여료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및 '24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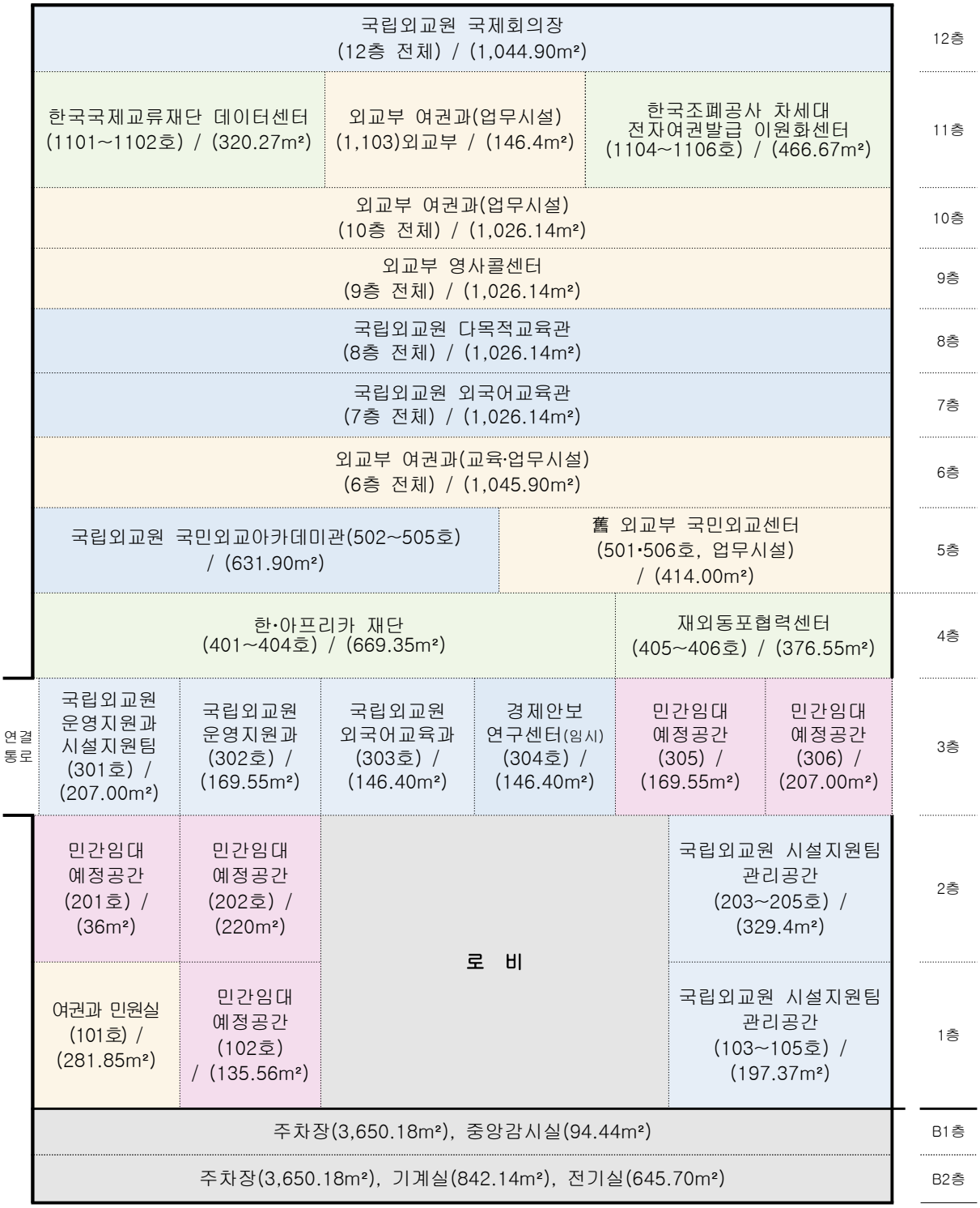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이체등 증감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B)	수납액 (C)	수납률 (C/A)	수납률 (C/B)	미수 납액	불납 결손액
	본예산	추경(A)								
2020	-	-	-	-	344	344	100	100	-	-
2021	-	-	-	-	346	346	100	100	-	-
2022	-	-	-	-	329	329	100	100	-	-
2023	390	-	-	390	207	207	100	100	-	-
2024	429	-	-	429	-	-	-	-	-	-

1996년 이래 민간에 위탁 관리되던 외교센터를 2020년 외교부가 환수하여 국립외교원이 관리 중에 있으며, 동 센터 내 민간임대공간에서 건물대여료가, 2023년부터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토지대여료[8]가 발생 중임.

8) 2023년 수납액 644,600원

<외교센터 층별 사무실 및 입점업체 현황>



(자료: 국립외교원)

재외동포청이 2023년 6월 신설되면서 재외동포서비스지원센터가 광화문으로 이동함에 따라, 외교타운 내 아포스티유팀도 광화문 소재 센터로 이전하였음.

이에 기존에 외교타운 내 사무실을 유상사용허가 중이던 3개 공증업체(총 402.4㎡)가 국유재산 유상사용허가를 취소 신청하여 중도에 철수하였으며, 1층 카페 업종(라크리마) 역시 2024년 1월 계약 종료 이후 철수한 상태로 현재까지 민간임대 전 공간 모두 공실 상태임.

<2023년 외교타운 입점업체 계약현황>

(단위 : 백만원)

업체명	유상사용허가 기간	사용료 (징수결정액)	수납액
법무법인 한미	(갱신) 2023.1.1. ~ 23.7.29.	109	109
법무법인 센트럴	(갱신) 2023.1.1. ~ 23.8.18.	67	67
외교타운 번역 아포스티유	(갱신) 2023.1.1. ~ 23.7.29.	6	6
라크리마 외교타운점	(신규) 2021.1.18.- 2024.1.17	24	24
합 계		206	206

(자료: 국립외교원)

국립외교원은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온비드(국가공매포털)를 통해 유상사용허가 일반입찰 공고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3층 민간임대 공간의 경우 2020년 외교부가 외교타운을 환수하여 관리를 맡은 이후 2024년 현재까지 공실인 상황임.

<공실기간 및 입찰시행 경과>

구분	공실기간	입찰공고 횟수	최종 임대료
민간임대예정공간 102호	'24.1.17 이후 – 현재	10회차	24,324,773원
민간임대예정공간 201호	'23.7.28 이후 – 현재	9회차	59,214,923원
민간임대예정공간 202호	'23.7.28 이후 – 현재	9회차	9,689,715원
민간임대예정공간 305호	'20.1.1 이후 – 현재	4회차	121,695,638원
민간임대예정공간 306호	'20.1.1 이후 – 현재	4회차	148,575,625원

※ 305-306호는 '20년 4회차 / '22년 3회차 / '23년 1-2월간 4회차, 10-11월간 4회차 온비드를 통해 지속 공고하였으나, 입찰이 없었음.

(자료: 국립외교원)

국립외교원은 민간업체 뿐만 아니라 교육부·산업부 산하 공공단체 및 관련단체 등이 직접 사무실 확인을 하기도 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양재역 외곽에 위치하고, 사무실 크기 등이 맞지 않아 입찰까지 이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함.

그러나, 2019년 국립외교원이 외교센터 관리를 맡은 이후 민간임대공간을 지속적인 공실 상태로 두는 것은,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각 관리청으로 하여금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관련 수입의 증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는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9]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국립외교원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국립외교원은 1층 카페업종이 있던 민간임대공간에 대하여는 외교타운

9)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37

방문객이 적어 수익발생이 어려운 점이 유상사용허가에 걸림돌인 점을 감안하여, 장애인 기관에 무상으로 사용허가를 승인하는 방안을 현재 실무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함.

한편, 외교부의 예산과 조직이 확대됨에 따라, 현재 외교부 본부청사 공간이 외교부의 전 부서를 소화하지 못해 일부 부서가 본부청사 외 타 건물에 입주해 있는 상태인데,

외교부 여권과가 현재 외교타운 9층~11층에 입주해 있는 바와 같이 전체 외교부 사무실 입주현황에 대한 재점검을 통하여 일부 본부 조직을 외교타운으로 이동하여 입주시키는 방안을 강구해 볼 수 있을 것임.

<외교부 본부청사 외 타 건물 입주사무실 현황>

구분	사무실 현황
대우빌딩 12층	본부대사실, 비상안전담당관실
서울청사 본관 11층	감사관, 감사담당관실, 감찰담당관실, 상설감사장, 공관회계팀(회계행정시스템T/F), 유엔플라스틱협약제5차정부간협상위원회준비기획단
서울청사 본관 14층	국유재산팀, 공관회계팀, 재외공관안전팀

(자료: 외교부)

이 밖에도 외교부가 임시조직으로 운영하는 기획단이나 TF의 임차료 지출액도 매년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 조직의 활동 공간으로 외교센터 유휴공간을 활용하는 등 외교센터의 공실을 줄이고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임.

<최근 3년간 외교부 주요 임시조직(기획단, TF) 사무실 임차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임차료 총액	임시조직 개수	기획단 명칭
2021	305	2	2021년 P4G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2021년 유엔평화유지장관회의 준비기획단
2022	37	1	2021년 유엔평화유지장관회의 준비기획단
2023	279	3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준비기획단

(자료: 외교부)

3. 정상외교

가. 개 요

“정상외교” 프로그램은 대통령 및 총리의 해외순방 행사·국제회의 참석 등을 통해 국가 위상 제고를 도모하고 외국 국가원수 및 총리급 외빈방한 영접을 통해 국가 간 우호 증진·협력 강화 및 다각적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으로 1개의 단위사업과 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 정상외교 프로그램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2 결산	2023			2024 예산
					본예산	추경	결산	
[1200] 정상외교				26,199	24,868	24,868	53,094	27,113
	[1231] 정상회의참가 및 국빈영접			26,199	24,868	24,868	53,094	27,113
		[11] 일반	[401] 정상 및 총리외교	26,199	24,868	24,868	53,094	27,113

2023년도 예산액은 248억 6,800만원이고, 530억 9,400만원을 집행하였음.

나. 정상 및 총리외교(1231-401)

「정상 및 총리외교」는 대통령의 APEC 정상회의, G20 정상회의 등 다자정상회의 및 국제회의 참가와 양자 방문, 총리의 다자회의 참가 및 양자 방문을 통한 국가 간 상호협력관계 심화, 우리 정부의 공식초청 및 상대국 정부의 공식 방한요청에 따른 외국 국가원수, 총리 등 외빈영접 관련 의전

행사를 수행하는 사업임.

<정상 및 총리외교 결산 내역>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대비 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전년 이월	이·전용 등	예비비					
24,868	24,868	71	-	32,859	57,798	53,094	1,071	3,633	213.5

2023년도 예산액 248억 6,8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7,100만원, 예비비 328억 5,900만원 등 총 329억 3,000만원이 증가한 예산현액 577억 9,800만원 중 10억 7,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6억 3,300만원이 불용되고 530억 9,4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213.5%임.

□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사업을 정상 및 총리외교(1231-401)에서 부적정 집행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주의 부흥을 목표로 2021년 12월 제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였음.

우리나라는 2023년 3월 미국 주도하에 개최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10] 공동주최국으로서, 화상 정상회의를 참석하여 첫 번째 세션(주제: 경제 성장과 함께하는 번영)을 주재하였고 장관급 인도·태평양 지역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였으며, 2024년 3월 '미래세대를 위한 민주주의'라는 주제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개최하였음.

10) 2023. 3. 29(수) ~ 3. 30(목)

<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현황 >

회의명	일시	구성	협력국
제1차 정상회의	2021.12.	미 정상 주재 화상회의	-
제2차 정상회의	2023. 3.	ㅇ공동주최국 주재 화상 정상회의(미국 개최) ㅇ장관급 지역회의 (공동주최국 개최)	(공동주최국) 미국, 한국, 네덜란드, 코스타리카, 잠비아
제3차 정상회의	2024. 3.	ㅇ화상 정상회의 ㅇ장관급 회의 ㅇ시민사회 주도 주제토론·워크숍 행사	ㅇ(화상 정상회의 - 공동주재국 (co-chair)) : 한국, 덴마크, 케냐 ㅇ(장관급 회의 - 공동주최국 (co-host)) : 한국, 미국, 영국, 에콰도르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는 110여개국 정상, 시민사회·국제기구·학계 인사 등이 참여하였고 우리 정상이 본회의 공동 주재 및 인태지역회의 환영사 등을 발표하였음.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2231-411)는 정상회의 본회의 공동주최 및 인도·태평양 지역 장관회의 개최를 위하여 2023년 신규사업으로 행사운영대행(PCO) 용역, 회의장 임차, 연구용역 등을 위하여 25억원을 편성하였고 동 예산으로 의제발굴, 행사 기획·준비, 미국 등 공동주최국과의 협의를 통한 회의 구성, 행사개최, 결과보고서 발표 등 관련 후속조치 등 일련의 사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었음.[11]

그러나 외교부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2231-411)를 위한 예산

11)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미국이 주최하고 우리나라는 공동주최국으로 참여한 회의로, 우리나라는 본회의 화상 참석(공동주최국으로서 본회의 개회사 및 1세션 주재), 인태지역 장관회의 대면 개최함. 우리 정부가 기획·주최한 행사는 인태지역 장관회의이고, 본회의는 미국 주최 하에 공동주최국으로 참여하였기 때문에 동 사업비는 인태지역 장관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목적으로 편성하였다고 외교부는 설명하고 있음.

이 별도로 편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상회의 본회의 행사장 조성을 위하여 정상 및 총리외교(1231-401) 일반용역비에서 2억 8,682만원을 집행하였음.

<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일반용역비 집행 내역 >

(단위: 천원)

자금이체일자	집행액	세부사업	세목	건명	수령인명
2023-02-15	1,181,880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일반용역비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지역회의	(주)이즈피엠피
2023-05-04	286,825	정상 및 총리외교	일반용역비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이즈피엠피
2023-05-30	506,520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일반용역비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지역회의	(주)이즈피엠피

외교부에 따르면, 정상급 행사는 의전장실에서 장관급 이하의 행사는 소관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중 우리 정상의 화상 정상회의 참석으로 인한 비용은 의전장실의 '정상 및 총리외교(1231-401)'에서, 인태지역 대면 장관회의 개최 비용은 국제기구국의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2231-411)'에서 집행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더불어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2231-411)'사업은 우리나라가 기획·주최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인태지역 장관회의 대면 개최에 중점을 두어 편성 및 집행하였으며, 화상 정상회의는 미국이 주최하고 우리는 공동주최국으로서 참여하는 회의인바, 우리 정상의 화상 정상회의 참석으로 인한 소요 비용은 소관 업무에 따라 '정상 및 총리외교(1231-401)'사업 예산에서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사업이 별도의 세사업으로 편성되었고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공동주최 및 인도·태평양 지역 장관회의 개최를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음.[12)]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유사한 성격의 2023년에 개최된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 및 2024년 개최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등은 개별사업에서 정상회의 관련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였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향후 외교부는 별도의 정상회의 세사업이 편성된 경우 개별 세사업에서 정상회의 예산을 편성·집행하여 예산 집행 및 업무 수행을 일원화하고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12)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는 2023년 정부안에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 심의단계에서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음.

4. 한반도 평화 조성

가. 개 요

「한반도 평화조성」 프로그램은 대북 및 통일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 및 공감대 확보, 한·미간 포괄적 전략동맹 심화·발전 지속 추진, 동북아지역국가 및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 유지의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5개의 단위사업과 1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2023년도 예산은 291억 2,600만원이고, 이 중 77.3%에 해당하는 225억 2,300만원이 집행됨.

< 한반도 평화 조성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2 결산	2023			2024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1100] 한반도평화조성				13,383	29,126	29,126	22,523	15,712
	[1131] 북핵문제 협의지원			865	906	906	798	1,069
		[11] 일반	[401] 북한 핵문제 대처	518	589	589	490	530
		[11] 일반	[402] 북한 비핵화 촉진 및 이행검증사업	346	317	317	308	539
	[1132] 평화체제구축지원			2,588	3,331	3,331	2,667	3,097
		[11] 일반	[401]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추진	485	582	582	513	647
		[11] 일반	[402]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	1,134	1,134	1,134	1,134	878
		[11] 일반	[403]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968	1,615	1,615	1,020	1,572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2 결산	2023			2024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1133]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4,916	5,580	5,580	5,175	5,298
		[11] 일반	[401]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 협력관계 강화	4,916	5,580	5,580	5,175	5,298
	[1134] 동북아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2,418	3,075	3,075	1,900	3,560
		[11] 일반	[401]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2,418	3,075	3,075	1,900	3,560
	[1135] 아시아 · 태평양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협력관계 강화			2,597	16,234	16,234	11,983	2,688
		[11] 일반	[401] 아시아 · 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2,272	3,620	3,620	2,636	2,688
		[11] 일반	[402]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	325	614	614	581	-
		[11] 일반	[404]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	12,000	12,000	8,767	-

나.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은 해외 체류 북한이탈주민의 신변 보호 및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이송을 추진하고, 임시보호 기간 중 적절한 체류 여건을 제공하는 한편, 해외 체류 북한이탈주민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액은 16억 1,500만원이고, 이 중 10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5억 9,500만원을 불용하였음.

<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3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A)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1,615	1,615	-	-	-	1,615	1,020	-	595	63.2
- 북한이탈주민 보호, 국내이송 및 해외 협력 사업	1,615	1,615	-	-	-	1,615	1,020	-	595	63.2

□ 북한이탈주민 대상 의료지원, 심리상담프로그램 집행률 제고 필요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은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13]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13)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기본원칙) ② 대한민국은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외교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어 관련국 국경 통제가 완화됨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수가 증가 추세에 있음에도, 동 사업은 63.2%의 저조한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내역사업인 '북한이탈주민 보호, 국내이송 및 해외 협력 사업'의 세부집행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음.

<북한이탈주민 연도별 입국자 수>

(단위 : 명)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1분기	229	135	31	11	34
2분기	320	12	5	8	65
3분기	226	48	12	23	40
4분기	272	34	15	25	57
계	**1,047**	**229**	**63**	**67**	**196***

* '23년 탈북민(196명), 전년(67명) 대비 약 193%(129명) 증가
(자료: 외교부)

<북한이탈주민 보호, 국내이송 및 해외 협력 사업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액(A)	집행액(B)	집행률(B/A)
탈북민 보호시설 운영	329	266	80.9
탈북민 구료비	121	83	68.6
탈북민 국내이송	505	346	68.5
탈북민 담당관 회의 및 전문가 간담회	31	24	77.4
탈북민 의료지원	64	21	32.8
해외긴급지원보호비	164	32	19.5
공관보호 탈북민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	65	23	35.4
주재국 유관기관과 정기협의체 운영	80	35	43.8
주재국 유관기관과 국내이송 협력	20	20	100.0
주재국과 협력관계 구축	63	47	74.6
민족공동체해외협력 강화사업	173	123	71.1
합 계	**1,615**	**1,020**	**63.2**

(자료: 외교부)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 중 ‘탈북민 의료지원’, ‘공관보호 탈북민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① 수용 탈북민의 건강 관리를 위한 의약품 송부, ② 응급환자 발생 시 현지 의료체계를 활용한 치료 실시, ③ 심리·진로상담을 위한 물품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임.

또한, 공관보호 탈북민에 대한 의료지원 및 심리·진로상담 출장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소속 의사 및 심리상담사, 진로상담사를 인솔하여 해당 공관을 방문하여 진료 및 상담을 진행하고 있음.

<최근 5년간 의료지원/심리상담 현황>

구 분	의료지원 출장(건)	심리상담 출장(건)	대상공관 (개수)	대상인원 (명)	집행액 (백만원)
2019	3	11	4	159	111
2020	-	2*	2	2	105
2021	-	2*	2	2	13
2022	-	2*	2	2	23
2023	1	2(1*)	2	2	44

*‘20~22년 심리・진료상담과 ‘23년 상반기 1건은 비대면으로 실시
(자료: 외교부)

외교부는 동 세부사업의 집행률 부진에 대하여 최근 업무 환경 변화로 인하여 북한이탈주민 발생 예측이 어려워, 상반기 예산 집행에 신중을 기하다 보니 불용이 발생하였으며,

‘탈북민 의료지원’, ‘공관보호 탈북민 대상 심리상담 프로그램’의 집행률 부진에 대하여는 외교부내 의사 및 심리상담사 인력이 부재하여, 인력 협

조상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탈북과정에서의 건강악화 및 트라우마, 장기간 수용에 따른 스트레스 등에 따른 의료 및 심리 지원이 절실하고, 의료 및 심리상담 지원은 의약품 지원, 현지 의료체계 활용, 비대면 심리·진료 상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는바, 외교부의 보다 적극적인 지원 노력이 필요했던 것으로 판단됨.

특히 2024년도 예산안 심의 당시 외교부가 코로나19 상황 안정화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수의 증가, 탈북루트· 탈북방법·탈북유형 등이 다양해짐에 따른 주재국과의 협상 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관련 예산의 증액을 요청한 바,

향후 동 사업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외교부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면밀한 집행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어 보임.

다.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사업은 한·미간 정치·안보·경제·사회 등 다양한 영역의 교류·협의를 통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미동맹 기반 및 한·미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주한미군지위협정 운영·개선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포괄적인 한·미 관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액은 53억 7,900만원이고, 이 중 51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억 500만원을 불용하였음.

<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3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A)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	5,580	5,580	9	△210	-	5,379	5,175	-	205	92.7
- 21세기 포괄적 전략동맹의 심화발전	602	602	-	4	-	629	617	-	12	102.5
- 동맹기반 강화	2,681	2,681	-	△84	-	2,576	2,501	-	75	93.3
- 한미안보협력 강화	449	449	-	1	-	447	439	-	8	97.8
- SOFA 운영·개선 및 민군관계 강화	1,451	1,451	9	△56	-	1,404	1,351	-	53	93.1
- 미 신정부 출범 및 포스트 코로나시대 대비 새로운 대미 외교지평 확대	397	397	-	△77	-	323	267	-	56	67.3

□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 여러 세부사업에서 집행 부적절

외교부는 동 세부사업에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를 집행하였으며, 동 세부사업 외 타 프로그램의 세부사업에서도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사업을 집행하였음.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세부사업	건 명	지출액	세 목
한반도 평화조성(1100) -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1133-401)	2023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포럼 용역 지급 의뢰	150	일반용역비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리셉션 행사장 조성	45	일반용역비
	공관 송금(주미대사관 한미동맹 70주년 기념사업 지원)	21	임차료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품 구매 계약	20	일반수용비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리셉션 개최 경비	19	사업추진비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주요문서집 제작	12	일반수용비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리셉션 개최 경비	9	일반수용비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뱃지 등 제작	5	일반수용비
	합 계	281	

(자료: 외교부)

<타 세부사업 내 한미동맹 70주년 기념행사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세부사업	건 명	지출액	세 목
정상외교(1200) - 정상 및 총리외교(1231-401)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 사진집 제작 계약 대금	52	일반용역비
국제개발협력(2400) - ODA선진화(ODA)(2438-401)	2023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개발협력 심포지움	147	일반용역비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2600) - 공공외교 역량강화(2631-403)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미국내 한국인식조사	38	일반연구비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2600) - 국민외교추진기반구축(2631-404)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관계 발전 방향 모색에 대한 국민참여사업	311	일반용역비
외교행정지원(7000) - 외교홍보 역량강화(7034-401)	한미동맹 70주년 광고 영상제작	60	일반용역비
	합 계	608	

(자료: 외교부)

이 중 세부사업 ‘정상 및 총리외교’에서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특별 사진집 제작 대금’으로 5,200만원을 집행한 것은 동 세부사업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사업을 외교부가 임의로 집행한 것으로 보이며, 그밖의 사업도 예산에 명시적으로 편성하지 않은 상태로 여러 세부사업에서 분산하여 집행한 경향이 있음.

이에 대해 외교부는 2023년도 예산 편성 시 동 세부사업의 예산으로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재정당국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부득이 여러 세부사업에서 나누어 집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신규사업을 여러 세부사업에서 임의로 추진한 것은 부적절한 집행으로 볼 수 있는바,

향후 외교부는 국회의 예산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사업의 추진은 지양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 편성 시 유사한 성격의 사업은 예산 집행과 관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동일한 세부사업으로 편성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임.

라.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사업은 양국 정상 및 고위급 교류 등을 통해 중국정부 지도부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한중간 우호정서 강화를 위해 한·중 간 학술·인문, 언론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사업을 추진 및 지원하며,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중국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확대 등 대중국 외교기반 강화, 대몽골 외교역량 강화 등을 수행하려는 것임.

<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3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A)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 협력 강화	3,075	3,075	-	△120	-	2,955	1,900	9	1,046	61.8
- 중국정부 지도부와의 협력관계 구축	880	880	-	△82	-	798	526	-	272	59.8
- 한중간 우호정서 강화	622	622	-	13	-	635	414	-	221	66.6
-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434	434	-	△57	-	377	96	-	281	22.1
- 대중국 외교기반 강화	1,005	1,005	-	9	-	1,014	809	9	196	80.5
- 대몽골 외교역량 강화	134	134	-	△3	-	131	55	-	76	41.0

동 사업의 이·전용을 포함한 2023년도 예산현액은 29억 5,500만원인데, 이 중 19억원이 집행되었고, 중국 내 사업 추진 환경이 악화되면서 대다수 사업이 순연되거나 규모가 조정됨에 따라 10억 4,6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정책연구용역 잔금 900만원이 이월되었음.

□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사업 집행실적의 연례적 부진

동 사업의 최근 4년간 결산 내역을 살펴 보면, 40~70%대에 머무르고 있어 전반적으로 집행부진이 반복되고 있으며, 2023년도의 경우 집행률은 61.8%임.

< 최근 4년간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사업 집행률 >

(단위: 백만원, %)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 중국정부 지도부와의 협력관계 구축	748	281	37.6	1,313	709	54.0	1,213	863	71.1	880	526	59.8
· 한중간 우호정서 강화	430	224	52.1	441	365	82.8	511	550	107.6	622	414	66.6
·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276	84	30.4	394	170	43.1	304	123	40.5	434	96	22.1
· 대중국 외교기반 강화	995	628	63.1	875	570	65.1	1,042	752	72.2	1,005	809	80.5
· 대몽골 외교기반 강화	104	25	24.0	94	29	30.9	134	130	97.0	134	55	41.0
합 계	2,553	1,242	48.6	3,117	1,843	59.1	3,204	2,418	75.5	3,075	1,900	61.8

먼저 '중국 지방정부와의 협력 강화' 사업의 집행률은 22.1%에 불과하고, '한중간 우호정서 강화' 사업의 일반연구비는 예산 2억 2,100만원 중 50%만 집행하고 1억 1,000만원을 불용하였음.

외교부는 중국측의 코로나 방역조치 완화('23.1월)와 한국인 대상 단기비자의 발급 재개('23.2월) 등의 조치로 중국과의 대면 교류사업이 상반기 중에 일부 재개되기는 하였으나,

'중국 지방정부 인사 방한 초청' 등의 사업은 중국측과의 협의 및 준비과

정이 필요하여 다음연도로 순연되거나 규모가 조정되면서 예산 불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하고 있음.

한편, ‘대몽골 외교기반 강화’ 사업의 집행률 역시 41%로 부진한데, 그 중 2022년 신규사업인 ‘한몽 차세대 리더 네트워크 구축 사업’의 경우 2023년도 집행률은 25%로 특히 저조함.

동 사업은 몽골 내 지도자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인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친한화(親韓化)하여 장기적인 외교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외교부는 ‘한몽 차세대 리더 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당초 우리측 예산으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몽골 측이 자국 예산으로 집행하면서 예산 불용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대몽골 외교기반 강화>

(단위: 백만원, %)

내내역 사업	2022년(신규사업)			2023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 몽골 차세대리더 네트워크 구축	40	31	77.5	40	10	25.0

동 세부사업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최근 몇 년간 집행이 부진하였으며, 코로나 이후에도 미·중 경쟁 심화에 따른 중국의 안보인식 확대, 2023년 7월 중 반간첩법 개정안[14] 시행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규제 강화 등으로 인한 사업추진 여건 악화로 사업 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14) 개정 반간첩법 주요내용: ▲간첩행위의 정의 확대, ▲법 적용 범위 확대, ▲국가안보기관의 권한 확대, ▲간첩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 기존 5개 章 40개 조항에서 6개 章 71개 조항으로 개정

향후 외교부는 중국측 국내정세 변화 등 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여건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연구용역비 연말 집행 지양 노력 필요

외교부는 동 세부사업에서 총 7건의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5건이 모두 12월에 완료되었고, 2건은 차년도 1월에 완료되었음.

<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사업 연구용역비 집행 내역 >

(단위 : 백만원)

과제명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계약기간	제출일	수행기관	계약방법
최근 중국 경제와 대내외정책 상호 영향관계 구조에 대한 교차 비교 분석과 한국외교에 주는 시사점 연구	20	20	-	23.10~23.12	23.12.8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수의
한중관계 관련 일반인·전문가 인식조사(2023)	30	30	-	23.10~23.11	23.11.30	㈜글로벌리서치	수의
지정학적 갈등 심화 상황에서 대만의 대응 전략 및 우리에의 함의	21	21	-	23.11~23.12	23.12.12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조교수	수의
홍콩의 중국화 관련 동향 분석: 홍콩 국가안전법 확대 강화 전망	20	20	-	23.11~23.12	23.12.15	호서대학교 혁신융합학부 교수	수의
한중 우호정서 관련 중국 주요포털 및 SNS 모니터링	40	40	-	23.11~23.12	24.1.31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교수	수의
2023 한중 교류데이터 분석	70	70	-	23.2~23.12	23.12.15	성균중국연구소	수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동북아 국가들의 예방접종 정책 연구	30	21	9	23.10~24.2	24.2.29	대한민국 의학한림원	경쟁→수의

(자료: 외교부)

이 중 '한중 우호정서 관련 중국 주요포털 및 SNS 모니터링' 용역은 2024년 1월 말에 제출되었음에도 전년도 말에 대금이 지급되었으며, '포스트 코

로나 시대 동북아 국가들의 예방접종 정책 연구' 용역은 2024년 2월 말 완료됨에 따라 900만원을 이월하여 집행하였음.

외교부는 연구용역이 연말에 집중된 이유로 한중 고위급 교류 소통이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연구용역 작업을 하반기에 시행하였고, '한중관계 관련 일반인·전문가 인식조사'의 경우 매년 하반기(10월 발주하여 11월말 완성)에 집행해 왔으며, 중국 관련 대내외 주요정세 변화 시기가 하반기에 집중되면서 관련 용역 발주시기가 조정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그러나 동 사업의 연구용역비 전체가 연말에 집중되거나 다음연도로 이월된 상황은 예산집행에 있어 부적절한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외교부는 연말 연구용역 계약을 지양하고 연구용역비가 이월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등 철저한 집행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마.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사업은 태평양지역의 전략적 중요성 증대에 따른 관계 발전 및 협력 강화, 정상급 교류를 통한 태평양도서국과의 소통 활성화 및 다층적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외교 지평을 확대하기 위한 것임.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액은 120억원이고, 이 중 87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3,000만원을 이월하고, 32억 300만원을 불용하였음.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3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A)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제1차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12,000	12,000	-	-	-	12,000	8,767	30	3,203	73.1
- 준비기획단 운영	1,274	1,274	-	330	-	1,604	1,016	-	588	79.7
- 의제발굴 및 업무협의	350	350	-	-	-	350	221	-	129	63.1
- 정상회의 개최	10,376	10,376	-	△330	-	10,046	7,530	30	2,486	72.6

□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행사대행용역 조달수수료 이월 부적절

외교부는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두 건의 일반용역계약을 진행하였으며, 일반용역비 예산액 71억 1,700만원 중 일반용역 대금으로 총 58억 7,100

만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을 이월하였음.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일반용역비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비목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 일반용역비(210-14)	7,117	-	△70	-	7,047	5,871	30	1,146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일반용역계약 내역>

(단위 : 백만원)

계약명	계약금액	수탁기관	계약기간	계약유형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행사 대행용역	5,550	㈜인터컴	23.3-23.12	일반경쟁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종합 홍보	321	한국언론재단	23.3-23.11	수의계약

(자료: 외교부)

이월액 3,000만원은 일반경쟁을 통해 체결한 '2023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 행사 대행용역' 계약에 대한 조달수수료로서, 외교부는 동 용역계약 대금으로 2023년 4월과 8월에 각각 선금과 잔금을 수탁기관에 지급하였으며, 조달수수료는 이월하여 2024년 1월 집행하였음.

이에 대해 외교부는 2023년 8월 정상회의 준비기획단이 조기 종료됨에 따라 용역수행기간이 단축되었으나 3월 당초 계약 당시 설정된 체결기간(2023.3.28.~11.30)을 변경하지 않아 조달수수료 고지서가 2024년 초에 발급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함.

「국가재정법」 제48조[15]에 따르면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에 한하여 이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또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5조[16]에 따르면 수요기관의 장은 계약상대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후 즉시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알려야 함.

동 정상회의는 5월 29일과 30일 양일간 개최되었고 잔금 납부가 8월에 완료되었으므로, 조달수수료가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라고 할 수 없으며, 외교부는 즉시 조달청장에 통보하고 조달수수료를 연내 납부했어야 함.

외교부는 향후 이와 같이 부적절한 이월 집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15)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1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5조(대금 지급)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조달청장이 대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대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하며 대금을 지급한 후 즉시 그 내용을 조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5. 국제기구분담금

가. 개 요

「국제기구분담금」 프로그램은 유엔 등 각종 국제기구에 대한 의무분담금 및 국제기구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한 사업분담금을 납부하여 국제기구 회원국으로서 재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국격에 걸맞은 사업분담금 지원을 통해 국가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1개의 단위사업과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3년 예산은 6,618억원 2,700만원이고, 6,603억 6,600만원이 집행됨.

< 국제기구분담금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2022 결산	2023			2024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2100] 국제기구분담금				509,972	661,827	661,827	660,366	718,311
	[2131] 국제기구분담금			509,972	661,827	661,827	660,366	718,311
		[11] 일반	[401] 유엔 정규예산분담금 납부	84,075	98,579	98,579	97,134	107,284
		[11] 일반	[402] 유엔 PKO 예산분담금 납부	185,671	203,096	203,096	203,096	212,377
		[11] 일반	[403] 기타 의무분담금 납부	71,742	83,435	83,435	84,876	97,036
		[11] 일반	[404]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168,484	276,717	276,717	275,259	301,614

나. 기타 의무분담금

「기타 의무분담금 납부」사업은 IAEA 헌장, UNESCO 헌장, 대한민국에 대한 OECD에 관한 가입 초청 협정 등 우리나라가 가입한 유엔 전문기구 및 정부간 기구 가입 협정 또는 국제협약에 따라 회원국으로써 의무이행 차원에서 당연히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서, 의무분담금의 적기 납부를 통하여 국제기구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임

< 기타 의무분담금 납부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현액(B)	집행액(C)	차년도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A)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액대비(C/A)	현액대비(C/B)
83,435	83,435	-	1,444	-	84,879	84,876	-	3	101.7	100.0

2023년에 납부한 의무분담금 납부 내역은 아래와 같음.

< 기타 의무분담금 내역사업별 납부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번	분담금 명	22 결산	집행률	23 예산	23 결산	집행률	24년 예산
1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3,333	81	3,575	3,573	100	4,894
2	콜롬보플랜	18	100	20	21	105	21
3	다자기구성과평가네트워크(MOPAN)	236	87	268	270	101	281
4	OECD Part I	11,861	86	14,035	13,865	99	15,504
5	OECD 개발센터	548	82	638	633	99	739
6	OECD 철강위원회	34	85	39	39	100	46
7	OECD 교육연구혁신센터(CERI)	166	84	191	186	97	211
8	비엔나협약 신탁기금	20	77	26	22	85	30

연번	분담금 명	22 결산	집행률	23 예산	23 결산	집행률	24년 예산
9	몬트리올의정서 신탁기금	66	47	154	105	68	178
10	유엔 사막화방지협약(UNCCD)	211	81	262	266	102	274
11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462	92	509	536	105	566
12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기구(AALCO)	21	95	24	25.9	108	27
13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127	97	147	142.9	97	156
14	국제해저기구(ISA)	577	109	342	342	100	410
15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2,192	96	3,595	3,590	100	3,642
16	남극조약사무국(ATS)	45	98	49	51	10	52
17	재한유엔기념공원(UNMCK)	1,743	100	1,743	1,743	100	1,861
18	국제해사기구(IMO)	579	103	632	648	103	683
19	국제이주기구(IOM)	1,534	96	2,295	2,540	111	2,904
20	국제원자력기구(IAEA)	10,769	94	13,809	14,415	104	15,246
21	화학무기금지기구 (OPCW)	2,201	93	2,401	2,401	100	2,719
22	포괄적핵실험금지기구(CTBTO)	3,296	79	3,865	3,865	100	5,488
23	바세나르체제(WA)	67	75	87	88	101	107
24	생물무기금지협약(BWC)	35	71	58	71	122	72
25	특정재래식무기금지협약(CCW)	42	95	45	0	0	48
26	국제형사재판소(ICC)	9,424	102	10,077	11,242	111	13,442
27	사법통일국제연구소 (UNIDROIT)	70	92	76	77	101	79
28	헤이그국제사법회의	124	86	142	125	81	182
29	상설중재재판소(PCA)	25	89	29	29	100	39
30	베니스위원회	67	92	68	81	119	87
31	국제형사재판소(ICC) 신청사 건축	290	92	312	323	104	337
32	국제사실조사위원회	2	20	10	6	60	10
33	세계박람회기구(BIE)	43	74	46	47.2	103	48
34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371	96	385	426	111	437
35	세계무역기구(WTO) 의무분담금	6,302	92	7,194	7,185	100	8,148
36	중앙아시아학술연구소(IICAS)	100	101	108	108	100	116
37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9,979	101	10,773	10,942	102	11,759
38	한·일·중 3국 협력 사무국	2,079	105	2,072	2,072	100	2,553
39	불어권국제기구(OIF)	13	87	31	32	103	17
40	무기거래조약(ATT)	28	88	35	22	63	43
41	핵비확산조약(NPT)	0	0	30	53	177	60
42	대인지뢰금지협약(APLC)	14	78	18	14.8	82	19
43	국제원자력기구 기술협력기금(TCF)	2,514	93	3,220	2,629	82	3,501

다.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사업은 유엔 산하기구 및 회의체(UNICEF, UNDP, UNHCR 등)[17]의 사업운영 및 지역 국제기구(ASEAN, AU, OAS 등)[18]와의 교류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분담금을 자발적으로 납부하기 위한 것으로, 각종 국제기구에 대한 재정적 기여 확대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위상을 제고하고 영향력 증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A)	전년 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액 대비(C/A)	현액 대비(C/B)
276,717	276,717	-	-	-	276,717	275,259	-	1,458	99.5	99.5

2023년에 납부한 사업분담금 납부 내역은 아래와 같음.

<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내역사업별 납부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번	분담금 명	22 결산	집행률	23 예산	23 결산	집행률	24년 예산
1	UNIDO 서울투자기술진흥사무소(ITPO)	318	100	386	386	100	468
2	유엔개발계획(UNDP) 정규재원기여금	9,614	100	13,820	13,820	100	23,400
3	유엔아동기금(UNICEF)	3,959	100	5,157	5,157	100	19,500

17) UNICEF: UN Children's Fund, 유엔 아동기금
UNDP: UN Development Programme, 유엔 개발계획
UNHCR: UN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유엔 난민 기구

18) ASEAN: Association of South East Asian Nations, 동남아시아국가연합
AU: African Union, 아프리카연합
OAS: 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미주기구

4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200	100	2,265	2,265	100	10,408
5	유엔평화구축기금(PBF)	2,828	100	5,598	5,598	100	10,408
6	유엔자원봉사단(UNV)	4,407	100	4,860	4,717	97	5,832
7	동북아환경협력계획(NEASPEC)	170	100	154	154	100	146
8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지원	11,300	100	15,583	15,583	100	17,550
9	군축분야 인도적 지원 신탁기금	905	100	929	929	100	883
10	유엔 군축 사업분담금	1,404	99	1,548	1,548	100	1,601
11	화학무기금지기구(OPCW)	114	100	90	90	100	142
12	글로벌파트너십	878	100	747	747	100	911
13	IAEA 비확산 핵안보기금	1,697	100	1,806	1,806	100	3,612
14	유엔난민기구(UNHCR)	3,468	100	4,906	4,906	100	23,266
15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지원	158	100	134	134	100	260
16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2,262	100	2,580	2,580	100	6,500
17	민주주의 증진 협력 기여금	340	100	387	387	100	397
18	한-유엔 중남미카리브 경제위원(ECLAC) 협력기금	420	100	358	358	100	663
19	한-미주기구(OAS) 협력기금	227	100	244	244	100	232
20	한-태평양도서국포럼(PIF) 협력기금	1,695	100	1,806	1,548	96	3,900
21	대아프간 지원 강화	39,583	100	16,355	16,178	99	0
22	한-아프리카연합(AU) 협력기금	1,697	100	1,832	1,697	93	9,758
23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파트너십 기금	113	100	96	96	100	91
24	한-ESCAP 협력기금(KECF)	283	100	191	191	100	390
25	한-아세안 FTA 경제협력	566	100	382	382	100	651
26	국제형사재판소(ICC) 피해자 신탁기금	57	100	61	61	100	65
27	한-아세안센터	7,600	100	7,600	7,600	100	7,600
28	한-아세안협력기금	18,080	100	26,169	25,800	99	36,400
29	한-메콩 협력기금	5,683	100	8,178	8,178	100	10,400
30	아시아 교류 및 신뢰구축 회의(CICA)	57	100	65	65	100	65
31	아시아·유럽재단(ASEF)	226	100	259	258	100	261
32	중동담수화연구소 협력기금	114	100	61	61	100	58
33	시나이정전감시단(MFO) 기여금	339	100	310	310	100	325
34	국제민간항공기구 공개키 디렉토리(ICAO PKD)	28	88	42	30	71	42
35	크메르루즈 전범재판소(ECCC)	565	100	516	516	100	390
36	테러리즘 대응 및 폭력적 극단주의 방지 사업 지원	283	100	258	258	100	781
37	해적 퇴치 관련 IMO 사업분담금	226	100	206	206	100	260
38	유엔 정무평화구축국(DPPA) 분쟁 예방기금	2,825	100	4,907	4,902	100	4,544

39	아프리카연합(AU) 평화안보활동 사업분담금	1,130	100	1,290	1,290	100	6,500
40	OECD 자발적 기여금	1,661	98	1,674	1,244	74	2,576
41	OECD DAC 자발적 기여금	339	100	387	387	100	368
42	한-UNDP 지속가능개발(SDG) 신탁기금	8,483	100	10,303	10,303	100	10,400
43	여성과 함께하는 평화기금	939	100	1,015	1,015	100	2,600
44	유엔개발시스템 선진화기금	1,878	100	2,028	2,028	100	1,927
45	세계식량계획(WFP) 정규재원기여금	4,524	100	5,888	5,888	100	26,000
46	UNIDO 공업개발기금(IDF)	396	100	457	457	100	434
47	APEC 지원 기금 (ASF)	791	100	903	903	100	911
48	APEC 정책지원부서(PSU) 분담금	283	100	241	241	100	229
49	WTO 대개도국 협력사업기여금(GTF)	339	100	390	390	100	650
50	대륙붕한계위원회(CLCS) 자발적 신탁기금	23	100	13	13	100	26
51	국제해양법재판소 자발적 기여금	226	100	240	239	100	426
52	분쟁하 성폭력 생존자기금	2,720	100	2,698	2,698	100	2,838
53	평화유지신탁기금	3,390	100	3,870	3,870	100	3,900
54	한-카리콤(CARICOM) 협력기금	566	100	818	818	100	3,900
55	교육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GPE) 신탁기금	4,238	100	4,838	4,838	100	4,879
56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여금	1,131	100	1,032	1,032	100	980
57	한-해양동남아 협력기금	3,394	100	3,870	3,803	98	5,200
58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자발적 기여금	4,520	100	1,636	1,638	100	1,554
59	한-중미통합체제(SICA) 협력기금	1,695	100	1,226	1,226	100	1,165
60	엘시(Elsie) 기금	565	100	645	645	100	650
61	국제사법재판소(ICJ) 사법 펠로우십 신탁기금	-	-	40	40	100	40
62	태평양 산호초국가 지원 이니셔티브	-	-	259	259	100	390
63	국제원조투명성기구(IATI)	96	100	110	109	100	111
64	글로벌 보건 기여	-	-	100,000	100,000	100	0

□ 개별 부처의 분담금 자체평가에 대한 외교부의 관리·보완 필요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은 분담금의 관리를 통해 전략적인 외교정책 수행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납부한 분담금에 대한 자체평가를 매년 실시하여야 함.

각 부처에서 작성 및 제출된 자체평가 결과는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19]에서 관련 내용을 심의·조정하는 과정을 거쳐 기획재정부로 송부되며 기획재정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함[20]. 분담금에 대한 자체평가는 계획의 적절성(외교정책목표와의 부합 여부 등), 과정의 신뢰성(예산집행률, 납부 목적과 실제 내용 부합 여부 등), 결과의 유용성(납부를 통한 국익 제고 결과 등)을 그 내용으로 함.

다만 현재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 체계가 자체평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피평가자인 개별 부처가 제공하는 내용에 의존하고 있는바, 평가의 객관성 확보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임. 외교부는 개별 부처의 자체평가 수행 과정에서 부처의 참여를 독려하는 등의 역할을 하고 있으나, 개별 부처의 자발성에 따라 정보의 정확성이 상이할 수 있고 외교정책 목표, 국익제고 효과 등 지표에 대한 개별 부처마다의 관점 차이로 인해 일관성 있는 평가가 어려워질 수 있는 등 그 한계가 분명하다고 보임. 제출된 자체평가 내용이 부족한 경우 외교부는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통해 보완을 도모하여야 할 것임.

---

19) 위원장(외교부 제2차관) 포함 20명 이내 위원(관계기관 고위공무원 및 국제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음.

20)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의 전년도 납부실적 및 납부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3월 31일까지 소관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 및 다음 연도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납부실적 등에 대한 심의·조정 결과를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송부받은 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존중하여 다음 연도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④ 외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별 전년도 납부실적, 자체평가 결과, 다음 연도 납부계획 등이 포함된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교부는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주관기관으로 자체평가의 객관성·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지속 보완해 나가는 동시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정책 목표 달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분담금 납부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국제기구분담금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 등 일관성 제고 필요

외교부는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통해 CEPI(감염병예방백신연합), GPEI(글로벌 소아마비 퇴치를 위한 이니셔티브), 글로벌펀드에 대한 기여를 수행하고 있으나, 2023년도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악화된 국제질병퇴치기금 재원 상황을 감안해 국제기구분담금 예산으로 동 기구에 기여하였음. 2023년도 CEPI, GPEI, 글로벌펀드에 기여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은 총 1,103억 2000만원으로, 본예산인 국제기구분담금 사업에서 약 1,000억원, 국제질병퇴치기금에서 약 103억 2,000만원으로 구성되었음.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제금융기구 및 녹색기후기금에 대한 출연·출자금 및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1]를 제외하고는 분담금 예산 편성·집행 시에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조

21)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제기구 분담금"이란 정부가 국제기구에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비 또는 국제기구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량적으로 납부하는 경비를 말한다. 다만,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및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기후기금에 납입하는 출자금 또는 출연금은 제외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제기구 분담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을 거쳐야 할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이 완료되면 그 집행 내용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해야 함[22].

그런데 2023년도에 작성된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를 확인해보면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통해 납부한 글로벌펀드 분담금은 심의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방송발전기금으로 편성된 ITU(International Telecommuncation Union) 협력사업 부담금, APT(Asia Pacific Telecommunity) 특별기여금은 포함되었음.

다른 법률에 근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제기구 분담금은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 심의·조정 대상으로 상정되었는바, 외교부는 향후 국제기구분담금법의 적용 대상과 범위 등에 있어 일관성을 제고해 나갈 필요가 있음.

22)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실적에 대한 자체평가 등) ④ 외교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별 전년도 납부실적, 자체평가 결과, 다음 연도 납부계획 등이 포함된 국제기구 분담금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6. 다자관계 협력

가. 개 요

「다자관계 협력」 프로그램은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 확대를 지원하고, 비전통적 안보 위협에 국제사회와 공동 대처함으로써 국제협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1개의 단위사업과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다자관계 협력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2 결산	2023			2024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2200] 다자관계협력				14,621	18,064	18,064	17,378	25,013
	[2231] 국제기구 협력강화			14,621	18,064	18,064	17,378	25,013
		[11] 일반	[401] 국제기구초급 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ODA)	7,436	9,528	9,528	9,284	14,115
		[11] 일반	[402] 테러 대응체제 강화 및 국제 안보 협력	1,078	2,089	2,089	1,823	1,880
		[11] 일반	[403] 글로벌 다자외교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2,651	3,253	3,253	3,148	3,943
		[11] 일반	[404] 유엔 평화유지 장관회의	2,213	-	-	-	-
		[11] 일반	[405] MIKTA 중견국 외교	172	178	178	147	160
		[11] 일반	[406] 분쟁하 성폭력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 증진	456	450	450	409	475
		[11] 일반	[408] 유엔 행정예산 분야 제도 구축 및 운영 강화(정보화)	616	66	66	64	63
		[11] 일반	[411]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	2,500	2,500	2,180	-
		[11] 일반	[421]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	-	-	322	4,377

2023년도 예산은 180억 6,400만원이고, 예산액 대비 96.2%에 해당하는 173억 7,800만원이 집행되었음.

나.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 사업은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Junior Professional Officer) 파견,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개최 등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인적 기여 제고 및 우리나라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것임.

<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3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A)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	9,528	9,528	-	-	-	9,528	9,284	-	244	97.4
- 국제기구 초급 전문가 파견	9,410	9,410	-	-	-	9,410	9,170	-	240	97.4
- 국제기구 진출 설명회 개최	63	63	-	-	-	63	60	-	3	95.2
- 국제기구 인사센터	55	55	-	-	-	55	54	-	1	98.2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은 95억 2,800만원인데, 이 중 92억 8,4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4,400만원이 불용되었음.

□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파견경비 집행 및 관리 강화 필요

JPO 파견 사업은 우리나라 청년을 국제기구에 2년간 수습직원으로 파견하고 국제기구에 관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매년 25명을 선발하여 파견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는 30명으로 선발인원을 확대하고, 계약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에 따라 예산을 증액하는 등 그 규모를 확대해 나가고 있음.

<최근 4년간 결산 내역 및 2024년도 예산>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0	6,024	6,024	-	-	6,024	5,717	94.9	94.9	-	307
2021	7,002	7,002	-	-	7,002	6,650	95.0	95.0	-	352
2022	7,708	7,708	-	-	7,708	7,436	96.4	96.4	-	272
2023	9,528	9,528	-	-	9,528	9,284	97.4	97.4	-	244
2024	14,114	14,114	-	-	-	-	-	-	-	

JPO에게 지원되는 경비는 기본급여, 지역조정급[23], 왕복 항공임, 체재비, 건강보험비, 훈련비이며, 외교부가 JPO 파견 대상 국제기구에 JPO 파견비용을 송금하면 각 국제기구가 JPO에게 보수 및 정착비 등을 지급하는 형태로 운용하고 있음.

23) 국제기구 내 동일 직급의 직원이 근무지와 관계없이 동일한 생활 수준을 영위할 수 있도록 현지 물가·환율 등을 반영하여 추가로 지급되는 금액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8조[24]에 따르면 파견기간 내에 JPO 자격을 포기하거나, 동 예규 제15조[25]에 따라 JPO 파견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당해 JPO 파견자에게 지급된 경비를 반납받도록 하고 있음.

외교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JPO 개인사유로 인한 중도포기 또는 국제기구 채용으로 인한 조기 종료 등 중도에 사임한 사례는 15건이고, 예규 제15조에 따라 JPO 파견이 취소된 사례는 없었음.

이렇게 JPO가 중도에 사임을 하여 반납액이 발생하는 경우 외교부는 다음연도 세입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데, 외교부는 2021년과 2023년 JPO 조기사임에 따라 국제기구측이 해당 금액을 반납한 두 건에 대해서만 세입처리[26]

---

24)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8조(파견기간 및 파견경비) ① JPO의 파견기간은 1년으로 하되,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② JPO 파견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고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파견 국제기구와의 협정에 의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3년차 근무의 경우, 외교부와 파견 기구가 파견경비를 반액씩 담하는 것을 전제로 연장을 결정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JPO 파견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JPO 파견자의 파견에 소요된 경비를 본인 또는 그의 연대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 파견기간내에 JPO 자격을 포기한 때
2. 제15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 때

25)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및 관리에 관한 예규」**
제15조(JPO 파견의 취소) ① 외교부장관은 JPO로 파견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JPO 파견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허위증명을 사용하여 파견 인정을 받은 사실이 판명된 경우
2. 파견된 국제기구로부터 해직 당한 경우
3. 관할 재외공관장으로부터 외교부장관에게 파견기간 중 국위를 손상한 사실이 있었다는 통보가 있고 파견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4. 외교부장관의 승인 없이 파견기관을 변경한 경우
5. 파견된 국제기구에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외교부장관에게 통보된 경우
6. 제9조제3항의 규정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될 경우
7.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26) ○ 2021년 선발 UNESCO 파견된 JPO의 조기사임으로 인한 파견비용 잔액 세입 처리 (55,471.96미불, 2024.4월)
○ 2020년 선발 OPCW 파견 JPO 조기사임으로 인한 파견비용 잔액 세입 처리 (101,641유로, 2022.12월)

를 하였으며, 각 국제기구가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향후 JPO 파견 시 사용해 오고 있음.

<최근 5년간 국제기구초급전문가 중도 사임 사례>

(단위: 명)

연도	전체 선발인원	중도사임*	비 고
2019	15	2	▲2021.8. 개인 사유(1명) ▲2021.10. 국제기구 채용(1명)
2020	20	5	▲2021.8. 국제기구 채용(1명) ▲2022.3. 국제기구 채용(2명) ▲2022.8. 국제기구 채용(1명) ▲2022.12. 국제기구 채용(1명)
2021	20	6	▲2023.6. 국제기구 채용(2명) ▲2023.8. 국제기구 채용(1명) ▲2023.11. 국제기구 채용(1명) ▲2024.1. 국제기구 채용(1명) ▲2023.11. 개인 사유(1명)
2022	25	2	▲2023.7. 개인 사유(1명) ▲2024.4. 국제기구 채용(1명)
2023	25	0	

※ 중도 사임 : 중도 포기 및 채용으로 인한 조기종료 포함

<2023년 JPO 파견 사업 잔액 현황>

국제기구	잔 액	국제기구	잔 액
유엔사무국	352,836미불	WFP	61,347.91미불
UNICEF	291,586.43미불	UNESCO	38,636.81미불
UNHCR	238,980미불	UNIDO	33,448.34미불
ILO	97,141.73미불	IOM	15,185미불
ICC	56,681.17유로		

※ 2023.12월말 기준 파악된 기구에 한해 작성 / 여타 기구 잔액 확인 필요
(자료: 외교부)

이는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법률에서 특별하게 예외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세입 예산으로 계상하도록 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제17조[27]의 예산총계주의 원칙과, 수입의 직접 사용을 금지한 「국고금관리법」제7조[28]의 위반 소지가 있음.

외교부의 설명에 따르면 매년 예산편성 시점 이후에 JPO가 선발됨[29]에 따라 동반가족 등 JPO별 실제 파견경비가 예산 편성 이후에야 결정이 되는 바, 예산 편성 시 정확한 파견경비 추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함. 이로 인한 파견경비 인상 및 환율 상승 등으로 인해 파견경비 대비 편성액이 부족해지는 경우 불가피하게 기구측 예치 잔액으로 부족액을 충당해 왔다고 함.

해외 파견을 위한 해외송금 경비인 JPO 예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파견경비 대비 편성액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JPO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완충작용을 할 수 있도록 일정부분 예산 집행의 융통성이 필요한 측면은 있어 보임.

그러나, 외교부는 환율 상승으로 인해 JPO 파견 집행 필요액이 예산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어 각 기구별 잔액을 활용하기 위해 2022년과 2023년에 잔액을 파악한 경우 외에는, 연도별·국제기구별로 집행액과 정산액 등에

---

27) **「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 ①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28) **「국고금관리법」**
제7조(수입의 직접 사용 금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 수입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한다.

29) 2023년도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선발시험 제1차 서류접수 기간은 2023년 9월 8일까지였으며, 이후 2차 시험을 거쳐 최종 선발이 되는 시점은 각 국제기구별로 상이하나 대체로 11월 전후임.

관한 통계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아, 집행 관리에 미흡한 부분이 있으며, 각 국제기구별로 기 맺어진 양해각서의 경우 일부 양해각서는 정산과 관련한 내용이 없는 경우[30]도 있어 보완이 필요해 보임.

이에 외교부는 향후 새로운 국제기구와 양해각서를 맺을 시 파견경비 정산과 관련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 매년 각 국제기구별·연도별 집행액 및 정산 내역을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각 국제기구에서 반납액이 발생하거나, 국제기구와의 양해각서가 종료되는 경우에 기구측 예치 잔액을 신속히 국고로 세입처리할 수 있도록 동 예산의 집행 및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30) 총 19건의 협약 중 정산 관련 내용이 없는 경우는 2건(UNICEF, OPCW)임.

다.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신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사업은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국내 개최를 통해 경제발전과 자유민주주의를 달성한 민주주의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려는 것임.

<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구분	2023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	-	-	-	2,820	2,820	322	2,004	494	11.4
- 준비기획단 운영	-	-	-	-	520	520	259	-	261	49.8
- 공동주최국·시민사회 협의	-	-	-	-	92	92	63	-	29	68.5
- 홍보 및 광고지원 용역	-	-	-	-	1,000	1,000	0	806	194	-
- 정상회의 조정 메커니즘	-	-	-	-	1,208	1,208	0	1,198	10	-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은 28억 2,000만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배정받은 것임. 외교부는 이 중 3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20억 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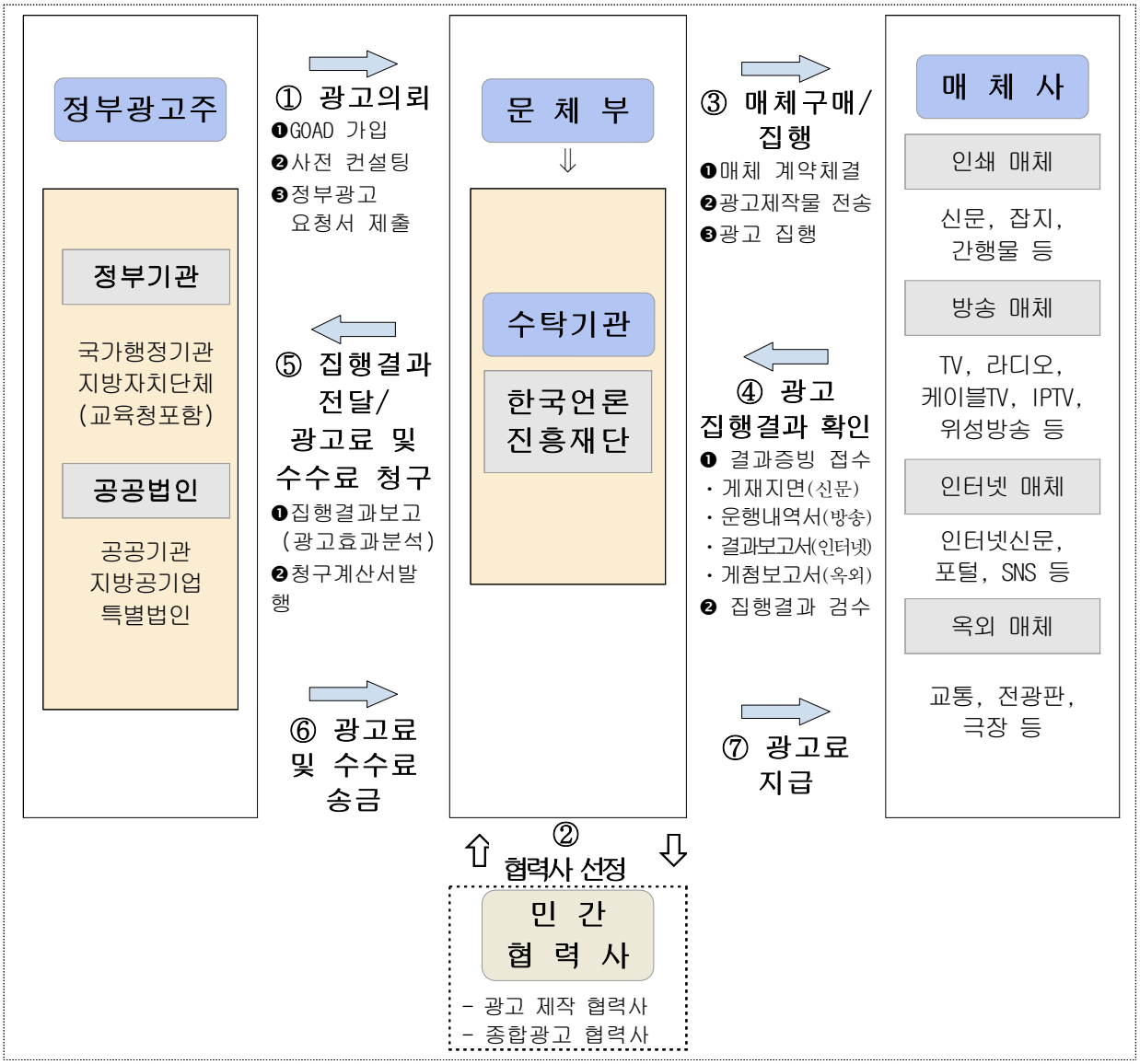
□ 홍보 및 광고지원 용역계약 「정부광고법」 이행 필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이하 "「정부광고법」"이라 한다) 제5조[31]는 정부예산을 절감하고 효과적인 정부광고 집행

31)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5조(광고의뢰) 정부기관등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소요 예산, 내용, 광고물 제작 여부 등 정부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을 위해 정부기관의 광고 시행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3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33]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정부광고 업무를 수탁받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정부광고 운영체계>



(출처: 정부광고 업무편람(문화체육관광부. 2024. 3.))

32)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10조(정부광고 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33)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업무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부광고 업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위탁한다.

그런데 외교부는 동 사업의 홍보 및 광고지원 용역을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하지 않고 직접 조달청을 통한 입찰공고 방식을 통해 진행하였음.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일반용역계약 내역>

(단위 : 백만원)

계약명	계약금액 (계약서 기준)	수탁기관	계약기간	계약 유형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홍보 및 광고지원 용역	792	피알하우스	24.2-6	일반경쟁

외교부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할 경우 홍보 예산의 30-40%에 해당하는 3~4억원이 국내 언론 광고에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국제행사로서의 특성 및 선거 근접 시기에 예산의 상당 부분을 국내 언론 광고에 투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 조달청 입찰로 추진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정부광고법」에 따른 "정부광고"란 "정부기관 또는 공공법인이 국내외의 홍보매체에 광고, 홍보, 계도 및 공고 등을 하기 위한 모든 유료고지 행위"로서 정부기관 등에서 홍보목적으로 예산 등을 사용하여 행하는 일체의 홍보행위[34]에 해당하므로 국내 언론 광고에만 소요될 것으로 우려해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하지 않았다는 외교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실제로 국제행사로서의 성격이 유사한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의 종합홍보사업 용역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해 진행한 바 있음.

34) 법제처 해석/'19.5(출처: 정부광고 업무편람)

「정부광고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정부기관 등의 광고 대행을 한국언론진흥재단에게 독점적으로 위탁하는 것은 정부 광고의 기획부터 집행에 이르는 과정을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정부광고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정부광고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려는 것이므로,

향후 외교부는 홍보 및 광고와 관련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정부광고법」을 준수할 필요가 있어 보임.

7. 국제개발협력

가. 개 요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 중 ⅰ)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 ⅱ)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ⅲ)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ⅳ) 중동CIS지역 국가원조, ⅴ) 글로벌 프로그램, ⅵ) 협력사업 지원, ⅶ) 전략적협력 강화, ⅷ) 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일부(인도적지원 일부[35] 및 민간협력사업[36]), 이상 8개 단위사업 예산은 외교부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KOICA에 출연하여 추진하는 사업예산임.

외교부는「개발협력 및 인도적지원」단위사업 중「ODA 선진화」세부사업과「인도적지원(ODA)」세부사업의 일부를 직접 수행하고 있음.

전체 프로그램의 2023년 예산은 1조 2,978억 5,000만원이고, 이 중 1조 2,477억 7,100만원을 집행하고 500억 7,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음.

35) 1638-402 중 민관협력사업

36) 1638-403

< 국제개발협력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2022 결산	2023			2024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2400] 국제개발협력				1,101,120	1,297,850	1,297,850	1,247,771	1,968,035
	[2431]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			180,402	242,640	242,640	219,944	275,641
		[11] 일반	[401] 베트남(ODA)	29,574	35,329	35,329	32,381	49,646
		[11] 일반	[402] 인도네시아(ODA)	11,786	19,445	19,445	15,448	20,971
		[11] 일반	[403] 캄보디아(ODA)	22,247	23,577	23,577	22,636	22,864
		[11] 일반	[404] 필리핀(ODA)	20,087	23,319	23,319	18,137	31,043
		[11] 일반	[405] 방글라데시(ODA)	13,668	14,936	14,936	14,122	13,790
		[11] 일반	[406] 몽골(ODA)	9,414	12,825	12,825	14,848	17,122
		[11] 일반	[407] 라오스(ODA)	19,264	23,292	23,292	25,698	24,652
		[11] 일반	[408] 스리랑카(ODA)	8,702	10,574	10,574	11,044	12,232
		[11] 일반	[409] 네팔(ODA)	8,427	8,538	8,538	7,971	9,438
		[11] 일반	[410] 파키스탄(ODA)	3,311	8,678	8,678	7,337	9,239
		[11] 일반	[411] 아시아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31,066	60,400	60,400	49,742	62,841
		[11] 일반	[412] 인도(ODA)	760	987	987	415	853
		[11] 일반	[413] 미얀마(ODA)	2,096	740	740	165	950
	[2432]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164,874	238,517	238,517	224,943	306,614
		[11] 일반	[401] 가나(ODA)	5,810	9,548	9,548	9,548	15,943
		[11] 일반	[402] 에티오피아(ODA)	21,694	33,494	33,494	31,109	30,643
		[11] 일반	[403] 아프리카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91,444	126,870	126,870	124,029	187,826
		[11] 일반	[404] 르완다(ODA)	9,143	16,237	16,237	15,640	15,714
		[11] 일반	[405] 우간다(ODA)	11,360	14,564	14,564	14,554	14,501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2022 결산	2023			2024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11] 일반	[406] 탄자니아(ODA)	14,044	18,466	18,466	14,678	18,927
		[11] 일반	[407] 세네갈(ODA)	7,729	12,209	12,209	8,620	12,853
		[11] 일반	[408] 이집트(ODA)	3,650	7,129	7,129	6,765	10,207
	[2433]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59,497	97,225	97,225	87,242	73,671
		[11] 일반	[401] 콜롬비아(ODA)	8,375	9,861	9,861	9,861	7,306
		[11] 일반	[402] 페루(ODA)	4,218	8,428	8,428	6,917	9,964
		[11] 일반	[403] 볼리비아(ODA)	9,477	8,599	8,599	8,408	8,024
		[11] 일반	[404] 파라과이(ODA)	11,170	10,892	10,892	10,892	15,701
		[11] 일반	[405] 중남미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26,257	59,445	59,445	51,164	32,676
	[2434] 중동 CIS지역 국가원조			42,801	81,632	81,632	78,072	133,274
		[11] 일반	[401] 우즈베키스탄(ODA)	9,259	14,203	14,203	11,928	23,767
		[11] 일반	[402] 중동 CIS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30,438	60,169	60,169	57,482	88,688
		[11] 일반	[403] 키르기스스탄(ODA)	3,104	7,160	7,160	8,661	12,950
		[11] 일반	[404] 타지키스탄(ODA)	-	50	50	1	7,169
		[11] 일반	[405] 우크라이나(ODA)	-	50	50	0	700
	[2435] 글로벌 프로그램			245,763	229,553	229,553	228,796	313,652
		[11] 일반	[401]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인재양성(ODA)	108,053	100,858	100,858	100,858	128,756
		[11] 일반	[402] 글로벌연수(ODA)	55,767	52,473	52,473	51,917	67,378
		[11] 일반	[403] 국제기구협력(ODA)	55,058	51,899	51,899	51,725	81,915
		[11] 일반	[404]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ODA)	26,885	24,323	24,323	24,296	35,603
	[2436] 협력사업 지원			60,651	51,705	51,705	48,397	59,260
		[11] 일반	[401] 협력사업 지원(ODA)	60,651	51,705	51,705	48,397	59,260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2022 결산	2023			2024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2437] 전략적협력강화			5,585	8,000	8,000	3,925	8,000
		[11] 일반	[401] 전략적 협력 강화(ODA)	5,585	8,000	8,000	3,925	8,000
	[2438] 개발협력 및 인도적지원			341,547	348,578	348,578	356,452	797,923
		[11] 일반	[401] ODA 선진화	538	1,265	1,265	1,149	812
		[11] 일반	[402] 인도적지원(ODA)	301,426	299,367	299,367	307,774	740,111
		[11] 일반	[403] 민관협력사업(ODA)	39,583	47,946	47,946	47,530	57,000

나. 인도적 지원

「인도적지원(ODA)」 사업은 해외재난 발생 시 피해국의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명구조 및 재난구호 실시,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분야 국제협력 강화 등을 위한 것임.

2023년 본예산은 2,993억 6,700만원, 이·전용액 84억 2,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3,077억 8,700만원임. 이 중 3,077억 7,4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100%임.

< 인도적지원 (ODA)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현액(B)	집행액(C)	차년도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A)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액대비(C/A)	현액대비(C/B)
299,367	299,367	-	8,420	-	307,787	307,774	-	13	102.8	100.0

「인도적지원」 사업의 내역사업별 결산은 아래와 같음.

< 2023년도 인도적 지원 결산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2024 예산	집행률	
	결산	본예산(A)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B)	결산(C)		예산액대비(C/A)	현액대비(C/B)
합 계	301,343	299,367	8,420	-	307,787	307,730	740,111	102.8	100.0
1. 해외긴급구호	297,103	295,061	-	-	295,061	295,023	734,624	100.0	100.0

37) KOICA 출연금 지급

	재난대응	287,080	283,756	-	-	280,742	280,720	694,900	98.9	100.0
	만성적재난	46,737	91,856	-	-	88,842	87,918	304,900	95.7	99.0
	긴급재난	30,371		-						
	ACT-A	110,297**	129,000	-	-	129,000	128,359	130,000	99.5	99.5
	우크라이나 지원	99,675	62,900	-	-	62,900	64,443	260,000	102.5	102.5
	재난대응시스템강화	-	-	-	-	-	-	-	-	-
	국제부담금	2,150	2,275	-		5,289	5,273	8,500	231.8	99.7
2 선진인도적지원 역량강화		7,873	9,030	-	-	9,030	9,030	31,224	100.0	100.0
3 인도적지원 민관협력사업[37]		105	106	-	-	106	103	187	97.2	97.2

* 구호대 파견비용은 긴급재난 예산에 포함

** 2022년 COVAX(코로나19백신공조체제) AMC*로 지원

* ACT-A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백신·치료제·진단 분야를 포괄하는 국제공조체제이며, COVAX AMC는 이 중 백신 관련 협조체제임.

「해외긴급구호」는 「인도적 지원(ODA)」 사업의 내역사업이며, 「해외긴급구호」 사업은 「재난대응」, 「재난대응시스템 강화」 및 「국제부담금」 내내역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재난대응」 사업을 통해 「만성재난」과 「긴급재난」 예산을 집행함.

「만성재난」 사업은, 해외 국가 재난 발생시 재난의 심각성, 국제사회의 지원 동향, 정부의 인도지원 전략과의 부합성을 종합 고려하여 지원 규모 및 지원 분야를 결정되는 사업임.

국제사회의 인도적 지원 조정 총괄을 담당하는 UN 인도지원조정실[38] 에서 매년 12월 차년도의 전세계 인도지원 수요를 지역·국가별로 발표하며, 외교부는 그 결과를 종합하여 WFP[39] 및 UNHCR[40]과 같은 국제기구에 지원금을 공여하고 있음.

38) OCHA: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UN 인도지원조정실

39) WFP: World Food Programme, 유엔 세계 식량계획

40) UNHCR: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유엔난민기구

「긴급재난」은 자연재해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피해현황, 피해국의 재난대응 역량, 국제사회 지원 동향 및 정무적 필요성 등을 종합하여 지원을 결정함.

<난민 등 만성적 재난 지원 결정 절차>

유엔합동 지원요청 발표 (연초)	⇨	국별 지원계획(안) 수립	⇨	지역국/재외공관 협의	⇨	국별 지원계획 확정

(고려사항) △국별 유엔합동지원요청 규모, △재난의 심각성, △국제사회의 지원 동향, △우리의 인도지원 중점 추진 분야와의 부합성, △정무적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

<자연재난 등 긴급 재난 지원 결정 절차>

재난 발생	⇨	재외공관 보고	⇨	국제사회의 재난 평가 및 긴급 요청 접수	⇨	지원 계획(안) 수립 (지역국/재외공관 협의)	⇨	지원 계획 확정

(고려사항) △인적·물적 피해 현황, △피해국의 재난 대응 역량, △국제사회의 지원 요청 및 지원 현황·규모, △정무적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사업」은 우리나라 민간단체가 전 세계 인도적지원 현장에서 적극적인 생존 및 존엄성 지원, 조기 복구, 재난위험 경감, 난민지원 및 분쟁하 성폭력 회복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도엔 42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튀르키예 강진 발생에 따른 적시성 있는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로부터 84억 2,000만원의 증액 전용을 승인 받아 126억 1,000만원을 집행하였음[41].

41) 동 예산 지원을 통해 세이브더칠드런, 굿네이버스,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가 튀르키예 강진 발생 지역에 임시 거주촌을 조성하고 사회경제적 회복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하였음.

<2023년도 만성재난 지원액 집행 내역>

연번	지원내용	금액 (미불)
1	수단 위기	1,000,000
2	가자지구	1,500,000
3	미얀마	1,400,000
4	로힝야난민(미얀마, 방글라데시)	3,900,000
5	아프리카 뿔 지역	2,300,000
6	예멘	3,500,000
7	시리아 및 주변국	12,000,000
8	차드	400,000
9	베네수엘라	1,000,000
10	페루	500,000
11	니제르	400,000
12	수단	270,000
13	아이티	500,000
14	마다가스카르	300,000
15	콜롬비아	2,000,000
16	에콰도르	500,000
17	부르키나파소	400,000
18	예멘	400,000
19	나이지리아	400,000
20	중앙아프리카공화국	600,000
21	카메룬	400,000
22	부룬디	300,000
23	차드	410,000
24	다년간 기여	10,100,000
25	우크라이나	50,000,000
합 계		94,480,000

(자료: 외교부)

<2023년도 긴급재난 지원액 집행 내역>

연번	지원내용	금액 (미불)
1	말라위 폭풍 피해	200,000
2	튀르키예 지진 피해	75,849
3	시리아 지진 피해	1,000,000
4	모잠비크 홍수 피해	300,000
5	이란 북서부 지진 피해	300,000
6	태국 백신 해외공여 운송비	63,335
7	말라위 열대폭풍 피해	200,000
8	바누아투 태풍 피해	200,000
9	칠레 산불 피해	100,000
10	필리핀 해양오염	32,646
11	홍해 유조선 FSO Safer호	200,000
12	르완다 폭우 피해	300,000
13	민주콩고 폭우 피해	500,000
14	쿠바 폭우 피해	300,000
15	우크라이나 카호우카 댐 파괴	1,000,000
16	미얀마 태풍피해	500,000
17	하와이 산불	2,000,000
18	튀르키예 지진피해	3,000,038
19	아프가니스탄 지진	1,000,000
20	필리핀 태풍	300,000
21	리비아 홍수 피해	2,000,000
22	네팔 지진 피해	300,000
23	바누아투 태풍 피해	300,000
24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2,000,000
25	모로코 지진 피해	2,000,000
26	나고르노-카라바흐 충돌	500,000
27	말라위 폭풍 피해	300,000
28	ACT-A	100,000,000
29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3,640,855
합 계		122,612,733

(자료: 외교부)

□ 인도적 지원 예산 규모의 지속적 확대에 따른 집행 관리 강화 필요

최근 재난·재해 등에 따른 인도적 위기의 증가로 유엔 인도지원조정실(OCHA)이 발표[42]하는 인도적 지원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고위급 공약회의 혹은 긴급히 개최되는 공약회의의 증가에 따라 인도적 지원 발표 계기가 늘고 있을 뿐만 아니라[43], KDRT(해외긴급구호대) 파견 실적 증가와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기대 증가 등으로 외교부의 인도적 지원 예산 규모는 5년 사이 4배 가량 증가하였음[44].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자연재해의 발생 횟수가 빈번해지고 있고,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의 정세 불안이 심화됨에 따라 인도적지원 수요가 증가할 것이 예상된다는 점,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증가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하는 목표 등을 고려할 때 재난대응 예산 규모를 늘려나가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인도적 지원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체계적이고 적시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주기적인 집행률 점검 등의 노력을 배가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대외적으로는 우리나라의 확대된 인도적 지원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고 가시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

42) 인도적지원 수요는 2022년도 2억 7,400만명/410억불 규모에서 2023년 3억 6,300만명 552억불 규모로 35% 증가하였고, 이러한 증가 추세는 기후변화의 가속화 등으로 2024년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임.

43) 2023년 한 해에만 신규 개최 고위급 공약 회의로 튀르키예·시리아 강진 대응 회의, 아프리카 뿔 지역 지원 회의, 수단 지원 회의 등이 있었음.

44) 2020년도 인도적 지원 예산현액은 1,861억 4,300만원이었으나, 2024년도 예산엔 7,401억원 규모로 4배 가량 증가하였음.

8. 국제법적 대응 강화

가. 개 요

「국제법적 대응 강화」 프로그램은 우리 영토에 대한 일 측의 도발 및 분쟁지역화 기도에 대응하고, 장기적·전략적으로 영토주권 근거 강화 및 우리 입장의 국제적 인식을 제고하며, 국제규범질서 형성 과정에 적극 참여, 해양·남극·항공 관련 국제법적 대응 지속·강화를 통해 국제법 발전 및 국제규범질서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국제무대에서의 우리 위상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1개의 단위사업과 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3년도 예산은 74억 2,900만원이고, 예산액 대비 80.7%에 해당하는 59억 9,300만원이 집행되었음.

< 국제법적 대응 강화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2 결산	2023 예산		2023 결산	2024 예산
					본예산	추경		
[2500] 국제법적 대응 강화				6,503	7,429	7,429	5,993	6,673
	[2531] 국제법적 기반 구축 및 활동 강화			6,503	7,429	7,429	5,993	6,673
		[11] 일반	[401]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6,503	7,429	7,429	5,993	6,673

나.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증진」사업은 독도 관련 제반 활동을 통해 국제사회의 인식을 제고하여 우리의 영토주권을 수호하고, 국제법 관련 이슈에 대한 적극적 참여로 국격을 제고하며, 해양 및 남극 활동, 한일 청구권 협정 대응, 그리고 조약 번역 및 검독 강화 등을 추진하려는 것임.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증진 사업 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3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A)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7,429	7,429	215	△680	-	6,964	5,993	249	721	80.7
- 영토주권 수호	5,342	5,342	-	△671	-	4,671	4,240	-	432	79.4
-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1,052	1,052	-	△205	-	847	658	-	189	62.5
- 조약체결 지원 및 검독 강화	1,035	1,035	215	195	-	1,445	1,096	249	100	105.9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은 당초 74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및 이·전용을 통해 4억 6,500만원이 감액된 69억 6,400만으로 조정되었고, 이 중 59억 9,300만원이 집행되고 2억 4,9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7억 2,1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연구용역 집행·관리 방식 개선 필요

2023년 외교부는 동 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영토주권 수호’와 ‘국제법을 통한 국익증진’에서 ‘2023년 한국 관련 이슈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기후변화 관련 국제법적 검토’ 등 총 41건의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으며, 예산현액 9억 7,800만원 중 8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8,800만원을 불용하였음.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증진’ 사업 연구용역비 집행내역>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2023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일반연구비(260-01)	1,418	1,418	0	△440	0	978	890	0	88
- 영토주권 수호	1,006	1,006	-	△240	-	766	751	-	15
- 국제법을 통한 국익증진	412	412	-	△200	-	212	139	-	73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53조 및 제54조[45]는 연구결과의 활용촉진을 위해 정책연구의 계약체결 내용과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물 등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4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동 사업의 2023년도 계약사항을 살펴보면 내역사업에 해당하는 연구용역 41건을 모두 수의계약 하였고, 2023년뿐만 아니라 동 내역사업의 최근 4년간의 연구용역 계약현황을 보더라도 매년 수의계약 비율이 100%에 이르고 있음.

이에 대해 외교부는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우리 전략과 논리의 노출 가능성, 해외 연구자의 신원 노출 우려 및 특정인의 전문성을 활용한 학술연구로서 수의계약의 불가피성, 사안별로 시의성을 고려한 신속한 연구 착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46]를 근거로 연구용역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임. 아울러 2023년의 경우 일부 연구용역을 경쟁입찰로 추진하였으나 국내외 국제법 전문가가 소수에 불과하여 단일응찰 또는 무응찰로 유찰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전부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다고 설명함.

그러나, 연구자를 임의로 선택하는 수의계약 방식은 연구용역 내용의 중

---

46)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를 제조·구매하는 경우
라.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립성·다양성이 약화되고 절차의 투명성·공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외교부는 전체 연구용역이 수의계약을 통해 집행되는 점을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추후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구용역의 공개적인 경쟁입찰 규모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음.

한편, 외교부는 동 사업의 연구용역을 모두 일반연구비(260-01)로 집행하고 있는데, '일반연구비(260-01)'는 국가로부터 기술, 전산,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 업무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에 해당함.

동 사업의 연구용역 중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학술연구 포함),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 '정책연구비(260-02)'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연구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의 성격에 맞는 비목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음.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조[47]에서도 "정책연구용역"을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연구용역사업'으로 정의하고, '기술·전산·임상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와 자문 등은 정책연구용역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하였으므로,

47) **「외교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책연구용역"이라 함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연구용역사업을 말한다. 다만, 기술·전산·임상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와 자문 등은 정책연구용역 범위에서 제외한다.

외교부는 동 규정에 맞게 연구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도 성격에 맞는 비목으로 편성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9.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가. 개 요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문화교류 및 대(對) 유네스코[48] 외교 등을 통해 한국의 문화국가 이미지를 확립하고, 주요 외교계기 기념사업을 통해 국가 간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하며, 공공외교를 통해 한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우호와 신뢰를 제고하여 국익을 증대하는 한편, 외교 현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을 통해 쌍방향 외교체제를 구축하고, 디지털 공공외교 인프라 구축 및 체계화를 통해 디지털 공공외교를 강화하려는 사업으로, 1개의 단위사업 및 5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3년도 본예산은 294억 3,200만원이며 이 중 261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음.

<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2 결산	2023			2024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2600]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28,138	29,432	29,432	26,111	23,110
	[2631] 공공문화외교 강화			28,138	29,432	29,432	26,111	23,110
		[11] 일반	[401]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2,582	3,035	3,035	2,517	2,693
		[11] 일반	[402] 주요외교계기 기념사업	6,154	5,594	5,594	5,272	2,470

48) 유네스코(UNESCO: 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교육·과학·문화의 보급 및 교류를 통하여 국가간의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연합전문기구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2 결산	2023			2024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11] 일반	[403] 공공외교 역량강화	14,963	16,282	16,282	14,189	16,103
		[11] 일반	[404] 국민외교추진기반구축	727	744	744	614	-
		[11] 일반	[405]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	3,713	3,777	3,777	3,519	1,844

나.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는 양자 간 문화교류 증진, 우리 문화·예술의 대외 홍보 및 유네스코(UNESCO) 등의 다자협력체를 매개로 한 국제적 협력기반 구축을 통하여 우리의 국격 제고 및 정치·경제 등 여타 분야의 협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유네스코 등에 대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對) 유네스코·세계관광기구 외교강화 사업」, 재외공관에 우리 미술품을 지원·전시하는 「국가이미지 제고 전시 사업」 및 한국관광공사 해외지사 미소재 국가의 현지 관광 인프라 및 네트워크 확충을 지원하는 「방한 관광 외교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후 증감액			예산현액 (B)	집행액 (C)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대비 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전년 이월	이·전용 등	예비비					
3,035	3,035	-	△290	-	2,745	2,517	-	228	82.9

2023년도 예산액은 30억 3,500만원이었으나 2억 9,000만원을 이용 감액하여 예산현액은 27억 4,500만원이었으며, 이 중 25억 1,7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2,800만원을 불용함.

□ 주요국 유산 동향 연구 사업 수행 방식의 적정성 검토 필요

「대(對) 유네스코·세계관광기구 외교강화 사업」은 우리나라가 유네스코 193개 회원국 중 8위 규모의 분담금을 납부하는 핵심 공여국으로서 집행이사국 및 총회 산하 정부간위원회 위원국으로 활동하기 위한 주요회의 및 행사를 개최하기 위한 것으로, 20억 5,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6억 6,600만원을 집행하였음.

동 사업엔 '주요국 유산 동향연구'를 위한 정책연구비(260-02) 예산 5,000만원이 편성되어 4,935만원을 집행하였음. 이는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동향 및 전략 파악을 통한 우리의 체계적 대응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외교부는 해당 연구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매년 유사한 규모로 수의계약을 통한 용역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음.

동 연구는 사도광산 등 유네스코 민감 현안 신속대응 등 대체 연구자를 찾기 어려운 분야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이 매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다만 그 집행 방식에 대해선, 현재와 같이 수의계약을 통한 연구 용역 수행보다는 민간경상보조의 형태로 집행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으로 보임. 앞서 검토한 것과 같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외의 기관이 동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바, 해당 연구비가 사실상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대한 보조금적 성격으로 지급되고 있기 때문임. 이에 동 예산을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장기적 관점에서 해당 연구에 대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보임.

외교부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의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협력 구축을 위해 민간경상보조금 신규 편성을 시도하고 있으나, 2024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기획재정부 심의 결과 미편성되었는바 2025년 예산안 편성 시에도 이를 포함하여 제출하겠다는 입장임.

10. 재외국민 해외안전관리

가. 개 요

“재외국민 해외안전관리” 프로그램은 재외국민의 보호와 안전을 위한 활동을 강화하는 것으로 1개의 단위사업과 2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됨.

2023년도 예산액은 155억 4,700만원 중 124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음.

< 재외국민 해외안전관리 프로그램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2 결산	2023			2024 예산
					본예산	추경	결산	
[2700] 재외국민 해외안전관리				10,431	15,547	15,547	12,496	15,744
	[2731] 재외국민 보호			10,431	15,547	15,547	12,496	15,744
		[11] 일반	[401] 재외국민 보호	10,431	15,547	15,547	12,496	15,510
		[11] 일반	[402] 영사서비스 지원	-	-	-	-	234

나. 재외국민 보호(2731-401)

「재외국민 보호」는 해외안전정보 제공을 통해 해외 출국 국민의 안전의식을 제고하는 등 해외 사건·사고를 예방하고, 재외국민 해외 사건·사고 발생 시 영사조력 등 대응을 통해 재외국민을 지원·보호하며, 영사콜센터 운영을 통해 영사민원 전반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재외국민을 보호하려는 사업임.

< 재외국민 보호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대비 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전년 이월	이·전용 등	예비비					
15,547	15,547	294	-	-	15,841	12,496	28	3,317	80.4

2023년도 예산액 155억 4,7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으로 2억 9,400만원이 증가한 예산현액 158억 4,100만원 중 2,8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3억 1,700만원이 불용되고 124억 9,6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액 대비 집행률이 80.4%임.

주요 불용액 발생 사유는 예비비적 성격의 무자력자 긴급지원비 집행 저조 및 긴급대피 지원을 위한 전세기 미운영, 영사콜센터 운영 관련 집행 잔액 등에 따른 것임.

□ 영사콜센터 재택 상담시스템 활용방안 마련

영사콜센터는 해외에서 사건·사고 또는 긴급한 상황에 처한 우리 국민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중무휴 24시간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콜센터이고 주요 업무는 해외 위난 발생 시 가족 등의 안전확인 접수 및 현지 안전정보 안내, 해외 사건·사고 접수 및 조력, 신속해외송금 지원, 해외 긴급상황시 통역서비스 지원, 여권 업무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음.

외교부는 영사콜센터에 데스크탑 가상화(VDI) 기반 재택 상담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VDI 서버 장비, 네트워크 장비, 보안 장비 및 이와 관련된 SW

를 구입하였고 상담원 PC 및 모니터 각각 85대를 구매하면서 2023년 예산으로 5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음.

영사콜센터는 코로나 시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2022년 4월까지 전체 상담관의 20~30%가 재택상담시스템 없이 재택근무를 시행하면서 발생한 상담 응대율 저하[49]에 대응하고 감염병 확산 등 비상상황 대비 24시간 무중단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상담관이 자택에서 상담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보안, 네트워크 시설을 정비하고 재택상담시스템을 구축하였음.

동 시스템은 출근 및 재택을 동시 운영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 운영환경을 마련하였고 비상상황에서 재택 근무시 상담관에 대한 업무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재택 출근여부, 재택상담 통계, 모니터링 등 관리기능을 구축하였으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검증된 인프라 도입 및 사업시작 시점에 대한 사전검증을 수행한 것으로 나옴.

또한 동 시스템 구축[50] 후 1년간 사업수행업체가 시스템의 하자 보수 등 기술지원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 영사콜센터 상담시스템 유지보수업체를 통하여 시스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이 체결되었음.

이처럼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재택근무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외교부는 재택상담시스템을 구축하였음. 그러나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 영사콜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사회 전반적으로 코

49) 연평균 상담 응대율: (2019) 93.7% → (2021) 77.1%

50) 구축기간: 2023. 8. 7. ~ 2023. 11. 5.

로나19 일상회복으로 다수의 기업이 재택근무를 중단하거나 감소시키고 재택근무를 축소 또는 중단하는 추세에 따라 재택상담시스템의 활용율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음. 또한 재택상담시스템 장비는 그 내구연한[51]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유지보수비가 집행되어 예산낭비의 요인이 될 수 있음.

이에 대해 외교부는 동 시스템의 활용율 제고를 위하여 2024년 6월부터 시범운용을 거쳐 구체적 활용 방안과 관련 세부 절차를 마련하였으며, 7월 파리 올림픽 기간 중 휴직, 병가 등으로 인한 프랑스어 통역 상담관 부족 상황에서 재택상담시스템을 활용하여 통역 공백을 최소화하는 등 실제 업무에 활용중이며, 향후에도 pc고장이나 상담관 교육 등에 해당 시스템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함.

재택근무는 독립적이면서도 개별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고 민원인과의 대면접촉이 거의 없으며, 특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는 직무 등에 적용하기 용이함을 고려할 때 콜센터의 상담관이 적임이므로 해외위난 맞 사건·사고의 발생 시 콜센터 내 공동 응대, 재외공관과의 긴밀한 협업 등 영사콜센터의 특수상황을 고려하여 재택상담시스템을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임.

51) 통상적으로 IT장비의 내구연한은 5-10년임.

11. 여권업무 선진화

가. 개 요

「여권업무 선진화」 프로그램은 품질 및 보안성이 우수한 여권 발급으로 우리 여권의 국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실무직원의 업무 역량 강화 및 첨단 시스템 도입으로 신속, 정확한 여권 발급 체계를 유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려는 것으로, 1개의 단위사업과 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3년도 예산액은 856억 2,000만원인데, 여권발급량 증가에 따른 세출예산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수입대체경비 수입액 일부를 지출함에 따라 집행액은 1,094억 8,200만원임.

< 여권업무 선진화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2 결산	2023			2024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2900] 여권업무 선진화				97,851	85,620	85,620	109,482	141,030
	[2931] 전자여권발급및서비스개선(수입대체경비)			97,851	85,620	85,620	109,482	141,030
		[11] 일반	[651]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개선(수입대체경비)	97,851	85,620	85,620	109,482	141,030

나.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개선(수입대체경비)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개선(수입대체경비)」은 국내외 여권민원실 운영·지원을 통해 대국민 여권발급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 여권의 품질 제고 및 보안성 강화로 국제신뢰도를 향상하려는 사업임.

<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개선 2023년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3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A)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개선(수입대체경비)	85,620	85,620	2,109	22,300	-	110,029	109,482	64	482	127.9
- 여권제조 및 발급	77,395	77,395	-	22,300	-	99,793	99,710	-	83	128.8
- 국내외 여권민원실 운영	7,647	7,647	24	-	-	7,573	7,350	-	223	96.1
- 여권품질 및 서비스 개선	578	578	62	-	-	640	399	64	178	69.0
-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	-	-	2,023	-	-	2,023	2,023	-	-	-

이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액은 856억 2,0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21억 900만원과 여권발급량 증가로 인한 수입대체경비 초과지출 223억을 합한 예산현액은 1,100억 2,900만원인데, 이 중 1,094억 8,200만원이 집행되었고, 6,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4억 8,2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전자여권 품질검사 및 품질개선 관련 연구용역의 회계연도에 맞는 집행 필요

외교부는 대국민 여권 서비스 개선을 위해 국내외 여권민원실을 운영하고, 여권 품질 및 서비스 개선 등을 위하여 동 세부사업에서 아래와 같은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있음.

< 전자여권발급 및 서비스개선 연구용역 계약 체결 내역 >

(단위 : 백만원)

내역사업명	예산액	계약명	계약 금액	수탁 기관	계약기간	계약 유형
여권 품질 및 서비스 개선	130	2023년도 전자여권 품질검사 및 품질개선 관련 연구용역	128	(재)한국기계 전기전자시험 연구원	23.4-24.4	수의
여권 품질 및 서비스 개선	11	공백여권 제조원가 및 발급비용 산정	9	한국산업정보 연구소	23.8.-23.10	수의
여권사무대행기관 업무경비지원규모 적정성 검토 및 조정방안 마련 연구용역	35	여권사무 대행기관 업무경비 지원규모 적정성 검토 및 조정방안 마련 연구용역	31	한국산업정보 연구소	23.7-23.11	수의

(자료: 외교부)

이 중 '2023년도 전자여권 품질검사 및 품질개선 관련 연구용역'은 한국조폐공사가 제조·제작하여 외교부에 납품하는 전자여권의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표준 준수 여부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전자여권 발급 및 교부 등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독오류 등 각종 불량여권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며, 민원 처리 및 품질개선에 활용, 폴리카보네이트 재질 차세대 전자여권의 안정적인 사용을 위한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매년

추진하고 있는 용역사업으로, 2023년 연구용역 미완료로 인하여 6,400만원을 이월하였음.

< 전자여권 시행 이후 연도별 전자여권 불량률 >

(단위: %)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현용	-	-	-	-	-	-	-	-
종전	0.95	0.69	0.66	0.65	0.65	0.67	0.62	0.86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현용	-	-	-	-	-	-	6.35	4.90
종전	0.54	0.59	0.52	0.61	0.65	0.38	0.93	0.86

(자료 : 외교부)

동 연구용역은 2023년뿐만 아니라 연례적으로 이월하여 집행하고 있는데, 외교부는 처음 계약을 체결했을 당시 계약일이 4월이고, 매년 계약을 갱신하다 보니 부득이 매년 이월하여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함.

< 전자여권 품질검사 및 품질개선 관련 연구용역 연도별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연도	계약명	수탁 기관	계약기간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2019	2019년도 전자여권 품질검사 및 품질개선	(재)한국기계 전기전자시험연구원	2019.4.3.-2020.4.2.	125	62.5	62.5
	차세대 전자여권 품질확보	(재)한국기계 전기전자시험연구원	2019.4.5.-2020.5.31.	40	20	20
2020	2020년도 전자여권 품질검사 및 품질개선	(재)한국기계 전기전자시험연구원	2020.4.3.-2021.4.3.	124	62.4	62.4
2021	2021년도 전자여권 품질검사 및 품질개선	(재)한국기계 전기전자시험연구원	2021.4.5.-2022.4.5.	124	62.2	62.2
2022	2022년도 전자여권 품질검사 및 품질개선	(재)한국기계 전기전자시험연구원	2022.4.6.-2023.4.6.	124	62.2	62.2
2023	2023년도 전자여권 품질검사 및 품질개선	(재)한국기계 전기전자시험연구원	2023.4.6.-2024.4.6.	128	64	64

(자료 : 외교부)

그러나 이와 같은 연례적인 이월은 「국가재정법」상 회계연도 독립 원칙[52]을 준수하지 못한 것으로, 외교부는 2025년도 연구용역 계약 시 해당 회계연도 내에 계약기간이 이루어지도록 계약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관련 법의 취지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음.

52)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12. 경제외교

가. 개 요

「경제외교」 프로그램은 G20 정상회의 등 글로벌 거버넌스에 대한 우리나라의 참여를 강화하고, 다자경제체제 강화를 위한 정책 홍보 및 정책 협의를 추진하는 한편, 양자 경제외교 진흥 및 해외진출 기업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경제이익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경제외교 활동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2개의 단위사업과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3년 예산은 124억 4,700만원이고, 이 중 104억 6,200만원이 집행됨.

< 경제외교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2022 결산	2023			2024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3000] 경제외교				8,520	12,447	12,447	10,462	12,860
	[3031] 다자 경제외교 강화			1,702	1,978	1,978	1,612	4,562
		[11] 일반	[401] 다자 경제외교 추진 및 경제협력 강화	625	1,469	1,469	1,166	1,395
		[11] 일반	[402] G20 글로벌 거버넌스 대응 강화	1,077	509	509	446	707
	[3032] 지역 경제외교 강화			6,676	10,469	10,469	8,850	8,298
		[11] 일반	[401] 양자 경제 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	4,445	8,007	8,007	6,763	5,381
		[11] 일반	[402] 해외진출기업 활동 지원	2,231	2,462	2,462	2,088	2,917

나. 다자 경제외교 추진 및 경제협력 강화

「다자경제 외교 추진 및 경제협력」 사업은 우리 기업의 아시아-태평양 역내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WTO(World Trade Organization), WCO(World Customs Organization),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등 다자경제기구 논의에 참여하여 우리 경제 해외 활동 기반을 공고화하기 위한 사업임.

2023년 예산은 14억 6,900만원이고, 이 중 11억 6,6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6,500만원을 차년도로 이월, 1억 3,900만원을 불용하였음.

< 다자 경제외교 추진 및 경제협력 강화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A)	전년 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액 대비(C/A)	현액 대비(C/B)
1,469	1,469	-	1	-	1,470	1,166	165	139	79.4	79.3

□ 국제경제규범 정립 및 개선 사업의 성격을 감안한 편성 조정 필요

세사업 「국제경제규범 정립 및 개선」은 경제협정 및 국제협상 관련 법률자문서비스를 받기 위해 일반수용비(210-01)로 2억 7,300만원을 편성하여 2억 6,700만원을 집행하였음. 해당 사업은 경제협정 및 국제협상 등의 내용이 국내법의 내용과 충돌 가능성 등을 검토하려는 것으로, 양·다자 협상 과정에서 국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다자경제외교 추진 및 경제협력 강화」의 여타 세사업의 경우, APEC 등 지역경제협력 논의 참여, WTO, WCO(세계관세기구), WIPO(세계지적재산권기구) 등 다자국제경제기구 논의 참여 및 해외 지식 재산권 보호 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기업들의 안정적인 역내 시장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국제경제규범 정립 및 개선」 사업은 투자보장, 이중과세 방지협정 등 주로 양자적인 형태로 체결되는 경제협정의 법적 효과 및 대응 전략을 검토하는 것인바 그 목적이 상이하다고 보임.

따라서 해당 사업은 「다자경제외교 추진 및 경제협력 강화」이 아닌 다른 단위사업 내 내역사업으로 편성될 필요성이 있음[53].

다. 양자경제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

「양자경제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대응」사업은 우리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부-공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법률자문서비스 제공, 외국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한 대책 마련, 경제외교 협의 메커니즘 등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임.

2023년도 본예산은 80억 700만원, 추경 및 전년 이월액에 따른 예산 현액은 80억 6,000만원이고, 이 중 67억 6,300만원이 집행되어 예산 현액 대비 집

53) 외교부는 동 지적을 감안해 별도 단위사업으로의 편성을 고려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 측이 예산 규모가 소규모이고, 기존 예산 편성 방식으로도 업무 추진에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별도 사업 신설이 어렵다는 입장을 표하고 있다는 입장임.

행률은 83.9%임.

< 양자경제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A)	전년 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액 대비(C/A)	현액 대비(C/B)
8,007	8,007	-	53	-	8,060	6,763	2	1,296	84.5	83.9

□ 경제안보 관련 재외공관 주재 전문연구원 인건비 예산의 연례적 불용 최소화 필요

세사업「주요국 경제안보정책 대응」은 경제안보외교센터 운영을 통해 빈발하는 경제안보 현안을 조기에 포착하고 총괄 분석·조정·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2023년 25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8억 8,900만원을 집행하였음. 동 사업은 경제안보 외교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에 전문연구원 10명, 재외공관 주재 전문 연구인력 6명을 두고자 하며, 2023년 이에 필요한 예산으로 1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집행 규모는 7억 2,000만원으로 3억 9,000만원을 불용하였음.

2022년엔 인건비 불용액이 8억 7,500만원에 달하여 예산액 기준 인건비 불용 규모가 78.8%에 이르렀는바, 2023년엔 그 비중이 37.2%로 축소되어 집행률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예산 편성 당시 예정한 인력 채용·운용 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재외공관 주재 전문 연구인력의 경우 총 6명을 채용할 것을 예정하였으나, 주네덜란드대사관과 주인도대사관 주재 전문 연구

인력의 경우 9월이 되어서야 채용이 마무리되었으며, 국내 전문연구원의 경우 예정된 인원을 모두 채용하지 못하고 있음.

증대되고 있는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해당 분야의 전공자들을 전문 연구인력으로 채용해 외교부의 경제안보 역량을 증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나, 연례적으로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해당 예산을 상당 규모 불용하는 것은 인력 수급 및 보수에 대한 보다 정밀한 추계가 전제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임. 외교부는 인건비 불용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해당 사업에 대한 기존 집행 내역을 예산 편성 단계부터 고려할 필요가 있음.

13. 에너지 및 글로벌 이슈 대응 외교

가. 개 요

「에너지 및 글로벌 이슈 대응 외교」 프로그램은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에너지 협력 외교를 강화하고, 기후변화 협상 등 범지구적 환경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녹색성장 등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 달성에 기여하려는 사업으로, 1개의 단위사업 및 1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3년도 본예산은 55억 1,400만원이며, 이 중 42억 4,400만원을 집행함.

< 에너지 및 글로벌 이슈 대응 외교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2 결산	2023			2024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3100] 에너지 및 글로벌 이슈 대응 외교				5,065	5,514	5,514	4,244	9,806
	[3131] 에너지외교 및 기후변화녹색성장 국제협력강화			5,065	5,514	5,514	4,244	9,806
		[11] 일반	[401] 기후변화 녹색환경 외교강화	5,065	5,514	5,514	4,244	9,806

나. 기후변화 녹색환경 외교강화

「기후변화 녹색환경 외교 강화」는 글로벌 에너지·자원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국가 에너지 안보 제고에 기여하며, 물 분야 국제 논의를 주도하고, 과학기술 외교를 강화하며,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 및 양자·지역 차원의 환경협력에 기여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제적 확산 등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공관 에너지협력외교 활동/에너지 및 물 분야 국제협력 강화」, 「과학기술외교 강화」, 「기후변화외교 강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대응 국제협력강화」,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국제협력 강화」, 「북극 국제협력 강화」로 구성되어 있음.

< 기후변화 녹색환경 외교강화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후 증감액			예산현액 (B)	집행액 (C)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대비 집행률 (C/A)
본예산	추경 (A)	전년 이월	이·전용 등	예비비					
5,514	5,514	-	-	-	5,514	4,244	-	1,270	77.0

외교부는 재외공관을 통한 에너지협력외교 및 과학기술외교를 강화하기 위해 다음의 공관들을 '에너지프로젝트 중점관리 공관'(총 46개) 및 '과학기술거점공관'(총 36개)으로 지정하였으며, 에너지·인프라 및 과학기술 외교 업무를 담당할 전문관을 채용하고 있음.

< 에너지프로젝트 중점관리 공관 지정 현황 >

구분	공관명
아시아(8)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파푸아뉴기니, 호주, 중국
러시아/중앙아(5)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총),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유 럽(8)	튀르키예, 독일, 영국, 덴마크,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본(분), 불가리아
북 미(3)	미국, 캐나다, 휴스턴(총)
중남미(7)	멕시코, 베네수엘라, 브라질, 에콰도르, 칠레, 콜롬비아, 페루
중 동(7)	사우디, 알제리, 이라크, 이란, 카타르, 쿠웨이트, UAE
아프리카(8)	가나, 가봉, 나이지리아, 남아공, 앙골라, 카메룬, DR콩고, 마다가스카르

<과학기술거점공관 지정 현황 >

구분	공관명
유 럽(12)	독일(본분관 포함), 네덜란드, 러시아, 스웨덴, 스위스,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미 주(9)	미국,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캐나다, 멕시코,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아시아 · 대양주(7)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일본, 중국, 뉴질랜드, 호주
아프리카 · 중동(3)	아랍에미리트, 이스라엘, 튀니지
다 자(5)	오이시디, 유네스코, 유럽연합, 제네바, 아세안

<공관별 에너지·인프라 전문관 채용현황>

순번	공관	채용 인원	집행 규모 (단위: 달러)	채용 기간
1	주휴스턴총영사관	1	60,000	2018. 10. 24. ~ 현재
2	주말레이시아대사관	1	47,273.3	2017. 12. 1. ~ 현재
3	주베트남대사관	1	21,945.5	2024. 2. 19. ~ 현재
4	주호주대사관	1	71,033.4	2018. 4. 26. ~ 현재
5	주블라디보스톡대사관	1	69,590	2012. 7. 30. ~ 현재
6	주우즈베키스탄대사관	1	29,567.3	2023. 12. 1. ~ 현재
7	주카자흐스탄대사관	1	22,363.5	2024. 2. 12. ~ 현재
8	주투르크메니스탄대사관	1	21,061	2024. 2. 15. ~ 현재
9	주아제르바이잔대사관	1	38,844	2019. 11. 6. ~ 현재
10	주덴마크대사관	1	54,668.1	2021. 8. 1. ~ 현재

11	주튀르키예대사관	1	48,000	2015. 7. 1. ~ 현재
12	주불가리아대사관	1	26,649	현재 교체채용 진행 중
13	주브라질대사관	1	28,486	2023. 11. 16. ~ 현재
14	주칠레대사관	1	33,540	2022. 3. 7. ~ 현재
15	주페루대사관	1	39,000	2015. 2. 2. ~ 현재
16	주카타르대사관	1	44,746	2023. 12. 3. ~ 현재
17	주이란대사관	1	19,965.3	2024. 2. 18. ~ 현재
18	주가나대사관	1	22,919	2017. 8. 1. ~ 현재
19	주가봉대사관	1	20,677	2023. 9. 18. ~ 현재
20	주마다가스카르대사관	1	9,222.4	2022. 1. 20. ~ 현재
21	주카메룬대사관	1	9,007	2023. 7. 19. ~ 현재

<공관별 과학기술전문관 채용현황>

순번	공관	채용 인원	집행 규모 (단위: 달러)	채용 기간
1	주네덜란드대사관	1	56,160	2022. 12. 1. ~ 2023. 12. 1.
2	주시애틀총영사관	1	108,000	2022. 7. 1. ~ 2023. 7. 1.
3	주이스라엘대사관	1	60,000	2023. 2. 1. ~ 2024. 1. 31.
4	주체코대사관	1	37,524	2022. 8. 1. ~ 2023. 7. 31.

□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국제협력 강화 사업 집행 부진 해소 필요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국제협력 강화」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 이슈에 대한 국제적 리더십을 유지·강화하고, 범지구적 환경이슈 및 해양환경외교 이슈에 대응하며, 대국민 녹색경제외교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예산액은 4억 3,200만원이었으나, 이 중 2억 9,100만원이 집행되었음.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국제협력 강화 사업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

	2021			2022			2023			2024
	예산액(추경)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추경)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녹색 경제 관련 다자협력	46	49	106.5	46	22	47.8	46	38	82.6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참여	35	24	68.6	31	160	516.1	31	61	196.7	
녹색성장주간행사 개최 지원	52	10	19.2	48 (16)	7	14.6 (43.8)	48	25	52.1	
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 운영	67	53	79.1	75	40	53.3	75	65	86.7	
해외환경프로젝트 발굴 및 환경시장개척 지원	62	0	0	62 (54)	0	0	62	26	41.9	
그린라운드테이블	50	52	104.0	50	32	64.0	50	36	72.0	
P4G 이사회 의장국 활동 및 참여	-	-	-	120	28	23.3	120	40	33.3	
합 계	**312**	**188**	**60.2**	**432 (392)**	**289**	**66.8 (73.7)**	**432**	**291**	**67.4**	

내내역사업 중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참여」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2023년도 예산 집행률이 60% 내외로 전반적으로 과소 집행되고 있음.

먼저, 「해외환경프로젝트 발굴 및 환경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사업은 환경부 등과의 협업을 통해 환경시장의 잠재력이 풍부한 국가에 민·관 합동 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및 국내기업의 환경 분야 해외 진출과 해외 환경 프로젝트 발굴을 위한 국제포럼 개최 사업으로, 2021년도부터 연례적으로 집행이 부진함.

이에 대해 외교부는 코로나19 사정으로 현실적으로 기업들의 해외 진출

이 어려웠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된 2023년도에도 집행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는 타당하지 않다고 보임[54]. 동 사업과 유사하게 우리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양자경제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3032-401)' 내 세사업이나, '해외진출기업 활동지원(3032-402)' 내 세사업의 경우 이미 코로나19 상황 이전만큼 집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코로나19 상황을 이유로 집행률 부진을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외교부는 「해외환경프로젝트 발굴 및 환경시장개척단 파견 지원」사업의 집행률 부진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현실적으로 동 사업의 집행률 제고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을 재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보임.

다음으로, 「녹색성장주간(GGGW) 개최 지원」사업은 서울에 소재한 국제기구인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본부의 총회·이사회 행사 주간에 포럼 등의 개최를 통해 녹색성장 및 기후환경 관련 이슈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한 것임. 동 사업도 2023년 예산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집행은 2,500만원에 그치고 있어 집행률이 부진한 실정임.

외교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GGGW가 지속적으로 축소, 비대면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 전개에 어려움이 있었고, 對GGGI 협력 강화 기조에 따라 GGGI 측과 환영 리셉션 공동 개최, 총회·이사회 참석 주요 인사 초청을 지

54) 외교부는 2023년도에 환경부와 협력하여 베트남에 환경산업 시장개척단을 파견하고 △ 국내 환경 기업 우수기술 소개 △ 양국 기업 간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 진출기업 간 정보, 의견 공유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등 주어진 여건 내에서 사업 집행을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임.

원했으나 참석 예정 인사들이 방한을 취소함에 따라 집행이 부진했다는 입장임.

외교부는 동 사업에 대해 향후 GGGI 측과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사업 계획을 더 면밀하게 수립하고 관련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해 나갈 필요가 있음.

다른 세사업과 달리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참여」의 경우 2023년도엔 집행률이 194%로, 2022년도 집행률이 516%에 이르렀던 것에 이어 연례적으로 초과집행되고 있음. 동 사업은 환경·해양 분야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달성을 위해, 2023년도엔 「유엔플라스틱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INC)」 참석 및 관련 협의에 예산이 집행되었음.

외교부는 상기 유엔 플라스틱협약이 성안될 경우 기후변화협약 이래 최대의 환경 협약으로 예상되고 있고, 유엔플라스틱협약 정부간협상위원회(INC)-5차 회의가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기존에 편성된 예산만으론 여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웠는바 초과 집행 했다는 입장임.

동 회의가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할 때 외교부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나, 동 사업은 회의 참석·개최를 예산 편성 단계에서도 예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긴급하게 발생한 예산 소요로 보이지 않은바 편성 단계부터 보다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했어야 할 것으로 보임[55]. 외교부는 동 사업에 연례적인 초과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임.

55) 외교부는 이에 따라 2024년도엔 동 사업의 예산을 전년대비 3배 가량 증액하여 편성하였음.

14. 외교정책연구 및 교육

가. 개 요

「외교정책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은 주요 외교 현안에 대한 우리 정부의 중장기 정책 및 비전 제시,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학술회의 개최, 외교인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무공무원의 역량검증 및 개발, 외교인재 양성을 위한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 운영 등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2개의 단위사업 및 8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3년도 예산은 149억 1,800만원이며, 이 중 125억 2,400만원을 집행함.

< 외교정책연구 및 교육 결산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2 결산	2023			2024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3500] 외교정책연구 및 교육				15,038	14,918	14,918	12,524	15,964
	[3531] 외교전략 연구 및 교육훈련			13,756	13,733	13,733	11,456	13,051
		[11] 일반	[401]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	2,738	3,269	3,269	2,793	3,498
		[11] 일반	[402] 국내외 교육훈련	6,882	8,022	8,022	6,723	7,433
		[11] 일반	[403] 외교역량 평가 및 개발교육	361	477	477	394	463
		[11] 일반	[404] 글로벌리더십 국제관계 장기연수과정	391	427	427	387	414
		[11] 일반	[405] 외교관후보자 교육과정 운영 강화	994	1,171	1,171	904	1,059
		[11] 일반	[407] 글로벌 온라인 화상회의 및 교육시스템 구축(정보화)	1,965	-	-	-	-
		[11] 일반	[408] 국민 외교아카데미 개발 및 운영	425	367	367	255	184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2 결산	2023			2024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3532] 외교전략 수립			1,282	1,185	1,185	1,068	2,913
		[11] 일반	[401] 국별 외교전략 및 외교전략총론 수립	1,282	1,185	1,185	1,068	1,067

나.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 사업은 주요 외교현안에 대한 대응전략 개발 및 중장기 외교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국내외 민·관·학 외교안보 분야 전문가 및 연구기관과의 정례 학술회의를 통해 외교정책 수립 및 외교활동상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

2023년도 예산은 32억 6,900만원, 예산현액은 33억 5,900만원이었으며, 이 중 27억 9,300만원이 집행됨.

<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3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A)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	3,269	-	-	90	-	3,359	2,793	-	566	85.4
- 외교현안연구 및 정례학술교류 활동	1,115	-	-	90	-	1,205	1,055	-	148	94.6
- 외교안보연구센터 운영	2,154	-	-	-	-	2,154	1,738	-	418	80.7

□ 당초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사업 추진 지양

1963년 9월 3일 외무공무원교육원으로 출범[56]한 국립외교원은 개원 60주년을 맞이하여 2023년 9월 1일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음.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행사 개요>

□ 기념 심포지엄 o 일시 : 2023. 9. 1.(금) 10:00 - 15:10 o 장소 : 국립외교원 1층 대강당 o 주제 : "국립외교원 60년, 새로운 미래를 향한 다짐" o 참석자 : 300여명 - 전 장관, 전 원장, 전 교수, 전 소장, 외교원 전 간부 - 원내 간부, 언론 관계자, 유관 기관 장, 본부 간부 - 글로벌리더십과정생, 외교관후보자 등 o 프로그램 - 제1세션 : 글로벌 가치 연대를 위한 외교전략 - 제2세션 : 글로벌 중추 외교를 위한 정예 외교관 양성 - 특별대담 : 대한민국 외교 구상의 산실 국립외교원 □ 타운홀 미팅 o 일시 : 2023. 9. 1.(금) 10:15 - 10:35 o 장소 : 국립외교원 2층 대회의실 o 주제 : "글로벌 외교의 미래를 꿈꾸다."

(자료: 국립외교원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동 사업은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국립외교원은 타 세부사업에서 내역변경을 통하여 경비를 조달하였으며, 일반용역계약을 체결하여 행사를 개최하였음.

56) 1963.9.3. 외무공무원교육원으로 출범한 후, 1965년 외교연구원으로, 1976년 외교안보연구원으로 개편되었다가 2012.3월 국립외교원으로 확대 개편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행사 경비 충당을 위한 내역변경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내역변경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9.5.)	국내외 교육훈련 (3531-402)	240-01	10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 (3531-401)	240-01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행사 개최
	국민외교아카데미 개발 및 운영 (3531-407)	210-01	7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 (3531-401)	210-01	
	국민외교아카데미 개발 및 운영 (3531-407)	210-01	73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 (3531-401)	210-14	

(자료: 국립외교원)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행사 용역계약 체결내역>

(단위 : 백만원)

계약명	예산액	계약금액	수탁기관	계약기간	계약 유형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행사	-	73	㈜허니컴씨엔티	8.8.~9.1	수의계약

(자료: 국립외교원)

국립외교원은 당초 기념행사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신임 원장 취임(23.3.31.)을 계기로, 외교안보 구상과 외교관 양성의 산실로 성장해 온 국립외교원의 60주년을 기념하고 역량강화 및 혁신을 통해 외교안보 싱크탱크로 거듭나기 위한 모멘텀을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동 행사를 기획하였다고 설명함.

그러나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행사는 2023년도 예산 편성 당시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었으므로 사전에 체계적인 계획을 마련하고, 행사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그 목적 및 취지에 맞게 적정 수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었음.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타 사업의 예산을 충당하여 추진한 것은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국립외교원은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목적이 다른 타 사업의 예산을 활용하는 예산 집행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다. 국민외교아카데미 개발 및 운영

「국민외교아카데미 개발 및 운영」 사업은 국민 대상별 맞춤형 대외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우리 외교의 중장기적 비전 및 다양한 외교사례와 외교현장 체험을 공유, 소통함으로써 대국민 외교소양 함양과 우리나라의 총체적 외교역량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국민외교아카데미 개발 및 운영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3년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A)	추경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국민외교아카데미 개발 및 운영	367	367	-	△80	-	287	255	-	32	69.5
- 국민외교아카데미 개발 및 운영	367	367	-	△80	-	287	255	-	32	69.5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은 3억 6,700만원인데, 예산액 대비 69.5%인 2억 5,500만원이 집행되고, 3,200만원이 불용되었음.

□ 국민외교아카데미 사업 내실화 및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국립외교원은 2020년 10월 '국민외교타운'을 출범한 데 이어 2021년 3월 국립외교원의 대외교육 기능을 확대한 '국민외교아카데미' 과정을 신설하여 운영 중임.

동 사업은 「국립외교원법」 제3조[57]에 근거하여 공공기관원, 일반국민 등에 대한 교육을 신설, 확대하여 국가적 외교역량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국민외교아카데미 연도별 교육과정>

구분	과목명	대상	인원(명)	기간
2021년	청소년외교배움터	고등학생	163	3.24.-5.27., 9.23.-11.25.
	대학생외교연수과정	대학생	49	7.19.-7.30.
	대국민열린외교강좌	일반 국민(성인)	201	4.7.-6.23., 10.13.-12.15.
	언론인 연수 과정	언론인	77	3.18., 3.19., 4.29., 4.30., 5.6., 5.7., 6.17., 6.18., 7.29.
	대국민특강	일반 국민	70	4.23.
2022년	청소년외교배움터	고등학생	131	3.31.-6.9., 10.6.-11.24.
	대학생외교연수과정	대학생	101	1.10.-1.21., 7.11.-7.22.
	대국민열린외교강좌	일반 국민(성인)	151	4.27.-7.6., 9.28.-11.30.
	언론인 연수 과정	언론인	52	6.16., 9.16., 11.24.
	대국민특강	일반 국민	65	12.7.
2023년	청소년외교배움터	고등학생	137	5.18.-7.6., 10.5.-11.23.
	대학생외교연수과정	대학생	95	1.22.-2.2., 7.10.-7.21.
	대국민열린외교강좌	일반 국민(성인)	79	5.17.-7.19.
	언론인 연수 과정	언론인	68	6.15., 7.7., 9.21., 10.19.
	대국민특강	일반 국민	100	2.22.
	열린 외교 심화 과정	지식인	9	11.3.-11.17.

57) **「국립외교원법」**
제3조(국립외교원의 직무) ① 국립외교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외교부 소속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관후보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교육 및 훈련
2. 국가 외교정책 및 전략에 관한 연구·분석 및 개발
3.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일반인 및 외국인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분	과목명	대상	인원(명)	기간
2024년	미래 지도자 과정	석·박사 연구원, 외교·안보 종사자	47	5.16.-11.22.
	청년 국제관계 실무 기본과정(상반기)	국제관계 실무 종사 청년 및 대학생	197	5.22., 5.29., 6.12., 6.26.
	청소년외교 배움터 (하계 방학 예정)	고등학생	100 (계획)	7월 - 8월
	대학생외교연수과정 (하계 방학 예정)	대학생	45 (계획)	7월 중

(자료: 외교부)

그런데 동 사업의 집행내역을 보면 2021년 사업이 시작된 이후로 예산의 이·전용 등을 통하여 예산현액이 계속하여 감소하였으며, 2023년도는 예산액 대비 집행률도 69.5%에 머무르는 등 집행률이 부진함.

특히 2023년도의 경우 '국립외교원 설립 60주년 기념행사'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동 사업 예산 8,000만원을 내역변경 감액까지 하였으며, 2024년 예산액도 50% 가량 대폭 축소되는 등 사업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모양새임.

<최근 4년간 결산내역 및 '24년 예산>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1	471	471	-	-	471	**435**	92.3	92.3	-	36
2022	540	540	-	△110	430	**425**	78.7	98.8	-	5
2023	367	367	-	△80	287	**255**	69.5	88.7	-	32
2024	184	184	-	-	-	-	-	-	-	-

<국민외교아카데미 개발 및 운영 사업 이·전용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내역변경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8.31.)	국민외교아카데미 개발 및 운영 (3531-407)	210-01	7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 (3531-401)	210-01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행사 개최
	국민외교아카데미 개발 및 운영 (3531-407)	210-01	73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 (3531-401)	210-14	

‘국민외교아카데미’ 과정은 외교부와 국립외교원만이 제공할 수 있는 그간 축적된 외교 전반에 관한 지식과 정보, 인적자원을 기반으로, 우리 국민의 외교 정책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제고를 도모하는 국립외교원만의 특색 있는 대외교육 과정임.

더욱이 동 사업은 최근의 급격한 외교환경 변화와 외교 주체 다변화에 따른 대외교육 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1년에 신설된 과정으로, 한층 더 다변화되고 복잡해지는 국제관계에 있어 그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바,

대국민 외교교육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향후 외교부는 지방 및 해외 국민 참여 등 대상 확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 다변화, 대국민 홍보 강화 등 국민외교아카데미 사업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15. 재외공관 운영

가. 개 요

「재외공관 운영」 프로그램은 외교부 재외공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운용과 제반 공관 운영에 필요한 재외공관의 인건비 및 운영비 등 기본적인 경비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외교정책 수행을 지원하고, 노후화된 재외공관 청사 및 관저의 시설 개보수 및 리모델링, 대(對) 테러 보안시설 설치 및 강화를 통한 안전 도모 사업 등을 추진하려는 것임. 동 프로그램은 5개의 단위사업과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3년도 예산은 7,309억 900만원이고, 이 중 7,120억 2,300만원이 집행되었음.

< 재외공관 운영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2022 결산	2023			2024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4000] 재외공관운영				675,977	730,909	730,909	712,023	776,394
	[4001] 재외공관 인건비			258,668	271,619	271,619	264,524	284,188
		[11] 일반	[101] 재외공관 인건비	258,668	271,619	271,619	264,524	284,188
	[4011]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184,592	184,633	184,633	194,135	144,805
		[11] 일반	[251]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184,592	184,633	184,633	194,135	144,805
	[4012] 재외공관 운영			20,233	20,268	20,268	21,409	21,000
		[11] 일반	[251] 재외공관근무여건 개선	16,900	15,901	15,901	17,151	17,063
		[11] 일반	[252] 재외공관 차량 구입 및 교체	3,333	4,367	4,367	4,258	3,937
	[4021]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177,033	201,281	201,281	184,858	208,655
		[11] 일반	[401]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177,033	201,281	201,281	184,858	208,655

(단위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2022 결산	2023 예산		2023 결산	2024 예산
					본예산	추경		
	[4031] 재외공관 안전확보 및 시설개선			35,451	53,108	53,108	47,098	117,746
		[11] 일반	[401]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	18,559	30,756	30,756	27,244	28,180
		[11] 일반	[402] 재외공관 안전강화	16,892	22,352	22,352	19,853	23,466

나. 재외공관 근무여건 개선

「재외공관 근무여건 개선」사업은 재외공관 근무자들에 대한 정착지원금, 차량보험료, 신변안전보험료 등을 지원하고, 근무환경이 열악한 공관 근무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것임.

2023년도 예산은 159억 100만원, 예산현액은 182억 9,500만원이었으며 이 중 171억 5,100만원을 집행하고 10억 6,000만원을 불용하였음.

< 재외공관 근무여건 개선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현액(B)	집행액(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A)	전년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액 대비(C/A)	현액 대비(C/B)
15,901	15,901	179	2,215	-	18,295	17,151	84	1,060	107.8	93.7

□ 전지휴양·저지대요양 예산의 만성적 부족 해소방안 마련 필요

외교부는 특수지 및 고지대주재 재외공무원 및 동반가족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차원에서 정기적 휴양 및 요양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2023년도엔 12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고 이·전용 등을 통해 6억 2,500만원을 증액하여 18억 7,500만원을 집행하였음.

전지휴양 및 저지대요양 예산은 매년 그 예산이 부족해 이·전용 등을 통해 예산을 마련하고 있는데[58], 이는 전지휴양 및 저지대요양은 기본경비 사업이나 그 비목이 국외여비로 편성되어 있어 기획재정부의 통제 비목에 해당하기 때문임. 외교부의 전지휴양 및 저지대요양 예산은 자체적인 추계에도 매년 미달하고 있는 실정으로, 환율 변동이 수반되는 경우 그 부족분은 더 증가할 수 있음.

<전지휴양 대상 공관 및 소요 비용 추계>

특수지 등급	공관수	항공료		체재비		총계($)
		일인당 상한($)	인원수	일인당 상한($)	인원수	
가	18	1,800	141	1,000	80	333,800
나	24	1,300	254	1,000	124	454,200
다	29	900	494	1,000	199	643,600
합계	71	-	889	-	403	1,431,600

(자료: 외교부)

58) 2022년도에도 12억 5,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집행액은 17억 8,000만원으로 이·전용을 통해 자체 부족분을 충당하였음.

<저지대요양 대상 공관 및 소요 비용 추계>

공관	항공료		체재비		총계($)
	일인당 상한($)	인원수	일인당 상한($)	인원수	
멕시코(연 4회)	700	46	1,000	15	47,200
볼리비아(연 3회)	1,100	9	1,000	4	13,900
에티오피아, 에콰도르, 콜롬비아(연 3회)	800	44	1,000	20	55,200
합계	-	99	-	39	116,300

(자료: 외교부)

전지휴양 및 저지대요양은 근무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장기 거주 도모를 위해 필수적이라 보인다는 점에서, 연례적인 이·전용 등을 통한 부족분 마련 관행이 없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이를 감안해 실시율을 90% 이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임.

따라서 외교부는 기획재정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전지휴양·저지대요양비의 만성적인 예산 부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재외공무원들의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보장해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다.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사업은, 재외공관 국유화 건물의 대수선 및 국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급격한 노후화로 인한 자산 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재외공관 시설 안전성을 제고하여 국격에 어울리는 외교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임.

2023년 예산은 307억 5,600만원이었으며, 이 중 272억 4,400만원이 집행되

고 11억 9,700만원이 불용되어 집행률은 88.6%임.

<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 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본예산	추경(A)	전년 이월	이·전용	예비비					예산액 대비(C/A)	현액 대비(C/B)
30,756	30,756	-	△2,315	-	28,441	27,244	-	1,197	88.6	95.8

2023년 개별 재외공관에서 이루어진 리모델링 사업 집행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음.

< '23년 재외공관 노후 리모델링사업 집행 내역 >

공관명	재외공관 이월 (단위 :미불)	지급원인행위		
		계약명	계약일	계약금액 (현지화폐)
주인도(대)	873,694.00	주인도(대) 청사 리모델링 공사	2022.12.27.	$2,024,785.00
주이탈리아(대)	1,595,490.85	주이탈리아(대) 청사 리모델링 공사	2021.12.30.	€3,730,655.85
주프랑스(대)	173,125.00	주프랑스(대) 청사 리모델링 AMO 용역	2022.04.12.	€803,000.00
주세네갈(대)	1,411,096.00	주세네갈(대) 관저 리모델링 건축공사	2023.08.03.	$2,765,500.00
주러시아(대)	160,177.00	주러시아(대) 관저 리모델링 건설사업관리용역	2023.10.15.	$513,700.00
주캐나다(대)	1,600,531.99	주캐나다(대) 관저 리모델링 공사	2023.12.21.	$2,628,000.00
주프랑스(대)	204,401.00	주프랑스(대) 영사동 리모델링 공사	2023.05.15.	€1,727,000.00
주노르웨이(대)	110,000.00	주노르웨이(대) 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	2021.11.30.	$275,000.00
주아르헨티나(대)	840,826.41	주아르헨티나(대) 관저 리모델링 공사	2023.12.28.	$2,639.138.00
주카타르(대)	672,708.00	주카타르(대) 청사 리모델링 공사	2023.12.31.	$2,049,063.00
주헝가리(대)	11,784.04	주헝가리(대) 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	2022.08.08.	$116,000.00
주페루(대)	110,000.00	주페루(대) 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	2023.12.26.	$360,000.00
주시애틀(총)	106,800.00	주시애틀(총) 관저 리모델링 설계용역	2023.12.28.	$180,000.00
주유네스코(대)	125,000.00	주유네스코(표) 관저 리모델링 공사	2023.12.27.	€1,414,000.00

□ 재외공관 관서운영경비 이월 관행 시정 필요

연도별 재외공관 리모델링 사업 집행 내역을 확인하면, 개별 공관에선 리모델링 사업 예산을 아래와 같이 매년 이월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주재국 상황에 따라 혹은 설계·시공 업체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연중 집행이 어려워지는 등 사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 '2020~23년 재외공관 노후 리모델링사업 집행 내역 >

구분	공관명	사업명	이월내역 (단위: $)	이월 집행액 (단위: $)	이월 잔액	지출원인행위(계약 내역 등)		
						계약명	계약일	계약금액 (단위: 현지화폐)
2020년								
1	주네덜란드(대)	청사 리모델링	16,395.05	16,395.05	0	주네덜란드(대) 청사 리모델링 설계 계약	2020. 07.09.	€ 25,410
2	주러시아(대)	관저 리모델링	400,000.00	160,000.00	240,000.00	주러시아(대) 관저 리모델링 설계 계약	2020. 12.30.	$400,000.00
3	주세네갈(대)	관저 리모델링	250,000.00	129,000.00	121,000.00	주세네갈(대) 관저 리모델링 설계 계약	2020. 12.31.	$242,000.00
4	주이탈리아(총)	청사 리모델링	87,859.27	87,859.27	0	주이탈리아(대) 청사 리모델링 설계 계약	2020. 09.11.	€ 260,379
5	주칠레(대)	청사 리모델링	2,028.96	2,028.96	0	청사리모델링 사전작업 용역	2020. 07.01.	135 UF (칠레페소)
6	주히로시마(총)	청사 리모델링	28,211.96	28,211.96	0	청사 리모델링 공사계약	2020. 05.27.	￥8,700,000
※ 러시아 $240,000는 주재국 문화재 인허가 지연에 따라 설계 지연으로 이월 잔액 발생 ※ 세네갈 $121,000는 토지대장 현행화(주재국 등재 부지와 실재 사용 부지 불일치)를 위한 설계 정지로 이월 잔액 발생								
2021년								
1	주네덜란드(대)	청사 리모델링	6,996.00	6996.00	0	주네덜란드(대) 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	2020. 07.09.	€ 25,410.00
2	주노르웨이(대)	청사 리모델링	165,000.00	51,304.59	113,695.41	주노르웨이(대) 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	2021. 11.30.	$275,000.00
3	주러시아(대)	관저 리모델링	54,840.62	54,840.62	0	주러시아(대) 관저 리모델링 설계용역	2020. 12.30.	$400,000.00
4	주사우디(대)	직원주택 리모델링	2,019,940.00	2,019,940.00	0	주사우디(대) 직원주택 리모델링 공사	2021. 12.28.	$2,911,000.00
5	주아르헨티나(대)	관저 리모델링	250,000.00	250,000.00	0	주아르헨티나(대) 관저 리모델링 설계용역	2021. 12.29.	$328,000.00
6	주이탈리아(대)	청사 리모델링	2,559,988.65	2,559,988.65	0	주이탈리아(대) 청사 리모델링 공사	2021. 12.30.	€3,730,655.85

7	주인도(대)	청사 리모델링	1,797,800.00	1,797,800.00	0	주인도(대) 청사 리모델링 공사	2021. 12.28.	$1,610,500.00
8	주칠레(대)	청사 리모델링	2,199,455.00	2,199,455.00	0	주칠레(대) 청사 리모델링 공사	2021. 12.29.	$2,535,000.00
9	주캐나다(대)	관저 리모델링	80,612.03	78,034.53	2,577.5	주캐나다(대) 관저 리모델링 설계용역	2021. 05.07.	C$280,544.00
※ 노르웨이 $113,695.41는 코로나19로 인한 주재국 협의 지연으로 잔액 발생 ※ 캐나다 $2,577.5는 설계 완료 후 집행 잔액 발생								
2022년								
1	주프랑스(대)	영사동 리모델링	13,189.80	13,189.80	0	영사동 리모델링 AMO 용역	2022. 09.19.	€56,400.00
2	주네덜란드(대)	청사 리모델링	83,951.04	54,101.23	29,849.81	주네덜란드(대) 청사 리모델링 CM용역	2023. 01.10.	€62,100.00
3	주러시아(대)	관저 리모델링	15,657.00	15,657.00	0	주러시아(대) 관저 리모델링 설계용역	2020. 12.30.	$400,000.00
4	주미국(대)	관저 리모델링	319,800.00	267,200.00	52,600.00	주미국(대) 관저 리모델링 설계용역	2022. 12.23.	$533,000.00
5	주사우디(대)	직원주택 리모델링	2,107,360.26	2,107,360.26	0	주사우디(대) 직원주택 리모델링 공사	2022. 12.29.	$3,947,602.00
6	주이탈리아(대)	청사 리모델링	1,967,863.26	1,967,863.26	0	주이탈리아(대) 청사 리모델링 공사	2021. 12.30.	€3,730,655.85
7	주인도(대)	청사 리모델링	1,746,769.00	1,746,769.00	0	주인도(대) 청사 리모델링 공사	2022. 12.27.	$2,024,785.00
8	주칠레(대)	청사 리모델링	401,653.75	401,653.75	0	주칠레(대) 청사 리모델링 공사	2021. 12.29.	$2,535,000.00
9	주카타르(대)	청사 리모델링	72,763.32	72,697.23	66.09	주카타르(대) 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	2022. 07.25.	$290,789.00
10	주프랑스(대)	청사 리모델링	619,555.61	619,555.61	0	주프랑스(대) 청사 리모델링 AMO 용역	2022. 04.12.	€803,000.00
11	주헝가리(대)	청사 리모델링	17,974.88	17,974.88	0	주헝가리(대) 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	2022. 08.08.	$116,000.00
※ 네덜란드 $29,849.81 및 미국 $52,600.00는 주재국 인허가 지연으로 잔액 발생 ※ 카타르 66.09는 설계 완료 후 집행 잔액 발생								
2023년								
1	주프랑스(대)	영사동 리모델링	204,401.00	0	미정	영사동 리모델링 공사	2023. 05.15.	€1,727,000
2	주러시아(대)	관저 리모델링	160,177.00	0	미정	주러시아(대) 관저 리모델링 CM용역	2023. 10.15.	$513,700
3	주이탈리아(대)	청사 리모델링	1,595,490.85	189,249.68	미정	주이탈리아(대) 청사 리모델링 공사	2021. 12.30.	€3,730,655.85
4	주인도(대)	청사 리모델링	873,694.00	221,810.00	미정	주인도(대) 청사 리모델링 공사	2022. 12.27.	$2,024,785
5	주세네갈(대)	관저 리모델링	1,411,096.00	365,949.00	미정	주세네갈(대) 관저 리모델링 공사	2023. 08.03.	$3,201,500
6	주캐나다(대)	관저 리모델링	1,600,531.99	260,410.08	미정	주캐나다(대) 관저 리모델링 공사	2023. 12.21.	$2,628,000

7	주노르웨이(대)	청사 리모델링	110,000.00	0	미정	주노르웨이(대) 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	2021. 11.30.	$275,000
8	주아르헨티나(대)	관저 리모델링	840,826.41	0	미정	주아르헨티나(대) 관저 리모델링 공사	2023. 12.28.	$2,639,138
9	주카타르(대)	청사 리모델링	672,708.00	0	미정	주카타르(대) 청사 리모델링 공사	2023. 12.26.	$2,049,063
10	주헝가리(대)	청사 리모델링	11,784.04	0	미정	주헝가리(대) 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	2022. 08.08.	$116,000
11	주페루(대)	청사 리모델링	110,000.00	0	미정	주페루(대) 청사 리모델링 설계용역	2023. 12.31.	$310,000
12	주시애틀(총)	관저 리모델링	106,800.00	2,685.64	미정	주시애틀(총) 관저 리모델링 설계용역	2023. 12.28.	$180,000
13	주프랑스(대)	청사 리모델링	173,125.00	0	미정	주프랑스(대) 청사 리모델링 AMO 용역	2022. 04.12.	€803,000
14	주유네스코(표)	관저 리모델링	125,000.00	33,893.83	미정	주유네스코(표) 관저 리모델링 공사		€1,414,000

다만 이월 행위 자체의 불가피성을 인정하더라도, 본부 차원의 결산에서 해당 이월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임. 외교부가 제출한 연도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자료에 따르면 앞서 확인한 바와 같이 재외공관 리모델링 사업에서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이월이 있었으나, 결산상에는 이월이 없었던 것으로 표기되고 있음.

< 최근 4개년도「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실집행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0	17,867	17,867	-	△7,801	-	10,066	9,243	51.7%	91.8%	-	823
2021	26,319	26,319	-	-	-	26,319	22,077	83.9%	83.9%	-	4,242
2022	28,759	28,759	-	△4,000	-	24,759	18,559	64.5%	75.0%	-	6,200
2023	30,756	30,756	-	△2,315	-	28,441	27,244	88.6%	95.8%	-	1,197

외교부는 그 사유에 대해「국고금 관리법」 시행령[59] 제37조제4항제3호

에 따라 재외공관 시설비 이월액은 외교부 본부(지출관)에 반납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공관에서 직접 이월하여 집행이 가능하며, 본부 기준으로 작성되는 외교부 결산보고서 상에는 공관 이월액이 본부 집행액으로 집계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그러나, 동 시행령은 관서운영경비의 이월이 가능하다는 포괄적인 규정일 뿐으로서, 재외공관에서 동 사업 예산을 이월시키는 경우에도 외교부가 예산 이월 사항에 대해 결산보고서 상에 생략할 수는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외교부는 재외공관 리모델링 사업 내 이월 예산과 관련하여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 시행령」상 규정의 취지를 감안한 결산 보고서 작성을 해야 할 것임.

---

59)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37조(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의 반납) 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매 회계연도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해당 지출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외공관(외국에 설치된 국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의 반납 방법에 관하여는 제14조제2항을 준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으로부터 자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선사용자금출납명령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재외공관 및 해외주재관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의 관서운영경비 사용 잔액을 다음 회계연도의 재외공관 및 해외주재관에 교부할 관서운영경비에서 빼는 것으로 반납을 대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서운영경비의 사용 잔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지급원인행위를 하고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직전 회계연도에 사용한 정부구매카드 사용금액 중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3. **재외공관의 시설비 중 지급원인행위를 하고 지급되지 아니한 경비**

16. 외교행정지원

가. 개 요

“외교행정지원” 프로그램은 외교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운용과 제반 기관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기본경비 및 사업비를 확보하여 효율적인 외교정책수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본부 인건비 및 기본경비 외에 외교 정보화, 정책연구개발(R&D), 본부 및 재외공관의 외교활동 업무지원 등을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으며, 2023년도 기준, 8개의 단위사업 및 7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3년도 예산은 2,360억 8,100만원이고, 이 중 2,134억 3,500만원이 집행되었음.

< 외교 행정지원 프로그램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2 결산	2023			2024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7000] 외교행정지원				207,702	236,081	236,081	213,435	217,268
	[7001] 본부인건비			84,962	96,292	96,292	87,730	94,669
		일반	[101] 본부 인건비	84,962	96,292	96,292	87,730	94,669
	[7002] 소속기관 인건비			8,752	9,820	9,820	8,573	9,064
		일반	[101] 국립외교원 인건비	8,752	9,820	9,820	8,573	9,064
	[7011] 본부 기본경비			43,836	46,347	46,347	44,733	44,704
		일반	[201] 기관운영 기본경비(총액)	8,695	9,564	9,564	9,520	10,072
		일반	[202] 국가외교통신 운영(총액)	12	19	19	17	19
		일반	[203] 의전장실 기본경비(총액)	29	32	32	31	32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2 결산	2023			2024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일반	[204] 국제기구국 기본경비(총액)	28	22	22	31	32
		일반	[205] 외교전략기획관실 기본경비(총액)	11	20	20	17	20
		일반	[206] 동북아시아국 기본경비(총액)	31	45	45	23	35
		일반	[207] 북미국 기본경비(총액)	27	41	41	30	41
		일반	[208] 북핵외교기획단 기본경비(총액)	24	24	24	23	24
		일반	[209] 중남미국 기본경비(총액)	21	24	24	18	24
		일반	[210] 유럽국 기본경비(총액)	28	25	25	29	28
		일반	[211] 아프리카중동국 기본경비(총액)	32	38	38	34	41
		일반	[212] 국제법률국 기본경비(총액)	17	24	24	21	24
		일반	[213] 공공문화외교국 기본경비(총액)	30	29	29	27	32
		일반	[214] 재외동포영사기획관실 기본경비(총액)	20	23	23	10	-
		일반	[215] 영사안전국 기본경비(총액)	22	35	35	26	35
		일반	[216] 여권발급 기본경비(총액)	150	173	173	154	173
		일반	[217] 국제경제국 기본경비(총액)	16	15	15	18	18
		일반	[218] 양자경제외교국 기본경비(총액)	25	24	24	34	29
		일반	[219]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기본경비(총액)	15	19	19	24	27
		일반	[220] 개발협력국 기본경비(총액)	34	34	34	40	39
		일반	[221] 아세안국 기본경비(총액)	23	30	30	28	30
		일반	[222] 평화외교기획단 기본경비(총액)	18	24	24	24	24
		일반	[223]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실 기본경비(총액)	16	24	24	18	24
		일반	[224] 아시아태평양국 기본경비(총액)	29	33	33	34	33
		일반	[251] 기관운영 기본경비	24,058	22,535	22,535	24,458	22,303
		일반	[252] 국가외교통신 운영	3,313	3,182	3,182	3,003	3,980
		일반	[253] 의전장실 기본경비	441	2,530	2,530	460	329
		일반	[254] 인천공항연락실 운영	71	74	74	72	74
		일반	[255] 국제기구국 기본경비	643	529	529	433	508
		일반	[256] 외교전략기획관실 기본경비	274	527	527	598	503
		일반	[257] 동북아시아국 기본경비	204	244	244	215	234
		일반	[258] 북미국 기본경비	207	260	260	169	242
		일반	[259] 북핵외교기획단 기본경비	136	145	145	106	138
		일반	[260] 중남미국 기본경비	224	264	264	208	254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2 결산	2023			2024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일반	[261] 유럽국 기본경비	261	448	448	437	427
		일반	[262] 아프리카중동국 기본경비	290	358	358	321	347
		일반	[263] 국제법률국 기본경비	705	719	719	578	712
		일반	[264] 공공문화외교국 기본경비	465	537	537	429	502
		일반	[265] 재외동포영사기획관실 기본경비	225	254	254	102	-
		일반	[266] 영사안전국기본경비	200	343	343	313	336
		일반	[267] 여권발급 기본경비	886	936	936	858	915
		일반	[268] 국제경제국 기본경비	215	210	210	203	202
		일반	[269] 양자경제외교국 기본경비	398	477	477	400	440
		일반	[270] 기후환경과학외교국 기본경비	257	262	262	244	276
		일반	[271] 개발협력국 기본경비	303	331	331	310	318
		일반	[272] 아세안국 기본경비	176	284	284	166	272
		일반	[273] 평화외교기획단 기본경비	129	165	165	117	160
		일반	[274] 원자력비확산외교기획관실 기본경비	157	173	173	132	166
		일반	[275] 아시아태평양국 기본경비	244	219	219	169	210
	[7018] 소속기관 기본경비			6,607	6,918	6,918	6,666	7,043
		일반	[201] 국립외교원 기본경비(총액)	2,379	2,517	2,517	2,381	2,588
		일반	[251] 국립외교원 기본경비	4,229	4,401	4,401	4,285	4,455
	[7031] 외교 정보화			43,840	51,226	51,226	44,111	36,662
		일반	[501] 외교정보전용망 구축 및 운영(정보화)	16,692	21,743	21,743	20,225	20,882
		일반	[502] 정보보호 및 외교정보시스템 구축·운영(정보화)	12,157	11,527	11,527	10,684	10,989
		일반	[503] 재외공관 영사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3,974	4,047	4,047	1,450	-
		일반	[504] 재외공관 회계 및 행정업무 고도화(정보화)	8,226	5,607	5,607	7,131	2,125
		일반	[505] D.N.A 기반 외교업무환경 지능화(정보화)	2,375	3,649	3,649	4,313	2,666
		일반	[506] 해외 주요인사 대상 E-diplomacy 강화(정보화)	415	336	336	307	-
		일반	[507]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정보화)	-	4,317	4,317	-	-
	[7032] 정책연구개발(R&D)			59	445	445	401	356
		일반	[401] 정책연구개발(R&D)	59	445	445	401	356
	[7033] 외교활동 업무지원			17,852	22,668	22,668	19,718	22,502
		일반	[401] 외교네트워크 구축	3,926	7,073	7,073	4,628	5,472
		일반	[402] 재외공관 주요행사비	6,003	7,543	7,543	6,770	7,649

프로그램	단위사업	회계기금	세부사업	예·결산				
				2022 결산	2023			2024 예산
					예산		결산	
					본예산	추경		
		일반	[403] 행정 효율성 증진 및 외교역량 강화	210	387	387	379	1,802
		일반	[404] 공관장회의 및 기타 외교현안대응	688	2,303	2,303	2,807	2,303
		일반	[405] 대한민국 외교사료집 편찬	331	321	321	317	301
		일반	[406] 외교타운 안전정비사업	2,390	1,000	1,000	884	900
		일반	[407] 외교사료관 환경개선사업	345	-	-	-	-
		일반	[408] 재외공관 국경일행사 개최지원 및 내실화	3,960	4,041	4,041	3,933	4,075
	[7034] 외교정책 대내외 이해제고			1,794	2,365	2,365	1,503	2,268
		일반	[401] 외교홍보역량강화	1,794	2,365	2,365	1,503	2,268

나. 기관운영 기본경비

「기관운영 기본경비」는 외교부 본부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 공무직 보수를 포함한 행정지원 경비, 기획조정실·대변인실·감사담당관실 운영 기본경비 등임.

< 기관운영 기본경비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 (A)	전년 이월	이·전용 등	예비비					
32,099	32,099	525	2,533	-	35,157	33,978	132	1,047	96.9

2023년도 예산액 320억 9,9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5억 2,500만원 및 이전용액 25억 3,3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51억 5,700만원 중 1억 3,200만원은 이월되고 10억 4,700만원은 불용되었으며, 339억 7,800만원은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6.9%임.

□ 재외공관 직원 교체여비 현실화 필요

2023년 재외공관 직원 교체여비 등 국외여비로 106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159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49.8%인 52억 9,100만원이 부족하여 전용 또는 자체 국외업무여비 내의 다른 사업 예산으로 부족분을 충당하였음. 주요 요인은 재외공관 이부임직원과 동반가족 등에 대한 항공료, 이전비 등 부족에 기인함.

< 일자별 교체여비 이전용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일자	조정 세부사업	금액
자체전용	9.27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1개 사업	1,000
자체전용	12.13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8개 사업	1,930
승인전용	12.22	본부 인건비 등 6개 사업	1,700
자체전용	12.29	기관운영 기본경비 등 1개 사업	163
합 계			4,793

2023년 재외공관 직원 교체여비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4차례에 걸쳐 47억 9,300만원을 전용하였고 자체 내역변경을 포함할 경우 52억원이 부족하였음.

< 연도별 교체여비 집행 현황 >

연도	요구액	편성액(A)	집행액(B)	부족액(B-A)	부족률[(B-A)/A]
2019	86억원	73억원	87억원	14억원	19.2%
2020	94억원	79억원	100억원	21억원	26.6%
2021	92억원	78억원	117억원	39억원	50.0%
2022	120억원	81억원	150억원	69억원	85.2%
2023	125억원	97억원	149억원	52억원	53.6%

전용재원은 기본경비 등 기관운영경비로서 조직운영에 소요되는 기본적 경비 및 지속적인 소규모 운영경비로 기획재정부는 제시한 기본경비 지출 한도액 범위 내에서 최대한 아껴서 제대로 쓸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과도한 기본경비의 이·전용은 기관 운영을 저해할[60] 수 있으므로 지양하여야 했음.

60) 외교부는 2019년부터 매년 전 직원 대상 갑질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2023년 전체 여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비위 조사 여비 마련을 위해 갑질설문조사 일반용역비(1천만원)를 여비로 전용하고 설문조사는 용역 계약이 아닌 부내 업무 포털 설문조사 기능을 활용하여 실시함.

교체여비는 다른 국외출장 여비와는 달리 재외공관 이부임 및 전임 등 직원 인사이동에 따라 필수적으로 집행되어야 하는 경비이나, 증액이 어려운 경상적 기본경비에 편성되어 있어 실제 소요액 대비 편성액 부족 상황이 수년간 지속되고 있음.

< 최근 3년간 교체여비 편성액 대비 집행액 현황 >

연도	편성액	집행액
2021	77억원 항공료: 1,500명 x 2.46백만원 = 36.9억원 이전비: 580명 x 6.55백만원 = 37.9억원 일 비: 1,500명 x 0.08백만원 = 1.2억원 준비금: 100명 x 0.84백만원 = 0.8억원	117억원 항공료: 2,242명 x 1.58백만원 = 35.4억원 이전비: 891명 x 9백만원 = 80.2억원 일 비: 2,242명 x 0.04백만원 = 1억원 준비금: 1,093명 x 0.08백만원 = 0.9억원
2022	81억원 항공료: 1,500명 x 2.90백만원 = 43.5억원 이전비: 580명 x 6.15백만원 = 35.7억원 일 비: 1,500명 x 0.07백만원 = 1.1억원 준비금: 100명 x 0.78백만원 = 0.8억원	150억원 항공료: 2,315명 x 2.09백만원 = 48.5억원 이전비: 834명 x 11.8백만원 = 98.4억원 일 비: 2,315명 x 0.06백만원 = 1.4억원 준비금: 521명 x 0.24백만원 = 1.2억원
2023	97억원 항공료: 1,500명 x 3.2백만원 = 48억원 이전비: 580명 x 8.14백만원 = 47.2억원 일 비: 1,500명 x 0.08백만원 = 1.2억원 준비금: 100명 x 0.89백만원 = 0.9억원	149억원 항공료: 2,260명 x 1.99백만원 = 44.9억원 이전비: 823명 x 12.5백만원 = 102.9억원 일 비: 2,260명 x 0.05백만원 = 1.1억원 준비금: 168명 x 0.26백만원 = 0.4억원

매년 국회는 직원 교체여비를 과소하게 편성하고 연례적으로 예산을 변경하여 충당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나, 뚜렷한 개선은 보이지 않고 있음. 향후 재정당국은 교체여비의 실소요액을 반영하여 외교부 기관운영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 계속사업경비를 국외여비 전용재원으로 부적정 전용 지양

외교부는 2019년부터 매년 전 직원 대상으로 갑질 실태 파악 및 분석을 통해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갑질위험진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023년에도 전문성을 갖춘 용역업체에게 위탁하기 위하여 일반용역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음.

그러나 교체여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등으로 국외여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비위 조사 여비 마련을 위해 갑질위험진단 설문조사 일반용역비 예산을 여비로 전용하였고, 설문조사는 용역 계약이 아닌 부내 업무포털을 이용한 설문조사 기능을 활용하여 실시하였으나, 전문성을 갖춘 용역업체를 이용하지 않은 관계로 설문조사에 대한 심층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설문조사는 데이터 수집에 대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접근방식을 제공하며 설문조사를 체계적으로 배열하고 연구대상에 적용하면 연구조사의 다양한 측면을 다루면서 가치있는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어 전문성을 갖춘 용역업체를 통한 체계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함.

외교부는 교체여비 등 국외여비 부족으로 기관운영경비에서 매년 전용을 실시하면서 상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례적인 사업도 국외여비의 전용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기관운영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전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임.

□ 가족동반직원에 대한 국외이전비 지급기준 개선 필요

「공무원 여비 규정」[61]에 따르면 외국으로 부임하거나,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 또는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에게 국외 이전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외이전비 지급기준은 단신이든 가족을 동반하든 상관없이 15㎥를 기준으로 실비를 지원하고 15㎥를 초과하는 경우 25㎥ 이하 이전비 실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음.

< 국외이전비 개정 연혁 >

일자	내 용	비고
1998.02.24	○ 여비지급구분표(3단계) 및 지역별 등급(9등급)에 따라 정액 (최대 $5,080, 최소 $2,180)으로 이전비 지급	
2007.11.13	○ 10㎥ 이하: 실비 ○ 10㎥ 초과, 15㎥ 미만: 10㎥ 비용 + 10㎥ 비용 초과분의 60% ○ 15㎥ 초과(25㎥ 상한): 15㎥ 비용 + 15㎥ 비용 초과분의 30%	
2010.11.10.	○ 10㎥ 이하: 실비 ○ 10㎥ 초과, 15㎥ 미만: 실비의 85% ○ 15㎥ 초과 (25㎥ 상한): 실비의 80%	
2013.01.09.	○ 15㎥ 이하: 실비 ○ 15㎥ 초과 (25㎥ 상한): 실비 80%	
2015.01.06.	○ 15㎥ 이하: 실비 ○ 15㎥ 초과 (25㎥ 상한): 15㎥ 이전비 실비 + 15㎥ 초과, 25㎥ 이하 이전비 실비의 50%	현행

최근 3년간 가족수별 이전비 신청건수를 살펴보면, 가족을 동반한 경우는 단신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화물크기·이전비 및 평균 자부담 비용

61) **「공무원 여비 규정」**
제19조(이전비의 지급 대상) ③ 국외 이전비는 외국으로 부임하는 공무원, 외국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과 외국에서 본국으로 전근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이 가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자녀 양육 및 부양가족에 요구되는 물품이 추가적으로 필요함에 따른 것임.

< 최근 3년간 가족수별 이전비 신청 건수 >

(단위: 건)

구분	이전비 신청건수			합계	평균 건수
	2021	2022	2023		
단신	301	369	347	1,017	339
동반가족(+1)	170	178	211	559	186
동반가족(+2)	176	137	136	449	150
동반가족(+3)	154	130	115	399	133
동반가족(+4 이상)	20	21	15	56	19
합계	821	835	824	2,480	827

< 최근 3년간 가족수 별 평균 화물크기 및 이전비 집행 내역 >

(단위: 백만원)

구분	평균 화물크기(㎥)	평균 이전비 집행	평균 자부담 내역
단신	17.5	10.1	0.8
동반가족(+1)	20.3	10.9	1.1
동반가족(+2)	24.2	11.4	1.0
동반가족(+3)	24.1	11.2	0.8
동반가족(+4 이상)	24.6	13.5	1.2
평균	20.6	10.8	0.9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전 세계의 최하위로 중앙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도 저출산정책을 앞다투어 마련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저출산사회에 대응하면서 가족친화적인 재외공관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족동반직원에게 최소한의 경비절감 차원에서 국외이전비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외이전비 지원이 확대될 경우 해외사무소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임직원에게도 혜택이 부여될 수 있음.

국내이전비의 경우 5톤 화물(25㎥ 상당) 이하 실비 100%를 지원하고 있어 국내이전과 국외이전 직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이전비 지원기준인 15㎥과 지원상한인 25㎥의 차이가 1백만원에 불과함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외교부는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단신 부임시는 현행을 유지하되, 가족동반시는 25㎥까지 국외이전비를 확대 지원하여 저출산사회에 대응하는 친가족적 재외공관의 환경조성에 힘쓸 필요가 있음.

다. 해외주요인사대상 E-diplomacy 강화

「해외주요인사대상 E-diplomacy 강화」는 SNS의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 여론 동향 변화에 보다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 해외 여론 주도층의 SNS를 모니터링하여 빅데이터 구축, 디지털 외교 자산 활용 및 디지털 외교 방향을 제언하기 위한 것임.

< 기관운영 기본경비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예산액		예산편성후 증감액			예산 현액 (B)	집행액 (C)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 (C/B)
본예산	추경 (A)	전년 이월	이·전용 등	예비비					
336	336	-	-	-	336	307	-	29	91.4

2023년도 예산액 3억 3,600만원 중 2,900만원은 불용되었으며, 3억 700만원은 집행되어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1.4%임.

□ 신규사업 편성시 사업의 효율성 및 집행가능성 고려

「해외주요인사대상 E-diplomacy 강화」는 언론에 대한 SNS의 영향력이 증가함에 따라, 해외 SNS 여론 동향을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2022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되었음.[62)]

동 사업은 해외언론인, 정치인 등 주요 인사의 SNS 모니터링 및 우리 외교정책과 관련된 국제여론의 사전 파악, 내·외신의 관련 보도 여부 등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디지털 외교 자산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디지털 외교방향

62) 2022년 소셜 미디어 분석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억 8,800만원 집행

을 제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외교부는 유력 외신 언론사 및 언론인, 각국 정상, 외교장관 등 정부인사, 주요 싱크탱크 및 연구자 등 주요 인사 X(구 트위터) 및 페이스북 계정 등록 및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2년 12월 서비스를 개시하였음.

시스템 구축 전에는 (주) 알에스엔에서 운용하고 있는 상용서비스[63]를 한시적으로 구독하여 시스템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 취득 및 개발과정에 활용하였고 데이터 컨설턴트 용역업체가 해외 주요인사 SNS를 직접 모니터링하였음.

구축된 시스템을 활용하여 해외 주요인사의 SNS 계정을 자동 모니터링하고 통계 추출물을 수시업무에 반영하여 위기관리 및 홍보가 가능함. 또한 데이터 컨설턴트 전담인력 2명을 통하여 일일 모니터링 보고서(200여회), 격주간(40여회), 월간(11회)를 작성하고 온라인상 특이사항 관찰 시 수시로 고지하는 등 역할을 수행하였음.

그러나 2023년 7월 SNS 채널 X(구 트위터)가 기존 정책을 변경[64]하여 시스템을 통한 모니터링을 제한하는 등 기 구축시스템 활용 여건에 차질이 발생하였고 외교부는 동 상황 변화 등을 감안하여 외부 사업자와의 시스템

63) LUCY 2.0은 아이템분석 사용자, 트렌드 검색 설정 지원, 트렌드 검색, 토픽 검색, 해시태그 검색, 프로필 검색 제공, 언론, 커뮤니티, SNS(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포함 12개 채널 데이터 제공, 검색 기간 설정, 비교 기간 설정, 아이템 셋팅 등 기능 지원, 정보량, 감성, 채널, 연관 키워드 분석 및 대시보드 제공 등을 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임.

64) 해외주요인사 SNS 모니터링 대상 계정: 트위터(현 X)(471계정) / 페이스북(167계정)
- SNS의 중요 정보 대부분을 생산하던 트위터가 AI를 활용한 데이터 자동수집이 불가능하도록 기술적으로 차단하면서 실시간·대규모 모니터링이 어려워짐에 따라, 자동화 시스템 사용의 기술적 이득이 사라짐.

구축·활용 계약을 조기 종료함.

이에 외교부는 기존 사업의 취지대로 관련 동향 모니터링 및 분석을 지속하되 별도 시스템의 활용 없이 직접 관리하면서 선별·집중된 정보 및 동향을 파악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시스템 활용과 관련된 기존 사업은 조기 종료하였음. 외교부는 예산을 절감하면서 체계적인 해외 유력인사의 동향 파악 등 사업효과성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음.

동 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반영된 지 2년만에 종료함에 따라 시스템 구축비로 집행된 예산 및 각종 행정비용은 낭비 요인으로 작용하였음. 또한 데이터 컨설턴트 전담인력 2명을 활용하여 수행하던 동향 파악, 모니터링 및 보고서 작성 등을 외교부 직원이 직접 전담하게 됨에 따라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임.

동 사업은 모니터링 대상 계정의 약 74%가 SNS 채널 X(구 트위터)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X의 급작스러운 정책 변경으로 시스템 활용 자체가 곤란해짐에 따라 사업이 중단되었으므로 다른 채널을 통하여 여론동향을 파악할 방법을 모색하거나 기존 예산으로 데이터 컨설턴트 전담인력를 활용하여 여론동향을 분석하는 방안 등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었음.

향후 외교부는 신규사업을 반영할 경우 사업의 실효성, 집행상 비효율적인 요인은 발생하지 않는지, 위탁이 아닌 직접 사업으로 수행이 가능한지 등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여야 할 것임.

17. 한국국제협력단

가. 개 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은 대한민국과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시키고 이들 국가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각종 협력사업을 수행함으로써 국제협력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한국국제협력단법」 제1조)으로 설립된 외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임.

외교부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은 ⅰ)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 ⅱ)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ⅲ)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ⅳ) 중동·CIS지역국가원조, ⅴ) 글로벌 프로그램, ⅵ) 협력사업 지원, ⅶ) 전략적협력강화, ⅷ)개발협력 및 인도적 지원 등 8개 단위사업에 39개 세부사업[65]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은 상기 출연사업 및 보조금 수탁사업을 집행하고 있음.

한국국제협력단 예산의 경우, 2023년 예산은 1조 3,490억 5,400만원이 계상되었고, 추경 및 이전용 결과 예산현액은 1조 3,038억원 5,700만원임. 이 중 1조 2,458억 6,600만원이 집행되고 185억 8,1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394억 1,000만원이 불용됨.

65) KOICA 출연금 및 보조금이 아닌 외교부 소관 「ODA 선진화」 사업을 포함할 경우 총 40개 세부사업임.

< 한국국제협력단 2023년도 결산 내역 >

(단위 : 백만원, %)

항 목 명	예 산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A)	증감 (A'-A)	예산현액 (A')				
총 합 계	**1,349,054**	**△45,197**	**1,303,857**	**1,245,866**	**18,581**	**39,410**	**95.6**
□ 인건비	**46,311**	**778**	**47,089**	**47,086**	**-**	**3**	**100.0**
협력사업지원(인건비)	45,671	915	46,586	46,586	-	-	100.0
기금운영비(인건비)	640	△137	503	500	-	3	99.4
□ 경상운영비	**1,687**	**-**	**1,687**	**1,587**	**-**	**100**	**94.1**
협력사업지원(경상비)	1,687	-	1,687	1,587	-	100	94.1
□ 사업비	**1,299,737**	**△44,684**	**1,255,053**	**1,197,193**	**18,581**	**39,279**	**95.4**
<출연사업>	**1,013,079**	**△45,334**	**967,745**	**909,942**	**18,581**	**39,223**	**94.0**
1. 국별협력사업	**660,014**	**△47,032**	**612,982**	**566,206**	**17,230**	**29,546**	**92.4**
①아시아태평양지역원조	**242,640**	**△20,881**	**221,759**	**201,042**	**7,841**	**12,876**	**90.7**
베트남(ODA)	35,329	△2,747	32,582	28,783	906	2,893	88.3
인도네시아(ODA)	19,445	△3,997	15,448	14,358	100	990	92.9
캄보디아(ODA)	23,577	△791	22,786	22,128	235	423	97.1
필리핀(ODA)	23,319	△5,182	18,137	16,724	207	1,206	92.2
방글라데시(ODA)	14,936	△640	14,296	13,506	90	700	94.5
몽골(ODA)	12,825	2,048	14,873	14,360	380	134	96.5
라오스(ODA)	23,292	2,406	25,698	25,276	-	422	98.4
스리랑카(ODA)	10,574	527	11,101	10,952	43	107	98.7
네팔(ODA)	8,538	△520	8,018	7,784	31	202	97.1
파키스탄(ODA)	8,678	△1,341	7,337	6,689	-	648	91.2
아시아태평양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60,400	△9,497	50,903	39,912	5,849	5,142	78.4
인도(ODA)	987	△572	415	411	-	4	99.1
미얀마(ODA)	740	△575	165	160	-	5	97.0
② 아프리카지역원조	**238,517**	**△12,804**	**225,713**	**212,829**	**5,165**	**7,719**	**94.3**
가나(ODA)	9,548	28	9,576	9,222	70	283	96.3

항 목 명	예 산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A)	증감 (A'-A)	예산현액 (A')				
에티오피아(ODA)	33,494	△2,385	31,109	29,697	-	1,412	95.5
아프리카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126,870	△2,673	124,197	115,324	4,951	3,922	92.9
르완다(ODA)	16,237	△597	15,640	15,329	-	311	98.0
우간다(ODA)	14,564	△10	14,554	14,334	144	76	98.5
탄자니아(ODA)	18,466	△3,788	14,678	13,984	-	694	95.3
세네갈(ODA)	12,209	△3,028	9,181	8,295	-	886	90.3
이집트(ODA)	7,129	△350	6,779	6,644	-	135	98.0
③ 중남미지역원조	**97,225**	**△9,983**	**87,242**	**79,819**	**1,898**	**5,525**	**91.5**
콜롬비아(ODA)	9,861	-	9,861	9,370	-	491	95.0
페루(ODA)	8,428	△1,511	6,917	6,703	-	214	96.9
볼리비아(ODA)	8,599	△191	8,408	7,361	-	1,047	87.6
파라과이(ODA)	10,892	-	10,892	10,600	-	292	97.3
중남미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59,445	△8,281	51,164	45,784	1,898	3,482	89.5
④ 중동·CIS지역원조	**81,632**	**△3,364**	**78,268**	**72,516**	**2,326**	**3,426**	**92.7**
우즈베키스탄(ODA)	14,203	△2,275	11,928	11,310	184	435	94.8
중동CIS지역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60,169	△2,491	57,678	52,927	1,947	2,805	91.8
키르기스스탄(ODA)	7,160	1,501	8,661	8,278	196	187	95.6
타지키스탄(ODA)	50	△49	1	1	-	-	95.7
우크라이나(ODA)	50	△50	-	-	-	-	-
2. 글로벌프로그램	**229,553**	**△505**	**229,048**	**221,464**	**404**	**7,180**	**96.7**
해외봉사단 및 국제개발협력인재양성	100,858	207	101,065	96,446	-	4,619	95.4
글로벌연수	52,473	△511	51,962	51,129	404	429	98.4
국제기구협력	51,899	△174	51,725	51,061	-	664	98.7
신성장 파트너십 프로그램(ODA)	24,323	△27	24,296	22,829	-	1,467	94.0
3. 협력사업지원	**63,366**	**△1,770**	**61,596**	**59,468**	**765**	**1,363**	**96.5**
협력사업지원	63,366	△1,770	61,596	59,468	765	1,363	96.5
4. 전략적 협력강화	**8,000**	**△4,075**	**3,925**	**3,415**	**181**	**329**	**87.0**

항 목 명	예 산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A)	증감 (A'-A)	예산현액 (A')				
전략적 협력강화	8,000	△4,075	3,925	3,415	181	329	87.0
5. 개발협력 및 인도적지원	**52,146**	**8,047**	**60,193**	**59,389**	**-**	**804**	**98.7**
민관협력사업	47,946	△363	47,583	46,785	-	798	98.3
인도적지원(출연금)	4,200	8,410	12,610	12,604	-	6	100.0
<보조사업>	**286,031**	**936**	**286,967**	**286,911**	**-**	**56**	**100.0**
6. 개발협력 및 인도적지원	**286,031**	**936**	**286,967**	**286,911**	**-**	**56**	**100.0**
인도적지원(보조금)	286,031	936	286,967	286,911	-	56	100.0
<수탁사업>	**627**	**△287**	**340**	**340**	**-**	**-**	**100**
7.질병퇴치기금사업	**464**	**△176**	**288**	**288**	**-**	**-**	**100**
민관협력 국제질병퇴치	114	△22	92	92	-	-	100.0
국제기구협력 국제질병퇴치	280	△147	133	133	-	-	100.0
글로벌 국제질병퇴치	70	△7	63	63	-	-	100.0
8. 기금운영비	**163**	**△111**	**52**	**52**	**-**	**-**	**100.0**
기금운영비	163	△111	52	52	-	-	100.0
□ 예비비	**1,319**	**△1,291**	**28**	**-**	**-**	**28**	**-**
협력사업 지원(경평성과급)	1,319	△1,291	28	-	-	28	-

※ '증감'은 전년도 이월액, 전용액, 미배정액을 포함한 금액임

나. 검토의견

1) 총괄

□ 국가별 협력사업 내 멀티바이 사업 증가를 감안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

국가별 협력 사업 내 멀티바이 사업(이른바 '다자성 양자' 사업[66])은 양자개발협력 추진이 어려운 국가나 지역에서 국제기구의 전문성을 활용한 개발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개별 국가들이 국제기구에 재원을 기여하고 국제기구가 이를 통해 개발협력 사업을 시행하는 것을 말함. 한국국제협력단의 멀티바이 사업은 2018년 29건에서 2023년 88건으로 그 수가 크게 증가하였고, 집행 규모도 2018년 447억 5,500만원에서 2023년 1,265억 5,3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음.

<연도별 국별 협력사업 및 멀티바이 사업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국가별 협력사업 전체					멀티바이(다자성양자)				
	예산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건수	예산	예산현액 (C)	집행액 (D)	집행률 (D/C)	건수
'18년	327,809	330,013	307,234	93.1	267	35,869	45,485	44,755	98.4	29
'19년	323,807	318,447	308,184	96.8	264	51,456	58,686	58,503	99.7	44
'20년	366,144	278,092	261,975	94.2	290	76,818	66,925	65,461	97.8	58
'21년	401,324	361,234	335,297	92.8	361	84,263	110,418	107,444	97.3	82
'22년	428,284	387,637	367,929	94.9	377	100,395	105,191	102,324	97.3	83
'23년	518,988	475,526	454,577	95.6	394	120,376	129,831	128,225	98.8	89

66) 다자협력은 공여국 정부와 국제기구 간 협력으로, 순수다자(core)와 다자성양자(non-core)로 구분되는데 순수다자는 지원 대상을 특정하지 않는 재원으로 통계상 다자원조로 표기되고, 다자성양자는 수혜 국가/분야 등 용처를 특정하는 재원으로 통계상 양자원조로 표기됨. 다자성양자 사업의 재원은 지정기여금과 신탁기금으로 구성됨.

다만 멀티바이 사업의 집행 규모와 건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는 부족한 것으로 보임.

먼저 멀티바이 사업은 양자 개발협력 사업이 어려운 국가·지역 위주로 보완적·제한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한 것이나, 일부 국가들의 경우 한국국제협력단의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고 우리나라의 중점협력국으로 설정되어 있는 등 양자간 개발협력이 기존에 활발했음에도 불구 해당 국가에서의 사업을 모두 멀티바이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한국국제협력단은 국가별 협력사업 내 멀티바이 사업의 적정비중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나, 멀티바이 사업으로 집행되는 예산 및 사업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보다 구체적인 집행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임.

<지역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해당 국가 내 사업을 멀티바이 형태로 집행한 사례>[67]

(단위: 백만원)

국가	내역사업명	예산	현액	집행	불용
DR 콩고	DR콩고 분쟁취약지역의 젠더기반폭력 예방과 통합 지원을 통한 평화정착 사업 (UNDP, UNFPA)('20-'26/860만불)	2,000	1,940	1,939	1
	DR콩고 오트우엘레주 산림전용 및 황폐화방지 이니셔티브(REDD+)를 통한 통합적 기후변화대응 사업 (UNDP)('21-'26/900만불)	2,000	1,800	1,774	26

67) 다만 한국국제협력단은 하기 사업들의 경우, 국제기구를 활용한 멀티바이 형태 사업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함.

※ DR콩고-젠더, 영양실조 등 국제기구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업과 치안이 매우 불안정한 지방에서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긴요한 사업

※ 콜롬비아 - 마약 등 국제기구 전문성이 긴요한 사업과 분쟁지역(PDET)을 사업지로 둔 사업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이 긴요한 사업

※ 과테말라 - GCF(Green Climate Fund)와 공동 출자한 사업 제외 - GCF와 공동 펀딩을 통해 투자하는 사업으로서, 국제기구와의 협력 고도화 관점에서 긴요한 사업
(참고: GCF사업의 경우 GCF인증 기관만 사업수행 가능)

	DR콩고 킨샤사 주 초등교육 접근성 및 교육의 질 개선사업(UNICEF)('21-'25/650만불)	500	670	634	36
	DR콩고 카사이성트랄 주 만성영양실조 예방 사업 (WFP, UNICEF)('22-'26/800만불)	2,000	2,000	1,967	33
콜롬비아	콜롬비아 WFP 분쟁 피해지역 여성의 경제적 자립 및 권익 증진사업('19-'24/450만불)	128	5	4	1
	콜롬비아 뿌뚜마요 지역 마약 대체작물 재배 및 상업화를 통한 지역 농가 경제 강화 사업 (UNODC)('20-'25/620만불)	1,486	1,709	1,697	12
	콜롬비아 농촌 여성의 경제 역량강화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소득 개선사업 (UN Women, UNFPA)('21-'26/680만불)	2,005	2,178	2,156	21
	콜롬비아 2개 분쟁피해지역(PDET) 평화지속화를 위한 지역사회 거버넌스 역량강화사업 ('22-'26/640만불)	1,613	961	957	4
	콜롬비아 2개 분쟁피해지역(PDET)의 가치사슬 강화를 통한 소농 소득 증대사업(UNDP) ('22-'27/940만불))	1,975	2,485	2,479	6
과테말라	과테말라 중북부 지역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복원력 강화 사업 ('18-'23/700만불)	240	32	29	3
	과테말라 GCF 서부고원지대 기후변화 복원력 강화 사업('19-'26/500만불)	20	1,352	1,348	4
	과테말라 중부 및 동부 농촌지역 기후회복력 강화 사업(GCF)('21-'28/700만불)	2,579	1,789	1,782	7

둘째, 멀티바이 사업에 대한 집행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임. 멀티바이 사업은 한국국제협력단이 국제기구에 송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집행률을 산출하는 것이 아닌, 교부된 금액으로 국제기구가 실제 사업을 얼마나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나 국제기구별로 회계 주기나 회계 작성 기준이 상이할 뿐만 아니라, 일부 사업들의 경우 전년도 집행 상황에 대한 재정보고서도 송부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현재 멀티바이 사업의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 한국국제협력단이 국제기구에 송금

한 금액으로 산출되고 있는데, 이는 국제기구 단계의 실집행률과는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도 명목집행률은 100%에 달하나 국제기구 단계의 실집행률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업이 다수 확인되고 있음.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은 이를 감안해 국제기구와의 협의를 통해 집행 관련 상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연례보고서 내 국제기구의 실집행액을 고려하여 해당 국제기구와 실집행률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등 국가별 협력사업 내 멀티바이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임[68].

<2023년 집행되었으나 국제기구로부터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사업>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예산	현액	집행	불용	집행률
베트남 폭력피해 여성/여아 예방 및 보호모델 강화사업(UNFPA)('23-'26/500만불)	100	9	2	7	22%
이란 국립 직업훈련교사 훈련원 현대화사업 ('17-'26/750만불)	594	799	768	31	96%

<명목집행률은 높으나 국제기구의 실집행률이 낮은 사업>

(단위: 백만원)

내역사업명	예산	현액	집행	불용	집행률	(국제기구) 실집행액	(국제기구) 실집행률
아프가니스탄 카불시 바르치 지역 식수개발사업('14-'24/650만불)	50	112	111	1	99%	5	4.5
에티오피아 기후변화 대응 산림 및 토지복원 사업 (GGGI)('21-'25/1,200만불)	3,404	4,158	4,037	121	97%	859	21.3

68) 이에 대해 한국국제협력단은 국제기구와의 협력은 외교사안 및 공공부문 간 협력(public-public)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국제기구 자체 내규·절차에 따른 공인 재정보고서에 대한 신뢰가 바탕에 전제되어 있는 바, 국제기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용하는 회계 기준을 변경하는 별도 표준 기준을 마련하여 배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임.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소말리주 분쟁지역 이주민 사회경제적 회복력 구축 지원사업 (IOM)('22-'25/1,000만불)	3,805	5,738	5,728	10	100%	1,644	28.7
아프리카연합(AU) 간염 예방 및 통제 지원사업('21-'25/500만불)	2,053	2,443	2,416	27	99%	337	13.9
콜롬비아 2개 분쟁피해지역(PDET)의 가치사슬 강화를 통한 소농 소득 증대사업 (UNDP)('22-'27/940만불))	1,975	2,485	2,479	6	100%	335	13.5
엘살바도르 경제 재건을 위한 역동적 소상공 개발사업 (UNDP)('21-'26/660만불)	4,068	3,197	3,179	18	99%	1,393	43.8
이란 내 아프간 여성 난민을 위한 통합적 성생식 보건 및 보호 서비스 지원사업(UNFPA) ('23-'26/500만불)	505	530	519	11	98%	257	49.5
키르기즈공화국 UNDP 소방구조 역량강화사업('19-'24/770만불)	750	522	514	8	98%	81	15.8

□ 분쟁 및 취약국지원 사업 예산 편성의 취지를 살리는 집행 필요

분쟁 및 취약국지원 사업은 국제적인 취약국 지원 파트너십 강화 움직임에 부응하기 위해 분쟁이나 각종 위기에 취약한 국가를 지원하는 것으로, 2023년 336억 7,6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318억 1,700만원이 집행되었음. 분쟁 및 취약국지원 사업이 외교부 무상 ODA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23년 집행액 기준 약 1.7%임.

<분쟁 및 취약국지원 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23년도 본예산	2023년도 집행	주요 내용
분쟁 및 취약국지원 (내역사업)	33,676	31,817	취약국의 평화, 복원력 및 제도 구축에 기여하고 국제적인 취약국 지원 파트너십 강화
아시아태평양	7,480	6,440	
아프리카	16,380	16,358	
중남미	4,431	4,410	
중동·CIS	5,385	4,609	

분쟁 및 취약국지원 사업은 분쟁·위기의 사전 예방 및 위기 직후 초기 복구 단계에서 회복력 강화를 위해 여타의 ODA 사업과 달리 그 편성 절차를 간소화하였음. 일반적인 ODA 사업은 편성 2년 전 예비검토 단계부터 시작해, 1년 전 심사·조정 및 국회 심의 단계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분쟁 및 취약국지원 사업은 N-1년 발굴 또는 N년 발굴을 기본으로 운영되고 있음. 2023년 신규사업의 경우 23년 2월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아 4월 예비검토, 5~7월 예비조사, 8월 심사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됨에 따라 대부분의 사업이 4분기 중 약정체결이 이루어져 본격적인 예산집행이 지연되었고, 이로 인해 여타 2년 주기로 편성되는 ODA 사업과 예산 집행 과정에서의 차별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예를 들어 미얀마 4개 주 취약농가 식량안보 개선 및 생계지원 사업의 경우 9억 3,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현재까지 실집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69], 부르키나파소 농업생산 자본 지원 및 경제활동을 통한 청년 및 여성 역량 강화 지원사업은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2,300만원만이

69) 한국국제협력단은 해당 사업의 약정 체결이 '23.12로 늦어져 예산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입장임.

집행되고 있는 상황임[70].

<2023년 신규 분쟁 및 취약국지원 사업 중 집행이 부진한 사업 내역>

내역사업명	'23				'24 예산	집행부진 사유
	본예산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미얀마 라카인, 몬, 카인주 분쟁 및 재해·재난으로 취약해진 지역사회 회복탄력성 강화사업(IOM, 2023-2025/400만불)	405	405	2	0.5%	2,406	ㅇ ▲'23년도 사업대상지 분쟁 악화로 기초선 조사를 포함한 조사 제반 착수 지연(예산집행 순연 발생), ▲단, 약정금 지급 3개월 내, 1차년도 약정금 중 1분기 계획예산(35,276 USD)의 59%(20,910 USD)를 기집행
미얀마 카친주 국내난민 귀환 및 재정착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회복력 강화사업(UNHCR-UNFPA, 2023-2025/400만불)	0	0	0	0%	2,303	ㅇ`23.12월말 약정 체결*, 연례보고서 제출 시기 미도래('25년 1월)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나, 연례보고서 접수 후 사업관리 통해 확인 예정
미얀마 4개 주 취약농가 식량안보 개선 및 생계지원 사업(FAO, 2023-2026/400만불)	938	938	0	0%	1,432	ㅇ `23.12월초 약정 체결*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편이나, 사업 정상 착수하여 공정율 만회를 위해 노력 중
파푸아뉴기니 모로베주 통합적 식수위생 접근을 통한 평화 구축사업(UNICEF, 2023-2026/400만불)	410	410	79	20%	1,597	ㅇ `23.10월 약정 체결* 12월 중 약정금 지급으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편
우간다 카라모자 지역 분쟁 영향 및 취약 공동체 내 회복력 구축 (UNDP, 2023-2025/500만불)	806	808	159	21%	3,299	ㅇ ▲약정 체결(23.11월*) 이후 시간 부족으로 사업 활동·예산 집행 불가, ▲사업 착수 제반활동(사업이행기관 선발, 기초선 조사 업체 R&R 수립 등) 진행하였으며, ▲'24.3월 대사관·코이카 사무소의 사업 착수식 참석 및 사업지 방문, ▲우간다 사무소 주도 정기 모니터링 예정
짐바브웨 국적 남아공 이주민의 특별면제허가(ZEP) 제도 폐지에 따른 동부 4개 지역 귀국이주민 재통합 지원사업(IOM, 2023-2026/400만불)	307	307	29	9.5%	1,264	ㅇ `23.10월 중 약정 체결* 및 1차약정금 지급되어 예산 집행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24.5월 중 예정된 남아공 대선(총선) 영향으로 인한 치안 불안정 요소가 발생하기 시작함
니제르 난민-원주민 간 평화적 사회공존을 위한 지속가능 생계 역량강화 지원사업(UNHCR, 2023-2026/450만불)	0	0	0	0%	965	ㅇ동 사업은 니제르 내 쿠데타 발발로 인해 사업 순연됨. 따라서, 현재 약정 미체결 상태로 예산 집행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70) 한국국제협력단은 해당 사업의 약정 체결이 '23.11로 늦어져 예산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입장임.

부르키나파소 농업생산자본 지원 및 경제활동을 통한 청년 및 여성 역량 강화 지원사업(WFP, 2023-2025/400만불)	395	400	23	6.1%	2,355	ㅇ동 사업은 `23년 11월 중 약정이 체결*되고 월말에 약정금이 지급됨에 따라 예산집행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분쟁취약) 중앙아프리카공화국 기초 인프라, 생계 지원, 평화활동을 통한 사회 안정 및 사회통합 향상 사업(UNDP)('23-'25/372만불)	367	364	91	25.2%	2,993	ㅇ23년도 약정액 삭감으로 예산이 불충분하여 건축/건물 개·보수 과업 용역 입찰 및 예산 소진 지연
(분쟁취약) 제로헝거 빌리지: 기니 전역 내 제로헝거 달성을 위한 지역사회 단위 회복성 강화사업(WFP)('23-'25/400만불)	375	375	0	0%	3,224	ㅇ동 사업은 `23년 11월 중 약정이 체결*되고 12월 중 약정금이 지급되어 예산집행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분쟁취약) 예멘 여성 권리보호 및 젠더정의 강화를 위한 법치제도 조기회복 및 지역사회 사법접근성 강화사업(UNDP)('23-'26/400만불)	679	679	0	0%	1,487	ㅇ ▲약정 체결(23.11월*) 이후 시간 부족으로 사업 활동·예산 집행 불가, 요르단(예멘 겸임) 사무소 주도 정기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 진행 점검 중, ▲사업 착수 행사, 사업지 방문, 이해관계자 면담을 통해 효율적 사업 진행을 위한 제반 작업 실시 완료
(분쟁취약) 예멘에서 평화를 위한 물: HDPN에 기반한 물 관련 분쟁 해결 및 기후변화 적응에서 여성의 역할 강화사업(IOM) ('23-'25/400만불)	802	802	0	0%	2,212	ㅇ `23.11월 말에 약정을 체결*하여 예산집행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사업 정상 착수하여 공정율 만회를 위해 노력 중임
레바논 북동부 취약지역 기후 회복력강화를 통한 분쟁예방 및 평화구축사업 (UNEP, 2023-2026/400만불)	802	802	0	0%	1,474	ㅇ사업 약정서 문구에 대한 기구측 합의 불가로 기구로부터 재정기여 철회 요청 접수됨
시리아 분쟁 피해지역 대상 지역참여형 복구전략을 통한 사회적 결속과 통합 촉진사업(UNDP, 2023-2026/372만불)	802	802	0	0%	1,353	ㅇ약정체결(23.12월*) 이후 실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시간부족으로 사업 활동 및 예산 집행 불가, 요르단(시리아 겸임) 사무소 주도 정기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 진행 점검 중.
콜롬비아 내 베네수엘라 난민 및 이주민 지역사회 통합지원 사업 (IOM, 2023-2026/400만불)	2,190	2,181	0	0%	1,097	ㅇ`23.12월 초에 약정을 체결*하여 예산집행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사업 정상 착수하여 공정율 만회를 위해 노력 중임

이와 같이 다수의 사업이 집행이 부진하다면 시행절차를 간소화해 분쟁 및 위기의 사전 예방과 위기 직후 초기복구 단계에서 회복력 강화를 위한 분쟁 및 취약국지원 사업 예산 편성이 일반적인 ODA 사업 예산의 편성 절차에 따라 편성되는 사업과 차별화될 수 없음. 외교부는 분쟁 및 취약국지원 예산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국제기구와의 약정 체결 및 약정금 지급 단계에서 사업 지연 요소를 줄일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신규 사업에 대한 초년도 사업 착수 비율 상향 노력 필요

국별 협력사업이 새로이 편성되는 경우, 한국국제협력단은 '협의의사록(RD: Record of Discussion)'을 체결해 수원국/수원기관과의 사업의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사업관리기관(PMC: Project Management Consultant)'을 선정해 한국국제협력단의 위탁에 따라 사업관리를 총괄하도록 함. 이에 따라 선정된 사업관리기관은 협의의사록에 따른 사업에 착수함.

그러나 2023년도 신규 국가별 협력사업의 초년도 사업 현황을 확인해보면, 48개의 신규 협력사업 중 사업에 착수한 사례가 전체의 30% 수준에 불과하고 협의의사록이 체결되지 못하거나 사업관리기관이 선정되지 못한 사례가 과반에 달하는 등 초년도 사업 착수 비율이 낮은 편임. 국가별 협력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N-2년부터 사업을 계획하고 심의·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에도 불구, 그 집행 과정에선 사업 착수조차 하지 못하는 비율이 과반에 해당하는바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보임.

<신규 국가별 협력사업 초년도 사업 현황>

(단위: 건, %)

총 신규사업 수	초년도 사업착수	초년도 사업착수 지연			
		소계 (A+B+C)	협의의사록 미체결 (A)	사업관리기관 미선정 (B)	사업관리기관 선정 후 착수 준비 (C)
48	15	33	12	13	8

한국국제협력단은 사업 초년도부터 착수가 지연되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예산 편성 전 사업 계획 단계부터 사업 지연 요소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 단계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해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개발협력 관련 조달의 과도한 긴급공고 자제 필요

한국국제협력단은 조달시스템을 통해 개발협력 사업과 관련된 조달 입찰을 진행하고 있음. 조달 입찰의 방식은 크게 일반공고와 긴급공고로 구분되는데, 긴급공고는 보다 신속하게 사업수행자를 선정하기 위해 일반공고 대비 입찰 공고 기간을 단축하고 있음[71].

<한국국제협력단의 조달 규모 및 계획>

(단위: 백만원, 건, %)

구분		2023년		2024년 계획			증감 (B-A)	증감률
		계획(A)	결과	소계 (B=C+D)	이월 (C)	본예산 (D)		
총액		316,035	296,674	376,223	33,545	342,677	60,188	19.0
건수		195	210	206	25	181	11	5.6
유형	용역	144	160	153	15	138	9	6.3
	물품	47	50	51	10	41	4	8.5
	시설공사	4	-	2	-	2	△2	△50.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는 긴급공고를 할 수 있는 요건으로 ① 재공고입찰의 경우, ②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③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④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을 들고 있음.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24.6.30.)」을 통해 국가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긴급입

71) 일반공고의 입찰기간은 40일이나 긴급공고의 입찰기간은 10일

찰 발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기획재정부의 지침은 코로나 위기에 따른 내수 경제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됨. 이에 따라 한국국제협력단은 2021년과 2022년 각각 전체 원조조달 사업의 89.5%(220건 중 197건), 86.2%(254건 중 214건)를 긴급조달 방식으로 발주하였음.

그러나 코로나 위기가 해소된 2023년에도 여전히 한국국제협력단이 긴급공고 위주로 원조조달 공고를 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보임. 2023년 한국국제협력단은 전체 원조조달 공고 중 84.7%(210건 중 178건)를 긴급공고로 하였는데, 이는 코로나 사태 이전인 2019년 긴급공고 비율인 7%의 약 12배에 해당함. 또한 한국국제협력단 조달시스템(nebid.koica.go.kr)의 2024년 원조조달 공고도 대부분 긴급공고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됨.

<한국국제협력단의 원조조달 사업 관련 통계>

(단위: 건, %)

구분	총 발주건수	긴급 발주건수	유찰		발주지연[72]		
			유찰건수	유찰률	최초 발주계획	이월	지연율
2020년	162	78	68	42.0	152	62	40.8
2021년	220	197	108	49.1	143	73	51.0
2022년	254	219	128	50.4	166	52	31.3
2023년	210	178	98	46.7	250	40	16.0

긴급공고는 일반공고와 달리 낙찰률이 높기 때문에 실무적 편의성은 있다보이나, 긴급공고 위주로 입찰을 하는 경우 신규 업체가 진입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기존업체 대상 수의계약의 형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72) 연초 발주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당해연도에 계약이 체결되지 못함을 의미

점에서 입찰 공정성의 관점에서 타당성이 낮다고 보임. 비록 기획재정부가 2024.6.30.까지 원칙적으로 긴급입찰 발주가 가능하다는 지침을 두고 있으나, 이는 기계적으로 긴급공고를 원칙으로 발주하라는 뜻이 아니라 조달 기업 지원의 관점에서 발주 기관이 탄력적으로 운용하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임.

따라서 한국국제협력단은 긴급공고 위주의 원조조달입찰을 지양하도록 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긴급공고의 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도록 해야 할 것임.

2) 아시아태평양 지역원조

「국별 협력사업」은 양자무상원조를 위한 것으로, 2023년도 본예산은 6,600억 1,400만원이나, 전년도 이월액 및 전용액 등으로 인한 감액분 470억 3,200만원을 고려한 예산현액은 6,129억 8,200만원임.

이 중 92.4%에 해당하는 5,662억 600만원이 집행되고, 172억 3,00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95억 4,600만원이 불용됨. 이에 국별협력사업의 예산현액 대비 92.4%로 나타나고 있음.

< 2023년도 국별협력사업 결산 개요 >

(단위 : 백만원, %)

항 목 명	예 산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A)	증감 (A'-A)	예산현액 (A')				
국별협력사업 (지역원조) 총괄	660,014	△47,032	612,982	566,206	17,230	29,546	92.4
① 아시아태평양지역원조	242,640	△20,881	221,759	201,042	7,841	12,876	90.7
② 아프리카지역원조	238,517	△12,804	225,713	212,829	5,165	7,719	94.3
③ 중남미지역원조	97,225	△9,983	87,242	79,819	1,898	5,525	91.5
④ 중동CIS지역원조	81,632	△3,364	78,268	72,516	2,326	3,426	92.7

※ '증감'은 전년도 이월액, 전용액, 미배정액을 포함한 금액임

□ 주요국 사업들의 과도한 전용 조정 지양 필요

2023년 국가별 프로젝트 사업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집행률(예산현액 대비 집행액)이 상당히 높아 개별 협력사업들의 집행이 잘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그러나 집행률을 집행액 대비 본예산으로 산출하는 경우 기존에 산출된 집행률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함. 중점협력국 중 가장 많은 국가별 협력사업 예산이 배정되는 베트남의 경우 2023년 수행된 26개의 사업 중 본예산과 집행액 간 차이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이 11건에 달하고 있음.

이와 같은 집행률의 괴리가 나타나는 것은 한국국제협력단이 본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상당한 규모의 예산을 전용 조정하거나 미교부하는 방식으로 예산현액을 조정하기 때문임. 예를 들어 '베트남 다낭시 스마트 통합 도시재난관리센터 구축 및 재난대응 역량강화' 사업의 경우 본예산으로 2023년 18억 3,5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이 중 10억 8,000만원을 전용 조정 감액,

4,500만원을 미교부하여 예산현액은 본예산액 대비 40%에도 미치지 않는 7억 1,000만원에 그침. 해당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0.9%에 달하나, 본예산 대비 집행률은 35.2%에 불과함. 반대로 '방글라데시 기술교육 및 청년취업 강화사업'의 경우 본예산으로 10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9억 3,000만원을 전용 조정 증액하여 19억 4,200만원을 집행하였음. 해당 사업의 경우 예산 현액 대비 집행률은 100%이나, 본예산액 대비 집행률은 190%에 달함.

이와 같은 전용·조정은 개발협력 사업의 특성상 본예산 편성 시점에 집행가능성을 가늠하기가 어렵고, 집행 시점에 집행가능성이 높은 사업들을 중심으로 예산을 탄력적으로 배정해 예산 집행의 효과를 제고하려는 의도로 이해됨. 또한 집행가능성이 낮은 사업의 예산을 불용하기 보다는 집행가능성이 높은 사업의 예산에 초과 배정해 집행하는 것이 개별 사무소 예산의 집행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으로도 타당성이 있는 집행 방식으로 보임.

그러나 전용·조정의 규모가 편성된 본예산의 50%를 초과하는 수준에 이르는 경우 본예산 편성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 이후 결산 시점에서도 예산 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게 함.

한국국제협력단은 본예산의 과도한 전용·조정을 지양하는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본예산 편성의 취지를 살리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전용·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임.

< 과도한 전용·조정 등으로 본예산과 예산현액의 괴리가 큰 사업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본예산	전용 · 조정 등 (미교부 포함)	집행액	집행률 (집행액/ 본예산)
베트남 다낭시 스마트 통합 도시재난관리센터 구축 및 재난대응 역량강화	1,835	△1,530	645	35.1
베트남 지뢰/불발탄 제거를 통한 중부지역 평화마을 조성	3,750	△2,259	1,461	38.9
인도네시아 하천 쓰레기 자원화를 통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사업	762	△447	273	35.8
인도네시아 법령정보시스템 구축사업	1,977	△1,713	55	2.7
캄보디아 고등인재양성 왕립프놈펜대학 환경공학과 설립사업	1,900	△980	905	47.6
캄보디아 국립소아병원 내과계 병동건립 및 의료인력 역량강화사업	1,542	△1,200	340	22.0
필리핀 동부사말 기안 펠리페 아브리고 지역 거점 공공병원 재건사업	1,094	△1,046	24	2.2
필리핀 팜팡가강 유역 수자원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2차 사업	1,972	△1,318	336	17.0
필리핀 기마라스주 지속가능한 스마트 수산양식장 구축 사업	1,481	△1,321	120	8.1
방글라데시 기술교육 및 청년취업 강화사업	1,013	930	1,943	191.8
방글라데시 IOM 인신매매 통합대응 프로그램	1,696	1,800	3,455	203.7
몽골 철도교통관제센터 건립 및 운영 역량강화를 통한 철도교통 경쟁력 강화 사업	1,885	△1,290	592	31.4
라오스 한-라 직업기술개발원 역량강화사업	518	△260	256	49.4
라오스 불발탄 제거 지원 2차 사업	853	670	1,490	174.6
스리랑카 기술대학 및 고등학교 건설학과 역량강화 사업	1,320	1,054	2,747	208.1
네팔 통합적 지역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인프라 구축사업	1,945	△749	1,031	53.0
파키스탄 KP주 아보타바드시 하베리안지역 상수도공급 지원사업	2,191	△1,488	489	22.3
피지 기후변화 대응 보건역량 강화사업	1,172	△774	377	32.1
인도 직업기술교육 역량강화사업	563	△557	5	0.88

3)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중남미지역 국가원조」는 중남미지역 12개국[73] 및 1개 국가연합체[74]를 대상으로 총 54건의 프로젝트 및 3건의 개발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여 2023년도 예산현액 872억 4,200만원 중 55억 2,500만원을 불용하고 798억 1,80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1.5%임.

<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항목명	예산			집행액 (B)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A)	증감* (A'-A)	예산현액 (A')				
□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97,225	△9,983	87,242	79,819	1,898	5,525	91.5
콜롬비아(ODA)	9,861	-	9,861	9,370	-	491	95.0
페루(ODA)	8,428	△1,511	6,917	6,703	-	214	96.9
볼리비아(ODA)	8,599	△191	8,408	7,361	-	1,047	87.6
파라과이(ODA)	10,892	-	10,892	10,600	-	292	97.3
중남미 일반협력 국가그룹(ODA)	59,445	△8,281	51,164	45,784	1,898	3,482	89.5

* 증감은 전년도 이월액과 이전용을 포함한 것임.

73)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등 총 4개국의 중점국가와 도미니카(공), 아이티,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과테말라, 쿠바 등 총 8개국의 비중점국가임

74) 카리브 인근 25개 국가연합

□ 신규사업 집행 저조에 대한 대처 방안 강구

2023년 국별협력사업 중 신규사업은 48개이고 예산액은 145억 9,700만원 중 33.8%인 49억 3,300만원이 집행되었음. 이 중 28개의 사업은 집행률이 20%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다수의 사업 집행률이 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남.[75] 대륙별로 살펴보았을 때 중남미 국별협력사업의 집행률은 8.6%로 전체 신규사업의 집행률보다 25.2%p가 낮음.

< 2023년 국가원조 신규사업 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3년 본 예산 (A)	전용·조정액	추경·미교부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본예산 집행률 (B/A)
국별협력사업 신규사업 총계	**14,597**	**△5,807**	**△3,247**	**5,543**	**4,933**	**33.8**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원조 신규사업 계	**3,302**	**△1,453**	**△939**	**910**	**684**	**20.7**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신규사업 계	**6,856**	**△2,556**	**△884**	**3,416**	**3,268**	**47.7**
중동 CIS지역 국가원조 신규사업 계	**1,055**	**50**	**△311**	**794**	**692**	**65.6**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신규사업 계	**3,384**	**△1,848**	**△1,113**	**423**	**290**	**8.6**
베트남 ICT 기반 기상기후 재해예방을 위한 태풍 감시 및 예보 통합플랫폼 구축사업('23-'26/930만불)	100	△100	-	-	-	0.0%
베트남 전쟁피해 집중지역 취약계층 취·창업 연계형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23-'27/1,200만불)	492	△480	-	12	-	0.0%
베트남 폭력피해 여성/여아 예방 및 보호모델 강화사업(UNFPA)('23-'26/500만불)	100	△80	△11	9	2.3	2.3%
인도네시아 유료도로 운영정보시스템 구축사업(`23-`26/700만불)	50	-	△42	8	-	0.0%
캄보디아 ICT 분야 직업기술훈련 역량강화 및 교육훈련 환경구축 사업('23-'27/800만불)	100	△97	-	3	3.0	3.0%
캄보디아 국립 축산물 안전 및 위생 연구원 설립 사업('23-'27/900만불)	448	△448	-	-	-	0.0%
필리핀 경찰청 범죄수사정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23-'28/690만불)	700	-	△582	118	0.4	0.1%

75) 전체 국별협력사업의 집행률은 85% 이상임.

사업명	23년 본 예산 (A)	전용 · 조정액	추경 · 미교부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본예산 집행률 (B/A)
필리핀 카라바오 낙농 개량 체계(NDHI) 구축 및 농가 역량강화 사업(`23-`28/700만불)	50	-	△41	9	0.5	1.0%
방글라데시 플랫폼 기반의 통계 서비스 역량강화사업('23-'26/965만불)	100	-	△83	17	-	0.0%
라오스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디지털 농지정보관리 플랫폼 구축사업('23-'26/880만불)	57	-	△47	10	-	0.0%
라오스 항만 관리 정보화 시스템(Port-MIS) 구축 사업('23-'27/425만불)	55	△38	△14	3	0.5	0.9%
피지 신재생에너지 확산 및 역량강화사업('23-'26/700만불)	100	△50	△42	8	-	0.0%
피지 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전문의료인력 교육 및 연구 역량강화사업('23-'27/977만불)	100	△50	△42	8	-	0.0%
카메룬 응급의료체계 구축 사업('23-'28/1,400만불)	470	△390	-	80	77.1	16.4%
모로코 마라케시 친환경 전기버스 교통체계 구축사업('23-'26/1,300만불)	450	△376	-	74	68.9	15.3%
이집트 한-이집트 기술대학 교육역량 강화 및 교원 양성 사업('23-'26/800만불)	594	△191	△364	39	0.2	0.0%
우즈베키스탄 하원 전자의회 도입과 디지털화를 통한 열린 의정활동 지원 사업('23-'25/600만불)	50	-	-	50	1.9	3.8%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주 스마트 기술기반 산림 도시 녹화 역량강화사업('23-'28/770만불)	50	124	△145	29	-	0.0%
이라크 쿠르드 지역학교 내 난민통합교육 강화사업('23-'28/1,200만불)	100	△4	△64	32	19.6	20.0%
키르기스스탄 가축 품종개량 및 인공수정인력 역량강화사업('23-'27/750만불)	50	△48	-	2	1.3	2.7%
키르기스스탄 국가 에너지시스템 개선을 위한 중앙 집중 AMI 시스템 구축사업('23-'26/1,050만불)	50	△50	-	-	-	0.0%
타지키스탄 전력소외 지역 전력망 구축 2차 사업('23-'26/1,400만불)	50	-	△49	1	0.9	1.9%
우크라이나 키이우주 재활의료 역량강화 사업('23-'27/500만불)	50	△50	-	-	-	0.0%

중남미국가 지역원조는 2023년 예산액으로 6개의 신규사업을 편성하였음. 2023년 신규사업 예산액은 33억 8,400만원이고 전용·조정액 및 미교부액

으로 각각 18억 4,800만원, 11억 1,300만원이 감액되어 예산현액은 4억 2,300만원으로 2023년 예산액의 12.5%이며, 신규사업 전체 예산액의 8.6%인 2억 8,960만원이 집행되었음.

< 2023년 중남미 국별협력사업 신규사업 집행현황 >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3년 본예산 (A)	전용·조정액	추경·미교부액	예산현액	집행액 (B)	본예산 집행률 (B/A)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신규사업 계	**3,384**	**△1,848**	**△1,113**	**423**	**290**	**8.6**
페루 클라우드 기반 중앙부처 전자문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23-'27 / 850만불)	730	-	△700	30	3.2	0.4
볼리비아 엘알또시 모성보건역량 개선사업('23-'27 / 900만불)	645	△475	△83	87	58.8	9.1
파라과이 농민조합 육성을 통한 원예경쟁력 강화사업('23-'28 / 1,200만불)	500	△500	-	-	-	0.0
도미니카공화국 디지털화 및 시민참여를 통한 국가자연보호지역 관리 역량 강화사업('23-'27 / 600만불)	1,020	△873	△47	100	83.2	8.2
에콰도르 쿠엔카시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통합 관리 및 자원순환 역량강화사업('23-'29 / 900만불)	345	-	△283	62	3.5	1.0
엘살바도르 소외지역 고위험 산모신생아 이송체계 및 모자보건서비스 접근성 강화사업('23-'26 / 504만불)	144	-	-	144	141.0	97.9

신규사업 중 '엘살바로드 소외지역 고위험 산모신생아 이송체계 및 모자보건서비스 접근성 강화사업('23-'26/504만불)'만 사업일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였고 나머지 5개 사업은 집행률이 10%에도 미치지 않았으며, 사업추진이 부진하여 기관 내 집행이 원활한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전용 또는 조

정을 실시하거나 예산을 교부하지 않았음.

< 2023년 중남미 국별협력사업 신규사업 R/D[76] 체결 경과 >

사업명	협의경과
페루 클라우드 기반 중앙부처 전자문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23-'27 / 850만불)	ㅇ 23. 3월: 심층기획조사 실시 ㅇ 23. 9월: R/D 체결
볼리비아 엘알또시 모성보건역량 개선사업('23-'27 / 900만불)	ㅇ 23. 1월: 심층기획조사 실시 ㅇ 23.11월: R/D 문안 최종본 도출 ㅇ 24. 4월: R/D 서명 장관보고 진행중[77]
파라과이 농민조합 육성을 통한 원예경쟁력 강화사업('23-'28 / 1,200만불)	ㅇ 23. 3월: 심층기획조사 실시 ㅇ 23. 9 - 24. 3월: R/D 문안 검토[78] ㅇ 24. 3월: R/D 체결
도미니카공화국 디지털화 및 시민참여를 통한 국가자연보호지역 관리 역량 강화사업('23-'27 / 600만불)	ㅇ 23. 3월: 심층기획조사 실시 ㅇ 23.10월: R/D 체결
에콰도르 쿠엔카시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 통합 관리 및 자원순환 역량강화사업('23-'29 / 900만불)	ㅇ 23. 6월: 심층기획조사 실시 ㅇ 23. 8월: R/D 체결
엘살바도르 소외지역 고위험 산모신생아 이송체계 및 모자보건서비스 접근성 강화사업('23-'26 / 504만불)	ㅇ 22. 9월: 심층기획조사 실시 ㅇ 23. 8월: R/D 체결 ㅇ 23.12월: PMC 계약 체결

신규사업의 R/D체결 경과를 살펴보면, '볼리비아 엘알또시 모성보건역량 개선사업('23-'27/900만불)', '파라과이 농민조합 육성을 통한 원예경쟁력 강화사업('23-'28/1,200만불)' 등 2 사업은 수원국의 사정 변경으로 2024년에 R/D를 체결하였음.

'엘살바도르 소외지역 고위험 산모신생아 이송체계 및 모자보건서비스 접근성 강화사업('23-'26/504만불)'의 경우 N년에 R/D 체결 및 PMC 계약을 체결하여 사전 계획에 따라 사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음.

76) Record of Discussion, 협의의사록

77) R/D는 KOICA - 수원총괄기관 - 보건부 - 엘알또市 등 사업 이해관계 주체 서명이 필요하다는 볼리비아 요청에 따라 사업이 다소 지연됨.

78) 집행계획 수립 및 수원기관 측 신임장관 취임(2023. 8.) 이후 '우리 무상협력사업 절차 및 사업 세부내용 설명 요구'에 따라 수원기관 리더십의 사업 이해 및 R/D 문안 검토에 상당한 시일 소요

한국국제협력단은 N-2년 기발굴된 사업에 대해 통상 국회로부터 N년도 예산이 확정된 후(N-1년 12월경) 사업 수행을 위해 '심층기획조사'를 통해 수원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대한 R/D 문안 협의를 시작함.

따라서 국회 예산 심의를 완료(정부 예산 확정, N-1년 12월경)하기 전에 심층 기획조사를 수행하고, 기획조사결과에 기반하여 수원국과 사업에 대한 구체 계획이 담긴 R/D를 협의하고 체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므로 수원기관 측의 R/D 문안 검토에 필요한 기간과 세부 절차는 국가별·사업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며, 때로는 기발굴된 사업 추진 환경이 상당 부분 변화하여(약 1~1.5년 경과) 세부 협의사항이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상기의 엘살바도르의 사례에서는 N-1년 3분기에 사업 전 단계인 심층기획조사를 실시하였고 국회 예산 심의가 완료된 후 R/D 문안 작성에 대한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N년 3-4분기에 R/D 체결 및 PMC 체결이 완료되었음.

ODA 사업은 수원국 수원총괄기관과의 공식사업요청서 및 수원국 요청서에 따른 검토 및 보완 후 예비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심사하고 기획재정부 및 국회의 예산 심의 후 수원국의 정부 또는 기관과 사업의 세부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조사, 사업계획 및 분담사항을 확정하고 있음.

ODA 사업의 특성상 수원기관과의 정식 R/D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거나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PMC 선발 지연 등으로 인하여 신규 사업의 경우 첫해에는 국가 간 약정 체결 및 사업 착수에 시일이 걸려 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이 수원국 기관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ODA 사업의 특성상 신규사업의 예산 수립시 RD 협의과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이고 예산 집행률이 부진한 다수의 사업이 사업기획단계의 예산만 집행하고 있으므로 RD 협의과정이 모호한 국별협력사업의 경우 1차년도에 사업기획단계에 해당되는 예산을 편성하는 등 향후 예산 편성과정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음.

또한 국별협력사업은 사업기간 전후의 프로젝트 사이클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 사업효과성 제고비를 편성하고 있으며, 엘살바도르의 사례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심사에 통과된 사업의 심층기획조사를 사업효과성제고비로 집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당초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층기획조사를 N-1년 3-4분기에 실시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음.

□ 국별협력사업 총사업비 관리 철저

2023년 국별협력사업 예산액으로 집행한 기획조사비는 총 6억 6,206만원임. 그 중 중남미 국별협력사업은 '볼리비아 볼리비아 엘알또시 모성보건 역량 개선사업('23-'27/900만불)' 및 '도미니카공화국 디지털화 및 시민참여를 통한 국가자연보호지역관리 역량 강화사업('23-'27/600만불)'의 기획조사를 위하여 1억 2,588만원을 집행하였음.

< 2023년 국별협력사업 기획조사비 집행 현황 >

(단위: 원)

내역사업명	집행액
르완다 산업표준화ICT 역량강화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사업('23-'28/700만불)	82,229,736
몽골 자동차 검사 역량 제고 및 시설개선을 통한 교통안전강화사업('23-'27/1,300만불)	176,417
세네갈 콜다주 통합적 접근을 통한 미곡 가치사슬 강화사업('23-'28/1,450만불)	37,508,019
모로코 마라케시 친환경 전기버스 교통체계 구축사업('23-'26/1,300만불)	64,929,926
알제리 대기환경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및 대기관리 역량강화사업('23-'27/550만불)	49,187,439
카메룬 응급의료체계 구축사업('23-'28/1,400만불)	1,882,965
에티오피아 낙농가치사슬 및 이해관계자 역량강화를 통한 유제품 품질개선사업('23-'28/1,000만불)	84,969,954
우간다 마케레레대학교 ICT 교육환경 조성사업('23-'28/1,220만불)	37,698,000
이라크쿠르드 지역학교 내 난민통합교육 강화사업('23-'28/1,200만불)	19,599,000
탄자니아 도도마시 및 아루샤 농촌지역 상수도시설 모델구축 시범사업('23-'26/382만불)	47,223,575
탄자니아 여성청소년 STEM 교육지원사업('23-'27/1,000만불)	54,726,394
탄자니아 잔지바르 여성 어업종사자 대상 해양수산업 가치사슬 구축사업('23-'27/550만불)	56,047,532
국별협력사업(중남미 제외) 기획조사비 계	536,178,957

내역사업	승인일자	적요	집행액
볼리비아 엘알또시 모성보건 역량 개선사업('23-'27/900만불)	2023-01-31	기획조사 전문가 항공권	23,241,900
	2023-01-11	기획조사 전문가 체재비	11,819,193
	2023-04-21	기획조사 전문가 자문료 지출	23,287,500
도미니카공화국 디지털화 및 시민참여를 통한 국가자연보호지역관리 역량 강화사업('23-'27/600만불)	2023-03-10	기획조사단 비정산 경비 지급	7,581,136
	2023-03-10	기획조사 사무소 출장경비 송금	14,712,314
	2023-06-02	기획조사 항공료, 전문가 인건비 등	45,242,176
중남미 지역 국별협력사업 기획조사비 계			125,884,219

「KOICA 예산집행지침」은 사업기간 전후의 프로젝트 사이클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업 전 단계에 걸쳐 투입되는 공통성 경비를 별도의 예산항목으로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사업발굴·예비조사·사업기획 등 사전조사, 실시협의, 사후관리 비용 등을 '사업효과성제고비'로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면서 국별협력사업 총사업비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사업기획단계인 기획조사경비는 '형성기획'에 편성[79]하고 있고 「국별협력사업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심층기획조사는 지출연도와 무관하게 '형성기획' 항목에서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80]

따라서 코이카는 기획조사를 실시하면서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효과성제고비-형성기획' 예산항목에서 집행하여야 했음.

79) 2023년 중남미 형성기획 예산은 21억원임.

80) 「KOICA 예산집행지침」 사업효과성 제고비

국별협력사업 총사업비는 본사업 추진과 KOICA의 본사업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① 사업시행자의 용역비, 시공비, 기자재 및 교육훈련 비용 등 사업의 주요 목적 달성을 위해 소요되는 제반 비용, ② 협력단의 홍보, 모니터링, 평가 등 본사업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제반 비용임.

사전조사, 실시협의, 사후관리 비용 등 “사업효과성제고비”와 같이 사업별 예산으로부터 별도로 편성되는 예산은 총사업비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한국국제협력단의 「국별협력사업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을 위반한 것임.

기획조사경비를 국별협력사업 총사업비로 집행할 경우 총사업비를 축소시킬 수 있으므로 향후 총사업비 변경의 원인이 되는 기획조사경비는 사업효과성제고비에서 집행하여야 할 것임.

구분	세부구분	정의	활용 예시	비고
형성 기획	사업 기획 단계	사업심사에서 통과된 사업을 대상으로 심층기획을 통해 사업 세부 디자인 및 모니터링 지표 개발, 위험요소 사전 관리	·기획조사단 파견 ·기초선 조사비	·「국별협력사업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예비조사 및 심층기획조사는 “사업효과성제고비-형성기획” 항목에서 집행(단, 전략사업의 경우, 사업발굴 당해연도에 사업예산이 수시배정되는 점을 감안, 전략사업비로도 집행 가능)

4) 중동 · CIS지역원조

□ 우크라이나·타지키스탄 대상 개발협력 사업의 확대 필요

한국국제협력단은 매년 국제개발협력 중점협력국을 지정하고 있으며, 중동·CIS 지역에서 중점협력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4개국임. 중점협력국으로 지정된 국가의 경우 각 국가를 대상으로 약 100억원 상당의 개발협력 사업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음. 중동·CIS 지역의 중점 협력국인 우즈베키스탄의 경우 총 14개 사업에 142억 300만원의 개발협력 사업 예산을, 키르기스스탄의 경우 총 9개 사업에 71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 2023년도 국제개발협력 중점협력국 현황 >

아시아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중남미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몽골, 라오스, 네팔, 스리랑카, 파키스탄, 미얀마, 인도	가나, 에티오피아, 르완다, 우간다, 탄자니아, 세네갈, 이집트	우즈베키스탄, 키르키스스탄,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콜롬비아,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12개국	7개국	4개국	4개국

그런데 우크라이나와 타지키스탄은 국제개발협력 중점협력국임에도 불구 2023년도에 각각 1개 사업 5,000만원의 예산만을 편성하였고 집행된 금액은 100만원에 불과함. 이는 중동·CIS 지역 일반협력 국가인 이라크나 아제르바이잔 등에 집행된 예산과 비교해도 상당히 저조한 수준임[81].

개발협력 사업의 특성상 수원국의 정치·경제적 상황이나 수원국의 의지에 따라 그 집행 가능성이 수시로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계획대로 개발협력 사업을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은 감안하더라도, 타지키스탄, 우크라이나 등 제3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중점협력국으로 신규 지정된 국가들에 대해서는 조속한 사업형성 및 사업수행기관 선정 등을 통해 사업 지연을 방지하고, 실질적 사업 추진을 통한 수원국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한국국제협력단은 중점협력국 지정의 의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중점협력국 지정 시 현실적인 사업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하고, 중점협력국과 일반협력 국가 사이의 차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81) 2023년 이라크 대상 ODA 사업은 총 9건으로 224억 3,0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199억 3,2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아제르바이잔 대상 ODA 사업은 총 4건으로 22억 8,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21억 1,07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음.

18. 한·아프리카재단

가. 개 요

한・아프리카재단은 아프리카국가에 대한 장기적・종합적 연구분석과 정치・경제・문화・학술 등 제반 분야에서 아프리카국가와의 동반자 관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아프리카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외교부 산하의 정부출연기관임.

나. 수 입

2023년도 한·아프리카재단의 수입예산은 정부출연금 47억 7,100만원, 이자수입 및 잡수익을 합한 자체수입 100만원 등 총 47억 7,200만원임.

< 한·아프리카재단 수입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예산	증 감	예산현액 (A)	실 적 (B)
1. 정부출연금	4,771	-	4,771	4,771
2. 자체수입 (이자수입, 잡수익)	-	1	1	1
계	**4,771**	**1**	**4,772**	**4,772**

다. 지 출

2023년도 지출내역을 보면, 편성된 예산은 인건비 17억 1,800만원, 경상운영비 5억 3,000만원, 사업비 25억 2,300만원으로 총 47억 7,100만원이었으며, 그 중 45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3,700만원을 불용하여 전체 집행률은 95.0%임.

< 한·아프리카재단 지출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당초예산	증감	전년이월	예산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C)	불용액 (D=A-B-C)	집행률 (E=(B+C)/A)
1. 인건비	1,718	-	-	1,718	1,625	-	93	94.6
2. 경상운영비	530	-	-	530	507	-	23	95.7
3. 사업비	2,523	-	-	2,523	2,403	-	120	95.2
가. 기업 및 민간단체의 아프리카 국가와의 교류·협력 지원	844	-	-	844	818	-	26	96.9
나. 아프리카국가와의 동반자관계 증진을 위한 공공부문 교류 지원	119	-	-	119	113	-	6	95.0
다. 아프리카국가와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951	-	-	951	870	-	81	91.5
라. 아프리카 국별/권역별/분야별 동향파악 및 조사·연구	609	-	-	609	601	-	8	98.7
계	**4,771**	**-**	**-**	**4,771**	**4,534**	**-**	**237**	**95.0**

< 한·아프리카재단 사업비 등 세출결산 총괄표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 예산			집행액 (B)	이월액 (C)	불용액 (A-B-C)	집행률 (B/A)	집행률 (B/A')
	본예산 (A)	증감 (A'-A)	예산현액 (A')					
사업출연금 합계	**2,523**	**-**	**2,523**	**2,403**	**-**	**120**	**95.2**	**95.2**
1. 기업 및 민간단체의 아프리카 국가와의 교류·협력 지원	**844**	**-**	**844**	**818**	**-**	**26**	**96.9**	**96.9**
1.1 아프리카 경제 비즈니스 세미나/포럼	155	104	259	258	-	1	166.5	99.6
1.2 창업아이디어대회 및 한-아프리카 스타트업 교류	444	△4	440	425	-	15	95.7	96.6
1.3 한-아프리카 중소기업 협력 강화	245	△145	145	135	-	10	55.1	93.1
2. 아프리카국가와의 동반자관계 증진을 위한 공공부문 교류 지원	**119**	**-**	**119**	**113**	**-**	**6**	**95.0**	**95.0**
2.1 국회-주한아프리카외교단 네트워킹 및 의원외교 지원	11	37	48	43	-	5	390.9	89.6
2.2 지자체-아프리카국가 교류협력 촉진	38	△37	1	1	-	0	2.6	100.0
2.3 아프리카현지 국제회의 참가 민관 사절단	70	-	70	69	-	1	98.6	98.6
3. 아프리카국가와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951**	**-**	**951**	**870**	**-**	**81**	**91.5**	**91.5**
3.1 한-아프리카 청소년캠프 및 청년교류 활성화	413	△143	270	247	-	23	59.8	91.5
3.2 차세대아프리카전문가 육성 교육	210	60	270	261	-	9	124.3	96.7
3.3 국내아프리카전문가 네트워킹(아프리카동창회,Af-PRO)	67	-	67	36	-	31	53.7	53.7
3.4 아프리카주간(Africa Week) 등 사회문화 인식제고	261	83	344	326	-	18	124.9	94.8
4. 아프리카 국별/권역별/분야별 동향파악 및 조사연구	**609**	**-**	**609**	**601**	**-**	**8**	**98.7**	**98.7**
4.1 아프리카관련 정보제공 및 데이터베이스 축적	368	△36	332	329	-	3	89.4	99.1
4.2 연례국제학술회의(서울아프리카대화) 및 연구증진	241	36	277	272	-	5	112.9	98.2

라. 검토의견

1) 경상운영비

□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경상운영비 확보 노력 필요

정부의 예산절감 취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2023년 감액된 후 2024년에도 감액이 됨에 따라 조직 운영을 위한 경상운영비도 매년 삭감추세에 있음.

<2021~2024 한-아프리카재단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실집행액]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21	4,155	4,155	-	-	-	4,155	3,935 [3,782]	94.7 [91.0]	94.7.0 [91.0]	-	220 [153]
2022	5,193	5,193	-	-	-	5,193	5,193 [4,971]	100.0 [95.7]	100.0 [95.7]	-	[222]
2023	4,771	4,771	-	-	-	4,771	4,771 [4,534]	100.0 [95.0]	100.0 [95.0]	-	[236]
2024	4,425	4,425	-	-	-	4,425	-	-	-	-	

<2021~2024 경상운영비 예산 집행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		2022			2023			2024	
	예산 현액	집행액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 대비	예산 현액	집행액	전년 대비	예산 현액	전년 대비
경상운영비	**558**	530	**558**	537	-	**530**	507	**△28**	**461**	**△69**
운영비	293	288	358	348	65	364	343	6	348	△16
여비	22	1	14	12	△8	19	18	5	4	△15
업무추진비	24	23	24	23	-	24	24	-	18	△6
직책수행경비	47	46	50	49	3	50	49	-	50	-
일반연구비	120	120	60	52	△60	22	21	△38	20	△2
공사비	-	-	15	15	15	40	40	25	-	△40
자산취득비	52	52	37	37	△15	13	12	△25	21	9

(자료: 한-아프리카재단)

재단은 경상운영비의 삭감으로 인한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복지 비용 동결 및 직원교육비를 축소해 왔으며, 열악해지는 처우로 인하여 인력유출이 가속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최근 4년간 업무역량강화 교육비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전년 이월	전용 등					
2020	20	-	△13.6	6.4	6.3	-	0.1	31.5%
2021	20	-	△10	10	9	-	1	45.0%
2022	20.3	-	△8.3	12	11.1	-	0.9	54.7%
2023	11.5	-	△7.5	4	3.6	-	0.4	31.3%

(자료: 한-아프리카재단)

<최근 4년간 복리후생비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

연도	예산액 (A)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전년 이월	전용 등					
2020	8.6	-	-	8.6	8.3	-	0.3	96.5%
2021	8.9	-	-	8.9	8.6	-	0.3	96.6%
2022	10.5	-	-	10.5	10.5	-	-	99.9%
2023	10.4	-	-	10.4	9.8	-	0.6	94.2%

(자료: 한-아프리카재단)

<연도별 직원 현황 및 퇴사율>

(단위 : 명, %)

연도	정원	현원	퇴사자	퇴사율
2021	30	21	6	29%
2022	30	23	5	22%
2023	30	21	9	43%

※ 현원: 연도별 12.31.자 기준

(자료: 한-아프리카재단)

실제로 재단은 2023년도에 관리운영직군의 대거 퇴사로 인한 업무결손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계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경상운영비 감액으로 인해 고정적 지출경비(공과금 등)를 제외한 여비, 일반연구비, 공사비, 자산취득비의 감액을 점진적으로 실행해 옴에 따라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이 곤란하고, 직원들의 장기 근속 환경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고 있음.

예산 절감의 정부 취지도 중요하지만, 기관 운영에 소요되는 대부분의 비용이 포함된 경상운영비의 삭감은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고, 구성원의 처우 질이 나빠지는 결과를 야기함.

더욱이 한-아프리카재단과 같이 소규모 조직의 경우 경상운영비의 부족은 일정 수준의 고정적인 경상경비 지출을 감당해야 함에 따라 재단 운영에 상당한 제약을 주어 운영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음.

아프리카국가와의 교류협력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재단의 역할이 점차 확대되어 가는 추세임을 감안하여, 향후 재단은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경상운영비 확보에 힘쓸 필요가 있음.

2) 아프리카국가와의 동반자관계 증진을 위한 공공부문 교류 지원

□ 지자체-아프리카국가 교류협력 촉진 사업 부진 및 사업 재검토 필요

‘지자체-아프리카국가 교류협력 촉진’은 중앙정부 간 협력을 넘어 보다 세분화되고 다층화된 한-아프리카 교류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아프리카와 협력을 희망하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와 아프리카국가(도시)를 연결,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강화하려는 사업임.

동 사업은 2023년도 예산액 3,800만원 중 ‘국회-주한아프리카외교단 네트워킹 및 의원외교 지원’ 사업비 증액 필요에 따라 3,700만원을 감액 전용하여 100만원을 집행하였음.

<지자체-아프리카국가 교류협력 촉진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A)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전년이월	전용 등					
지자체-아프리카국가 교류협력 촉진	38	-	△37	1	1	-	-	2.6

<아프리카국가와의 관계증진을 위한 공공부문 교류협력 지원 전용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기승인 예산액	예산변경	증감
2.1 국회-주한아프리카외교단 네트워킹 및 의원외교 지원	11	48	37
2.2 지자체-아프리카국가 교류협력 촉진	38	1.3	Δ37

동 사업의 최근 4년간 집행률을 보면, 코로나 시기를 감안하더라도, 사업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며, 더구나 2024년도는 재단 사업비 감액으로 인하여 동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음.

<최근 4년간 지자체-아프리카국가 교류협력 촉진 결산>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A)	예산결정 후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B)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대비 집행률 (B/A)
		전년이월	전용 등					
2020	43	-	-	43	43	-	-	100.0%
2021	38	-	-	38	37	-	1	97.4%
2022	38	-	△14	24	23	-	1	60.5%
2023	38	-	△37	1	1	-	-	2.6%

동 사업의 2023년도 집행액은 '지자체-아프리카국가 교류협력 사례 웹페이지 운영' 비용으로, '국내 지자체와 아프리카 간 교류 현황 및 사례'를 웹페이지로 구축하여 우리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관련 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9년 시작한 것임.

< 지자체-아프리카국가 교류협력 사례 웹페이지 운영 집행 내역 >

(단위: 만원)

계약시기	계약액	집행액	수탁기관	계약내용
2019. 7.	913	913	㈜카레나인터렉티브	홈페이지 초기구축
2021. 5.	132	55*	㈜카레나인터렉티브	홈페이지 유지보수 (2021.6월~2022.5월)
2022. 7.	66	121	㈜카레나인터렉티브	홈페이지 유지보수 (2022.7월~12월)
2023. 1.	132	132	㈜카레나인터렉티브	홈페이지 유지보수 (2023.1월~12월)

* 2021.6~12월 유지보수 미수행으로 계약금액 중 77만원 미집행
(자료: 한-아프리카재단)

그런데 재단은 재단 홈페이지 관리용역 업체가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자체 교류협력 웹페이지를 별도로 생성하여 타 업체에 운영을 맡기고 있는데, 동 사업의 집행부진 속에서 홈페이지를 별도로 운영할 실익이 없어 보임.

< 재단 홈페이지 관리·운영 집행 내역 >

(단위: 만원)

지출일	사업명	비목	수령인	건명	지출액
04.24.	아프리카 국별/권역별/분야별 조사 · 연구	[210-14] 일반용역비	(주)인디엔피	2023 아프리카대륙 통신원 홈페이지 업데이트 및 게시판 추가	55
06.05		[210-14] 일반용역비	(주)인디엔피	재단 홈페이지 아프리카 지식정보 개편 일반용역비 선급금	840
12.21		[210-14] 일반용역비	(주)인디엔피	재단홈페이지 아프리카 지식 정보 개편 일반용역비 잔금 지급	360
07.04	재단 행정경비	[210-15] 관리용역비	(주)인디엔피	`23년 재단 홈페이지 유지보수 정산(상반기)	47
12.21		[210-15] 관리용역비	(주)인디엔피	`23년 재단 홈페이지 유지보수 정산(하반기)	7

(자료: 한-아프리카재단)

한편, 재단은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 전액 삭감은 전체 재단사업의 예산 감액으로 인한 불가피한 삭감이었으며, 향후 동 사업예산을 배정받아 사업 재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하는바,

재단은 사업부진에 대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전반적으로 사업을 재검토하고, 동 사업 웹페이지 운영은 재단 홈페이지와 통합하여 운영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하는 등 면밀한 사업 계획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3) 아프리카국가와의 상호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

□ 차세대아프리카전문가(YPA) 국제기구 파견교육 사업 내실화 노력 필요

차세대아프리카전문가(Young Professionals on Africa, YPA) 국제기구 파견교육은 차세대 아프리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우리 청년들을 아프리카지역 소재 국제기구에 11개월간 파견하여 해당기관 업무파악, 동향보고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아프리카지역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실질적 업무 경험을 진작시키려는 것임.

동 사업의 2023년도 예산액은 1억 7,000만원이며, 이 중 1억 6,7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을 불용하였음.

<차세대아프리카전문가(YPA) 국제기구 파견교육 사업 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23예산 (A)	집행액 (B)	이월액 (C)	불용액 (A-B)	집행률 (B/A)
차세대아프리카전문가(YPA) 국제기구 파견교육 사업	170	167	-	3	98.2

(자료: 한-아프리카재단)

YPA 파견자에게는 항공임, 기본지원비, 현지체재비, 파견준비금 등을 지원하며,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현지체재비 및 기본지원비 중 근무일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반납받고 있음.

<차세대아프리카전문가 연도별 파견 현황>

연도	파견인원	파견기구	파견기간	비고
2019	2	아프리카연합(AU)	2019.9.2.~2020.9.1	
		유엔아프리카경제위원회(UNECA)	2019.9.2.~2019.11.30	· 중도포기(개인사유)
2020	-	-	-	· 3인 선발했으나 파견 무산 - 코로나19 파견 지연, - 파견철회(개인사유)
2021	3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세네갈	2021.7.1.~2022.5.31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우간다	2021.7.1.~2022.5.31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르완다	2021.7.1.~2021.8.9	· 개인사유로 계약해지
			2021.9.1.~2022.5.31	· 차점자 파견
2022	2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르완다	2022.7.1.~2023.5.31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세네갈	2022.7.1.~2023.2.17	· 개인사유로 계약해지
2023	3	이슬람교육과학문화기구(ICESCO)	2023.7.1.~2024.5.31.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코트디부아르	2023.7.1.~2024.5.31.	
		글로벌녹색성장기구(GGGI) 르완다	2023.7.1.~2024.5.31.	

(자료: 한-아프리카재단)

그런데 2023년을 제외하면 매년 중도포기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파견종료 이후 사후 관리 시스템도 정비되어 있지 않아[82] 동 사업 파견자 및 파견종료자에 대한 관리가 미비한 측면이 있어 보임.

동 사업의 연도별 지원자 현황을 보면 매년 꽤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으므로, 재단은 향후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대상인원을 확대하고, 신규 파견기구를 발굴하여 사업의 내실을 다지며,

82) 재단은 자체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은 없으나 코웍스(KOWORKS)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YPA 계약 종료 후 아프리카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 중에 있으며, 사후 개별 모니터링을 통해 취업 및 진로 상황 등을 지속 확인하고 있다고 함.

파견자에 대한 관리 강화 및 파견 종료 이후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차세대 아프리카 전문가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차세대아프리카전문가 지원 연도별 경쟁률 >

연도	공고기간	모집인원(명)	지원인원(명)	경쟁률
2019	2019.4.9.~2019.5.6	2	27	13.5:1
2020	2019.12.30.~2020.1.27	2	10	5:1
2021	2021.2.16.~2021.3.14.	3	23	7.6:1
2022	2022.4.12.~2022.5.1.	2	8	4:1
2023	2023.2.1.~2023.3.31.	3	27	8.3:1
2024	2024.2.1.~2024.3.31.	3	31	10.3:1

(자료: 한-아프리카재단)

Ⅲ. 국제교류기금 결산

1. 총 괄

국제교류기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3조[83]에 따라 설치되어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의해 운용・관리되고 있으며, 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은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각종 교류사업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공공외교법」 제12조 및 동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공공외교 추진기관으로 지정되어 공공외교 활동을 위한 교육・홍보, 공공외교의 실태조사 등을 수행하고 있음.

가. 수 입

「한국국제교류재단법」에 따른 국제교류기금의 재원[84]은 국제교류기여금[85],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과 그 밖의 기금운용 수익

83)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3조(기금의 설치・운용)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국제교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재단이 운용・관리한다.
③ <삭 제>
④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4)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2. 제16조에 따른 국제교류기여금
3. 제18조에 따른 차입금
4. 기금 운용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85)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기금의 모금) ① 재단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

금으로 조성됨.

2023년도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은 총 1,518억 700만원이었으나, 계획 대비 131.3% 수준인 1,993억 1,800만원이 수납되었음.

당초 계획대비 수입이 초과 발생한 주요 원인은 민간출연금이 당초계획 20억 1,300만원 대비 446% 수준인 89억 7,000만원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이는 계획액 대비 기부수입이 초과함에 따른 것임.

자체수입[86](국제교류기여금[87], 기부수입, 이자수입 및 기타 잡수입)은 계획 대비 106.1% 수준인 794억 1,800만원이 수납되었고, 2022년에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지 않음에 따라 이자수입이 발생하지 않음.

< 수입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 분	계획액 (A)	징수결정액	수납액(B)	계획액 대비 수납액 비율 (B/A)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합계	**151,807**	**199,318**	**199,318**	**131.3**	**-**	**-**
자체수입	74,838	79,418	79,418	106.1	-	-
정부내부수입	560	-	-	-	-	-
차입금	-	-	-	-	-	-
여유자금회수	76,409	119,899	119,899	156.9	-	-

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권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금액의 한도는 1만 5천원으로 하고, 모금의 대상과 모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86) 자체수입액은 국제교류기여금(675억 2,800만원), 기부수입(89억 7,000만원), 이자수입(22억 800만원) 및 기타 잡수입(7억 1,200만원)으로 총 794억 1800만원이 수납됨.

87) [참고자료 1] 최근 10년간 국제교류기여금 권종별 수납건수 및 금액 참조.

나. 지 출

2023년도 국제교류기금의 지출부문 현황을 보면, 총 지출액은 1,993억 1,800만원으로 계획대비 131.3%를 집행하였고, 사업비는 631억 2,600만원으로 계획대비 112.2%를 집행하였으며, 기금운영비[88](기관운영 경비)는 147억 7,400만원으로 계획대비 100.8%를 집행하였음.

여유자금 운용액은 1,214억 1,700만원으로 계획 528억 8,900만원 대비 229.6%를 집행하였으며, 집행률 증가의 주요 원인은 2022년 완전위탁형 제도 도입에 따른 자산 이관 등의 사유로 여유자금 운용액이 확대됨에 따른 것임.

< 지출 개요 >

(단위: 백만원, %)

구 분	지출계획액 (A)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151,807	160,746	199,318	131.3%	-	30,282
사업비	56,261	65,200	63,126	112.2%	-	2,074
기금운영비	14,657	14,983	14,774	100.8%	-	209
정부내부지출[89]	28,000	28,000	-	-	-	28,000
차입금원금상환	-	-	-	-	-	-
차입금이자상환	-	-	-	-	-	-
여유자금운용	52,889	52,563	121,417	229.6%	-	-

88) 기금운영비 : 임직원 인건비, 국제교류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비

89) 동 지출항목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액임.

다. 기금 재정 변동 상황

국제교류기금의 2023년도 자산은 839억 3,400만원으로 전년 855억 7,000만원 대비 16억 3,600만원(△1.9%)이 감소하였음. 자산 감소의 주요인은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으로 인한 자산가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2023년도 부채는 2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70억 4,000만원 대비 67억 9,700만원(△96.5%)이 감소하였음. 부채 감소의 주요인은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운용자산과의 상계처리에 따른 것임.

2023년도 순자산은 836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 785억 3,000만원 대비 51억 6,100만원(6.6%)이 증가하였음. 순자산 증가는 2022년 대비 여권발급시 부과하는 국제교류기여금 수입증가에 따른 것임.

< 기금 재정상태[90] 변경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A)	2022년(B)	증 감	
			증감액(A-B)	전년도 대비 증감 비율 (A-B)/B
자산[91]	83,934	85,570	△1,636	△1.9
부채[92]	243	7,040	△6,797	△96.5
순자산[93]	83,691	78,530	5,161	6.6

90) **「재정상태표 계정과목 회계처리 지침」**, 기획재정부, p4
재정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는 일정시점에 있어서 국가회계실체의 자산, 부채, 순자산을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다. 재정상태표는 민간기업의 경우 재무상태표와 같은 것이며 국가회계실체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중요한 재무제표이다.

91) 자산(Assets) :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국가회계실체 등에 의하여 소유 또는 통제되고, 미래 공공서비스 잠재력이 있거나 미래에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

라. 재정운영 변동 상황

국제교류기금의 2023년도 프로그램 순원가[94]는 전년도 659억 4,400만원 대비 74억 2,400만원이 증가(11.3%)한 733억 6,800만원이었고, 증가사유는 코로나-19의 종식으로 축소됐던 인적교류사업 등을 재개하였기 때문임.

관리운영비[95]는 전년도 46억 9,900만원 대비 1억 6,900만원이 증가(3.6%)한 48억 6,800만원이었고, 증가사유는 코로나-19의 종식 후 물가상승 요인으로 인한 것임.

비배분비용[96]은 전년도 5,800만원 대비 3,600백만원이 감소(△62.1%)한 2,200만원이었고, 감소사유는 2022년도 아세안문화원 도서관을 전시실로 용도 전환함에 따른 자산폐기 손실이 2023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임.

---

92) 부채(Liabilities) :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고 있고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하며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및 기타비유동부채로 구분됨. 부채는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현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유출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한다.

93) 순자산(net assets) :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잔여액을 말하며, 순자산은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으로 구분함.

94) **「원가계산준칙」** 기획재정부 고시 제2009-14호,
제14조(프로그램순원가) ①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총원가에서 프로그램수익을 빼서 계산한다.
② 프로그램순원가는 **각 개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순원가**를 말하며, 징수하여야 할 국세나 부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95) 제15조(관리운영비) ① 관리운영비는 프로그램의 운영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는 않으나 기관의 기본적인 기능 수행 및 특정 사업의 행정운영과 관련한 인건비와 경비를 말한다.
② 기업특별회계나 기금의 경우 **그 기관의 기능 수행을 위한 관리업무비**를 말함.
* 항목 : 인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및 여비 등

96) 제17조(비배분비용) ① 비배분비용은 국가회계실체가 투입한 비용 중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프로그램에 배분하는 것이 적정하지 아니한 비용**을 말한다.
② 비배분비용에는 다음 각 호의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1. **평가손실, 2. 자산감액손실, 3. 자산처분손실, 4. 이자비용, 5. 기타비용 등**

비배분수익[97]은 전년도 12억 5,300만원 대비 11억 1,000만원이 증가(88.6%)한 23억 6,300만원으로, 이는 부담금 수입 증가로 인한 여유자금 운용의 증가에 따른 운용 수익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비교환수익[98]은 전년도 408억 8,500만원 대비 372억 8,400만원이 증가(91.2%)한 781억 6,900만원으로, 증가사유는 코로나-19의 종식 이후 여권 발급량 회복으로 인해 국제교류기여금 수입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임.

< 기금 재정운영[99] 변경현황 >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3년(A)	2022년(B)	증 감	
			금 액(A-B)	증감비율 (A-B)/B
Ⅰ.프로그램순원가	73,368	65,944	7,424	11.3 %
Ⅱ.관리운영비	4,868	4,699	169	3.6 %
Ⅲ.비배분비용	22	58	△36	△62.1 %
Ⅳ.비배분수익	2,363	1,253	1,110	88.6 %
Ⅴ.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75,895	69,448	6,447	9.3 %
Ⅵ.비교환수익 등	78,169	40,885	37,284	91.2 %
Ⅶ.재정운영결과(Ⅴ-Ⅵ)	△2,274	28,564	△30,838	△108.0 %

재정운영결과는 285억 6,400만원 대비 △308억 3,800만원 증가한 △22억 7,400만원임.

---

97) 제18조(비배분수익) ① 비배분수익은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이 없거나 **특정 프로그램으로 추적하는 것이 불가능한 수익을 말한다.**
② 비배분수익에는 다음 각호의 항목이 포함될 수 있다.
1. **이자수익, 2. 평가이익, 3. 감액손실 환입, 4. 자산처분이익 등**

98) **「재정운영표 계정과목 회계처리 지침」**, 기획재정부, p.59.
비교환수익이란 국가회계실체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지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을 말함. 국세, 부담금, 기부금, 무상이전 및 제재금 등

99)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재정운영표) ①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를 말한다.

마. 주요사업 개관

한국국제교류재단(이하 “재단”이라 함)의 주요사업인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① 글로벌 한국학진흥, ② 국제협력네트워킹, ③ 문화교류협력강화, ④ 지정기부금 운영, ⑤ 국제교류정보화로, 총 5개의 단위사업과 9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3년도 총 계획액 1,518억 700만원 중 인건비 및 기타운영비 등 외교행정지원 계획액과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통화금융기관 예치 등 여유자금 운용 계획액을 제외한 재단에서 직접 수행하는 주요사업인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 계획액은 562억 6,100만원이고, 이 중 계획액의 112.2%에 해당하는 631억 2,600만원을 집행하였음.

주요사업 계획액 집행내역(총액 대비 비율)은 인적교류 관련사업 및 정책연구지원 사업 등으로 구성된 국제협력네트워킹 사업 211억 6,200만원(33.5%), 한국학 기반확대 사업 및 한국전문가 육성 등 한국학 관련 사업 179억 4,700만원(28.4%), 문화교류협력강화 사업 120억 5,500만원(19.1%), 지정기부사업 91억 9,600만원(14.6%), 국제교류정보시스템 운영사업 27억 6,600만원(4.4%) 순으로 각각 지출되었음.

< 국제교류기금 주요사업 개관 >

(단위: 백만원, %)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2 결산	2023			2024 계획액
				계획액(A)	결산(B)	B/A	
계			58,652	56,261	63,126	112.2	54,017
[2600]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58,652	56,261	63,126	112.2	54,017
	[2632] 글로벌 한국학 진흥		16,539	18,644	17,947	96.3	19,634
		[401] 한국학기반확대	16,539	18,644	17,947	96.3	19,634
	[2633] 국제협력네트워킹		19,085	21,326	21,162	99.2	19,497
		[401] 글로벌인적교류	3,758	5,894	5,430	92.1	3,850
		[402] 정책공공외교강화	8,336	8,837	9,239	104.5	8,474
		[403] 공공외교기반확대	2,214	2,301	2,167	94.2	2,048
		[404] 글로벌 협력 강화	4,777	4,294	4,326	100.7	5,125
	[2634] 문화교류협력강화		13,435	11,613	12,055	103.8	10,361
		[401] 한국문화해외확산	5,715	6,190	6,572	106.2	5,507
		[402] 글로벌문화교류	7,720	5,423	5,482	101.1	4,854
	[2635] 지정기부금운영		7,041	1,912	9,196	481.0	1,759
		[401] 지정기부사업	7,041	1,912	9,196	481.0	1,759
	[2636] 국제교류정보화		2,553	2,766	2,766	100.0	2,766
		[401] 국제교류정보시스템 운영	2,553	2,766	2,766	100.0	2,766

2. 검토의견

가. 수 입

□ 코로나 및 기여금 요율 인하에 따른 적립금 감소에 대한 대책 마련

국제교류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국제교류기여금(법정부담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100]에 따라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모금하는 법정부담금으로 여권수요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상황임.

< 최근 10년간 법정부담금 권종별 수납건수 및 금액 >

(단위: 백만원, 건)

구분	복수여권				단수여권		여행증명서		합계	
	10년 (15,000원권/$15)		5년 (12,000원권/$12)		1년이내 (5,000원권/$5)		임시 여권 (2000원권/$2)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4	2,106,229	31,620	434,713	5,226	155,051	777	6,277	13	2,702,270	37,636
2015	2,672,060	40,132	568,884	6,849	152,751	767	6,222	13	3,399,917	47,761
2016	2,944,374	44,277	555,874	6,708	131,402	663	5,921	13	3,637,571	51,661
2017	3,661,835	55,048	756,548	9,109	141,051	711	6,742	15	4,566,176	64,883
2018	3,461,947	52,032	695,101	8,363	116,405	586	7,885	17	4,281,338	60,998
2019	3,416,277	51,484	617,310	7,445	93,060	472	8,763	20	4,135,410	59,421
2020	1,035,431	15,738	182,181	2,223	22,596	117	3,856	9	1,244,064	18,087
2021	515,083	7,891	84,055	1,050	4,260	23	803	2	604,201	8,966
2022	1,721,317	26,090	224,042	2,764	12,841	68	773	2	1,958,973	28,924
2023	4,037,946	60,821	524,888	6,365	65,784	339	1,237	3	4,629,855	67,528

100)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제16조(기금의 모금) ① 재단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여권법」에 따른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 등으로부터 국제교류기여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모금액의 한도는 1만 5천원으로 하고, 모금의 대상과 모금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코로나19 영향기간 동안(2020~2022년) 여권발급건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기금의 주요 재원인 국제교류기여금 수입이 급감하였으나, 2023년 수입(675억원)이 과거 10년 최대치인 2017년(649억원) 수준 이상으로 회복하였고 코로나와 같은 통제불가한 외부환경변화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여권발급수요는 당분간 2023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최근 10년간 기금 적립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1,378억원이었던 적립금이 2019년 최고점인 1,863억원에 이르렀음.

코로나19로 인하여 2023년 적립금은 2019년(1,863억원) 대비 36.7%인 684억원으로 2023년 지출액(687억원)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지출액은 과거 10년 전 2014년(543억원) 대비 25.8%p 증가한 2023년 687억원으로 점차 사업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코로나 발생시기에 수입이 급감함에도 불구하고 계속성 사업의 성격으로 지출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지출액이 증가하여 기금적립금의 감소추세가 더욱 빨라졌음.

< 최근 10년간 기금 수입, 지출 및 적립금 현황 >

(단위: 백만원)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수입	42,682	51,675	53,703	76,811	67,215	64,372	24,326	16,993	30,855	70,449
지출	54,309	45,884	46,680	49,581	57,415	65,556	55,886	62,421	65,564	68,704
적립금	137,821	142,746	155,701	176,218	183,631	186,339	154,540	108,382	72,471	68,396

※ 작성기준
- 수입: 자체수입(국제교류기여금, 운용 이자수입, 잡수입, 단, 지정기부금(민간출연금) 제외)
- 지출: 사업비(지정기부사업 제외), 기금운영비
- 적립금: 여유자금운용 기말 잔액(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금 포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3월 27일 정부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에 따라 기여금의 요율 인하 및 면제를 추진하여 2024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임.

단수여권(5,000원) 및 여행증명서(2,000원) 발급수수료는 면제하고 5년 및 10년 기한 복수여권은 각각 12,000원, 9,000원으로 기여금 요율을 인하함에 따라 향후 연간 기여금수입이 종전에 비하여 20% 정도(140억원 수준) 감소할 것으로 보여 현재의 수준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기금 고갈이 우려됨.

< 2024년 기여금 요율 인하 및 면제 추진 현황 >

구 분	2차 개정 (2004.12.31)	3차 개정 (2024.07.01. 예정)	비 고
1.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			
가. 일반여권			
(1) 복수여권	15,000원/$15(10년), 12,000원/$12(5년)	12,000원/$12(10년), 9,000원/$9(5년)	◦10년:만18세이상 ◦5년:만8세~18세미만
-거주여권	(일반여권에 포함)	(일반여권에 포함)	
(2) 단수여권	5,000원 / $5	-	
나. 여행증명서	2,000원 / $2	-	

재단은 지속가능한 공공외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지출 구조조정, 사업 효율화 방안 및 민간출연금 확대, 기금사업의 일반회계로 전환 등 재정수입 구조의 개편 등 다양한 관점의 정책적 고민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나. 지 출

1) 총괄

□ 「해외한국학지원사업 시행지침」,「회계규정」등 KF 내부지침 정비 필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은 1991년 「한국국제교류재단법」제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1992년 한국학 교수직 설치 지원사업, 해외 인사초청 사업, 방한연구 펠로십 사업, 해외 정책연구소 지원사업, 해외 박물관 한국실 설치 지원사업 등을 시작으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

이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KF 내부규정(128개)을 마련하여 운용 중에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전반적으로 규정의 현행화를 통한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재단은 예산 및 회계처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기 위하여 「회계규정」을 운용하고 있음. 「회계규정」제5조[101]는 재단의 회계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 필요시 재단 자체수익 사업에서 조성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와 별도로 수익사업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회계운용세칙으로

101) **「회계규정」**
제5조(회계구분) ① 재단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일반회계는 한국국제교류재단법(이하 "재단법" 이라 한다) 제16조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거래를 처리한다.
③ 특별회계는 재단법 제15조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 보조 또는 기부에 의한 자금을 보유 운용할 때 설치하며 필요시 재단 자체수익 사업에서 조성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와 별도로 수익사업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④ 특별회계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특별회계운용세칙으로 따로 정한다.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단은 2009년 회계연도부터 국가회계기준 적용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분없이 기금회계를 적용하고 있고 정부 외의 자의 출연은 기금회계의 정부외 기부금 계정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특별회계운용세칙 또한 제정하지 않고 국가회계편람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고 있음.

「해외한국학지원사업 시행지침」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해외에서의 한국학과 이에 관련된 한국학을 활성화, 체계화하는 제반활동을 지원하여 한국에 대한 이해를 심화할 목표로 1994년에 제정된 지침임.

< 유관기관 사업 현황 비교 >

구분	외교부(KF)	교육부	문체부(세종학당)	재외동포청
사업 대상	정규 과정	정규 과정	비정규 과정	비정규 과정
	대학 강좌 수강생	초중고교생/교육대생	일반 대중	일반 대중
사업 분야	한국어 및 한국학	한국어	한국어	한국어
사업 내용	대학 정규 과정 한국어 · 학 강좌 운영 지원	초중고 한국어 채택 및 한국어반 운영 지원	일반인 대상 한국어 보급	한글학교 운영 및 교사연구 지원, 온라인 학습 사이트 운영

동 지침 제4조(지원대상)[102]는 초·중·고등 교육기관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으나, 재단은 교육부, 문체부 등 유관기관과의 업무중복 지원방지를 위해 업무분장을 통해 해외대학 한국학 정규과정(학점 인정)을 지원하고 초·

102) **「해외한국학지원사업 시행지침」**
제4조(지원대상) 해외한국학지원사업의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국내 및 해외 대학교/대학원/초·중·고등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
2. 해외 각급 도서관
3. 국내 및 해외 연구단체
4. 한국학 관련 국내외 학회
5. 해외 한국어 교육기관

중·고등 교육기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음.

재단이 1990년대 설립되면서 제정된 내부 지침이 사업의 다양화 및 분화 등을 거치면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현행화 작업이 미흡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바, 향후 재단은 전면적으로 내부 지침을 검토하여 현재 재단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부합하지 않는 지침을 정비하여야 할 것임.

□ 청년인턴 보수 및 해외사무소 해외경상이전 등 경비의 성격을 고려한 예산집행 절차 수립 필요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청년 일경험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 조기 채용 및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 내실화를 추진하는 기획재정부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응하여 경상경비 절감분 및 사업비 잉여분 등 자체활용가능한 예산을 재원으로 2023년도 「청년일경험사업 운영가이드라인」에 따라 청년인턴사업을 추진하였음.

이에 공공외교기반확대, 글로벌인적교류, 글로벌문화교류, 한국학기반확대, 글로벌협력강화 등 5개 세부사업에서 2023년 11월까지의 청년인턴보수를 일반수용비에서 1억 3,576만원을 집행하였고 연말에 부족한 청년인턴보수 12월분은 기금운영비-기타운영비[103]의 일반수용비에서 1,880만원을 집행하여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음[104].

103) KF의 기금운영지원을 위한 기관운영비임.

104) 「예산집행지침」은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에 대한 보수를 일용임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23년 청년인턴 예산 집행 내역 >

(단위: 천원)

프로그램	세부사업	예산과목	청년인턴 보수 지급 내역	금액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2600)	공공외교기반확대	일반 수용비	○디지털혁신부 1명(5-11월)	14,780
	글로벌인적교류		○글로벌네트워크사업부 2명(5~11월) ○글로벌센터사업부 1명(5~11월) ○경영관리부 1명(9~11월)	50,179
	글로벌문화교류		○아세안문화원 2명(5~11월) ○경영관리부 1명(5~6월)	32,075
	한국학기반확대		○펠로십사업부 2명(5~11월) ○경영관리부 1명(7~8월)	33,611
	글로벌협력강화		○한 · 중아협력포럼사무국 1명(5~7월)	5,113
외교행정지원 (7000)	기타운영비		○청년인턴 보수 12월분	18,796
계				154,554

한국국제교류재단은 2023년도 「청년일경험사업 운영가이드라인」에 따라 인건비·경상경비 절감분 및 사업비 잉여재원 전용 등 기관별로 활용 가능한 자체예산을 사용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2023년도 예산집행지침」은 경비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업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방안에 따라 청년인턴을 채용할 경우 경상경비 절감분 등을 활용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간과한 것으로 보임.

한편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105]는 기금운용계획 변

105) **「국가재정법」**
제7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는 기

경을 통해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KF는 청년인턴사업을 추진하면서 11월까지의 보수는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2600 프로그램)'에서 12월분 보수는 '외교 행정지원(7000)'에서 집행하면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하였음.

또한 KF 해외사무소는 현지 수요대응 기획사업 추진 및 본부사업 현지화를 위해 본부가 전도한 해외경상이전(340-01)[106] 경비 연간 총 11억원 규모의 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023년 기준 해외사무소의 82건 자체사업 중 해외대학 및 기관에 대한 지원사업이 70건(85%)이고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 수집을 위한 사무소 주관사업이 12건(15%)임.

해외기관 지원사업과 달리 해외사무소가 직접 수행하는 주관사업은 「예산집행지침」에 따라 해외경상이전(340-01)이 아닌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경비별 성격을 고려하여 집행되어야 하나, KF는 해외경상이전으로 자체사

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지출금액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
가. 기금운용계획상 여유자금 운용으로 계상된 지출금액
나. 수입이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계획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금액
다.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지출금액
5.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기 위한 국채 원리금 상환
6.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한 국채 원리금 상환

10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금 중 해외교포 또는 외국기관에 지급하는 경상보조금과 교포교육 경비

업 전체를 편성·집행하여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하지 않았음.

향후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적절한 집행 절차를 수립하고, 경비의 성격에 부합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2) 글로벌 한국학 진흥

「글로벌 한국학 진흥」 사업은 재단 사업의 핵심인 한국학 확대 및 전문가 육성을 위한 것으로, 해외대학의 한국학 교수직 설치 및 강좌 운영 등을 통해 장기적 한국학 발전과 지한(知韓)인사 지속 배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해외 한국 연구자 및 학생들에 대한 학업단계별 연구·장학 지원 프로그램, 외국 중고교 교육자 대상 한국학워크숍과 한국학 특강 등을 통해 각국에서 활동할 현지 한국 전문가 육성 및 지한(知韓)인맥 확대, 국제사회에서의 한국 이해 저변 확대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글로벌 한국학 진흥」 사업은 1개의 세부사업(한국학 기반 확대)으로 구성되어 있음.

< 2023년도 글로벌 한국학 진흥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한국학 기반확대	18,644	-	△527	-	18,117	17,947	-	170	19,634
계	18,644	-	△527	-	18,117	17,947	-	170	19,634

2023년도 계획액은 「한국학 기반확대」 사업에 186억 4,400만원이 편성되었고, 5억 2,700만원이 감액 전용되어 계획현액은 181억 1,700만원이며, 이 중 179억 4,7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7,000만원이 불용되었음.

□ 대학원생 장학지원사업 변경(협약형 폐지→공모형 전환)에 따른 예산 편성 및 지침 개정 등 사전계획 미흡

대학원생 장학지원사업은 해외에 소재한 대학에서 한국 관련 전공 또는 연구를 하는 외국인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모형과 협약형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공모형은 북미, 유럽, 대양주를 대상지역으로 공모 후 현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하고 협약형은 일본을 대상지역으로 협약대학 추천 및 공모 후 국내 서면 심의하거나 그 밖의 중국 등 대상지역[107]은 협약대학 추천 후 재단 승인을 거쳐 장학생을 선발하였음.

< 대학원생 장학지원 장학금: 공모형 및 협약형 비교 >

구분	공모형	협약형
주요내용	한국학이 비교적 발전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인 신청 및 현지 심의를 통하여 수혜자 선발	한국학 집중 육성이 필요한 국가의 거점 대학을 중심으로 협약을 맺고 추천을 통해 수혜자 선발
대상지역	북미 · 유럽 · 대양주	동북아(일본, 중국, 몽골), 동남아(인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유라시아(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재단은 2000년대 초반 대비 협약형 장학지원 국가 내 안정적인 한국학 발전 현황을 감안하여 2023년부터 협약형 사업을 전면 폐지하고 공모제로 일괄 전환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음.

대학원생 장학지원사업의 예산 편성 및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공모

107) 협약형Ⅱ: 중국, 몽골, 인도,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러시아

형 사업을 협약형 사업보다 과소 편성한 후 협약형 사업으로 기금을 집행하고 있음.

2021년~2022년의 경우 협약상 배정된 인원을 기준으로 협약형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당초 계획된 인원만큼 수혜자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추천자가 장학금 수혜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지원할 수 없으므로 편성액과 집행액 간 차이가 발생하였고,

2023년도 사업 예산에도 협약형사업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2023년도에 전면 공모형으로 사업 개편이 진행됨에 따라 편성액과 집행액 간 차이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예산 편성 시점과 사업개편 시점의 시차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설명함.

< 연도별 대학원생 장학지원 장학금 예산집행 내역 >

(단위: 천원)

연도별	사업명	계획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 고
2021	공모형	399,000	741,996	△342,996	
	협약형	1,382,997	802,092	580,905	
2022	공모형	440,000	787,824	△347,824	
	협약형	1,000,000	741,637	258,327	
2023	공모형	498,316	1,126,069	△627,753	
	협약형	1,064,060	-	1,064,060	

또한 재단은 한국전공 대학원생 장학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및 사업성과 제고를 위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한국전공 대학원생 장학지원 시행지침」을 운용하고 있음.

재단은 2023년 대학원생 장학지원사업부터 협약형을 전면 폐지하고 공모형만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사업 추진 전에 「한국전공 대학원생 장학지원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당초 사업 여건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었음.

향후 재단은 사업추진과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 편성단계부터 적정하게 계획수립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며, 사전에 관련 지침을 개정하여 사업추진에 흠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임.

3) 국제협력네트워킹

「국제협력네트워킹」은 다음과 같이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글로벌 인적교류」는 해외유력·고위인사 방한초청을 통해 타 국가의 주요 현안에 대한 대응기반을 구축하고, 권역별 차세대 지도자들을 초청하여 양국 차세대 지도자간 네트워킹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며, 「정책공공외교강화」는 자국 정부나 의회 대상 정책 제언을 하는 주요국 싱크탱크의 한국 관련 연구를 지원하여 한국에 대한 우호적 여론 형성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

「공공외교 기반확대」는 대학생, 일반인 등에 대한 공공외교 교육을 시행하고,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활동을 지원하여 공공외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며, 「글로벌 협력강화」는 주요 외교 현안 관련 양자 및 다자포럼 등을 통해 각종 글로벌 이슈에 한국의 입장을 반영하고, 중앙아협력포럼사무국 운영을 통해 한-중앙아 협력사업의 효과적 이행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임.

< 2023년 국제협력네트워킹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3년								2024년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글로벌 인적교류	5,894	-	△397	-	5,497	5,430	-	67	3,850
정책공공외교강화	8,837	-	443	-	9,280	9,239	-	41	8,474
공공외교 기반확대	2,301	-	△125	-	2,176	2,167	-	9	2,048
글로벌 협력강화	4,294	-	92	-	4,386	4,326	-	60	5,125
계	21,326	-	13	-	21,339	21,162	-	177	19,497

2023년도 계획액은 총 213억 2,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1,300만원이 증액 전용되어 계획현액은 213억 3,900만원이고, 이 중 211억 6,2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1억 7,700만원이 불용되었음.

□ 사업기간과 회계주기를 일치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글로벌인적교류」의 내역사업인 '글로벌챌린저 아카데미'는 국제 교류 및 진출 기회가 적은 우리 청년(대학생)들에게 국내외 어학 및 국제이해 교육, 활동, 해외 탐방 기회를 제공, 우리 청년들의 글로벌 진출 역량을 함양하고 세계시민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신규사업임.

글로벌챌린저 아카데미는 참가자 국내연수(온라인, 집합교육) 및 국외연수 시행 및 지원, 성과발표회 시행, 참가자 안전관리 등 실무 전반을 위탁운영하고 모집 및 선발, 국내연수(7~8월), 해외연수(8~12월) 후 최종 성과발표회를 다음연도 1월에 개최하고 있어 사업주기와 회계주기를 일치시키지 않고 2개년에 걸쳐 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시기	내용	상세내용
5~6월	모집 및 선발	- 참가자 선발공고, 대외홍보, 선발
▼	▼	▼
7~8월	국내연수	- 어학교육, 국제이해 강연 등
▼	▼	▼
8~12월	해외연수	- 해외어학교육, 문화체험 등
▼	▼	▼
차년도 1월	성과발표	- 프로그램 참여자 성과 발표회

이에 계약금 1차 선금은 계약 착수 후, 2차 중도금은 해외 연수 종료 후(해당연도 12월 중) 지급하고 있으며, 3차 잔금은 다음연도 과업 종료 후 지급하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 집행은 사고이월에 해당되므로 3차 잔금에 해당하는 예산액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수행할 필요가 있었음.

< 글로벌챌린저 아카데미 운영 예산집행 내역 >

(단위: 천원)

사업명	계약금	지출구분	집행액	지출일자
2022(-2023) KF 글로벌챌린저 아카데미 ('22.7.12.~'23.1.31.)	1,081,608	1차 선금	813,600	2022.07.22
		2차 중도금	159,847	2022.12.27
		3차 잔금*	108,160	2023.02.09
2023-2024 KF 글로벌챌린저 아카데미 ('23.4.6.~'24.1.31.)	1,095,000	1차 선금	876,000	2023.05.15
		2차 중도금	109,500	2023.12.27
		3차 잔금*	109,500	2024.02.19

* 다음연도 예산액으로 집행

KF는 글로벌챌린저 아카데미 사업은 2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되고 계약기간 또한 다음연도에 종료되므로 다음연도에 별도의 예산액을 편성하여 집행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계약체결내역의 주요사업인 모집 및 선발, 국내외 연수 등이 당해연도에 실시되고 있으며, 다음연도에는 성과발표만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음.

따라서 KF는 사업기간과 회계주기를 일치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임.

□ 공공외교 및 상호교류 취지에 부합도록 청년교류사업 개선 필요

「글로벌인적교류」의 내역사업인 '청년교류사업'은 미래 공공외교의 주역이 될 청년 간의 국제교류를 통해 상호 간의 이해의 폭을 넓히고 미래지향적 관계 구축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임.

우리나라에 초청된 청년은 방한기간 동안 한국에 대한 브리핑, 전문가 강의, 한국 청년과의 토론, 주요 문화유적지 및 산업시찰 등 다양한 한국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고, 상대국으로 파견하는 한국 청년 역시 강의, 문화유적지 방문, 현지 청년과의 교류활동을 통해 해당 국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게 됨.

2023년은 한·일 대학생교류, 한·베 청년교류, 호주청년예비언론인 방한 초청사업을 추진하였음.

< 2023년 청년교류사업 추진 내역 >

구 분		기간	인원	경비부담
한 · 일 대학생교류	방한	9일	30명	상호주의: 한국
	방일	9일	29명	상호주의: 일본
한 · 베 청년교류	방한	10일	30명	한국: 왕복항공료, 비자 등 체제비 전액
	방베	7일	10명	한국: 왕복항공료, 숙박비, 보험, 비자 베트남: 현지 교통비, 식사, 통역비 등
호주청년예비언론인 초청	방한	7일	13명	초청자(한국) 부담

한·베 청년교류는 2013년 한-베 정상회담 후속사업으로 2014년부터 베트남 내무부와 협력하여 베트남 국가 청년공무원을 방한 초청하는 사업으로 연간 40명을 초청하였음.

2019년 12월 KF와 베트남 내무부는 기존의 일방 초청 방식 사업을 변경하여 쌍방향 교류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5개년(2020~2024) 협약을 갱신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다가 2023년 제1회 한·베청년교류사업이 시행된 것임.

한·베 청년교류는 쌍방향 교류방식으로 변경된 점을 고려할 때 가급적 상호주의 방식에 따라 교류대상, 인원, 기간을 베트남 참가자와 유사하게 맞추어 협정을 체결하고 동 사업의 목표가 청년들 간 상호교류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이므로 상호 교류에 따른 교류대상자 간의 인적교류를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할 필요가 있었음.

< 한·베 청년교류사업 MOU 체결 내역 >

구 분		방한초청	방베사업
체결기관		(한국) KF, (베트남) 내부무	
대표단 나이		24세 이상	
경비부담	한국	국제선 왕복항공료, 보험, 비자, 통역비 등 한국 체제비 전액	국제선 왕복항공료, 보험, 비자, 숙박비 및 한국에서 발생하는 비용
	베트남	대표단 조직 비용 일체	현지 교통비, 식사, 통역비 등 베트남에서 발생하는 체재비용
인원수(2023년)		최대 30명(30명)	최대 15명(10명)
기간		10일	7일

그러나 한·베청년교류사업은 인원수, 방문기간, 경비부담 등 모든 조건이 상호주의에 입각하지 않고 베트남측의 편의를 배려하되 부담을 최소화하여 협정을 체결하였음.[108] 2023년 한·베 청년교류사업 추진 결과 총 소요액 약

1억 3,000만원 중 방베단을 위한 집행액은 약 3,000만원, 방한단을 위한 집행액은 약 1억원임.

< 2023년 한·베 청년교류사업 실시내역>

<한베청년교류(방한단)>

일시	일정
6.11.(일)	입국(하노이 → 서울)
6.12.(월)	서울시 면담 및 시청 투어
6.13.(화)	농협중앙회, aT 화훼공판장, 하나로마트 견학
6.14.(수)	글로벌지식협력단지, 현대모터스튜디오 관람
6.15.(목)	농촌진흥청 면담, 스마트팜 혁신밸리 견학
6.16.(금)	농식품부 면담
6.17.(토)	경복궁, 국립현대미술관, 삼성이노베이션뮤지엄
6.18.(일)	[부산] 남천문화마을, 아세안문화원, 해운대 전망대
6.19.(월)	[울산]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견학
6.20.(화)	출국(부산 → 하노이)

<한베청년교류(방베단)>

일시	일정
7.23.(일)	출국(서울 → 하노이)
7.24.(월)	내무부 · 보건부 · 보건부 면담, 국가행정아카데미 방문
7.25.(화)	코트라 하노이무역관 방문, 하노이 취업지원센터 방문
7.26.(수)	탕롱황성, 호치민 묘소, 호아로 수용소 방문
7.27.(목)	한국 기업(CAP Global) 방문, 화빙성 내무부 면담
7.28.(금)	마이쩌우현 인민위원회 면담
7.29.(토)	입국(하노이 → 서울)

2023년 방한단과 방베단은 별도의 상호 교류 없이 방문대상지의 면담이나 견학 위주로 사업이 이루어졌음. 한·베 청년교류사업이 과거 초청 방식의 사업에서 쌍방향 교류 방식으로 변경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든 것으로 보임. 청년교류사업 중 한일대학생교류사업은 교류대표단 간의 워크숍, 방한단 교류회, 홈스테이, 현지학생과의 교류 등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사업의 목표에 부합하도록 운영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한·베 청년교류사업 협정은 대표단의 나이를 24세 이상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KF는 베트남 내무부 측에 가급적 40세 이하의 중앙 및

108) 「차세대지도자교류사업 시행지침」 제11조는 국내인사를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 공동주관기관과의 양해각서에 따라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경비를 분담할 수 있으나,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자체 공무원으로 방한단 구성을 요청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음.

그러나 베트남 방한단은 대다수가 40세 이상이고 내무국 처장, 국장, 부국장 등 고위급 간부도 포함하고 있어 청년교류사업의 대상인 청년층 인사, 초급 공무원의 범주에 벗어나고 있으며, 반면 방베단은 지자체 주무관으로 20대 말이나 30대 초반임을 고려할 때 상호간 참가자의 연령이나 직급이 상당하게 차이가 나고 있어 인적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참가자 구성이 적정한지 모호함.

< 한·베 청년교류사업 참가자 현황 >

연령별	20-30	30-40	40-50	50-60	계
방한단	-	10명	13명	7명	30명
방베단	6명	4명	-	-	10명

* 방한단은 34세부터 60세까지 있고, 방베단은 26세부터 38세까지 임.

따라서 한·베 청년교류사업이 과거 초청 방식의 사업에서 쌍방향 교류방식으로 변경한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 및 보완할 필요가 있음.

호주청년예비언론인 초청사업은 호주 주요 언론사 및 언론관련 기관에서 한국을 잘 이해하는 언론인 그룹을 양성하고자 2015년부터 사업비를 일부 지원함. 2022년부터 KF와 호주한인공익재단이 체결한 사업 공동주최 MOU에 의거해 참가자(인솔자 포함) 방한 사업비(항공료, 숙박비, 식비, 차량임차료 등)를 KF에서 부담함.

2022년 및 2023년 방한사업은 각각 호주대학 언론관련학을 전공하는 예비언론인 10명, 인솔자 3명 등 총 13명이 사업에 참여하였음. 인솔자는 호주한인공익재단 임원진 3명[109]이고 이들은 한인으로 2년 동안 인솔자로 참가하였는데, 참가자 10명에 인솔자 3명은 과다한 측면이 있으며, 가급적 인솔자도 공공외교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현지대학교의 교수나 조교 등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해 볼 필요가 있었음.

109)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

Ⅳ. 국제질병퇴치기금 결산

1. 총 괄

국제질병퇴치기금은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과 퇴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동 기금은 한국국제협력단(국제질병퇴치기금팀)에서 운용·관리하고 있으며, 질병 예방·퇴치를 위한 개발도상국에 대한 지원, 개발도상국의 질병 예방·퇴치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국제기구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사용되고 있음.

가. 수 입

「국제질병퇴치기금법」에 따른 기금은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출국납부금[110]과 기금운용수익금을 주요 재원으로 조성되고 있으며, 정부출연금도 그 재원으로 명시되어 있음.[111]

---

110)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5조(출국납부금의 납부 등) ① 국내 공항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천원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외교부장관은 항공기 좌석 등급에 구분이 있는 경우 상위 등급의 좌석으로 출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1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좌석 등급에 따라 차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출국납부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출국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출국납부금의 부과·징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11)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① (생 략)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출연금
2. 제5조제1항에 따른 납부금(이하 “출국납부금”이라 한다)
3. 기금운용수익금

< 수입 개요 >

(단위 : 백만원, %)

구 분	계획액	징수 결정액	수납액		계획액 대비 수납액비율
			23년	22년	
합 계	48,005	41,622	41,622	59,105	86.7
기타재산수입	223	330	330	175	148.0
법정 부담금	35,496	29,383	29,383	6,697	82.8
기타 경상이전 수입	386	110	110	272	28.5
기금 예수금	10,000	10,000	10,000	48,730	100.0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112]	1,900	1,799	1,799	3,063	94.7

2023년도 수입현황을 살펴보면, 당초 계획은 총 480억 500만원이었으나, 징수 결정액은 계획 대비 86.7% 수준인 416억 2,200만원이 수납되었음.

112) 2019년 연중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회수 수입과목을 신설한바, 이는 2017년도 외교통일위원회 결산 예비심사보고서 지적에 대한 조치로 2019년 1/4분기 자산운용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여유자금을 중장기 자산에 투자하기 위한 조치임.

나. 지 출

2023년도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지출부문 현황을 보면,

총 지출액은 416억 2,200만원으로 지출계획 대비 86.7% 집행하였고, 사업비는 360억 9,500만원으로 지출계획 대비 98.1%를 집행하였으며, 기금운영비[113]는 5억 5,500만원으로 지출계획 대비 69.1%를 집행하였음.

여유자금 운용은 지출계획 대비 40.4%인 36억 5,200만원임.

< 지출 개요 >

(단위 : 백만원, %)

구 분	지출계획액	지출계획 현액 (A)	지출액		집행률 (B/A)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2023(B)	2022년			
합계	48,005	48,005	41,622	59,106	86.7	-	988
사업비	36,786	36,786	36,095	55,997	98.1	-	691
기금운영비	803	803	555	600	69.1	-	248
기금간거래	1,369	1,369	1,320	710	96.4	-	49
여유자금운용	9,047	9,047	3,652	1,799	40.4	-	-

※ 여유자금운용(비통화금융기관예치) 예산과목은 불용을 특정하지 않는 예산과목임.

113) 기금운영비: KOICA 국제질병퇴치기금팀 인건비 및 기금 운용 위한 행정성 경비

다. 기금 재정상태 및 운영현황

2023회계연도 말 현재, 기금 자산은 74억 1,051만원, 부채는 593억 1,948만원이고, 순자산은 △519억 897만원이고, 기금 재정운영순원가(378억 382만원)에서 부담금수익(309억 2,472만원)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68억 7,910만원임.

< 2023년도 기금 재정상태 >

(단위 : 백만원)

자산	부채	순자산
7,411	59,319	△51,908

< 2023년도 기금 운영현황 >

(단위 : 백만원)

과 목	총원가	수 익	순원가
Ⅰ.프로그램순원가[114]	36,526	△110	36,416
Ⅱ.관리운영비[115](인건비)	-	-	277
Ⅲ.비배분비용[116]	-	-	1,443
Ⅳ.비배분수익[117](이자수익)	-	-	333
Ⅴ.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	-	37,803
Ⅵ.비교환수익[118](부담금수익)	-	-	30,924
Ⅶ.재정운영결과(Ⅴ-Ⅵ)	-	-	6,879

114)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기획재정부령 제732호
제25조(중앙관서 또는 기금의 재정운영표) ②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원가 합계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 배부받은 원가를 더하고, 다른 프로그램에 배부한 원가는 빼며,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등을 빼서 표시한다.

115) ③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에서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은 더하고, 제3호의 수익은 빼서 표시한다.
1. 관리운영비: 기관운영비와 같이 기관의 여러 정책이나 사업, 활동을 지원하는 비용(「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나 기금의 경우에는 관리업무비를 말한다)

116) 2. 비배분비용: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비용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비용

117) 3. 비배분수익: 국가회계실체에서 발생한 수익 중 프로그램에 대응되지 않는 수익

118) 제28조(수익의 정의와 구분) ① 수익은 국가의 재정활동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거나,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법령에 따라 납부의무가 발생한 금품의 수납 또는 자발적인 기부금 수령 등에 따라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를 말한다.

라. 주요사업 개관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주요사업은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으로 편성·집행되고 있는바, 동 프로그램은 국제질병퇴치를 목적으로 하는 ⅰ) 민관협력 국제질병퇴치사업, ⅱ) 국제기구협력 국제질병퇴치사업, ⅲ) 글로벌 국제질병퇴치사업, ⅳ)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수수료 사업, 이상 4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2023년도에는 총 예산액 367억 8,600만원의 86.7%에 해당하는 360억 9,500만원이 집행되었는바, 각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은 NGO 등과의 민관협력사업을 위해 9,200만원, 국제기구와의 협력사업을 위해 113억 8,800만원, 글로벌 국제질병퇴치사업에 232억 5,400만원, 출국납부금 징수위탁에 따른 수수료 지급으로 13억 6,100만원이 각각 집행됨.

< 2023년도 국제질병퇴치기금 주요사업 개관 >

(단위 : 백만원, %)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결산				
			2022 결산	2023			2024 예산
				예산(A)	결산(B)	B/A	
[2400] 국제개발협력			55,997	36,786	36,095	98.1	91,333
	[2439] 질병퇴치사업		55,997	36,786	36,095	98.1	91,333
		[401] 민관협력 국제질병퇴치	1,510	114	92	80.7	159
		[402] 국제기구협력 국제질병퇴치	10,773	11,627	11,388	97.9	16,427
		[403] 글로벌 국제질병퇴치	43,445	23,270	23,254	99.9	73,026
		[404]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269	1,775	1,361	76.7	1,721

② 수익은 그 원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교환수익: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
2. 비교환수익: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국세, 부담금, 기부금, 무상이전 및 제재금 등의 수익

□ 국제기구협력 국제질병퇴치사업 결산 내역

외교부는 국제기구협력 국제질병퇴치사업에 당초 116억 2,700만원을 계획했으나, 실제로는 113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2억 3,900만원을 불용하였음.

< 국제기구협력 국제질병퇴치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세사업 명	사업 내용	사업 기간 조정 내용	2023년				2024년 계획액
			계획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집행액/계획액)	
WHO 항생제내성 등 신규 감염병 대응을 위한 국가대응 능력 향상사업	감염병에 대한 대응계획 및 감시 체제 구축, 연구소 역량강화를 통한 4개국(요르단, 라오스, 페루, 말리)의 항생제 내성 등 신규 감염병 대응능력 향상	(당초) '17~'22년 →(조정) '17~'23년	130	130	-	100	-
WHO 전염병 대응역량강화를 위한 보건관리 서비스 개선사업	공중보건위기 대응에 관한 글로벌 가이드라인 및 국별 정책 수립을 통해 에티오피아와 라이베리아의 예방, 대응력, 회복력 강화	(당초) '18~'22년 →(조정) '18~'23년	916	912	4	99.6	-
WHO사하라이남 4개국 소외열대질환 퇴치사업	4개국(DR콩고, 마다가스카르, 나이지리아, 남수단) 50개주 소외열대질환 예방을 위한 대량투약(MDA) 커버리지 확대, NTD 관련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능력 강화, 의료품 조달 및 관리 역량 강화 지원	(당초) '19~'22년 →(조정) '19~'23년	1,289	1,284	5	99.6	-
수단 UNICEF 지역사회기반의 수인성 질환 예방사업	수단 6개 주 내 사업 대상지에서 수인성질환을 예방하여 5세 미만 아동 설사유병률 감소에 기여	(조정없음) '19~'23년	1,793	1,783	10	99.4	-
탄자니아 UNICEF 콜레라 퇴치사업	탄자니아 잔지바르 지역 콜레라 퇴치를 통한 5세 이하 영아 및 모성사망률 감소에 기여	(조정없음) '19~'23년	1,613	1,604	9	99.4	-
사헬지역 5개국 MMV 계절성말라리아 화학예방요법 확산을 통한 말라리아 퇴치사업	사헬지역 5개국 대상 계절성 말라리아 화학예방요법(SMC) 확산을 통해 말라리아 퇴치에 기여	(당초) '20~'24년 →(조정) '20~'25년	1,770	1,752	18	99	5,894

세사업 명	사업 내용	사업 기간 조정 내용	2023년				2024년 계획액
			계획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집행액/계획액)	
동남아 및 중앙아시아 7개국 TB Alliance 신규 치료요법 도입을 통한 다제내성결핵 퇴치사업	동남아 및 중앙아시아 7개국 TB Alliance 신규치료요법 확산을 통해 다제내성 결핵 퇴치에 기여	(당초) '20~'24년 →(조정) '20~'25년	929	921	8	99.1	3,682
네팔 모잠비크 IVI 콜레라 예방 사업	네팔 내 콜레라 발병 감지, 대응 및 감염병 예방역량 강화, 모잠비크 내 콜레라 관리 로드맵 개발 및 콜레라 예방	(당초) '20~'24년 →(조정) '20~'25년	1,643	1,631	12	99.3	3,291
결핵고위험국가 Stop TB Partnership 혁신 제품 개발 및 확산을 통한 결핵 퇴치 사업	결핵 진단 및 치료 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혁신기술* 개발·도입·확산을 통한 결핵 퇴치 촉진	(당초) '22~'24년 →(조정) '22~'26년	1,264	1,238	26	97.9	3,265
사업개발관리비			280	133	147	47.5	295
합 계			**11,627**	**11,388**	**239**	**97.9**	**16,427**

□ 글로벌 국제질병퇴치사업 결산 내역

글로벌 국제질병퇴치사업은 국제감염병 퇴치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국제보건기구(감염병혁신연합(CEPI), 글로벌펀드, 글로벌소아마비퇴치기구(GPEI) 등)에 대한 지원을 통해 개발도상국 감염병 예방 및 퇴치에 기여하는 사업임. 한편, 우리 바이오 기업들은 동 사업을 통해 정부가 기여하고 있는 국제보건기구에 필수의약품과 의료기기 등을 개별 국제기구들의 조달 절차를 통해 공급하고 있음[119]. 외교부는 우리나라의 대외적 위상 상승에도 불구 글로벌 보건 기여 수준이 여전히 낮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매년 그 규

119) 감염병백신연합(CEPI)는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및 대조백신 확보 등을 위해 2.6억불 상당을 지원하였고, 셀트리온, SD바이오센서 등은 글로벌펀드 제6위 필수 의료품목 공급자이자 제3위 진단키트 공급자로 활동하고 있으며, LG화학은 글로벌소아마비근절이니셔티브(GPEI)와 8천만불 상당의 소아마비 백신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음.

모를 늘리고 있음. 외교부는 2023년 글로벌 국제질병퇴치기금사업에 232억 7,000만원의 지출을 계획하였고 이 중 232억 5,400만원을 집행하였음.

< 글로벌 국제질병퇴치사업 결산 내역 >

(단위: 백만원, %)

세사업 명	사업 내용	2023년				2024년 계획액
		계획액	집행액	불용액	집행률 (집행액/계획액)	
UNITAID 백신개발 및 보급을 통한 질병퇴치 활동 (`23/500만불)	HIV/AIDS, 결핵, 말라리아를 중심으로 한 진단방법 간소화, 백신 및 의약품 보급, 의약품 가격 인하, 질병 발생 모니터링 등	6,450	6,450	-	100	6,505
GAVI 백신개발 및 보급을 통한 질병퇴치 활동 (`21-`25/3,000만불)	어린이들의 생명보존에 필수적인 백신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의약품 시장 형성, 의약품의 가격 인하, 의약품 및 백신 보급 등	6,430	6,430	-	100	6,505
Global Fund 백신개발 및 보급을 통한 질병퇴치활동 (`20-`22/2,500만불)	공공·민간 재원 공동 조성을 통해 ATM(AIDS(에이즈), Tuberculosis(결핵), Malaria(말라리아)) 치료 및 예방약·물품 관련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안정적으로 형성되도록 유도하여 저가로 물품을 구매한 뒤 지원 대상 국가에 조달	10,320	10,311	9	99.9	32,525
사업개발관리비		70	63	7	90	170
합 계		**23,270**	**23,254**	**16**	**99.9**	**45,705**

2. 검토의견

□ 출국납부금 제도 폐지 이후에도 국제기구와의 약정을 안정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방안 마련 필요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주된 수입이 되는 출국납부금에 대해, 기획재정부가 국민 부담 경감을 위해 폐지할 계획임을 밝힌바 이에 따라 국제질병퇴치기금을 통한 국제사회에 대한 공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정부는 「국제질병퇴치기금법 폐지법률안」을 2024년 7월 국회에 제출하였고 2025년 1월 1일부터 출국납부금 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입장임.

출국납부금 제도의 존부에 대한 판단은 정부가 재량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나, 현재 출국납부금으로 형성된 국제질병퇴치기금은 국제기구 협력 국제질병퇴치사업, 글로벌 국제질병퇴치사업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로 글로벌 보건 기여를 하고 있고 이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우리의 재정 상황과 무관하게 이행하도록 해야 할 것임. 글로벌 보건 기여는 국제사회에 대한 신뢰 확보, 우리 바이오 기업에 대한 환류 효과 감안 시 그 중요성이 상당함.

따라서 외교부는 동 사업을 한국국제협력단의 보건 사업으로 이관하는 방식, 글로벌 국제질병퇴치사업 중 비지정 기여는 국제기구분담금(일반회계)으로 편성하는 방식 등을 예산 당국과 협의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도록 해야 할 것임.

Ⅴ. 외교부 통합 재무결산 분석

1. 총 괄

국가재정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와 재정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도입을 근간으로 한 「국가회계법」이 제정(2007. 9)되고, 결산보고서의 체계적 정비 등을 위한 「국가회계법」이 개정(2008. 12) 되어 시행되고 있는 바,

각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주체는 2009회계연도부터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모든 기금에 대하여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토록 하고 있으며 재무제표의 국회제출이 2011회계연도 결산부터 의무화되었음.

이하에서는 외교부 일반회계, 국제교류기금 및 국제질병퇴치기금에 대한 통합재무제표를 분석하고자 함.

2. 재정상태표[120] 분석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 계	2023(A)	2022(B)	증 감 (A-B)	
				금 액	비 율
자산	일반회계	5,252,750	5,137,332	115,418	2.2%
	국제교류기금	83,934	85,570	△1,636	△1.9
	국제질병퇴치기금	7,411	4,012	3,399	84.7
	계	5,344,095	5,226,914	117,181	2.2%
부채	일반회계	55,698	53,088	2,610	4.9%
	국제교류기금	243	7,040	△6,797	△96.5
	국제질병퇴치기금	59,319	49,042	10,277	21.0
	계	115,260	109,170	6,090	5.6%
순자산	일반회계	5,197,052	5,084,243	112,809	2.2%
	국제교류기금	83,691	78,530	5,161	6.6
	국제질병퇴치기금	△51,909	△45,030	△6,879	△15.3
	계	5,228,834	5,117,743	111,091	2.2%

가. 자 산[121]

2023년도 외교부 일반회계 자산은 전년도 5조 1,373억 3,200만원 대비 1,154억 1,800만원(2.2%)이 증가한 5조 2,527억 5,000만원이며, 그 주요 증가 요인은 재평가이익 증가 등으로 인해 유형자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2023년도 국제교류기금의 자산은 839억 3,400만원으로 전년 855억 7,000

120) 재정상태표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됨.(「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7조)

121) 자산은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소유(실질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통제하고 있는 자원으로서, 미래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거나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경제적 효익을 창출하거나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을 말하며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 무형자산 및 기타 비유동성자산으로 구분됨.(「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

만원 대비 16억 3,600만원(△1.9%)이 감소하였음. 자산 감소의 주요인은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으로 인한 자산가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2023년도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자산은 74억 1,100만원으로 전년도 40억 1,200만원 대비 33억원 9,900만원(84.7%)이 증가하였음. 자산 증가의 주요원인은 출국납부금 수입 증가에 따른 것임.

나. 부 채[122]

2023년도 외교부 일반회계 부채는 전년도 530억 8,800만원 대비 26억 1,000만원(4.9%)이 증가한 556억 9,800만원이며, 그 주요 증가사유는 퇴직급여충당금 추정액 증가에 따른 것임.

2023년도 국제교류기금의 부채는 2억 4,300만원으로 전년도 70억 4,000만원 대비 67억 9,700만원(△96.5%)이 감소하였음. 부채 감소의 주요인은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퇴직급여충당부채와 퇴직연금운용자산과의 상계처리에 따른 것임.

2023년도 국제질병퇴치기금의 부채는 593억 1,900만원으로 전년도 490억 4,200만원 대비 102억 7,800만원(21.0%)이 증가하였음. 부채 증가의 주요원인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자금 예수에 따른 것임.

122)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로서,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에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현재의 의무를 말하며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 및 기타 비유동부채등으로 구분됨.(「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17조)

다. 순자산[123](=자산-부채)

2023년도 외교부 일반회계 순자산은 전년도 5조 842억 4,300만원 대비 1,128억 900만원(2.2%)이 증가한 5조 1,970억 5,200만원으로 재정운영과 재원의 조달 및 이전에 따른 것임.

2023년도 국제교류기금의 순자산은 836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 785억 3,000만원 대비 51억 6,100만원(6.6%)이 증가하였음. 순자산 증가는 2022년 대비 여권발급시 부과하는 국제교류기여금 수입증가에 따른 것임.

2023년도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순자산은 △519억 900만원으로 전년도 △450억 3,000만원 대비 68억 7,900만원(△15.3%) 감소하였음. 순자산 감소의 주요 요인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자금 예수에 따른 것임.

123)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을 말하며, 기본순자산,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 조정으로 구분함.

3. 재정운영표[124] 분석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 계	2023(A)	2022(A)	증 감 (A-B)	
				금 액	비 율
Ⅰ.프로그램 순원가	일반회계	2,831,015	2,586,834	244,181	9.4%
	국제교류기금	73,368	65,944	7,424	11.3
	국제질병퇴치기금	36,416	56,120	△19,704	△35.1
	계	2,940,799	2,708,898	231,901	8.6%
Ⅱ.관리운영비	일반회계	233,528	225,238	8,290	3.7%
	국제교류기금	4,868	4,699	169	3.6
	국제질병퇴치기금	277	343	△66	△19.2
	계	238,673	230,280	8,393	3.6%
Ⅲ.비배분비용	일반회계	1	735	△734	△99.9%
	국제교류기금	21	58	△37	△62.1
	국제질병퇴치기금	1,444	865	579	66.9
	계	1,466	1,658	△192	△11.6%
Ⅳ.비배분수익	일반회계	274,716	235,665	39,051	16.6%
	국제교류기금	2,363	1,253	1,110	88.6
	국제질병퇴치기금	334	171	163	95.3
	계	277,413	237,089	40,324	17.0%
Ⅴ.재정운영 순원가(Ⅰ+Ⅱ+Ⅲ-Ⅳ)	일반회계	2,789,827	2,577,142	212,685	8.3%
	국제교류기금	75,895	69,448	6,447	9.3
	국제질병퇴치기금	37,804	57,157	△19,353	△33.9
	계	2,903,526	2,703,747	199,779	7.4%
Ⅵ.비교환수익 등	일반회계	-	-	-	-
	국제교류기금	78,169	40,885	37,284	91.2
	국제질병퇴치기금	30,925	8,230	22,695	275.8
	계	109,094	49,115	59,979	122.1%
Ⅶ.재정운영 결과(Ⅴ-Ⅵ)	일반회계	2,789,827	2,577,142	212,685	8.3%
	국제교류기금	△2,274	28,564	△30,838	△108
	국제질병퇴치기금	6,879	48,927	△42,048	△85.9
	계	2,794,432	2,654,633	139,799	5.3%

124)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임.(「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가. 프로그램순원가

프로그램순원가[125]는 각 개별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제적 자원의 소모액을 의미하며 정부회계에서는 프로그램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한 자원 소요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외교부 프로그램순원가 산출단위는 총 17개의 프로그램임.

2023년도 외교부 일반회계 프로그램순원가는 전년도 2조 5,868억 3,400만원 대비 2,441억 8,100만원(9.4%)이 증가한 2조 8,310억 1,500만원이며, 이는 주로 국제기구분담금 프로그램에서 1,539억원,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에서 1,468억원 등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임.

2023년도 국제교류기금의 프로그램순원가는 전년도 659억 4,400만원 대비 74억 2,400만원이 증가(11.3%)한 733억 6,800만원이었고, 증가사유는 코로나-19의 종식으로 축소됐던 인적교류사업 등을 재개하였기 때문임.

2023년도 국제질병퇴치기금의 프로그램순원가는 전년도 561억 2,000만원 대비 197억 400만원 감소(35.1%)한 364억 1,600만원으로, 감소사유는 글로벌 및 국제기구협력사업 약정금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임.

125) 프로그램순원가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원가합계에서 다른 프로그램으로부터 배부받은 원가를 더하고, 다른 프로그램에 배부한 원가는 빼며,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등을 빼서 표시함.(「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2항)

나. 관리운영비

관리운영비는 정부행정기관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행정경비로, 인건비,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각종 수수료, 제세공과금, 교육훈련비, 여비, 업무추진비, 용역비, 연구개발비 등이 이에 해당함.

2023년도 외교부 일반회계 관리운영비는 전년도 2,252억 3,800만원 대비 82억 9,000만원(3.7%)이 증가한 2,335억 2,800만원으로 이는 주로 인건비 증가 등에 따른 경비 증가에 의한 것임.

2023년도 국제교류기금의 관리운영비는 전년도 46억 9,900만원 대비 1억 6,900만원이 증가(3.6%)한 48억 6,800만원이었고, 증가사유는 코로나-19의 종식 후 물가상승 요인으로 인한 것임.

2023년도 국제질병퇴치기금의 관리운영비는 전년도 3억 4,300만원 대비 6,600만원이 감소(19.2%)한 2억 7,700만원이었고, 감소사유는 주로 출연비 감소에 따른 것임.

다. 비배분비용

비배분비용은 국가의 자산 매각 시 발생하는 자산처분 손실과 같이 투입한 비용 중 프로그램과 직접적·간접적인 대응관계가 없거나, 프로그램에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비용을 의미함.

2023년도 외교부 일반회계 비배분비용은 전년도 7억 3,500만원 대비 7억

3,400만원(△99.9%)이 감소한 100만원이며, 이는 주로 대손상각비 감소 및 기타비용 감소에 따른 것임.

2023년도 국제교류기금의 비배분비용은 전년도 5,800만원 대비 3,600백만원이 감소(△62.1%)한 2,200만원이었고, 감소사유는 2022년도 아세안문화원 도서관을 전시실로 용도 전환함에 따른 자산폐기 손실이 2023년도에는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임.

2023년도 국제질병퇴치기금의 비배분비용은 전년도 8억 6,500만원 대비 5억 7,900만원이 증가(66.9%)한 14억 4,400만이었고, 증가사유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자금 예수에 따른 예수 이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임.

라. 비배분수익

비배분수익은 자산처분이익, 평가이익 등 프로그램과 관련 없이 발생하거나 프로그램 외의 업무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의미함.

2023년도 외교부 일반회계 비배분수익은 전년도 2,356억 6,500만원 대비 390억 5,100만원(16.6%)이 증가한 2,747억 1,600만원으로 이는 주로 수수료 수익 증가에 따라 기타수익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2023년도 국제교류기금의 비배분수익은 전년도 12억 5,300만원 대비 11억 1,000만원이 증가(88.6%)한 23억 6,300만원으로, 이는 부담금 수입 증가로 인한 여유자금 운용의 증가에 따른 운용 수익이 증가하였기 때문임.

2023년도 국제질병퇴치기금의 비배분수익은 전년도 1억 7,100만원 대비 1억 6,300만원이 증가(95.3%)한 3억 3,400만원으로, 이는 여유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이 증가한데 따른 것임.

마. 비교환수익

비교환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국세, 부담금, 기부금, 무상이전 및 제재금 등의 수익을 의미함.

2023년도 외교부 일반회계의 비교환수익은 2023년과 2022년 모두 발생하지 않았음.

2023년도 국제교류기금의 비교환수익은 전년도 408억 8,500만원 대비 372억 8,400만원이 증가(91.2%)한 781억 6,900만원으로, 증가사유는 코로나-19의 종식 이후 여권 발급량 회복으로 인해 국제교류기여금 수입이 크게 증가한 데 따른 것임.

2023년도 국제질병퇴치기금의 비교환수익은 전년도 82억 3,000만원 대비 226억원 9,500만원 증가(275.8%)한 309억 2,500만원으로, 증가사유는 출국납부금 수입이 증가한 데 따른 것임.

바. 재정운영결과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순원가[126]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뺀 것을 의미함.

2023년도 외교부 일반회계 재정운영결과는 전년도 2조 5,771억 4,200만원 대비 2,126억 8,500만원(8.3%)이 증가한 2조 7,898억 2,700만원이며,

2022년도 국제교류기금의 재정운영결과는 전년도 285억 6,400만원 대비 △308억 3,800만원 증가한 △22억 7,400만원임.

2023년도 국제질병퇴치기금의 재정운영결과는 전년도 489억 2,700만원 대비 420억 4,800만원 감소(85.9%)한 68억 7,900만원임.

126)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순원가에서 관리운영비 및 비배분비용은 더하고 비배분수익은 뺀 액수를 의미함.

4. 순자산변동표[127] 분석

(단위 : 백만원, %)

구 분	회 계	2023(A)	2022(B)	증 감 (A-B)	
				금 액	비 율
Ⅰ.기초순자산	일반회계	5,084,243	5,424,154	△339,911	△6.3%
	국제교류기금	78,530	108,527	△29,997	△27.6
	국제질병퇴치기금	△45,030	3,897	△48,927	△1,255.5
	계	5,117,743	5,536,578	△418,835	△7.6%
Ⅱ.재정운영 결과	일반회계	2,789,827	2,577,142	212,685	8.3%
	국제교류기금	△2,274	28,564	△30,838	△108
	국제질병퇴치기금	6,880	48,927	△42,047	△85.9
	계	2,794,433	2,654,633	139,800	5.3%
Ⅲ.재원의 조달 및 이전	일반회계	2,817,787	2,555,797	261,990	10.3%
	국제교류기금	-	-	-	-
	국제질병퇴치기금	-	-	-	-
	계	2,817,787	2,555,797	261,990	10.3%
Ⅳ.조정항목	일반회계	84,848	△318,566	403,414	-
	국제교류기금	2,887	△1,433	4,320	301.5
	국제질병퇴치기금	-	-	-	-
	계	87,735	△319,999	407,733	127.4%
Ⅴ.기말순자산(Ⅰ-Ⅱ+Ⅲ+Ⅳ)	일반회계	5,197,052	5,084,243	112,809	2.2%
	국제교류기금	83,691	78,530	5,161	6.6
	국제질병퇴치기금	△51,909	△45,030	△6,879	△15.3
	계	5,228,834	5,117,743	111,091	2.2%

127) 순자산 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변동명세를 표시하는 재무제표임.

가. 기초순자산

기초순자산은 전기(前期)에 이미 보고된 순자산 금액임. 2023년도 외교부 일반회계 기초순자산은 5조 842억 4,300만원으로 전년대비 3,399억 1,100만원이 감소한 규모이며, 2023년도 국제교류기금 기초순자산은 785억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299억 9,7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임. 2023년도 국제질병퇴치기금은 △450억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89억 2,700만원 감소한 규모임.

나. 재정운영결과

재정운영결과는 재정운영표에서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이나 사업의 원가에서 재정운영에 대한 원가회수를 차감하여 산출하는 지표로 앞의 재정운영표에서 증감요인을 설명하였음.

다. 재원조달 및 이전

2023년도 외교부 일반회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전년도 2조 5,557억 9,700만원 대비 2,619억 9,000만원이 증가한 2조 8,177억 8,700만원이며 이는 국고수입의 증가에 따른 것임.

라. 조정항목

조정항목은 납입자본의 증감, 투자증권평가손익, 파생상품평가손익 및 기타순자산의 증감 등을 포함하는 개념임.

2023년도 외교부 일반회계의 조정항목은 전년도 △3,185억 6,600만원 대비 4,034억 1,400만원 증가한 848억 4,800만원으로, 그 주요 증가원인은 유형자산재평가이익의 증가에 따른 것임.

2023년도 국제교류기금의 조정항목은 전년도 △14억 3,300만원 대비 43억 2,000만원이 증가한 28억 8,700만원으로, 주요 증가 원인은 투자증권평가이익에 따른 것임.

마. 기말순자산

기말순자산은 기초순자산에서 재정운영결과를 빼고 재원의 조달 및 이전과 조정항목을 가감하여 산출하는 개념임.

2023년도 외교부 일반회계 기말순자산은 전년도 5조 842억 4,300만원 대비 1,128억 900만원이 증가한 5조 1,970억 5,200만원이며,

2023년도 국제교류기금의 기말순자산은 전년도 785억 3,000만원 대비 51억 6,100만원이 증가한 836억 9,100만원임.

2023년도 국제질병퇴치기금은 △450억 3,000만원으로 전년대비 489억 2,700만원 감소한 규모임.

Ⅵ. 외교부 성과관리 분석

1. 총 괄

「성과관리제도」란 기존의 투입 · 통제 중심의 방식을 벗어나 성과관리를 통해 획득된 성과정보를 바탕으로 정부업무 수행의 책임성을 제고하며, 예산의 편성 · 심의 · 집행 · 결산의 전 과정을 성과위주로 운용하는 제도를 의미함.

「국가재정법」 제85조의5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6호에서는 성과관리란 “정부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 · 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 · 능률성 · 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정리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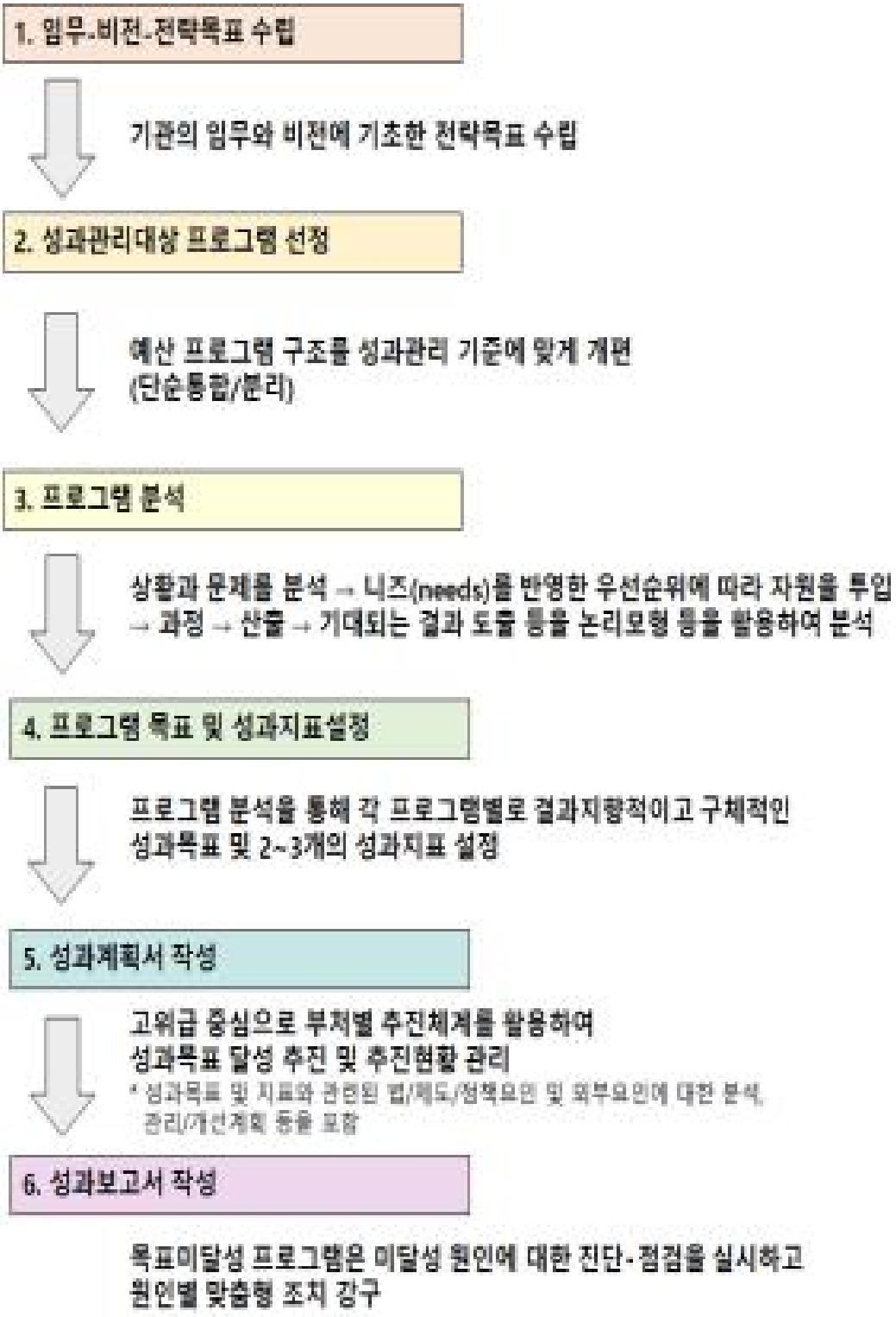
즉, 성과관리란 각 기관이 그 임무달성을 위해 전략적 관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업무를 추진한 후, 조직의 역량과 성과를 정확히 측정하여 그 결과를 정책의 개선이나 자원배분, 개인의 성과보상에 반영함으로써 조직의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음.

현재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성과계획서, 성과보고서 작성 지침에 근거하여 매년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바, 각 정부기관은 성과계획서에 그간의

정책성과, 해당연도의 정책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해당 기관의 조직, 인원 등 일반현황과 재정현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성과목표체계에 따라 임무, 비전, 전략목표 및 프로그램 목표를 논리적인 흐름에 맞게 순차적으로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프로그램 목표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에 제시된 임무, 비전, 전략목표, 프로그램 목표 및 그 주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성과계획서와 동일하게 작성하여 성과지표에 대한 실적 및 성과 달성률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목표달성 기여도와 목표달성 과정 및 성과미달성 원인분석과 향후 성과이행 방안 등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음.

< 성과목표관리 주요 절차 >


1. 임무-비전-전략목표 수립
기관의 임무와 비전에 기초한 전략목표 수립
2. 성과관리대상 프로그램 선정
예산 프로그램 구조를 성과관리 기준에 맞게 개편
(단순통합/분리)
3. 프로그램 분석
상황과 문제를 분석 → 니즈(needs)를 반영한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을 투입
→ 과정 → 산출 → 기대되는 결과 도출 등을 논리모형 등을 활용하여 분석
4. 프로그램 목표 및 성과지표설정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각 프로그램별로 결과지향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목표 및 2~3개의 성과지표 설정
5. 성과계획서 작성
고위급 중심으로 부처별 추진체계를 활용하여
성과목표 달성 추진 및 추진현황 관리
* 성과목표 및 지표와 관련된 법/제도/정책요인 및 외부요인에 대한 분석,
관리/개선계획 등을 포함
6. 성과보고서 작성
목표미달성 프로그램은 미달성 원인에 대한 진단-점검을 실시하고
원인별 맞춤형 조치 강구

2. 성과체계 현황

외교부의 임무는 “외교부는 전방위적이고 다각적인 외교 노력을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지속가능한 평화를 구현하고, 전 세계의 자유, 평화, 공동 번영에 이바지하며,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한다.”이며, 비전은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임.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성과체계는 6개의 전략목표와 13개의 프로그램 목표로 구성되어 있음.

< 외교부의 성과목표 및 과제 현황 >

전략목표 (Strategic Goal)	프로그램 목표	단위사업	세부사업
6	13	33	95

외교부의 2023회계연도 예산 3조 5,059억원 중 성과관리 대상 예산 총액은 1조 5,603억원이며, 결산액 기준으로는 1조 4,928억원임.

< 외교부 사업별 재정운용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총 액(A+B)		32,339	30,955	35,059	34,028
성과관리 대상	일반재정	14,260	13,921	15,603	14,928
	정보화	26	26	0	0
	R&D	0	0	0	0
	소계(A)	14,286	13,947	15,603	14,928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성과관리 비대상	인건비	7,009	6,760	3,865	3,717
	기본경비	2,380	2,225	2,797	2,714
	교부금	0	0	0	0
	예비비	0	0	0	0
	차입이자 상환	0	0	0	0
	내부거래	1,806	1,407	294	13
	보전지출	0	0	616	1,251
	기타	6,859	6,616	11,884	11,405
	소계(B)	18,053	17,008	19,456	19,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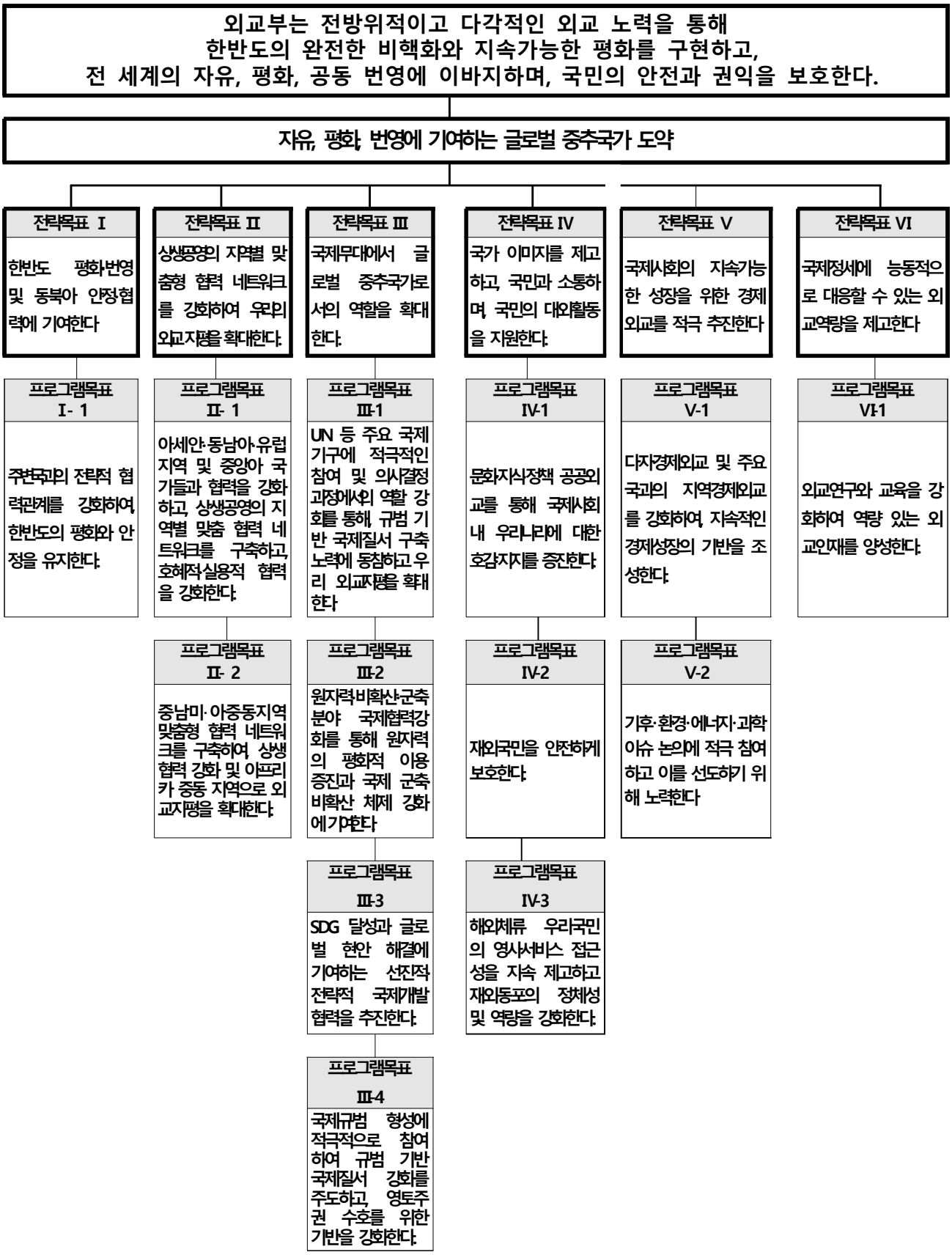
2023년도 결산의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현황을 보면, “전략목표 3 :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한다.”에 1조 3,056억원(87.5%), “전략목표 4 :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대외활동을 지원한다.”에 1,229억원(8.2%) 등 외교부의 6개의 전략목표 중 상위 2개 전략목표에 전체 재원의 95.7%인 1조 4,285억원을 투입하였음.

< 전략목표별 재원배분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결산액	비중
□ 전략목표 1 : 한반도 평화 · 번영 및 동북아 안정 · 협력에 기여한다.	220	1.5
□ 전략목표 2 : 상생 공영의 지역별 맞춤형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리의 외교 지평을 확대한다.	161	1.1
□ 전략목표 3 :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한다.	13,056	87.5
□ 전략목표 4 :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대외활동을 지원한다.	1,229	8.2
□ 전략목표 5 :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외교를 적극 추진한다.	147	1.0
□ 전략목표 6 :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외교역량을 제고한다.	115	0.8

< 외교부 2023년 성과목표관리 체계도 >



3. 2023회계연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

외교부의 2023회계연도 주요 재정사업 성과를 보면, 13개의 프로그램 목표에 총 27개의 성과지표가 설정되어 있음. 27개 성과지표 중 초과달성(130% 이상)은 6개, 달성(100~130%)은 17개, 미달성(100% 미만)은 4개임.

< 외교부 2023년 주요 재정사업 성과 >

(단위 : 개)

전략목표	프로그램목표	프로그램목표의 성과지표수	성과 달성도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6	13	27	6	17	4
		100%	22.2%	63.0%	14.8%

< 전략목표별 달성 현황 >

전략목표	사업규모 (억 원)	성과지표 실적	
Ⅰ. 한반도 평화·번영 및 동북아 안정·협력에 기여한다.	279	성과지표 수	2
		달성 / 미달성	2 / 0
Ⅱ. 상생 공영의 지역별 맞춤형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리의 외교 지평을 확대한다.	172	성과지표 수	4
		달성 / 미달성	4 / 0
Ⅲ. 국제무대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역할을 확대한다.	13,547	성과지표 수	8
		달성 / 미달성	7 / 1
Ⅳ. 국가 이미지를 제고하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대외활동을 지원한다.	1,297	성과지표 수	7
		달성 / 미달성	4 / 3
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경제외교를 적극 추진한다.	180	성과지표 수	4
		달성 / 미달성	4 / 0
Ⅵ.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외교역량을 제고한다.	128	성과지표 수	2
		달성 / 미달성	2 / 0

< 2023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

연번	예산/기금	사업명	예산(억원)		최종 평가	
			'23년	'24년	점수	등급
1	일반회계	인도적지원(ODA)	2,994	7,401	96	우수
2	일반회계	디지털 플러스 공공외교	38	18	95.7	우수
3	일반회계	국제기구초급전문가 파견 등 국제기구진출지원(ODA)	95	141	95.2	우수
4	일반회계	국내외 교육훈련	80	74	95.2	보통
5	일반회계	선진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30	27	94.9	보통
6	일반회계	북미지역국가와의 전략적 특별 협력관계 강화	56	53	94.8	보통
7	일반회계	글로벌 다자외교강화 및 유엔과의 파트너십 증진	33	39	94.5	보통
8	일반회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과 국제비확산 체제 강화에 기여	31	21	93.1	보통
9	일반회계	주요 외교계기 기념사업	56	25	92.9	보통
10	일반회계	공공외교 역량강화	163	161	91.9	보통
11	일반회계	양자 경제 진흥 및 수입규제 대외 대응	80	54	91.8	보통
12	일반회계	외교안보 연구활동 강화	33	35	91.8	보통
13	일반회계	아시아-태평양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36	27	91.7	보통
14	일반회계	아세안 및 동남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33	30	91.5	보통
15	일반회계	영토주권 수호 및 국제법을 통한 국익 증진	74	67	91.1	보통
16	일반회계	아중동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31	33	90.6	보통
17	일반회계	기후변화 녹색환경 외교강화	55	98	90.4	미흡
18	일반회계	중남미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41	37	89.4	미흡
19	일반회계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37	36	84.6	미흡
20	일반회계	글로벌 프로그램(ODA)	2,296	3,137	92.9	우수
21	일반회계	민관협력사업(ODA)	480	570	92.3	보통
22	일반회계	중남미지역 국가원조(ODA)	972	737	88.5	보통
23	일반회계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ODA)	2,426	2,756	87.4	보통
24	일반회계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ODA)	2,385	3,066	86.9	보통
25	일반회계	중동CIS지역 국가원조(ODA)	816	1,333	86.2	미흡
26	일반회계	한-아프리카재단 출연	48	44	91.8	보통
27	기금	국제기구협력국제질병퇴치(ODA)	116	164	95	우수
28	기금	글로벌 국제질병퇴치(ODA)	233	730	95	우수
29	기금	글로벌인적교류	55	39	93.9	보통
30	기금	정책공공외교강화	93	85	92.4	보통
31	기금	한국문화해외확산	66	55	92.4	보통
32	기금	글로벌 협력 강화	44	51	92.1	보통
33	기금	글로벌문화교류	55	49	91.8	보통
34	기금	한국학기반확대	181	196	91.7	미흡

Ⅶ.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예비비 지출내역 >

(단위 : 백만원)

사항	예비비사항 내역	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지 출 내 역
일반 예비비	정상 및 총리외교 (1231-401)	32,859	28,548	1,071	3,240	대통령 · 국무총리 해외순방행사 및 외빈 접수행사 소요 비용
	한-아프리카 특별정상회의 (1432-403)	4,896	3,023	947	926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최 준비 및 준비기획단 운영
	재외동포협력센터 출연 (5032-301) 재외동포와의 상생발전 기반구축(5034-302) 인건비(7101-101) 기본경비(총액) (7111-201) 기본경비(7111-251) 사무환경조성(7112-251) 디지털 영사민원시스템 구축(정보화)(7131-302)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정보화)(7131-303)	21,997	21,997 (이체)	-	-	재외동포청 신설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2231-421)	2,820	322	2,004	494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관련 준비기획단 운영
합 계		62,572	53,890	4,022	4,660	-

2023회계연도 예비비는 ‘정상 및 총리외교’를 위해 328억 5,900만원, ‘한-아프리카특별정상회의’를 위해 48억 9,600만원, ‘재외동포청 신설’에 219억 9,700만원, ‘제3차 민주주의정상회의’에 28억 2,000만원 총 625억 7,200만원을 일반예비비로 배정받아 집행하였음.

□ 본 예산의 적정 편성으로 과도한 예비비 편성 지양

< 예비비 지출내역 >

(단위 : 백만원)

사항	예비비사항 내역	배정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지 출 내 역
일반 예비비	정상 및 총리외교	32,859	28,548	1,071	3,240	- 대통령 및 총리 외교 활동 지원
합 계		32,859	28,548	1,071	3,240	

2023회계연도 예비비는 '정상 및 총리외교'를 위해 328억 5,900만원을 일반예비비로 배정받아 285억 4,800만원을 집행하였고 10억 7,1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배정액의 9.9%, 32억 4,000만원을 불용시켰음.

집행액 285억 4,800만원은 예비비 편성 목적에 따라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해외 순방 및 외빈 방한 관련 비용 등의 명목으로 지출되었는데, 기획정된 다자회의 일정 이외에 우리나라의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 제고, 외교 지평 확대에 따라 정상 순방 외교 및 외빈 방한 수요 급증 추세, 코로나19 이후 전세계적 물가상승, 2023년 11월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교섭 추진 등에 따른 것임.

< 2022년 대비 사업증가 내역 >

연 도	대통령 순방	총리 순방	외빈접수
2022	4회, 9개국	6회, 12개국	17개국
2023	13회, 20개국	8회, 21개국	25개국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및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예비비를 편성하여 집행하였음. 2023년 예산액은 2022년보다 21.5% 증가한 248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본 예산(248억 6,800만원)의 132%인 328억 5,9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128]하였음.

< 연도별 정상 및 총리외교 결산내역 >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B)	집행액 (C)	집행률 (C/A)	집행률 (C/B)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A)									
2018	19,608	19,608	5	-	6,385	25,998	24,644	125.7	94.8	703	651
2019	23,301	23,301	703	-	1,589	25,593	23,475	100.7	91.7	-	2,118
2020	21,191	11,191	-	△7,000	-	4,191	1,941	17.3	46.3	-	2,250
2021	22,502	22,502	-	-	-	22,502	19,283	85.7	85.7	709	2,510
2022	20,472	20,443	709	-	6,308	27,460	26,199	128.2	95.4	71	1,190
2023	24,868	24,868	71	-	32,859	57,798	53,094	213.5	91.9	1,071	3,633

정상 및 총리외교는 타국과의 상호 협의에 따라 임박해서 결정되는 관계로 사업 특성상 그 일정을 미리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관련 경비를 예산 편성 및 국회 심의과정에서 적정하게 계상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해외 순방 횟수, 기간, 순방국가 증가 및 방문국의 현지물가 수준 등 변동에 따라 예산의 조정 가능성은 상존함.

2023년 예비비 편성은 본예산 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다보스 포럼·NATO 정상회의·G7 정상회의 참석 및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교섭 등 정상외교 일정이 추가되고,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전

128) 기획재정부로 2023. 8. 14. 예비비를 배정받음.

세계적으로 물가가 크게 상승한 것이 예비비 편성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임.

< 2023년 정상 및 총리외교 사업추진내역 >

구 분	방문기간	순방국가	주요행사
대통령	1.14.-21.	UAE, 스위스	UAE 국빈방문 및 다보스 포럼 참석
	3.16.-17.	일본	일본 방문
	4.24.-30.	미국(워싱턴, 보스턴)	미국 국빈방문
	5.19.-21.	일본	G7 정상회의 참석
	6.19.-24.	프랑스, 베트남	제172차 BIE 총회 참석 및 베트남 국빈방문
	7.10.-16.	리투아니아, 폴란드, 우크라이나	2023 NATO 정상회의 참석 및 폴란드 공식방문
	8.17.-20.	미국(워싱턴)	한미일 정상회의 참석
	9.5.-11.	인도네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공식방문 및 한-아세안/아세안+3/EAS · G20 정상회의 참석
	9.18.-23.	미국(뉴욕)	제78차 유엔총회 참석
	10.21.-26.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 카타르 국빈방문
	11.15.-18.	미국(샌프란시스코)	APEC 정상회의 참석
	11.20.-26.	영국, 프랑스	영국 국빈방문 및 프랑스 방문
	12.11.-15.	네덜란드	네덜란드 국빈방문
국무총리	5.4.-11.	영국, 스웨덴, 오스트리아, 루마니아	찰스 3세 국왕 대관식 및 스웨덴 · 오스트리아 · 루마니아 공식방문
	7.2.-9.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카리콤 정상회의 참석 및 파나마 공식방문
	9.11.-15.	체코, 폴란드	체코 및 폴란드 방문
	9.23.-24.	중국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참석
	10.8-.15.	프랑스, 덴마크, 크로아티아, 그리스	프랑스, 덴마크, 크로아티아, 그리스 방문
	10.29.-11.4.	말라위, 토고, 카메룬, 노르웨이, 핀란드	말라위, 토고, 카메룬, 노르웨이, 핀란드 방문
	11.12.-15.	프랑스	프랑스 방문
	11.26.-30.	프랑스	제173차 BIE 총회 참석

외교부는 기확정된 다자회의 일정 및 물가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액을 편성하고 있으나, 코로나 이후 외교지평 확대에 따

른 정상 외교 및 외빈방한 수요 급증 추세, 거시경제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반복적으로 예산액을 과소편성하고 예비비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있음.

향후 외교부는 정상순방 외교 및 외빈방한 수요, 거시 경제 여건 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비비의 편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가급적 외교부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예비비의 보충성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음.

□ 제3차 민주주의정상회의 개최 준비기획단 예비비 이월 부적정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사업은 ,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개최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할 준비기획단의 운영비 및 관련 사업을 위한 것으로 예비비 28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20억 4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 9,400만원을 불용하였음.

< 제3차 민주주의정상회의 예비비 집행내역 >

(단위: 백만원)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예비비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 준비기획단 운영	520	259	-	261
- 일용임금(110-04)	52	8	-	44
- 일반수용비(210-01)	85	85	-	-
- 공공요금및제세(210-02)	9	7	-	2
- 특근매식비(210-05)	6	1	-	5
- 임차료(210-07)	129	51	-	78
- 사업추진비(240-01)	4	4	-	-
- 직책수행경비(250-02)	6	3	-	3
- 고용부담금(320-09)	10	0	-	10
- 무형자산(440-00)	219	100	-	119
· 공동주최국 · 시민사회 협의	92	63	-	29

- 일반수용비(210-01)	30	27	-	3
- 임차료(210-07)	12	5	-	7
- 국내여비(220-01)	5	0	-	5
- 국외업무여비(220-02)	30	21	-	9
- 사업추진비(240-01)	15	10	-	5
· 홍보 및 광고지원 용역	**1,000**	**0**	**806**	**194**
- 일반용역비(210-14)	1,000	0	806	194
· 정상회의 조정 메커니즘	**1,208**	**0**	**1,198**	**10**
- 일반용역비(210-14)	1,208	0	1,198	10
합 계	2,820	322	2,004	494

외교부는 동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두 건의 일반용역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일반용역비 예산액 22억 800만원 중 집행액 없이 20억 400만원을 이월하였음.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일반용역계약 내역>

(단위 : 백만원)

계약명	예산액	계약금액 (계약서 기준)	수탁기관	계약기간	계약 유형	비고
제3차민주주의 정상회의 시민사회관여 플랫폼(PEC)	1,208	371	OGP	23.12-24. 6	수의계약	1,198 이월
		371	IDEA			
		350	OECD			
		46	COD			
		60	EAI			
제3차민주주의 정상회의 홍보 및 광고지원 용역	1,000	792	피알하우스	24.2-6	일반경쟁	806 이월
합계	2,208	1,990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시민사회관여 플랫폼(PEC)’ 용역은 2023년도 말에 계약이 체결되어 계약액 11억 9,80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이에 대해 외교부는 4개 국제기구·기관과의 용역계약에 있어 각 국제기구·기관별 계약체결 절차 등이 상이한바, 보다 신중한 과업 지시 및 충실한 계약체결 절차 준

수를 위해 부득이 이월하였다고 설명함.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홍보 및 광고지원 용역’은 2024년 1월에 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예산액 8억원 및 조달수수료 600만원으로 총 8억 600만원을 이월하였는데, 외교부는 이에 대해 홍보대행사 입찰 평가를 개최하였으나 적격업체가 없어 유찰되었고, 이후 재입찰공고 후 이월이 되었다고 설명함.

그러나 외교부가 재정당국에 예비비를 요청할 당시, “2024년 3월 동 정상회의 개최까지 약 6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재원 확보가 시급함”을 강조하며, “입찰·계약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음에도, 외교부가 동 용역을 긴급공고로 게시한 것이 12월 6일로 당초 용역사업 시행 자체가 꽤 지체가 된 것으로 보임.

기획재정부 「2023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129]」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는데, 전체 예비비 예산 28억 2,000만원의 11.4%에 해당하는 3억 2,200만원만 집행하고 71.1%에 해당하는 20억 400만원을 이월한 것은 예비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이므로,

외교부는 향후 예비비 편성 및 배정 시점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하여 예비비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사업 준비 미흡으로 인한 예비비 배정 지연 부적절

외교부는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개최’ 사업 예산액 28억 2,000만원 중

129) 예비비 이월 최소화 원칙: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를 집행함에 있어,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144)

선술한 바와 같이 20억 400만원의 이월액 외에도 17.5%에 해당하는 4억 9,400만원을 불용하였음.

외교부는 예산 배정 후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130]에 따른 근무자의 신원조회 등 관련 절차에 시간이 소요되어 기간제 인원 충원이 지연되었으며, 예산 배정 단계에서 기 논의되던 준비기획단 사무실 임차가 불가해져 다른 조건의 건물을 임차 계약하게 되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설명함.

그러나, 외교부의 신원조회 절차는 사업 준비 시 미리 계산했어야 하는 사안이며, 예산배정 없이 사무실 임차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약의 이행이 담보되지 않아 업무에 차질이 빚어진 것으로, 이는 예비비 배정일이 2023년 10월 12일로 지연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임.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개최 결정이 2023년 3월[131]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정상회의의 개최 준비를 위한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은 동년 9월 7일에야 마련이 되었음.

외교부는 동 훈령이 제정된 이후에야 준비기획단 운영 등과 관련하여 예비비 편성근거를 마련하여 재정당국과 협의에 들어갔으며, 예비비 배정

130)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 (신원조사 대상) 신원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정 제36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2. I급 비밀취급인가 예정자
3. 재외공관 대한민국 국적 행정직원
4. 공무직·기간제 근로자
5. 비정규직원으로서 본부, 외교원 및 재외공관에 상주하거나 빈번히 출입하는 자

131)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23.3월)를 미국 등 공동주최국들과 성공적으로 공동주최하였으며, 동 회의 계기 우리의 제3차 정상회의의 개최를 대내외 발표

(10.12.)이 완료된 이후인 10월 13일 기간제 인력 채용공고를 하여 11월 1일 선발전형이 완료되었음.

9월 초 준비기획단 출범 후 10-11월에 걸쳐 순차적으로 인력이 파견됨에 따라 업무 진행에 시일이 많이 소요되었고, 이로 인해 상당한 수준의 이월액 및 불용액이 발생한 것으로 보임.

외교부는 이에 대해 타부처 인원을 차출하고 인원을 결정해야 하는 준비위원회의 구성[132]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와의 정원 협의 등에 시간소요가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동 정상회의 개최 결정이 3월이었던 만큼 사전에 보다 면밀하게 계획을 수립하여 신속하게 예산을 배정받으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임.

---

132)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및 준비기획단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준비위원회의 구성) ① 준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은 외교부장관으로 하고 준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기획재정부·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국가보훈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대통령경호처·국무조정실·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조달청·방위사업청·산림청·국민권익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의 차관급 공무원(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차관급 공무원인 경우에는 부기관장인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정상회의등이 개최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3. 「상공회의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전국경제인연합회·중견기업연합회·한국무역협회의 회장
4. 그 밖에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정상회의등의 개최와 관련된 기관의 인사 및 민간 전문가
③ 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검토하고 준비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준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교부 국제기구국장으로 한다.

Ⅷ.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검토의견

2022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시 외교부는 총 63건(2건 중복)의 시정, 주의, 제도개선을 받은 바, 이에 대해 조치완료 59건(2건 중복) 및 조치 중 4건이라는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였음.

<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총괄표 >

조치 결과	구분				소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징계	
조치완료	6	21(2)	32(1)	-	59(2)
조치 중	2	2	-	-	4
소 계	8	23(2)	32(1)	-	63(2)

* 주의 2건, 제도개선 1건 중복 포함

< 2022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6.30)
(1) 동일한 사유로 불용, 이·전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	○ [지적사항] 코로나, 남북관계 단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사유로 많은 사업 예산들이 불용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 중 일부 사유는 정세·현황 분석으로 충분히 예상가능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예산 편성 시점부터 불용 가능성을 고려해야 했을 것임 ○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향후 예산 편성시 대상국가의 사업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동일한 사유로 예산이 불용, 이·전용되지 않도록 할 것	제도개선	○ 외교부는 24년 예산 편성시 정부안 심의단계부터 재정당국과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국제정세 및 환경을 감안,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구조조정 시행 - 코로나 팬데믹 종식을 고려,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운영' '한아세안 보건협력 강화' 사업 등을 폐지하였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를 고려, '유라시아 청년 미래개척단',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 3각협력 확대' 사업 등 폐지 ○ 아울러, 예산안 국회심의에서도 외통위 예산소위 및 예결위 심의를 통해 그간의 사업 추진현황 및 현지 정세를 감안, 불용이 예상되는 사업은 감액 조치 - 현지 정세가 불안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운 미얀마 ODA 사업(한-메콩 생물다양성센터 건립), 아이티 ODA 사업(아이티-도미니카공화국 국경지역 평화증진) 감액 ○ 조치완료일 : 2023년 12월 2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6.30)
(2) 비핵화 로드맵(담대한 구상) 관련 성과목표 달성 근거 부적정	○ [지적사항] 담대한 구상이라는 비핵화 로드맵의 궁극적인 효과를 측정하도록 되어있는 산출지표에 담대한 구상이 지금까지 이행되지 못했음에도 각국이 지지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 성과를 달성했다고 문서에 반영시킨 것에 더해, 타국의 지지성 발언도 성과의 근거로 제출하였는데 이는 달성이 쉬운 최저 목표치를 설정한 것으로 보임. ○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향후 동 사업의 성과관리에 산출지표에 맞는 근거를 반영할 것	주의	○ '23년 성과계획서부터 기존 지표에서 단순 협의 건수를 제외하고 '결과문서 도출 건수*'만을 성과지표 측정 방법으로 변경하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전략적 협력 건수'로 성과지표를 개선하였음 * 양·다자 국제회의 시, 한반도 평화 관련 우리 입장을 반영한 결과문서 도출 건수 - 이에 따라 추후 성과에 대한 근거 제출 시 단순 지지 의사 표명은 포함하지 않고, 한반도 평화 관련 구체적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결과문서만을 반영할 예정 ○ 향후 성과계획 수립 시에도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성과지표에 부합하는 근거를 반영하여, 보다 실질적인 사업 성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6.30)
(3) 민족공동체 해외협력사업 집행부진	○ [지적사항] 자체이용액과 불용액을 합하면 사실상 절반에 달하는 예산을 사업목적에 쓰지 못하였으며,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은 기재부의 이용 승인 사항이므로 자체 이용으로 처리한 경위에 대한 소명이 필요함 ○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향후 동 사업의 집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도개선	○ 2023년도 예산은 사업 목적에 맞는 집행을 위하여 이·전용 없이 사업 집행 노력 ○ 2024년 예산도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 예정 ○ 조치완료일 : '24년 01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6.30)
(4) 주미대사관 고용 자문회사에 대한 평가지표 수립 및 국회 보고 필요	○ [지적사항] 자문회사 선정 과정의 객관성 담보 부재, 활동 결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 및 반영 체계 부재 등 국회의 반복적인 지적에도 불구하고 주미대사관 고용 미 자문회사 선정 근거 및 정성·정량 평가지표 수립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자문회사 선정 과정의 객관성 담보, 활동 결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 및 반영 체계를 구축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할 것	제도개선	○ 주미대사관은 연말 자문회사 실적점검회의 계기 내부 성과평가지표에 근거하여 각 자문회사에 대한 상세 업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 평가결과 및 업무 전문성, 우리 현안에 대한 이해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 체결을 하고 있음. - 고용된 자문회사에 대해서는 대미 의회 네트워크 구축 및 아웃리치 실적, 정세 자문 및 현안 대응 지원, 우리 정부 정책·입장 홍보 등 기준에 따라 정량·정성 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등 관리하고 있음. - 자문회사 현황 및 평가 등에 대해서는 각종 계기 국회에 관련 설명 보고를 하고 있음. ○ 앞으로도 자문회사 선정에 있어서 철저한 평가 실시 및 반영을 통해 객관성 제고와 체계적 관리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국회에도 계기별 설명 보고를 하는 등 지속 노력하겠음. ○ 조치완료: '24년 1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6.30)
(5) 대미외교지평 확대 사업의 내실있는 집행 필요	○ [지적사항] 대미외교지평확대 사업 예산이 2022년 9월에야 세부사업이 승인되어 9월~12월 간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본 예산은 미 주요인사 대상 아웃리치 외연 확대가 목적이므로,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연간 고르게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늦은 세부사업 승인은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함. ○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향후 동 사업이 연중 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부사업을 수립하고 집행 방식을 개선할 것	제도개선	○ 연초 대미외교지평확대사업의 세부사업 승인 및 계획 수립, 예산 배정 완료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추진 체계를 개선하여 해당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음. ○ 조치완료: '24년 1월 31일	조치완료
(6) 한일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사업 집행 부진	○ [지적사항] '사할린 한인 2-3세 모국방문 사업'은 사할린동포 1세의 영주귀국에 따른 사할린동포 2-3세와의 이산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사할린동포 1세의 총인원이 약 500여 명에 불과하고, 국내 영주귀국한 사할린 동포 1세가 대부분 90세 이상의 고령임을 고려할 때, 코로나 19 상황이 호전된 이후에도 계속하여 사업이 중단 상태인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경유항공 또는 배편을 통한 다른 경로의 입국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는 등 동 사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더욱 노력을 기울일 것	제도개선	○ '23.6.5. 재외동포청 출범에 따라 체계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외교부는 동 사업을 재외동포청으로 이관하였음. - 재외동포 전담 기관하에 사할린동포 지원 사업이 더욱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외교부는 재외동포청에 동 사업의 정상화를 당부하였음. ○ 조치완료일 : '23년 6월 5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6.30)
(7) 유사중복 지원사업 주관 기관의 통합·조정 필요	○ [지적사항] 외교부와 재외동포재단이 각각 추진하고 있는 사할린동포 지원사업은 그 성격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주관기관이 분리되어 있어 업무의 비효율 및 행정비용이 낭비될 우려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향후 사할린동포 지원사업의 주관기관을 통합·조정하여 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	제도개선	○ '23.6.5. 재외동포청 출범에 따라 체계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외교부는 동 사업을 재외동포청으로 이관하였음. ○ 조치완료일 : '23년 6월 5일	조치완료
(8) 법률자문 집행결과 미제출 부적절	○ [지적사항] 외교부 아태국은 한일 간 주요 현안 관련 법률자문 예산을 집행하였으나, 관련 법률 자문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국회 요구 시 충실히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예산 삭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법률 관련 국제법률국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업무의 비효율 및 예산 중복 집행 방지를 위해 한·일 과거사 현안 관련 법률검토 업무는 국제법률국이 수행하는 것이 더 적합함 ○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향후 동 사업 법률자문 예산 집행내역 및 결과를 충실히 제출하고 효율적인 업무 분장을 검토할 것	시정	○ 제3자변제 방안 관련 구체 법률자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공개할 수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람. ○ 24년 아태국 법률자문 예산이 전액 삭감됨에 따라 법률자문 관련 업무분장 문제는 해소되었음.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6.30)
(9) KAL858기 동체 추정 물체 조사 관련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	○ [지적사항] KAL858기 동체 추정 물체 조사 사업은 2021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하였으나 미얀마 내 군부 쿠데타 발발로 사업추진이 중단되었고, 현재까지도 정부 합동 조사단을 파견하지 못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미얀마 정세를 지속 면밀히 주시하며 동 사업은 인도주의적인 사안이라는 점을 다방면에서 적극적으로 강조하는 등 실질적인 협상계기 및 사업재개 기반을 마련하고, 사업추진 장기화에 따른 비효율성이 최소화되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	제도개선	○ '23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KAL858기 동체 추정 물체 조사 사업 예산이 재차 불용될 가능성 등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미편성했으며 국내 정세가 안정되는 등 제반 여건이 개선되어 조사단 파견 가능성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재정당국과 협의 하에 예비비를 조속히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임. * 예비비 확보방안에 대해 기재부와 실무차원에서 旣협의 ※ ('22년 동 사업 예산 불용경위) ▲'21년 예산 편성 및 조사단 파견 용역계약 체결, ▲'21.2월 미얀마 쿠데타 발생 및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관련 예산 일부를 '22년도로 이월, ▲'22년 조사단 파견 용역 계약 2차례 연장 및 미얀마 군부측과 지속 접촉·협의하였으나 미얀마 군부측의 비협조로 인해 파견이 불가해짐에 따라 관련 용역계약 종료 및 예산 불용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6.30)
(10) 신북방청년 미래개척단 사업 추진방식 보완 필요	○ [지적사항] 신북방청년미래개척단 사업이 국제교류기금 내 사업인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와 진출대상국이 다소 중복되고 있고, 사업 운영 방식이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와 같은 이벤트성 행사인바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창업 인큐베이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동 사업의 추진에 있어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와 내용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일회성 이벤트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제도개선	○ 2023년 사업 추진 시 ①중소기업벤처부 산하 창업진흥원의 사업(창업에듀, 혁신창업스쿨)과 연계하여 창업 교육 강화를 추진하고, 우수참가자를 대상으로 창업진흥원의 차년도 창업지원 사업에 서류면제 기회 제공하는 등 해당 사업이 일회성 공모전으로 그치지 않고,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②현지조사 프로그램에 청년교류 행사를 포함하여 우리와 진출대상국 청년들 간 창업을 매개로 교류 기회를 제공하는 등 사업 운영 방식 개선 ○ 조치완료일 : 2023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6.30)
(11) 차세대 중남미 진출인력 양성 사업 집행 부진 및 대책 강구	○ [지적사항]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파견' 사업의 훈련기간이 6개월로 짧은 편이고, 인턴 수료자의 진로 현황 통계가 2022년까지 10년간 중남미 관련기관에 취업한 비율이 25%에 불과하여 중남미 전문 인력을 양성한다는 사업목적에 부합하기에 부족한 면이 있으며, '중남미 관련 논문 공모전 사업'은 대상자 부재 및 수상자 수 하향 조정으로 집행률이 저조함 ○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향후 동 사업의 홍보를 강화하여 사업 인지도를 제고하고,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파견 종료 후 활용방안 및 중남미 관련 논문공모전의 활성화 방안 등 대책을 강구할 것	제도개선	○ 유관 대학 협조 및 제20회 외교톡톡('23.11.17.), 찾아가는 라틴광장('23.11.16.) 등 부내 행사를 통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 -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파견' 사업 2024년 상반기 인턴 선발에서 높은 경쟁률(3.7:1) 기록 - '중남미 논문 공모전' 참가자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가 ○ 중남미 지역기구 인턴 홈커밍데이('23.12.4.)를 4년 만에 개최하여 인턴 수료자 간 네트워킹을 지원 - KOTRA, FEALAC 사이버사무국 등 중남미 포함한 해외진출 관련 진로 경험 소개, 파견자간 진로 공유의 장 형성 ○ '중남미 논문공모전' 사업은 2024년도 예산에 미반영된바, 추후 재추진 시 활성화 방안 마련 예정 - 기존 논문에 한정되어 있는 공모전 사업의 성격을 청년들에게 친숙한 UCC, 카드뉴스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검토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4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6.30)
(12) 국제기구 분담금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필요	○ [지적사항] 분담금 중 정상공약 계기로 인한 분담금은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치지 않은 채 편성되고 있으며, 분담금 납부 후 이에 대한 실적평가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부처별 자체평가에선 분담금의 국익 부합도가 모두 높게 평가되는 등 평가의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는 등 분담금 납부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됨. 또한 복수기관 관여 분담금의 경우 그 관리주체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관리의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함. ○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분담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체계가 마련됨. 동법이 2022.1.1. 시행된 이후, ▲관계부처 및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 의견수렴, ▲주요국들의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 사례 연구 등을 통해 자체평가 및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조정 방식 등을 지속 보완함으로써 분담금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6.30)
(13) 소셜미디어 및 인플루언서 활용사업의 효과성 검토 필요	○ [지적사항] 외교부는 13개 재외공관과 연계하여 SNS상 영향력 있는 해외 인플루언서를 초청해 국내 유네스코 세계유산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도록 하였으나 일부 인플루언서의 경우 팔로워 수가 적거나 콘텐츠의 조회수, 좋아요 수가 저조하여 홍보의 효과성을 확인하기 어려움. 또한 사업의 평가지표가 홍보 콘텐츠의 조회수, 좋아요 수 등 정량적 평가에 치우쳐 있어, 해당 국가의 관광객 인식 변화 등 정성적 평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향후 소셜미디어나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인플루언서 선정기준, 평가지표, 콘텐츠 사후관리, 콘텐츠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업 효과성을 제고할 것	제도개선	○ 동 사업은 '22년을 끝으로 종료되었으나, 향후 소셜미디어 및 인플루언서 등 활용 사업 기획에 참고할 수 있도록 부내 유관 부서에 공유 - 부내 소셜네트워크(SNS) 콘텐츠 회의 계기 상기 지적 내용을 공유하였으며, 향후 사업 진행 시 ▲인플루언서 선정 기준 마련 ▲평가지표에 정성적 평가 반영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업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당부 ○ 조치완료일 : 2023년 12월 14일	조치 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6.30)
(14) 주요국 대상 정책공공외교 외연확대 사업 집행 내실화 방안 마련 필요	○ [지적사항] 문화, 지식, 정책 등 소프트파워를 활용한 공공외교 추진 및 재외공관을 중심으로 현지 맞춤형 공공외교 추진을 위한 '콘텐츠 활용 공공외교 사업'의 내내역사업으로 '주요국 대상 정책공공외교 외연확대' 사업이 있는데 2022년도 사업 집행률이 62.2%에 불과함.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대미 권역별 정책공공외교' 사업의 집행부진과 '중국지역 찾아가는 정책설명회(現 대중 정책공공외교 강화) 사업 적극적인 사업추진 방안 모색 필요'라는 국회의 시정요구에 대해 외교부는 '조치완료'라고 보고했으나, 2022년 대미 사업은 집행률 36%, 대중 사업은 집행률 4%에 불과해 조치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집행률 제고를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주요국 대상 정책공공외교 외연확대 사업의 경우 미, 일, 중, 러 등 주요국 공관이 세미나, 브리핑 등 정책공공외교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22년도 예산집행률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미 36%, 대중 4%로 상당히 저조하였으나, 2023년에는 크게 개선되었음. - 미국의 경우 23년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여 다양한 정책공공외교 행사 및 세미나를 개최함으로써 집행률 83%를 달성함. - 중국의 경우 주제 다변화 등을 통한 다양한 행사개최로 집행률 52%를 달성하는 등 2022년 대비 집행률을 10배 이상 제고함. - 일본의 경우 작년 한일 정상 셔틀외교의 복원과 함께 대일 정책공공외교 수요도 제고되어 대일본국민 우호증진외교 사업 집행률이 97%에 육박함. ○ 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역별 맞춤형 정책공공외교 추진과 회의 개최, 예산 배정 시 형평성 고려 등의 노력을 전개하였으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사업 수요조사 및 사업 신청을 독려하여 주요 지역 공관들의 참여율을 높이도록 하겠음.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6.30)
			○ 주요국 대상 정책공공외교가 매년 정세와 국정 우선순위에 따라 유연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대중/대일 정책공공외교」 예산을 「인태지역 글로컬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 통합·운용함으로써 예산 낭비 및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 예산 집행률을 제고하고자 함. ○ 조치완료일 : 2024년 1월 31일	
(15)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조정을 통한 사업 수행 지양	○ [지적사항] 해외 사건사고 경험담 공모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소방청·경찰청과 공동주관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매년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산 조정을 통하여 편의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국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향후 동 사업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사전에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할 것	주의	○ '해외 사건사고 경험담 공모전' 사업 수행 관련, '24 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 동 사업 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한바, 국회 최종 확정 - '24 예산편성 1차 심의 때부터 재정당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24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 필요 소요액 전액 반영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2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6.30)
(16) 경제외교 관련 성과보고 부적정	○ [지적사항] 외교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경제안보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 및 우리 기업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했다고 하나, 경제안보담당관회의를 개최하지도 않고 경제안보 리뷰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내용이 거론되지도 않는 등 외교부의 경제외교에 대한 성과보고는 타당하지 않음 경제외교의 실질적 성과와 관련이 없는 경제행사 개최 횟수를 성과지표로 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성과보고에서 경제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우리 기업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했다는 내용을 삭제할 것	주의	○ '24. 2월 성과보고서 작성시 해당 내용 일부 삭제 조치 ○ 조치완료일 : '24년 2월	조치완료
(17) 해외진출기업 활동지원 사업 내실화 방안 마련 필요	○ [지적사항] 해외진출기업 사회적책임 활동 지원 사업의 경우 계획 수립 당시엔 10개 공관에서의 사업 집행을 예상했으나 3개 공관에서만 사업 지원 전담 인력을 고용하는 등 집행이 부진함 ○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해외진출기업 사회적책임 활동 지원 사업이 당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집행하도록 노력할 것	주의	○ 2022년 코로나19 상황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많이 완화 되었으나 일부 개도국의 경우 그 파급효과가 장기화 되거나 엄격한 방역 정책이 지속되는 가운데 불가피하게 대면 사업이 취소 또는 축소되었음 ○ 사업 추진시 관련 예산 불용률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음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조치완료

<table>
<tr><th>시정요구명</th><th>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결과</th><th>조치상황
('24.6.30)</th></tr>
<tr><td>(18)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국제협력 강화' 사업 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td><td>○ [지적사항]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국제협력 강화' 사업은 저탄소 녹색성장 이슈에 대한 국제적 리더십을 유지·강화하고, 범지구적 환경이슈 및 해양환경 외교 이슈에 대응하며, 대국민 녹색경제외교 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임
내내역 사업 중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참여'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들은 예산 집행률이 50% 내외인바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부진함
- 7개 내내역사업 예산 집행률 : 48%, 516%, 44%, 53%, 0%, 64%, 23%

○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최근 기후위기 등 글로벌 환경 이슈와 관련한 문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각 사업의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보다 면밀하게 검토할 것</td><td>주의</td><td>○ 동 내역사업의 실질적 집행률 및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24년 예산 편성 당시 일부 내내역 사업을 아래와 같이 개편하였음.

<연도별 내내역 사업 예산 현액>
(단위 : 백만원)
<table><tr><th>연도</th><th>녹색 경제 관련 다자 협력</th><th>지속가능발전 목표 (환경·해양) 이행 참여</th><th>녹색 성장 주간 개최 지원</th><th>글로벌 녹색성장 서포터즈 운영</th><th>해외환경프로젝트 발굴 및 환경시장개척단 파견 지원</th><th>그린라운드테이블</th><th>P4G 이사회 의장국 활동 및 참여</th></tr><tr><td>2022</td><td>46</td><td>31</td><td>16</td><td>75</td><td>54</td><td>50</td><td>120</td></tr><tr><td>2023</td><td>46</td><td>31</td><td>48</td><td>75</td><td>62</td><td>50</td><td>120</td></tr><tr><td>2024</td><td>46</td><td>92</td><td>42</td><td>75</td><td>-</td><td>50.5</td><td>40</td></tr></table>
○ 또한, 2023년도에는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적극적 수행을 통해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한바, 그 결과 아래와 같이 집행률이 전년대비 개선됨.</td><td>조치완료</td></tr>
</table>

<table>
<tr><th>시정요구명</th><th>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결과</th><th>조치상황
('24.6.30)</th></tr>
<tr><td></td><td></td><td></td><td>
<참고 : 각 내내역 사업별 2022년도 집행률>
(단위 : 백만원)
<table>
<tr><th>사업명</th><th>녹색 경제 관련 다자 협력</th><th>지속가능발전 목표 (환경·해양) 이행 참여</th><th>녹색성장주간 개최 지원</th><th>글로벌 녹색 성장 서포터즈 운영</th><th>해외환경프로젝트 발굴 및 환경시장개척단 파견 지원</th><th>그린라운드테이블</th><th>P4G 이사회 의장국 활동 및 참여</th></tr>
<tr><td>2022년 집행률</td><td>48%</td><td>516%</td><td>44%</td><td>53%</td><td>0%</td><td>64%</td><td>23%</td></tr>
<tr><td>2023년 집행률</td><td>59%</td><td>194%</td><td>52.%</td><td>61%</td><td>45%</td><td>71%</td><td>33%</td></tr>
</table>
- 2022년도 초과 집행되었던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 참여' 사업을 제외하고, 모든 내내역 사업에서 집행률 상승

○ 2024년도에는 면밀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조속한 추진으로 사업 지연 및 일정상의 어려움으로 인한 불용을 방지하고 집행률을 제고하여 나가겠음.
</td><td></td></tr>
</table>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6.30)
(19) '국립외교원 외국어 전임강사' 제도 개선 필요	○ [지적사항] 국립외교원은 외교관후보자 및 신임 외무영사직 등을 위한 어학 과정을 전담시키고자 외국어교육과에 영어 전임강사 3명, 제2외국어 전임강사 4명을 고용 중이나 강의시간이 과소함. - 영어 : 연간 245시간 강의(월평균 20시간 수준) 제2외국어 : 연간 189시간 강의(월평균 15시간 수준) 외국어 전임강사들에게 월 446만원의 보수가 지급되며, 일부 강사에게는 주거보조비 성격의 월 임차료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국립외교원 외국어 전임감사의 강의시간이 지나치게 적음. ○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전임강사의 높은 보수 및 고용 혜택 대비 연간 강의실적이 저조한 점 등을 고려해 외부 위탁교육 실시 등 제도를 개선할 것	제도개선	○ ▲2024년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및 신임 영사직 외국어 교육 과정 전면 개편 및 ▲외국어 1:1 코칭 수업 확대 등에 따라, 외국어 강의시수가 예년에 비해 대폭 증가할 예정임. [외교관후보자 및 신임 영사직 외국어 교육 과정 개편] - (영어) 영어집중과정(1-2개월 과정)을 폐지하고 3학기 정규과정으로 편성하여 연중 주3회 또는 주2회 분산 교육 - (제2외국어) 영어 과정과 동일하게 3학기 정규과정으로 편성하여 연중 주3회 또는 2회 분산 교육 [외교관후보자 외국어 1:1 코칭 수업 확대] - 선택적으로 진행해 온 외국어 1:1 코칭 과정을 올해부터 정규과정으로 개설하여 1인당 영어 2시간, 제2외국어 2시간씩 총 4시간 수강 ※ 외국어 교육 실적 증가 ○ '22년 ▲영어 연 245시간, ▲제2외국어 연 189시간 → '24년 외교관후보자 및 신임 영사직 외국어 교육 시수는 ▲영어 연 300시간('22년 대비 55시간 증대), ▲제2외국어 연 278시간(22년 대비 89시간 증대) 예상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6.30)
			○ 한편, 국립외교원 외국어 교육과정은 일반 어학교육과는 달리 외교·정치·경제·안보·국제이슈 등 전문적 주제를 다루는바, 외교 전문인력 양성 취지에서 외부 위탁교육 실시보다는 외국어 교육의 다양화·내실화 및 고도화 등을 통해 전임강사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자 함. - ▲외국어 강사들을 통한 외교부 직원 대상 외국어 교육 확대, ▲지자체 및 국회 등 대외교육 참여 확대, ▲외국어 교재 개발 업무 등 확대 예정 ○ 조치완료일 : '24년 01월 31일	
(20) 행정직원 인건비 현실화를 통한 재외공관의 인력 유출을 막을 필요	○ [지적사항] 최근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행정직원 인건비와 해당 지역의 근무 현실간 괴리가 발생하여 개별 공관에서 행정직원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행정직원 결원문제의 해결을 위해 행정직원 인건비 현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행정직원은 재외공관의 중요한 인적 자원으로서, 외교부는 지난 수년간 적극적인 예산확보 추진을 통해 근로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 경주 중 ○ 앞으로도 예산 당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행정직원 증원 및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 다방면에서 행정직원 근로 여건이 실질적으로 개선 추진 ○ 조치완료일 : 2023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6.30)
(21) 무상 ODA사업의 과도한 예산조정 개선 필요	○ [지적사항] 한국국제협력단이 수행하는 무상 ODA 사업은 당초 계획과 다르게 매년 세부사업별 및 세부사업 내 전용·내역조정이 과다함. 이는 예산 집행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지 않은데에 따른 것으로 보임. ○ [시정요구사항] 한국국제협력단은 예산 편성시 면밀한 계획수립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조정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주의할 것	주의	○ (신규사업 총사업비 검토 강화) '25년도 신규사업 제안서 검토 시, 예산 타당성 및 산정 근거 검토를 강화 - 신규 후보사업의 총사업비 산정 관련 필수 고려사항을 검토의견으로 제시하여 예비조사 시 반영 조치(11.7.) - 예산계획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형성 단계에서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와 공동으로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 검토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제도를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음(7.26.) ○ (사업공정관리 강화) 사업별로 이루어지는 분기 및 연차별 점검 실시하여 연간 계획 대비 공정률 및 사업 진행 과정상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있으나, 더욱 면밀한 사업관리를 위해 내역사업별 세부점검 및 모니터링 강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유관부서 협의중) ○ 조치완료일 : 2023년 7월 26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6.30)
(22)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 집행방식에 대한 재검토 필요	○ [지적사항] 한국국제협력단에 출연된 출연금의 실질적인 용처를 외교부가 결정하는 현재의 소규모 무상원조 예산 사업 절차는 출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함 한국국제협력단이 재외공관에 사업비를 송금하는 방식의 집행은 해당 금액이 예산상 어느 비목에도 속하지 아니하게 하는바, 재외공관의 예산 집행 내역에 반영되지 아니하게 되고 이에 대한 결산 심사를 어렵게 함 ○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해당 예산을 한국국제협력단이 아닌 재외공관에서 집행할 계획인 경우 이를 외교부 예산에 편성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한국국제협력단에 출연하는 예산은 한국국제협력단을 통해서만 집행하도록 소규모 무상원조 예산 집행절차를 시정할 것	시정	○ 2024년의 경우, 협력단 예산으로 기편성되었으며, KOICA사무소 소재국의 경우 KOICA가 재외공관장 지침하 후보사업을 발굴하고, 본부 심의 및 승인 후 KOICA가 승인된 사업을 이행하는 방식으로 변경을 검토함. ○ 조치완료일 : 2023년 12월 12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6.30)
(23) 신규 사업의 초년도 착수비율 저조	○ [지적사항] 베트남(ODA)에 2022년 6개의 신규 협력사업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 3개의 사업이 전액 집행되지 않거나 집행률이 5% 미만으로 집행이 부진함 ○ [시정요구사항] 한국국제협력단은 사업착수 절차 등 제도적 환경에 대한 사전점검을 강화해 신규 협력사업의 추진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것	주의	○ (사업심사 절차 내실화) 신규 국별협력사업 심사 운영 가이드라인(안)을 수립하여 법제도적 여건, 사업추진 적절성 등 검토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발굴단계 실무지침을 제공하여 내부 심사절차 내실화 노력(7.3.) ○ (신규사업 총사업비 검토 강화) '25년도 신규사업 제안서 검토 시, 예산 타당성 및 산정 근거 검토를 강화 - 신규 후보사업의 총사업비 산정 관련 필수 고려사항을 검토의견으로 제시하여 예비조사 시 반영 조치(11.7.) - 예산계획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형성 단계에서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와 공동으로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 검토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제도를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음(7.26.) ○ 신규사업의 이행 지연 최소화를 위해 사업 집행계획 진도 중간점검 실시 및 결과 환류(9.5.) ○ 조치완료일 : '23년 11월 7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6.30)
(24) 예산집행지침에 맞지 않는 출장경비 집행 부적정	○ [지적사항] 사업을 발굴하여 예비조사하고 기획하는 단계에 사업형성전문가를 투입하거나 예비조사단을 파견하는 등에 사용되는 비용이 형성기획비인데, 마다가스카르 대통령 및 모리셔스 총리 예방,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홍보 및 마다가스카르 소재 한국 NGO 사업추진현황 점검 등의 이사장의 출장일정 경비를 형성기획비로 집행한 것은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시정요구사항] 한국국제협력단은 향후 국외출장 경비 집행 시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하고 예산항목에 적합하게 집행할 것	주의	○ [사유] 상기 이사장 국외 출장은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원을 목적으로 실시하였으며,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각국 고위급 인사 면담을 통해 개발협력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지원계획을 논의함.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하고, 긴급한 출장지원요청으로 인해 해당 예산 항목의 사전편성 및 적시 집행을 위한 실무행정에 어려움이 있었음. ○ [조치결과] 23년 10월 12일 하반기 예산집행지침 개정(협예산-1627./23.10.12)을 통해 사업효과성제고비의 집행기준을 구체화하여, 향후에는 국외출장 경비 집행시 동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하여 '형성기획비', '분야별 지식공유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출장목적에 적합한 예산항목으로 집행 및 관리하도록 하겠음. ○ 조치완료일 : '23년 10월 12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6.30)
(25) 예산의 목적 외 사업 추진 지양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 [지적사항] KOICA 국민서포터즈 사업'은 연례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다른 사업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를 위반함. ○ [시정요구사항] 국제협력단은 「국가재정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주의	○ '23년에 최초로 국민서포터즈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300백만원이 반영(협력사업지원 - 홍보 - 뉴미디어 홍보)된바, 동 예산을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 ○ '24년에는 총사업비 430백만원 전액이 정부안에 반영됨에 따라 예산의 목적에 따라 동 예산 적극 집행 예정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조치완료
(26) 종료된 사업의 부적정한 예산 편성 지양	○ [지적사항] 국무조정실로 사업이 이관되었음에도 예산을 편성하여 다른 사업의 전용 재원으로 활용 ○ [시정요구사항] 국제협력단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행태는 예산의 낭비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관계 부처와의 사전적 협의 및 예산의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	주의	○ '23년 개발협력의날 계기 코이카 자체 국민 참여 행사 및 캠페인 추진에 따라 관련 예산 집행 완료 ○ 향후 개발협력의날 기념식은 지적된 대로 국무조정실에서 주관 예정인바, '24년부터는 동 기념일 관련 코이카 차원의 행사는 미추진 계획이며, 해당 목적의 예산 역시 미편성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조치완료

<table>
<tr><th>시정요구명</th><th>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결과</th><th>조치상황
('24.6.30)</th></tr>
<tr>
<td>(27)
'공공외교주간' 일반용역비의 연례적인 기금계획 변경 지양 필요</td>
<td>○ [지적사항]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공공외교주간' 사업 추진을 위해 매년 위탁업체와 일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매년 일반용역비 집행액이 계획액을 상회하여 해마다 기금변경을 통해 집행액을 충당하고 있음.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등에 제한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금운용계획을 편성함으로써 연례적으로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는 것을 지양할 것</td>
<td>제도개선</td>
<td>○ 재단은 '22년, '23년 공공외교주간 시행 시 배정된 총 예산 내에서 사업비를 집행함. 다만,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 위탁 범위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최소한의 비목간 예산 변경을 통해 일반용역비를 집행함.
(단위: 백만원)
<table>
<tr><th rowspan="2">구분</th><th colspan="3">총 예산액</th><th colspan="4">일반용역비</th></tr>
<tr><th>계획
(A)</th><th>집행
(B)</th><th>증감
(B-A)</th><th>계획
(A)</th><th>현액</th><th>집행
(B)</th><th>증감
(B-A)</th></tr>
<tr><td>'22년</td><td>270</td><td>265</td><td>△5</td><td>184</td><td>264</td><td>262</td><td>78</td></tr>
<tr><td>'23년</td><td>270</td><td>263</td><td>△7</td><td>190</td><td>240</td><td>240</td><td>50</td></tr>
</table>
○ 재단은 향후 예산 편성 및 실집행 단계에 걸쳐 집행예정액을 면밀히 파악, 관리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최소화하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3년 12월 31일</td>
<td>조치완료</td>
</tr>
</table>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6.30)
(28)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효율적 인력관리 노력 필요	○ [지적사항] 재단은 설립연도인 2018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정원미달 상태로 인력을 운영하여 왔으며, 2023년 5월 현재 결원률이 30%이고, 설립연도 이후 총 35명의 퇴직자 중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퇴사자가 77%인 27명에 달하는 등 재단의 인력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시정요구사항] 재단은 향후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 재단의 사업 추진에 있어 미흡함이 없도록 하고, 앞으로의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외통위에 보고할 것	제도개선	○ 한·아프리카재단은 향후 효율적인 인력관리에 노력하여, 재단의 사업 추진에 있어 미흡함이 없도록 하겠음 ○ 퇴직자 발생에 따른 기존 직원들의 업무부담 가중이 생김에 따라 퇴직자 발생시 신속한 결원 충원 및 퇴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위해 더욱 노력할 예정이며, 정원 30명에 미달하는 23명의 인건비 예산만으로는 원활한 사업 추진에 한계가 있기에 향후 관련 예산확보를 위하여 국회, 외교부 및 기획재정부와 계속 협의해 나갈 예정임 ○ 조치완료일 : '23년 08월 23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6.30)
(29) 아프리카대륙 통신원 네트워크 예산 집행 개선 필요	○ [지적사항] 통신원 모집 시 특별한 전문지식이나 고학력을 요구하지 않으며, 통신원의 업무가 현지 동향 파악 및 월간 동향보고서 작성 등으로 비교적 일상적인 업무이고, 통신원마다 활동량이 다름에도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집행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아 보임 ○ [시정요구사항] 재단은 기본활동비에 활동량 및 성과에 따른 수당 형식 등 활동비의 효율성 제고를 통한 통신원 활동 역량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	제도개선	○ 예산효율성 증대와 합리적 자원 배분을 위해, △매회차 활동비를 기존 한화 3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하향 조정 - 분기별 활동간담회를 통한 보고서 작성 노하우 공유, 콘텐츠(사진·영상) 편집 교육 등 통신원 역량 강화를 기반으로 한 사업의 효과성 향상 노력 - 통신원 국가 다양화를 통해 보고서의 양적 증가 및 더욱 다채로운 주제·국가·지역의 자료 확보할 수 있도록 홍보 강화 ○ 월별 평가 기반으로 연례 활동평가를 통해 우수통신원에게 활동연장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경험과 전문성이 축적된 인력을 유지하여 보고서 품질 및 국가 확대 기반 확보 - 연례 활동평가 기준 최우수선정 통신원(3명)은 재단 이사장 명의 상장 및 상금(각 50만원) 수여 예정 ○ 조치완료일 : '24년 01월 16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6.30)
(30) 외화표시예산의 환위험 리스크 노출 최소화 필요	○ [지적사항] 환율 변동시 재정당국의 지원이 부재함에 따라 외교부의 예산이 환리스크에 그대로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재외공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어렵게하여 외교활동 위축 및 영사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외교부는 2022년 환율변동에 대응하여 국제기구분담금에 대한 환차손은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한 외화예산환 전제도로, 재외공관 운영 관련 집행에서 나타난 환차손에 대해서는 이·전용을 통해 대응함 - 이·전용을 통한 빈번한 대응은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관련 지침 및 규정에서 환차손 발생시 대응수단으로 명시된 사업계획변경이나 예비비는 활용되지 않음 ○ [시정요구사항] 외교부의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 발생으로 인한 사업의 안정적 운영이 저해되지 않도록 이·전용과 예비비, 그리고 외국환평형기금 등을 종합해 최적의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현 제도에서 가용한 환위험 리스크 대응 방안은 외화표시예산에 대한 외국환평형기금 활용, 외평기금 적용 이외 예산 집행시 발행한 환차손은 사업계획변경, 이·전용 및 예비비 보전임. - 2023.12.18. 외국환평형기금 담당과와 협의하여 2024년도 외화표시 예산 1,184백만불 중 587백만불(50%)에 대하여 외국환평형기금을 확대 적용받기로 결정됨. ※ 외평기금 적용 외화표시 예산은 2023년 41.6%(404백만불)에서 2024년 50%(587백만불)로 8.4% 포인트 증가 - 2023년도 외화표시 예산 971백만불 중 41.6%인 404백만불 외평기금 적용 - 추후 지속적으로 기재부와 협의하여 외평기금 적용 사업 및 예산 규모를 확대해 나갈 예정임. ※ 기재부는 국가 수준에서의 지급 의무가 있는 사업 예산에 외평기금을 우선 적용한다는 자체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동 기준에 따라 외교부 외화표시 예산 중 국제기구분담금 및 인도적지원 사업 예산에 외평기금을 적용 ○ 외평기금 적용 이외 외화표시 예산(50%) 집행시 발생할 수 있는 환차손에 대하여 재정당국과 긴밀히 협의하여 이·전용 및 예비비로 보전받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임.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29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6.30)
(31) 제주평화연구원 재정자립성 개선 필요	○ [지적사항] 제주평화연구원의 수입구조는 국비, 지방비, 국제평화재단으로부터의 보조 비중이 높은 반면, 자체 수입 비중은 낮아 외부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음 보조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빅데이터 활용 평화지수 확대/발전 사업'은 개발기간을 포함하여 3년 이상 수행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활용성과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신문기사 등을 통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상호국가간 평화의 정도를 측정하고 있어 신뢰도 담보도 어려움 - 평화지수를 활용한 연구실적이나 실제 외부 활용사례, 외교정책에 기여 사례 등 실용적 측면에서의 성과가 부족함 ○ [시정요구사항] 제주평화연구원은 향후 외부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 수입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빅데이터 활용 평화지수 확대/발전 사업'의 효과성과 지속필요성을 재검토할 것 외교부는 제주평화연구원이 외부지원에 대한 의존도는 낮추고 자체수입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평화지수의 효과성과 지속필요성을 면밀히 파악하여 '빅데이터 활용 평화지수 확대/발전 사업'의 지속 여부를 재검토할 것	주의	○ 제주평화연구원이 외부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자체수입 확보를 통해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독려 - 제주도 등 대상기관 확대 통해 연구용역 과제 수주 증진 - ㈜학술교육원, 한국학술정보 등으로부터 연구성과물에 대한 사용료 확보 - 연구 후원기관 모집 통해 기부금 확충 ○ 2024년도 '빅데이터 활용 평화지수 확대/발전 사업' 미편성 ○ 조치예정일 : 2024년 하반기 중	조치중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6.30)
(32) 동북아방역·보건 협력체 운영 집행 부진	○ [지적사항] 동북아방역·보건 협력체는 코로나19 상황에서 우리가 주도한 동북아 보건안보 협력사업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발생 후 국제사회의 대러 제재 및 대만 문제를 둘러싼 미중 대립 심화 등으로 역내 다자협력이 곤란해졌음. ○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향후 동 사업에 대하여 제도개선 및 사업 축소 등을 검토할 것	제도개선	○ 동북아방역·보건 협력체 운영 사업 추진 여건이 어려워진 점 고려, 내내역사업(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운영) 폐지 및 여타 내내역사업(동아시아 협력 포럼)에 흡수·통합 운영 예정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2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6.30)
(33) 아시아·태평양 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 집행 부진	○ [지적사항] '한일 과거사 대응 및 미래지향 사업의 정책연구비'(예산액 2억 1,900만원)의 경우 75%의 불용률(불용액 1억 6,400만원)을 보이는데 이에 대한 소명이 필요함 2022년~2025년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한·일 신협력비전' 사업 예산을 2022년 2억 6,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으나 집행액이 4,000만원에 불과하고, '한·일 신시대 복합 네트워크 구축' 사업도 현지에서의 공관 사업 집행이 부진하였으며, 특히 공관 사업 예산은 2020년 이후 집행률이 지속적으로 부진한 상황임 ○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동 사업의 집행률 부진 및 지속적 집행부진에 대하여 향후 사업집행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시정	○ 코로나19와 더불어 한일관계 악화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일본 관련 사업을 거의 진행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해 예산을 소진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어려웠음. ○ 지난 한 해 7차례의 정상회담, 6차례의 외교장관회담 등 한일 각급에서의 교류 활성화를 통해 한일관계가 정상화되었으며, 이에 따라 예산 집행률도 대폭 상승하여 '한·일 신협력비전' 사업은 1억 8,900만원 중 약 1억 1,700만원, '한·일 신시대 복합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6억 8,170만원 중 약 5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음. - 현재 조성된 한일관계 개선의 흐름을 공고히 해나가며 향후 일본 관련 사업의 집행률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6.30)
(34)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사업 성과지표 설정 부적정 등	○ [지적사항]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사업('22년 본예산 7억 2,200만원, 추경 6억 5,200만원)의 경우 지난 4년간 연례적인 불용이 이어지고 있고, 방역 상황으로 대면 회의 등 한계가 있어 집행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행사 개최와 의제별 회의 개최 횟수로 측정하는 성과 달성도가 100점이라는 것은 모순적이며, 2023년도 성과지표도 코로나19를 감안하여 설정한 2022년도와 큰 차이가 없는데 이에 대해서도 시정이 필요함. 역내 포괄적 다자협력 구축 사업으로 최근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동 사업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함. ○ [시정요구사항] - 외교부는 향후 동 사업의 성과지표 설정을 재검토할 것(주의) - 외교부는 향후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보다 면밀히 검토할 것(제도개선)	주의, 제도개선	○ 외교부 직제 개정('22.12월)에 따라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이 이관된(아시아태평양국 → 동북아시아국) 후, 과거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점 고려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재검토 - 2024회계연도 예산 편성 시(2023), △연례적 집행 부진 △국회 지적사항 등을 감안, 동북아국 소관 세부사업(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의 내내역사업으로 재편* *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세부사업)-동북아시아지역 협력 증진(내역사업)-동아시아 협력 포럼(내내역사업) ※ (성과지표 재설정) 세부사업 통·폐합으로 '동북아 평화협력 플랫폼 구축' 세부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설정 재검토는 어려워졌으나, 향후 '동북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강화' 세부사업 성과지표 설정 과정에 동 지적사항 고려 예정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2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6.30)
(35) 신남방 외교 강화 사업 내 집행 부진 지속	○ [지적사항] '아세안 및 동남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사업('22 본예산 40억 3,200만원, 추경 39억 500만원)은 2020년 이래로 예산 집행률이 매년 50%를 넘지 못할 정도로 저조함 ※ 집행률: '20년 42.6%, '21년 35.6%, '22년 48.5% 동 사업의 집행률이 저조하지만, 관련이 없는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로 이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음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사업('22 예산액 3억 2,400만원)의 경우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집행률이 여전히 22%에 이르러 집행 부진이 지속되고 있고, 한-해양동남아 협력 플랫폼 구축 사업은 잘못된 비목 편성으로 불용이 발생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연례적인 집행 부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새로운 사업 예산 편성시 보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것 외교부는 향후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보다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의 이용에 있어 신중을 기할 것	제도개선	○ '23년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세부사업 '아세안 및 동남아지역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예산에 대해 ▲예산 소요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 실시, ▲예산 집행 모니터링 강화 등을 실시한 결과, 집행률 개선 ※ '23년 예산 집행률 예산 현액 대비 92.4% 달성 ○ 특히 한-아세안 금융협력센터 예산의 경우 우리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현장 중심 활동 위주로 사업 방식을 대폭 변경한 결과, 집행률 92% 달성 및 실질 성과* 거양 * 금융협력센터의 지원으로 2022년6월 '우리카드' 인도네시아 진출, 2023년7월 對인도네시아 디지털결제 시스템 수출, 2023년9월 '카카오뱅크' 인도네시아, 태국 진출(현지 은행 지분 투자 방식)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6.30)
(36)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 3각 협력 확대 사업 집행률 제고 필요	○ [지적사항] 나진·하산 물류사업 등 남북러 3각협력 확대 사업에 정부간 협의 개최 명목으로 3,6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전액 불용되었음 ○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집행률이 부진한 동 사업의 집행률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남북러 3각협력을 위한 정부간 협의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현재로서는 사업을 종료하고 향후 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집중하고자 함 ○ 조치완료일 : 2023년 12월 2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6.30)
(37) 루마니아 의료기기 긴급지원 사업의 집행 관리 필요	○ [지적사항] 2021년 8월 한-루마니아 백신 스왑 합의에 따라 우리 정부는 모더나 백신을 루마니아에 필요한 의료물품과 상호 공여를 통해 공급받기로 협의함 외교부는 사업 수행자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을 지정하여 2022년 내에 루마니아 의료기기 긴급지원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였으나,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의 소홀로 공여 절차가 지연되었고 관련 예산을 이월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상호공여 사업이 내실있게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수행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사업 여건에 대한 명확한 합의를 통해 효과적인 사업수행체계를 확립할 것	주의	○ 동 사업은 '23.11.28일자로 보조금 정산 완료하여 사업 종료 ○ 향후 유사 사업 수행 시 상대국과 명확한 합의를 사전에 마련하고, 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체계를 확립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음 ○ 조치완료일 : '23년 11월 28일	조치완료

<table>
<tr><th>시정요구명</th><th>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th><th>시정요구
유 형</th><th>조치결과</th><th>조치상황
('24.6.30)</th></tr>
<tr><td>(38)
아프가니스탄 재건 사업의 청산 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할 필요</td><td>○ [지적사항] 우리나라의 아프가니스탄 군·경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지원은 아프가니스탄군신탁기금(ANATF), 아프가니스탄법질서강화신탁기금(LOTFA)의 2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ANATF의 경우 청산절차를 진행 중이고, LOTFA의 경우 2022년 청산을 완료하였음. 외교부는 군·경 역량 강화 사업을 비롯한 아프가니스탄 재건 사업의 종료와 청산에 대해 별도의 보도자료와 입장 등을 발표하고 있지 않으나, 1,50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는 환입 규모를 고려하면 동 사업의 청산에 관한 사항을 국민과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아프가니스탄 군·경 역량 강화 사업비 정산 현황
(단위: $)
<table><tr><th>기금명
(소관 기구)</th><th>기여금
누적액</th><th>환입액</th><th>비 고</th></tr><tr><td>ANATF (NATO)</td><td>319,000,000</td><td>102,868,000</td><td>2025년까지 7차에 걸쳐 잔액 반환 예정이며, 3차까지 환수</td></tr><tr><td>LOTFA (UNDP)</td><td>100,000,000</td><td>14,591,522</td><td>2022년 정산 완료</td></tr><tr><td>합 계</td><td>419,000,000</td><td>117,459,522</td><td></td></tr></table>주 1) 2023년 3월말 기준
2) 세입목명: 기타경상이전수입(59-596)

○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우리나라의 재정지원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었고 기여 규모에 비추어 환수 규모가 정당하게 결정되었는지 등에 대한 정보를 공표하고, 아프가니스탄 재건사업의 평가 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할 것</td><td>시정</td><td>○ 아프가니스탄 군신탁기금(ANATF) 청산 관련 이사회 및 실무그룹협의를 통해 국제기구의 기금 청산절차를 모니터링하고, 4차 및 6차 잔여기금을 우리 국고로 반환
- 4차 4,715,000미불('23.7월), 5차 6,433,000미불('24.1월) 반환

○ (조치계획) 앞으로도 미집행 잔액의 국고반환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청산 완료시 국회에 보고 추진

○ 조치예정일 : 2025년</td><td>조치중</td></tr>
</table>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6.30)
(39) 국제법적 대응강화 성과달성 평가 부적정	○ [지적사항] 외교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하여 제32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회의에서 당사국들에게 유엔해양법상 해양환경 오염 방지 의무 관련 주의를 환기하며 동 사업의 성과 달성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함. 외교부는 일본의 해양 오염 방지 의무를 규정한 유엔해양법협약과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런던협약·의정서 등의 위반 주장과 관련하여 후속조치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이와 관련한 국제사회적 환기를 외교부가 달성한 성과로 삼는 것은 모순적인 조치임. ○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성과평가 근거가 '법적 자문이 실제 정책에 반영된 결과 문서 채택을 성과로 측정'한 것인바 해당 법적 자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하고, 10월 제18차 런던의정서 총회에서 오염수 해양투기의 런던협약 위반 여부를 다룰 수 있도록 중재를 검토하라는 의견을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 전달하고 외교부가 함께 협력할 것	시정	○ (런던의정서 총회 관련 의견 전달 관련)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에 동 시정요구사항 전달 공문 발송 - 조치완료일 : '24년 01월 24일 ○ (법적자문 자료 제출 관련) 동 시정요구사항 제기 의원실(박홍근, 진성준 의원실)에 관련 자료 송부 - 조치완료일 : '24년 01월 25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6.30)
(40) 국민외교 사업 활성화 필요	○ [지적사항] 이 사업은 국민과의 소통 강화 및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의 국민 참여율 제고를 위해 국민 대상 주제별 외교정책 강연(공감팩토리), 주요 외교정책 관련 국민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국민참여사업), 외교정책에 대한 국민제안 수렴(국민제안공모전) 등을 수행하는 사업임 이 중 '국민외교센터 SNS 등 홍보 채널'은 외교부 공식 SNS 채널 등과 중복되며, '공감팩토리, 국민외교 디자인단 등'은 외교부 서포터즈 모파랑, 국민외교 아카데미 교육과정, 외교부 뉴스레터와 중복됨 ○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동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및 사업 축소를 검토할 것	제도개선	○ 국민외교 사업은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주요 외교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려는 취지의 사업임. - ▲국민외교 공감팩토리(21회 개최) ▲제5차 국민참여사업(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관계 발전 방향 모색 토론회) ▲외교정책 제안 공모전(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외교정책) 등의 사업으로 구성됨. ○ 외교부는 이중 '국민외교센터 SNS 등 홍보 채널'은 외교부 공식 SNS 채널 등과 중복되며, '공감팩토리, 국민외교 디자인단 등'은 외교부 서포터즈 모파랑, 국민외교 아카데미 교육과정, 외교부 뉴스레터와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24년 중복되는 사업을 폐지함. ○ 향후 주요 외교정책 결정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한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6.30)
(41) 경제안보 위기 대응을 위한 안정적 인적 기반 마련 필요	○ [지적사항] 주요국 경제안보정책 대응 사업을 통해 2022년 경제안보 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으나, 제도 정비를 뒷받침할 동 센터와 재외공관의 연구인력 충원이 지연되고 정책네트워크 사업의 실행에 어려움을 겪은바, 2022년 본예산 대비 집행률은 37.8%로 나타남 ○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국내외 정책네트워크 협업체계를 통한 인력 확보 등 안정적인 인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의 충실한 집행을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강구할 것	제도개선	○ 해당 사업의 집행 부진은 경제안보외교센터 초기 단계에서 연구인력 순차적 채용 등 센터 체계 구축 및 정비에 집중하여 발생한 일시적인 상황으로, '23년 연구원 채용이 모두 완료되어 연초부터 계획대로 사업을 수행하여 집행률 제고('23.12월 기준 80%) ○ 조치완료일 : '23년 12월 31일	조치완료
(42)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집행 개선 필요	○ [지적사항] 2022년 연중 지속된 환율변동으로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예산에 대규모 환차손이 발생하자 외교부는 11회에 걸친 잦은 세목변경을 통해 예산을 집행하였음. 이는 타 사업의 원활한 집행에 영향을 줄 것임. 또한, 경직성 경비에 대한 향후 소요액 예측이 부족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됨 ○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세목조정을 하여 타 사업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주의할 것, 외교부는 실수요를 기반으로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세목조정을 연말 환차손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활용할 것	주의	○ 과도한 세목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관의 실소요액을 최대한 반영하여 기본경비 정기배정 추진 - 재외공관 기본경비 세목조정 운영방침 안내 ('23.12.14.) ○ 조치완료일 : 2023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6.30)
(43) 재외공관 경직성 경비 집행에 있어 회계연도 독립원칙 미준수	○ [지적사항] 일부 재외공관에서 직원 의료보험 지원액 등의 집행을 2022회계연도 외의 시기에 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재정법에서 정하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 집행임 ○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직원 의료보험 지원액 등 재외공관 관련 집행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회계연도 독립원칙을 준수할 것	제도개선	○ 매년 차년도 이월 지급하던 보험료의 연내 집행을 위해 전용을 통해 배정 완료 * 미 대사관 등 14개 공관 보험료 소요액 (443백만원) - 주미국(대) USD171,938, 뉴욕(총) USD14,377, 샌프란시스코(총) USD39,968, 필라델피아(출) USD2544, 토론토(총) USD9,000, 바르셀로나(총) USD1,547, 벨기에(대) USD34,444,본(분) USD2791, 멜번(분) USD3560, 스웨덴(대)USD5,302, 스위스(대) USD7,992, 이스라엘(대) USD8,108, 오스트리아(대) USD33,735,아르헨티나(대) USD6,181 ○ 조치완료일 : 2023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6.30)
(44) 행정직원 주거보조비 지원 집행 방식 부적정	○ [지적사항] 재외공관 행정직원 대상 현지주택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일부 직원을 대상으로 정액지원과 실비 지급을 혼합하여 집행하였음. 또한 주거보조비 특성상 임차료(210-07)로 집행되어야 함에도 상용임금(110-03)으로 집행되고 있는바, 이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위배되는 집행임. ○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재외공관 행정직원 대상 관련 지침 및 규정을 준수하여 주거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	주의	○ 외교부는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및 「동 운영지침」에 근거, 전재외공관 한국적 행정직원에게 해외체류에 따른 비용 보전을 목적으로 2007년부터 주거보조비를 지급 중 - 2020년부터 행정직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주거보조비 지원현실화를 하면서, 행정직원의 근로계약에 따른 주거보조비 지급 방식 혼재 불가피 ○ 외교부는 주거보조비 지급 체계가 상이함에 따른 혼란은 최소화하면서 2025년 예산 편성시 임차료 비목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력 예정 ○ 조치예정일 : 2024년 12월 31일	조치중
(45) 디지털 외교 자산 활용 등 사업 제도 개선 및 사업 축소	○ [지적사항] 2022년 신규사업으로 외교부 소셜미디어 분석 서비스와 외교부 SNS 분석시스템 활용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당초 사업 목표와 달리 디지털 외교 자산 활용 등 사업 효과성이 저조함. ○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디지털 외교 자산 활용 등 사업의 집행 방식을 개선하거나 동 사업을 축소할 것	주의	○ 사업 집행 방식을 개선하여 시스템 사용이 아닌 직접 모니터링 방식으로 전환 ○ 조치완료일 : 2023년 12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6.30)
(46) ODA 사업에 대한 면밀한 집행계획 수립으로 예산 조정 최소화 필요	○ [지적사항] ODA 사업 중 다수가 사업 계획이 면밀하게 수립되지 아니하여 과도한 이·전용이 발생하거나, 예산을 조정한 이후에도 집행률이 부진하게 나타나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함 - 전용조정을 통해 증액한 사업 총 125건 중 본예산 규모 대비 10배 이상 증액한 사업이 8건, 그 중에서 2건의 예산현액 기준 집행률이 부진함 - 추경 및 전용조정을 통해 본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된 사업이 84건으로, 그 중 집행률이 10% 미만으로 저조한 사업이 4건임 ○ [시정요구사항] 한국국제협력단은 면밀한 예산 검토 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조정을 최소화하고 향후 예산안 심사 시에 적정 예산을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외교부는 수원국의 행정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원국 사업추진 여건 및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면밀한 검토과정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조정을 최소화하고 향후 예산안 심사 시에도 적정 금액을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주의	○ (신규사업 총사업비 검토 강화) '25년도 신규사업 제안서 검토 시, 예산 타당성 및 산정 근거 검토를 강화 - 신규 후보사업의 총사업비 산정 관련 필수 고려사항을 검토의견으로 제시하여 예비조사 시 반영 조치(11.7.) - 예산계획의 타당성 및 적절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형성 단계에서 분야별 내외부 전문가와 공동으로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 검토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제도를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음(7.26.) ○ (분기 및 연차점검 시행) 사업별로 이루어지는 분기 및 연차별 점검 실시하여 연간 계획 대비 공정률을 파악하고 있으며, 동 절차의 개선을 통한 예산관리 강화 방안을 검토중에 있음(유관부서 협의중) ○ 조치완료일 : '23년 11월 7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6.30)
(47) ODA 사업관리의 강화 필요	○ [지적사항] 2022년 국가별 협력사업의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4.7%로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실제로는 본예산 대비 집행률이 60% 미만인 사업이 전체 사업(377건) 중 33.4%(126건)에 이르는 등 명목집행률과 실제 사업추진상황과의 괴리가 상당함 ○ [시정요구사항]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은 국가별 협력사업의 명목집행률과 실제 진행상황 간의 괴리를 면밀히 확인하고 실질적인 집행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 ODA 사업관리를 강화할 것	제도개선	○ (분기 및 연차점검 실효성 제고) 사업별로 이루어지는 분기 및 연차별 점검 실시하여 연간 계획 대비 공정률을 파악하고 있음. ○ (무상원조 사업 집행관리 분과회의) 무상 ODA 시행기관별로 예산 집행액·집행률을 포함한 전반적인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분과회의(분기별) 신설 관련 안건 관계부처 회람 ○ 조치완료일 : '24년 1월 26일	조치완료
(48) ODA 사업에서 발생하는 면세환급금에 대한 관리 강화 필요	○ [지적사항] 무상원조 기본협정에 근거하여 일부 국가별 협력사업에서 발생하는 면세환급금이 한국국제협력단의 개별 해외사무소 단위에서만 관리되고 있어 전반적인 환수필요규모 산출에 어려움이 있음 ○ [시정요구사항] 한국국제협력단은 국가별 협력사업에서 발생하는 면세환급금에 대한 모니터링 및 통계작성 등을 통해 예산 누수를 방지하고 환급의 정확성을 높일 것. 외교부는 국가별 협력사업에서 발생하는 면세환급금에 대해 한국국제협력단이 모니터링 및 통계작성 등을 통해 예산 누수를 방지하고 환급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할 것.	제도개선	○ 해외사무소 면세여부 및 면세방식을 조사하였으며 면세환급금이 발생하는 사후면세 발생 국가 대상 면세환급금 규모 및 여입금액 확인 완료 ○ 조치완료일 : '24년 1월 22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6.30)
(49) ODA 조달 관련 과도한 긴급공고 추진 자제 필요	○ [지적사항] 한국국제협력단은 국내 및 국외 조달에 대해서 다수의 계약을 특별한 사유 없이 긴급공고로 추진함. 이러한 집행은 입찰 공정성을 저해하고, 신규 업체의 진입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 - 코로나19 특례가 적용됨에 따라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긴급공고로 진행되는 계약 비율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경쟁률이 감소하고 낙찰률이 증가함 - 한시적 특례를 사유로 들고 있으나, 두 규정 모두 재량규정으로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엄격하게 코로나19로 인해 입찰업체 간 경쟁이 불가한 경우로 한정지어야 함 ※ 긴급공고 비율: 2019년 6.97% → 2022년 61.86% ○ [시정요구사항]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은 긴급발주 공고 절차를 마련하여 긴급공고에 대해서는 필요시에만 적용되도록 할 것	주의	○ 2023년 하반기 입찰의뢰 시, 긴급입찰을 자제하고, 충분한 기간을 갖고 발주하도록 전 부서에 권고하였음. - 사전 협의 단계에서 조달 담당자와 발주 담당자간 긴급입찰의 필요성을 점검하도록 하였음. - 사유가 없는 경우, 일반공고 기간을 준수하여 입찰을 추진하도록 하고, 긴급입찰 추진 시에는 “긴급입찰이 필요한 충분한 사유”를 확인하도록 절차 개선 ○ 조치완료일 : 2023년 9월 7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6.30)
(50) 결산잉여금 추이를 고려한 적정 출연금 규모 산출 필요	○ [지적사항] 2020년 이후 KOICA의 결산잉여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무상 ODA 규모 증가에 따라 향후에도 상당액의 결산잉여금이 축적될 것으로 예상됨 차차년도 이월금액이 이월결산잉여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70~80%에 이르는 현재의 예산 편성이 지속되는 것은, 잉여금의 발생 시점부터 수입으로 계상되는 시점까지의 기간이 길어져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음 - 2022년 결산잉여금 498억 5,600만원 중에서 83억 8,000만원만 2023년도 예산에 반영되고, 414억 7,600만원은 2024년도로 이월되는 등, 3년 평균 325억 9,100만원의 결산잉여금이 차차기로 이월되고 있음 ○ [시정요구사항] 한국국제협력단 예산 편성 시점에 사업의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한 결산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 예산 편성 시점에 사업의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사업 중단 등으로 인한 결산잉여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여유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결산잉여금 축소를 위한 기관 자구노력으로 집행률 제고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며, 주무부처 협의를 통해 출연금 교부액 조정을 통해 결산잉여금 축소 도모 예정 - 지속적인 KOICA 예산증가에 따라 동일 집행률('22년 95.9%) 가정시 결산잉여금 또한 증가할 예정 - 차차년도 이월금액 발생에 따른 자금운용의 비효율이 발생하는 부분은 수지차 기관의 구조적인 문제(이월결산 잉여금 예측과 확정 시차발생)로 해결이 어려움 - 다만, 결산잉여금 증가 억제를 위해 집행률 제고를 독려하였으며, 주무부처 협의를 통해 교부액을 조정하여 불용액 축소를 도모함 ○ 조치완료일 : 2023년 12월 6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6.30)
(51) 당초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 필요	○ [지적사항] '인도네시아 국가 재난대응 공공의료체계 역량강화 사업(WHO)'은 사업 집행 과정에서 WHO 인도네시아 사무소의 사업 운영 역량 및 의지 미흡이 확인되어 사업을 변경하였는데, 한국국제협력단은 총사업비를 감액하는 대신 '재난대응 교육훈련 역량강화' 요소를 추가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자체 변경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사업핵심 구성요소) 무상 ODA 사업이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책임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 핵심요소 변경 재발 방지	시정	○ 주요 사업 구성요소에 대한 변경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하여 2023년 4월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지침」을 개정 실시함 - 사업 분야의 변경을 수반해야 하는 수준의 사업 구성요소가 변경되는 경우 외교부 장관 승인사항으로 개정함 - 또한, 국회의 예산 의결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 발굴 및 기획 단계에서 현지 사무소 주도로 관련 기관과의 수시 업무협의를 통해 면밀하게 분석하여 사업계획 변경을 최소화하도록 관리 중임 ○ 조치완료일 : '23년 4월 26일	조치완료
(5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달리 예산이 집행되지 않도록 재발방지대책 마련	○ [지적사항]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도시교통 마스터플랜 수립 및 교통신호체계 개선사업('21-'25)(590만불)'은 핵심과업이 수원국 정부의 교통정책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확인되자, KOICA는 주요 구성요소인 시범사업을 축소 조정하는 것으로 2023년 5월 사업계획 변경을 자체 승인하여 국회가 당초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였음 ○ [시정요구사항] 외교부와 한국국제협력단은 예산 편성 당시 수원국의 상황 등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여 예산 집행과정에서 사업의 핵심 구성요소를 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시정	○ 사업 추진 중 사업 여건변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주요 사업 구성요소에 대한 변경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기 위하여 2023년 4월 「사업계획변경에 관한 지침」을 개정 실시 중임 - 또한, 사업 발굴 및 기획 단계에서 사업타당성조사, 심층기획조사 등 현장 조사를 비롯, 현지 사무소 주도로 사업 협력 예정 기관과의 수시 업무협의를 통해 국회가 당초 의결한 사업 취지가 가급적 변경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하게 관리 중임 ○ 조치완료일 : 2023년 4월 26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6.30)
(53) 중동CIS 소규모 무상원조 집행률 개선 필요	○ [지적사항] 중동CIS지역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은 우크라이나와 타지키스탄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예산을 15억에서 30억으로 증액하였는데, 증액의 사유가 되었던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지원 사업은 '중동CIS국가 대상 지원사업' 12개 중 1건이며(타지키스탄 1건, 우크라이나 없음) 예산액 대비 집행액 비율은 8.58%에 불과함 이는 두 국가에 대해서 기존 수요 대비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였고, 부족한 사업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발굴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못한 것임 ○ [시정요구사항] 한국국제협력단은 총액계상의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당시의 편성 금액 및 목적에 따라 수요발굴 등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외교부는 총액계상의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에 대해 예산편성 당시의 편성 금액 및 목적에 따라 수요발굴 등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주의	○ '24년 예산 편성시 재외공관 및 수원국의 예비사업 수요를 바탕으로 예산 요구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역별 편성예산 및 목적에 따라 사업 추진할 예정 ○ 조치완료일 : 2023년 4월 3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6.30)
(54) 안전담당관 제도 정비를 통해 해외사무소 근무자 및 봉사단원의 안전관리 강화 필요	○ [지적사항] KOICA는 고위험국 소재 11개 해외사무소에서 안전사고·질병 예방 및 대응 등을 담당하기 위해 2020년부터 안전담당관(안전코디네이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2020년 9월 최초 채용 이후 단 한 차례의 채용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존 계약 만료 후 자연 감소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음 - 2022년 연도말 기준 KOICA는 인도네시아 1개소에 안전담당관 1명만 유지하고 있었으며, 2023년 3월 동 담당관의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담당관 운영이 잠정 중단된 상황임 해외봉사단 파견이 정상화되고 있으므로 현재 잠정 중단된 안전담당관 제도 정비를 통해 해외사무소 근무자 및 봉사단원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한국국제협력단은 안전담당관의 필요성 등 제도 전반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여 제도개편 방향을 모색할 것	주의	○ 안전담당관 재파견을 위해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추진하였고, 6명의 안전담당관(안전코디네이터)선발을 완료 하였음. - 제도개선 추진 경과로는 내부 TF 운영 ('23.1월~5월), 해외사무소 의견수렴('23.3월), 대내외 지적 사항 분석 및 기존 안전코디 제도 검토 ('23.3월~6월)를 실시. - 주요 제도 개선 사항으로는 △자격 요건 보완, △선발 분야 확대 △주요 직무 구체화임. [조치 완료] ○ 안전코디네이터(안전담당관) 최종 선발 완료 : '23년 12월 8일 ○ 안전코디네이터(안전담당관) 전원 파견 완료 : '24년 1월 2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6.30)
(55) 한국학강좌운영 객원교수 사업 운영 개선, 비목 검토 필요	○ [지적사항] 한국학강좌운영의 객원교수 파견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용역업체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예산 편성 이후에 사업운영 방식을 위탁용역에서 직접집행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러한 변경은 2021회계연도에도 동일하게 발생한 바가 있어 실현가능성이 낮은 집행방식으로 예산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임. 재단은 파견교수에게 지급하는 2~4년간의 경비(체재비, 교재연구비, 특수지수당 등)를 국외업무여비(220-02)에서 집행하였는데, 국외업무여비는 단기적 특수업무 집행에 지급되는 비목이므로, 동 비목에서 장기체류에 따른 경비를 매월 수당의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관련 지침에 부합하지 않음 ○ [시정요구사항]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객원교수 파견사업 운영에 있어서 예산 편성 시 사업운영계획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것.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객원교수의 장기체류에 대해 재단과 객원교수 간 근로 및 용역계약 이행 등의 대책을 강구할 것	제도개선	○ 동 시정요구사항(객원교수 파견사업 운영계획 면밀 조사, 근로 및 용역계약 이행 등 대책 강구) 관련, 재단은 객원교수 파견사업 수행체계 개선 컨설팅('23.10~12월)을 통해 유사 사례 조사, 위탁 및 용역계약 등 개선 방안들을 도출하였음. ※ 객원교수 파견사업 수행체계 개선 컨설팅 개요 - 기간: '23.10월~12월 - 주요내용: 객원교수 파견사업 관련 ▲기초 분석, ▲사업 운영 종합 진단, ▲개선안 도출, ▲개편 방안 자문 등 ○ 차년도 예산 편성 시 개편된 사업운영 체계에 맞도록 예산당국과 면밀히 협의 및 반영 예정임. ○ 조치완료일 : '24년 1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6.30)
(56) 한국학강좌운영 객원교수 채용기준 재검토 필요	○ [지적사항] 한국학강좌운영의 객원교수 파견 사업은 교수 선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객원교수의 전공과 한국어 및 한국학 강의에 직접적인 연관이 보이지 않음 ○ [시정요구사항] 한국국제교류재단은 한국학 및 한국어 객원교수의 세부전공 등 채용기준을 재검토할 것	제도개선	○ 동 시정요구사항(채용기준 재검토) 관련, 재단은 객원교수 파견사업 수행체계 개선 컨설팅('23.10~12월)을 통해 파견교수의 자격, 사업 절차 등 개선 방안들을 도출하였음. - '24년 사업 시행 시 반영 예정임. ※ 객원교수 파견사업 수행체계 개선 컨설팅 개요 - 기간: '23.10월~12월 - 주요내용: 객원교수 파견사업 관련 ▲기초 분석, ▲사업 운영 종합 진단, ▲개선안 도출, ▲개편 방안 자문 등 ○ 조치완료일 : '24년 1월 31일	조치완료
(57) 한국국제교류재단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 필요	○ [지적사항]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업무용 태블릿PC 25대에 대한 통신요금과 할부원금을 정보화 예산(국제교류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에서 집행하였는데, 이는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임. 업무수행에 필요한 통신요금은 재단의 기타운영비(7076-201)에서 집행하는 것이 적합하며, 태블릿PC의 할부원금은 자산취득 비용에 해당하므로 자산취득비로 집행하고 태블릿PC를 자산으로 등록·관리할 필요가 있음 ○ [시정요구사항]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외부업무수행을 위한 태블릿PC를 사업목적에 부합하게 집행하고 자산취득 시 자산취득비를 통해 집행할 것	주의	○ 업무용 태블릿PC 통신요금을 기타운영비(공공요금 및 제세) 예산에서 품의 및 집행 완료함.('24.1.17) ○ 현재 사용 중인 태블릿PC의 할부원금은 2022년도에 납부 완료하여, 향후 새로운 태블릿PC 구입 시에는 자산취득비로 집행하도록 하겠음. ○ 조치완료일 : 2024년 1월 17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6.30)
(58) 대만 유사시 우리교민 대피계획 마련 필요	○ [지적사항] 대만해협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주요 국가들은 대만 유사시 시나리오와 교민 대피시설을 준비하는 등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음 반면, 우리나라는 주타이베이 한국대표부가 공식적인 대외공관도 아니며, 유사시 대피 방안에 대해 교민들에게 배포된 매뉴얼이나 계획이 없음 ※ 2021년 기준 대만 거주 재외동포 5,527명 (재외국민 5,029명, 외국국적동포 498명), 2023년 기준 대만 진출 한국기업 총 107개사 ○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관련 부처와 협업하여 대만 유사시 우리 교민들의 대피책 및 대응책을 마련할 것	제도개선	○ 전 재외공관은 정정불안 등 유사시를 대비한 재외국민보호 행동매뉴얼을 갖고 있음. ※ 2005년부터 재외국민보호 위기관리 표준(3비)·실무(3비)·현장(대외비) 매뉴얼을 각각 작성하고 운용 중 - 다만, 교민 불안 및 양자관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대외공개하지 않고 있음. - 한편, 외교부는 <재난안전법>, 행안부 <재난 대비 훈련지침>에 따라 전 재외공관으로 하여금 “위기대응 도상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교민 전체 또는 대표자가 동 도상훈련에 참여하고 있음. ○ 조치완료일 : 2023년 11월 1일(대표부 도상훈련 실시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6.30)
(59) 한-일 환경협력공동위 개최 및 '한국 전문가의 원전 상주' 요구 필요 등	○ [지적사항] 1993년 한일 양국이 서명한 한일 환경보호 협력협정은 한일 양국간 해양오염규제 및 유독물질의 규제 정책에 관한 정보 교환을 협력 가능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음 ※ 한일 양국은 1994년 제1차 회의를 설치한 이래 2019년 제21차 공동위를 개최함 2022년 예산에 한-일 환경협력공동위 등 개최를 이유로 4,700만원이 편성되었음. 그러나 한-러, 한-중 공동위만 개최하고 한-일 환경협력공동위는 개최하지 않으면서 해당 사업 예산의 90%를 불용하고 재외공관 운영경비로 충당(이용)함 ○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사업 본래 목적과 국회 의결에 부합하는 예산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한-일 환경협력공동위를 개최할 것	시정	○ 우리측은 외교 채널을 통해 제22차 한일 환경협력 공동위의 2023.11월 또는 12월 서울 개최를 일측에 수차례 제안 - 일측은 연말까지 예정된 각종 회의로 인해 동 공동위의 연내 개최는 대응이 어려워 내년 개최를 희망한다고 답변(11.10.) ○ 제15차 한일 고위경제협의회(12.21.) 계기 우리측은 한일 환경협력 공동위의 조속한 개최를 위한 일측 협조 요청 ○ 우리 정부는 금년 내 한일 환경협력 공동위를 개최하기 위해 일측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음.	조치중

< 예비비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6.30)
(1) 정상 및 총리외교를 위한 예비비 요구시 불용 최소화 필요	○ [지적사항] 예비비 63억 800만원 중 9억 700만원을 불용하였는데, 9억원 상당의 예산은 해외 순방을 1회 이상 수행하기에 충분한 금액으로 해당 예비비 배정은 보충성 원칙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임. ○ 외교부는 정상 및 총리외교를 위해 예산을 전용하는 과정에서 체계적이지 못하고 비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함 - 12월 21일 특근매식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증액조정하고, 바로 다음날 일반수용비에서 국외업무여비로 감액조정함 - 12월 28일 임차료 부족분 충당을 위해 특근매식비를 감액조정하고 바로 다음날 재차 특근매식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증액조정한 후 증액 조정 예산을 전액 불용처리함 ○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예비비 세부사업 내 다른 세사업에서 불용액이 발생할 것을 고려하여 세사업간 세목조정 및 내역변경을 통해 필요재원을 마련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만 적정 수준의 예비비를 배정받도록 할 것(주의) ○ 외교부는 향후 행사 준비 단계에서부터 예산 배정을 엄격히 통제하고 불용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집행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제도개선)	주의, 제도개선	○ (적정 수준의 예비비 신청 노력) 2023년 5-7월 예비비를 배정 받기 전 우선 부족한 임차료와 국외여비를 세목조정 및 자체전용 절차를 통해 충당하여 집행하였음. 8월 예비비 신청시에는 향후 부족분 예상분에 대해서 정상외교 일정 계획안을 참고하여 행사별로 소요 예산을 추계하여 불용을 최소화하고 적정 수준의 예비비를 신청하고자 노력하였음. ○ (집행관리 강화 노력) 행사 공관 예산 배정시,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고, 행사 종료 후 공관의 조속한 예산 정산 및 집행 잔액 반납을 독려하였음. 공관에서 반납한 집행 잔액은 추후 행사 예산으로 활용함으로써 불용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였음. ○ 조치완료일 : '24년 1월 31일	조치완료

시정요구명	지적사항 및 시정요구사항	시정요구 유 형	조치결과	조치상황 ('24.6.30)
(2) 「국고금 관리법」 및 「예산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예비비 집행	○ [지적사항] '국무총리 남미3개국 순방(10.7~10.16)' 기간 동안 이용한 공군 1호기 일반용역비 및 'WEF 국가전략대화 화상회의(10.14~10.21)' 용역비는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한 후 예비비를 승인(11월 1일) 받았음 이는 배정된 예산의 금액 범위에서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고금 관리법」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및 예비비가 세출예산으로 배정되기 전에 집행을 금지하고 있는 「예산집행지침」을 위반한 것임 ※ 「국고금 관리법」 제20조(지출원인행위의 준칙) 지출원인행위는 중앙관서의 장이 법령이나 「국가재정법」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p.143)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가 세출예산으로 배정되기 전에 이를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 [시정요구사항] 외교부는 「국고금 관리법」 제20조 및 「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기획재정부의 예비비 승인을 받은 이후에 투명하게 예비비를 집행하고, 예산의 비효율적인 집행을 유발한 관계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	주의	○ 동일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예산 집행 법령과 지침을 철저히 숙지하였음. 23년에는 본예산 집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면서 본예산 소진 시기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예비비를 신청하여 예비비를 배정받은 이후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음. ○ 조치완료일 : '23년 8월 16일	조치완료

문 의 처
임주현 입법조사관 (6788-5263) 이규희 입법조사관 (6788-5268) 노세현 입법조사관 (6788-5266)